2012년도대한민국 재정

National Finance of Korea 2012



발간사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 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가 계부채의 증가, 물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 의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안정적 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총지출 규모를 325.4조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 · 복지 · 노동 및 교육 분야 예산규모를 정부안 보다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국회의 재정의지가 국민생활 안정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충분한 재정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의 편성과 의결 전 과정에 걸쳐 재정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국회 재정권의 효율적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은 우리나라 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재정제도와 재정규모를 표와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체계에 맞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재정현안과 부처별 주요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책은 총 3부 및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체계 및 주요 재정제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2012년도 재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국회심의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며, 제3부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별로 50개 중앙행정기관의 2012년도 확정예산과 심의내역 및 주요 사업을 분석 ·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과 관련된 주요 재정통계는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이 재정정보에 대한 국회 내·외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원님들의 재정 관련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됨으로써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성 신

집필진

기획·총괄 김 춘 순(예산분석실장)

조 정 박 인 화(예산분석심의관)

김 경 호(경제예산분석과장) 서 세 욱(산업예산분석과장)

문 종 열(사회예산분석과장) 정 문 종(행정예산분석과장)

정 영 진(법안비용추계1과장) 박 선 춘(법안비용추계2과장)

집 필 예산분석관 최철민 이강혁 연훈수 김양혜 김윤미 백운광

전용수 배아형 김효진 표승연 변재연 한정수

박재문 정민주 정유진 김형진 김성은 김태은

주성훈 김애선 예승우 정진욱 김경수 심성택

김태완 강상규 문지은

지 **원** 민준홍 강숙자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주요 재정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한 '확정예산 분석서'로서, 방대한 규모의 국가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연락처: 02-788-3769 eba@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Brief Contents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제2장	재정의 의의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15 19
	제3장	재정과정	59
	제4장	주요 재정제도	76
제2부	2012년 재정개요		
	제1장	2012년 재정 개관	125
	제2장	2012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44
	제3장	2012년 예산 및 기금	155
	제4장	2012년 예산안의 국회심의	183
제3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사업	
	제1장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201
	제2장	국회운영위원회	203
	제3장	법제사법위원회	208
	제4장	정무위원회	216
	제5장	기획재정위원회	238
	제6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59
	제7장	국방위원회	270
	제8장	행정안전위원회	282
	제9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05
	제10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19
	·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338
	제12장	지식경제위원회	351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371
		환경노동위원회	391
	제15장	국토해양위원회	416
	· -	정보위원회	432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435
부록 :	재정 통계		
		경제지표	451
	2. 주요	재정지표	456
	3. 분야	별 주요 통계	467





Contents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1절 재정의 의미15
제2절 재정의 기능15
제3절 재정의 분류17
110 E 110 - E 11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제1절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 19
1. 중앙정부재정 19
2. 지방정부재정22
3.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 26
제2절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33
1. 일반회계 33
2. 특별회계40
3. 기 금42
제3절 재정수입의 체계46
1. 재정수입의 구조 46
2. 조세체계 51
3. 세외수입 55
4. 기금수입 57
제3장 재정과정
제1절 재정과정 개관 59
제2절 예산과정60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60
2. 국회의 예산안 심의62
3. 예산의 집행65
제3절 결산과정 68
1. 정부의 결산과정
2.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 69
제4절 재정 관련 기관과 그 역할71
1. 행정부 :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감사원 72
2. 국 회 :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본회의, 국회예산정책처 73

제4장 주요 재정제도

제1절 국가재정운용계획76
1. 개념 및 주요 내용76
2. 제도 변화와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 77
3. 개선과제78
제2절 예산의 총액배분·자율편성····· 79
1. 개념 및 법적 근거 ······ 79
2. 부처요구·중앙편성 예산제도와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비교79
3. 문제점과 개선방향80
제3절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81
제4절 조세지출예산83
1. 의 의 83
2. 기능별·세목별 규모 ······83
3. 제도개선 과제85
제5절 성인지 예산86
1. 개념과 법적근거86
2. 시행 경과 및 재원 규모 87
3. 문제점 88
제6절 성과관리 89
1. 의 의 89
2. 유형 및 현황90
3. 문제점 및 개선방안92
제7절 지방재정조정93
1. 의 의93
2. 지방이전재원의 연도별 추이와 특징 95
3. 지방이전재원별 현황 및 특징 95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97
제8절 법안비용추계 98
1. 법안비용추계의 의의98
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연혁99
3. 법안비용추계 실적 100
제9절 민간투자사업 102
1. 개념 및 현황 102
2. 유형 103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 103

Contents

제10절 공공기관 104 1. 개 요 104 2. 재무 현황 107 3. 정부 예산지원 109 제11절 부담금 110 1. 부담금의 정의 및 현황 110 2. 부담금 관리제도와 개선과제 112 제12절 총사업비관리 114	제2장 2012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제1절 재정수지의 의의 및 현황
1. 의의 및 법적 근거 114 2. 운영현황 115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6 제13절 예비타당성조사 117 1. 의 의 117 2. 조사대상사업과 조사면제대상사업 118 3. 개선과제 119	제3장 2012년 예산 및 기금 제1절 2012년 예산
제2부 2012년 재정개요 제1장 2012년 재정 개관	제2절 2012년 기금
제1절 2012년 재정운용 여건 125 1. 세계경제······ 125 2. 국내경제 127 3.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 128 제2절 재정규모 129 제3절 분야별 재원배분 133 1. 현황 133 2.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135 3.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의 국제비교 136 제4절 의무지출 139 1. 정의 139 2 현황 140	제4장 2012년 예산안의 국회심의 제1절 국회심의 개관
2. 현 황 140 3. 의무지출 추이 141	1. 2011년 의결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 예산 규모 19 2.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수반 법률 19

제3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사업

제1장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제5장 기획재정위원회	
제2장 국회운영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238
	202	1. 개 관	238
제1절 재정 현황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39
1. 개 관 ·····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46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1. 심의 경과	246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2. 심의 특징 및 내역	246
1. 심의 경과		제3절 주요 사업	249
2. 심의 특징 및 내역	207	1. 기획재정부	249
		2. 국세청	253
제3장 법제사법위원회		3. 관세청	
		4. 조달청	255
제1절 재정 현황	208	5. 통계청	257
1. 개 관	208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09	제6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13		050
1. 심의 경과	213	제1절 재정 현황	
2. 심의 특징 및 내역	213	1. 개 관 ··································	
제3절 주요 사업	214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1. 법무부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 대법원		1. 심의 경과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제3절 주요 사업	
제4장 정무위원회		1. 외교통상부	
제1절 재정 현황	216	2. 통일부	268
1. 개 관 ·····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제7장 국방위원회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23	제1절 재정 현황	270
1. 심의 경과	223	1. 개 관	
2. 심의 특징 및 내역	224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제3절 주요 사업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국무총리실	226	1. 심의 경과	276
2. 금융위원회	228	2. 심의 특징 및 내역·····	
3. 공정거래위원회 ······		제3절 주요 사업	278
4. 국가보훈처		1. 국방부 ·······	
5. 국민권익위원회 ······		2. 방위사업청	

Contents

제8장 행정안전위원회		제11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282	제1절 재정 현황	338
1. 개 관	282	1. 개 관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83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9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344
1. 심의 경과	292	1. 심의 경과 ·····	
2. 심의 특징 및 내역	293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제3절 주요 사업	298	제3절 주요 사업	
1. 행정안전부	298	"-	
2. 소방방재청	302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3	제12장 지식경제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351
제9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개 관	351
	205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352
제1절 재정 현황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358
1. 개 관 ·······		1. 심의 경과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제3절 주요 사업	
1. 심의 경과		1. 지식경제부	
2. 심의 특징 및 내역		2. 중소기업청	
제3절 주요 사업	315	3. 특허청	
제10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10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제1절 재정 현황	371
1. 개 관 ···········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1. 개 관 ·····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		1. 심의 경과	
2. 심의 특징 및 내역···································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제3절 주요 사업		제3절 주요 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 ····································		1. 보건복지부·······	
2. 방송통신위원회······ 3. 문화재청 ·······		1. 포인득시구 2. 식품의약품안전청······	
O. 트럭게 O	500	4 70470000	000

부 록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391
1. 개 관 391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39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400
1. 심의 경과 400
2. 심의 특징 및 내역 401
제3절 주요 사업 406
1. 환경부 406
2. 고용노동부 409
제15장 국토해양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416
1. 개 관 416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417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422
1. 심의 경과 422
2. 심의 특징 및 내역 422
제3절 주요 사업 424
1. 국토해양부 424
2. 해양경찰청 429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30
제46자 저나이의된
제16장 정보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43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433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435
1. 개 관 435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436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439
1. 심의 경과 439
2. 심의 특징 및 내역 440
제3절 주요 사업 442

재정 통계

1.	주요 경제지표	451
2.	주요 재정지표 ·····	456
	가. 조세와 재정규모	456
	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459
	다. 예산안 국회수정 현황	464
	라. OECD 국가 재정통계 ·····	465
3.	분야별 주요 통계	467
	가. R&D	467
	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469
	다. SOC ·····	475
	라. 농림·수산·식품 ·····	479
	마. 보건 · 복지 · 노동 ·····	483
	바. 교육	494
	사. 문화·체육·관광 ·····	499
	아. 환 경	502
	자. 국 방	505
	차. 외교·통일 ·····	507
	카. 일반공공행정	508
	타. 공공기관	510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제3장 재정과정

제4장 주요 재정제도

제1절 재정의 의미

국민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될 수 있는 정부의 수입·지출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조세(국세와 지방세) · 부담금 · 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매각 및 국 · 공채 발행 등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국방 · 외교 · 치안 등 국가의 유지,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입과 지출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재정활동이다.

재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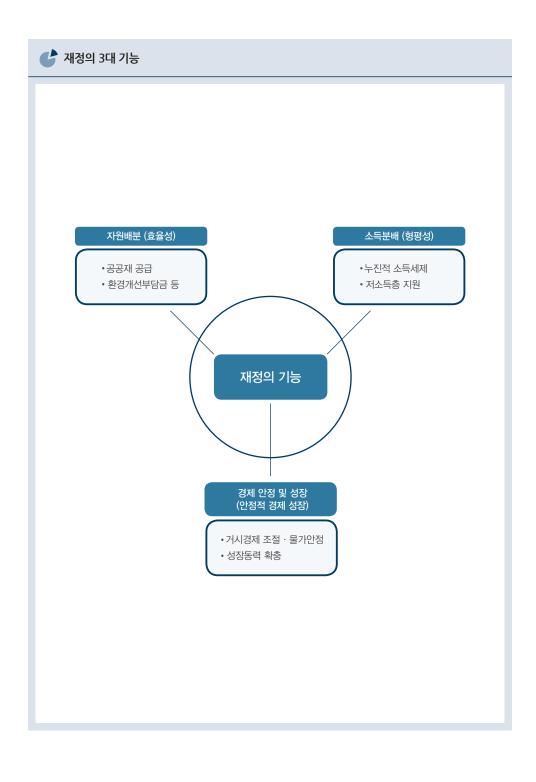
화폐단위로 표시될 수 있는 정부의 수입·지 출활동

제2절 재정의 기능

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효율성), 소득분배(형평성), 그리고 경제 안정 및 성장(안정적 경제성장)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니라, 재정활동의 총체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 개별적인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

재정의 기능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



제3절 재정의 분류

재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재정운용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재정과 지 방정부재정으로, 둘째, 재정운용수단에 따라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셋째, 재정활동의 성격에 따라 수입과 지출 활동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주체에 따른 구분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재정은 중앙정부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지방정부재정은 지방자치에 기초한 자치단체의 재정활동과 교육자치에 기초한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

수단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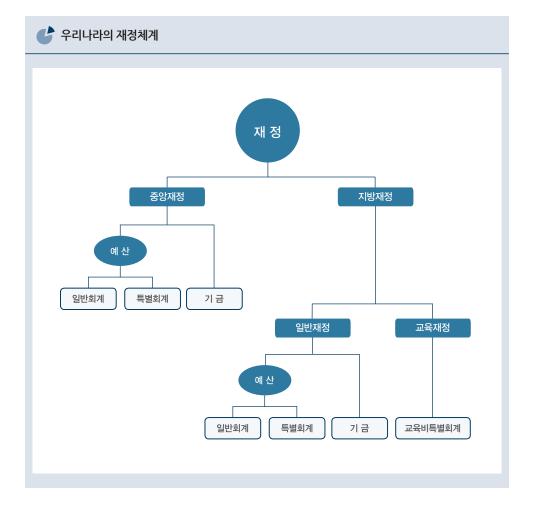
재정은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국회의 의결대상은 중앙정부재정에 속하는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이다. 예산의 실질적 의미는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계산서를 말한다. 형식적 의미로는 「헌법」,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한 회계연도 국가재정의 계획을 말한다.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예산은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예산이다.

운용수단에 의한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금은 예산과는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과거에는 국회의 심의 · 의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예산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기금 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의 형태로 예산안 및 결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됨으로써 재정운용수단으로서 둘 간의 본질적 차이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재정활동 성격에 따른 구분

재정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다. 예산과 기금 등 모든 재정운용수단은 수입과 지출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은 세입, 지출은 세출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수입·지출 활동과 구분하고 있다.



에산 외로 운용되는 재정활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활동 전체를 투명하게 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재정법」(제53조)은 이러한 예산총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 되, 다음 항목의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 현물출자
- 전대차관 도입 및 상환초과지출
- 차관물자대 초과지출
- 기술료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제1절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

1. 중앙정부재정

중앙정부재정의 구조

2012년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및 6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 재정체계 중앙정부재정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5개) 기타특별회계(13개) 기금(65개) 세 입 · 양곡관리 · 농어촌구조개선 · 사회보장성기금 6개 • 조달 · 교통시설 · 사업성기금 44개 · 내국세 · 우편사업 ·등기 · 계정성기금 5개 · 관세 · 우체국예금 · 교도작업 · 금융성기금 10개 · 목적세 · 책임운영기관 · 에너지및자원사업 · 세외수입 · 환경개선 ※ 부족시 국채발행 · 우체국보험 · 주한미군기지이전 세 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R&D · 국방/군사시설이전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혁신도시건설 · SOC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농림수산식품 · 광역/지역발전 · 보건/복지/노동 • 교육 · 문화/체육/관광 · 환경 · 국방 · 외교/통일 · 공공질서/안전 · 일반공공행정

2012년 중앙정부재정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 65개

2012년 총수입 343,5조원

예산 234.0조원 기금 109.5조원

중앙정부재정의 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중앙정부재정의 규모를 회계 · 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총수입 · 총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 총수입은 343,5조원이며 예산 총수입이 234,0조원, 기금 총수입이 109,5조원이다. 2011년에 비하여는 29,2조원(9.3%) 증가하였다. 2012년 총지출은 325,4조원으로 예산 총지출이 228,1조원, 기금 총지출이 97,3조원이다. 2011년에 비하여는 16,4조원(5.3%) 증가하였다.

[표 1-1] 2012년 중앙정부재정 규모(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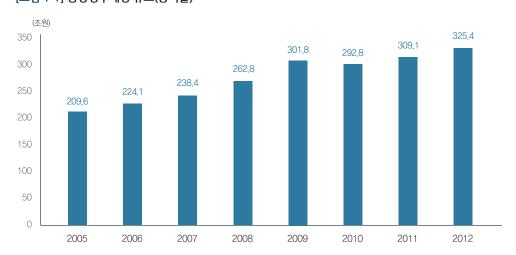
	2011 예산	2012 예산	증감	
	(A)	(B)	(B-A)	(B-A)/A
총 수 입	314.4	343.5	29.2	9.3
예 산	212.1	234.0	21.9	10,3
기금	102,2	109.5	7.3	7.1
총 지 출	309.1	325.4	16.4	5.3
예 산	216,3	228.1	11.8	5.4
기금	92.8	97.3	4.6	5.0

자료: 기획재정부,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2, 2

2012년 총지출 325,4조원

예산 228.1조원 기금 97.3조원 총지출 기준으로 중앙정부재정 규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가 공식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6.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 중앙정부재정 규모(총지출)



주: 예산(추경포함)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 총계와 순계, 총지출, 통합재정지출

[2012년 중앙정부 지출규모]

(단위: 조원)

		예 산	71.7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기금	<u> </u>
총계 (순계)	223,1	59.5	282.6 (248.6)	379,5	662,1
총지출	179.8	48.3	228.1	97.3	325.4
통합재정지출	177.8	42.2	220.0	74.3	294.3

자료: 기획재정부의「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2012.2)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총계와 순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계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각각 223.1조원, 59.5조원, 379.5조원으로 이를 합산한 규모는 662.1조원이다. 그러나 이렇게 합산된 총계규 모는 중복 합산되는 회계 · 계정 간 내부거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재정규모에 비해 과다 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회계 · 기금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등을 상계한 순계개념이 보 다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순계규모는 248.6조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계규모를 합산한 282.6조원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총지출

총지출규모는 2005년부터 중앙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재정통계로 중앙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모두 지출로 보는 재정지표이다. 총지출규모는 예산과 기금 총계에서 회계·기금·계정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보전거래는 국채발 행 또는 상환, 차입 또는 차입금상환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수입·지출의 확대보다는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총지출규모는 이러한 보전거래를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총지출 규모 산출시 금융성 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있다.

⇒ 2012년 총지출 = 일반·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 325.4조원

통합재정지출

통합재정지출은 1년 동안 정부 부문이 지출(순융자 포함)하는 총체적인 재정규모를 의미하 며 정부가 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발표하는 재정지표이다. 정부 전체의 통합 재정에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등도 포함되지만 국가 예·결산 과정에서 는 통상적으로 중앙정부 통합재정 통계가 재정수지 산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과 마찬가지로 예산 및 기금 등 지출 총계에서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를 차갂하여 산출되는데, 융자거래 및 기업특별회계 지출 총계를 지출로 계상하는 총지출과 달리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 및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만을 수입 또는 지출로 계상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지출 규모가 총지출 규모보다 작게 된다. 2012년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294.3조원이다.

2. 지방정부재정

지방재정의 구조

지방정부교육재정은 일반재정에서 독립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와는 달리 교육재정이 지방의 일반재정에서 독립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전체 규모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합산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지방재정의 구성요소: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일반재정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한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 제 운영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 운영한다. 기타특별회계는 특별자금이나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는 별도로 설치 · 운영된다.

교육재정

교육재정은 일반지방재정과 분리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 운영되 는 교육 · 과학 · 체육 등에 관한 특별회계인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일반재정의 규모

2011년 자치단체 일반재정 순계예산은 141.0조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0.8% 증가하였다. 세입 순계예산의 주요항목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49.7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35.3%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29.6조원으로 21.0%, 지방교부세가 27.4조원으로 19.4%, 국고보조금이 30.6조원으로 21.7%, 지방채가 3.7조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자치단체 일반재정 순계예산 141.0조원

세입 순계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지만, 세외수입과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각각 1조 9,771억원(6,3%), 1조 4,352억원(27,8%)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조 8,580억원(7,3%)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2009년과 2010년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세수입의 증가추세가 반영된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 세입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2] 2011년 지방자치단체 세입 순계예산규모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증감	
	최종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	당초예산 (B)	구성비	(B-A)	(B-A)/A
자체재원	96.2	84.7	90.8	83.0	58.9	-1.7	-2.0
지방세	45.2	47.9	49.3	49.7	35.3	1.8	3.9
세외수입	41.2	31.6	35.9	29.6	21.0	-2,0	-6.3
지방채	9.8	5.2	5.6	3.7	2,6	-1.4	-27.8
의존재원	60.6	55.3	59.0	58.0	41.1	2,7	4.9
지방교부세	28,1	25.6	27.7	27.4	19.4	1.8	7.3
국고보조금	32,5	29.7	31.3	30.6	21.7	0.9	2.9
세입순계	156.7	139.9	149.8	141.0	100.0	1,1	0.8

자료: 행정안전부

2011년 지방정부의 분야별 세출 순계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이 전체 예산의 20,2%인 28.5조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송및교통 분야와 환경보호 분야가 각각 15.1조원, 15.0조원으로 10.7%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당초 세출예산과 비교해 보면, 금액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크게 증가(1.9조원, 7.3%)하였으며, 증가율로는 교육 분야가 가장 크게 증가(0.9조원, 10.8%)하였다. 반면에 수송및교통 분야와 국 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전년에 비해서 각각 1.4조원(8.2%), 1.2조원(9.4%) 감소하였고, 문화및관광분야 또한 전년 대비 0.8조원(10.4%) 감소하였다.

[표 1-3] 2011년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세출예산

(단위: 억원, %)

	2010 예산		2011	예산	증감	
	금액 (A)	구성비	금액 (B)	구성비	(B-A)	(B-A)/A
일반공공행정	119,448	8.5	125,034	8.9	5,586	4.5
공공질서 및 안전	21,768	1.6	23,366	1.7	1,598	7.4
교육	81,385	5.8	90,143	6.4	8,758	10.8
문화및 관광	77,951	5.6	69,872	5.0	-8,079	-10.4
환경보호	149,009	10.7	150,305	10.7	1,296	0.9
사회복지	265,342	19.0	284,632	20.2	19,290	7.3
보건	22,250	1.6	20,082	1.4	-2,168	-9.7
농림해양수산	97,233	7.0	97,944	6.9	711	0.7
산업중소기업	30,031	2.1	30,437	2,2	406	0.9
수송및교통	164,801	11.8	151,118	10.7	-13,683	-8.2
국토및지역개발	128,439	9.2	116,385	8.3	-12,054	-9.4
과학기술	4,375	0.3	3,293	0.2	-1,082	-24.7
예비비	22,139	1.6	23,125	1.6	986	5.3
기타	214,394	15.3	224,657	15.9	10,263	4.8
세출총계	1,398,565	100.0	1,410,393	100.0	11,828	0.8

주: 각 연도 당초예산 순계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1년 시도별 예산현황(광역+시·군·구)을 살펴보면, 서울이 22.7조원, 경기도 25.7조원, 부산이 8.0조원, 경상남도가 11.5조원 등이다. 또한 광주는 3.2조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한 반면, 인천은 7.1조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다.

[표 1-4] 2011년 시도별 예산현황

(단위: 억원, %)

	2010 예산	2011 예산	증감			
	(A)	(B)	(B-A)	(B-A)/A		
서울	229,408	227,403	-2,005	-0.9		
부산	80,039	79,888	-151	-0.2		
대구	53,803	55,742	1,939	3.6		
인천	75,207	71,090	-4,117	-5.5		
광주	29,569	31,644	2,075	7.0		
대전	28,381	29,626	1,245	4.4		
울산	25,320	24,757	-563	-2.2		
경기	258,974	256,508	-2,466	-1.0		
강원	66,325	68,369	2,044	3.1		
충북	54,299	56,060	1,761	3.2		
충남	79,289	81,347	2,058	2.6		
전북	72,558	76,178	3,620	5.0		
전남	94,527	94,254	-273	-0.3		
경북	109,934	114,923	4,989	4.5		
경남	114,950	115,319	369	0.3		
제주	25,981	27,287	1,306	5.0		
합계	1,398,564	1,410,393	11,829	0.8		

주: 시도별 예산규모는 「시 · 도본청예산+시 · 군 · 구 예산」임

자료: 행정안전부

3.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일부 공공기관 등 "정부 재정"에 포함되는 경제주체들의 재정규모를 모두 합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각 경제주체 간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내부거래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 지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들의 재정규모를 합산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지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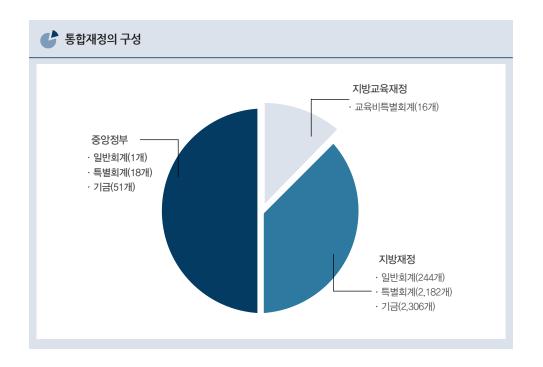
우리나라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현행 지표로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 재정통계 작성기준(GFSM 1986: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을 기초로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통합재정" 규모와 한국은행이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OECD에 제출하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총지출 규모 등이 있다.

이울러 현재 정부는 발생주의 · 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재정통계를 발생주의 기준의 MF 2001년 재정통계 작성기준(GFSM 2001)을 기초로 변경하는 등 기존 재정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통계 개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규모는 1년 동안 정부부문이 수입 또는 지출(순융자 포함)하는 총체적인 재정규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IMF의 GFSM 1986을 기초로 작성 · 발표하는 통합재정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특별회계,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와 지방정부 공기업특별회계및 '세입세출외(세계잉여금 및 전대차관 등)'등이 포함된다'. 다만, 중앙정부 기금 중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 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및 공공기관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기업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이 아닌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만을기재하고 있다.

^{1) 2010}년 기준으로 통합재정에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18개), 기금(51개)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244개), 특별회계 (2,182개), 기금(2,306개), 지방교육재정의 교육비특별회계(16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경제주체의 재정규모를 합산함에 있어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경제주체들 간의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등은 제외되며, 정부가 2011년 12월 발표한 2010년 통합재정 규모는 수입 337.9조원, 지출 326.5 조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1.4조원 흑자이다.

2010년 통합재정규모 (결산기준)

수입 337.9조원 지출 329.5조원 통합재정수지 11.4조원 흑자

[# ΄	1-51	20.	10년	정부부문	. 토하지	l정토계

(단위: 조워)

[- : 5] 25 : 5 [5]		(단위: 소원)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합계
수 입(A)	265.7	70.2	2.0	337.9
경상수입	263.4	68.2	1.4	333.0
자본수입	2.4	1.5	0.2	4.0
지출 및 순융자 (B)	162.9	123.4	40.3	326.5
경상지출	139.3	67.4	35.1	241.8
자본지출	19.6	55.5	4.1	80.2
순 융 자	4.1	0.4	0.04	4.6
통합재정수지 (A-B)	102.8	-53.2	-38.3	11.4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나. 일반정부 총지출

2009년 일반정부 총지출(결산기준) 352,3조원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OECD에 제출하는 일반정부 총지출은 UN의 '국민계정체계(1993 SNA)'에 따라 일반정부로 분류되는 부문의 지출총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다.

동 기준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되며 제도 단위와 시장성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와 대부분의 특별회계·기금들이 일반정부에 포함되지만 시장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조달·양곡관리 등 기업특별회계와 금융성 기금 등 일부 기금은 일반정부의 포괄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회보장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운용하는 기관과 기금 자체가 포함되며, 공공비영리단체에는 공공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조세연구원 등이 포함된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지출은 352,3조원이며, 중앙정부 138,9조원, 지방정부 160,8조원, 사회보장기금 52,5조원으로 구성된다.

[그림 1-2] 연도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다.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

재정통계 개편 배경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통계가 IMF의 GFSM 1986을 기초로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되어 오면서 그 포괄범위 및 작성 방식이 상이한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국가 간 비교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OECD의 일반정부 통계와의 차이를 야기하 였다.

이에 정부는 발생주의 · 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계기로 기존 국가채무를 비롯한 재정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들어갔으며, 그 내용을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다.

재정통계는 GFSM 1986 기준으로 작성

[표 1-6] 재정통계 작성기준 비교

		정부 재정통	계 작성기준	OECD 기준
		국가채무	통합재정	(한국은행 작성)
적용	기준	IMF GFS	SM 1986	UN 1993 SNA
회계	기준	현금	주의	발생주의
정부 포괄범위 기준		기능 기준 (민간관리 기금 제외)	기능 기준 (금융성 기금 제외)	제도단위 및 시장성 기준을 적용
	특별회계 (18개)	18개 모	13개 (조달 · 우정사업 등 기업특별회계 제외)	
포괄범위 (2010년 기준)	기금(64개)	40개 정부기금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등 24개 민간기금 제외	52개 *신보ㆍ기보 등 12개 금융성 기금 제외	45개 *금융성 · 기업성 기금 19개 제외 -외평 · 국민주택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보증기금 등
	지방정부	일반회계·특별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제	외	포함 (134개)

자료: 민관합동작업반,「재정통계 개편안」, 2011.1

정부 재정통계 개편안의 기본 방향2)

정부 재정통계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첫째, 통계 기준을 GFSM 1986에서 GFSM 2001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통계를 개편하는데 있어 IMF의 GFSM 2001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이와 함께 UN의 1993 · 2008 SNA, EU의 1995 ESA(European System of Accounts) 기준 및 주요국들의 사례 등을 보조기준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여 발생주의 부채(미지급금 · 선수금 · 예수금 등)와 재정수지 항목(감가상각비 등 포함)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정부 포괄범위를 일반정부 기준으로 설정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 등으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 및 민간관리기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기본방향은 1993 SNA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회계기준과 일반정부 포괄범위 기준을 정부의 개편안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이다. 2001 GFSM의 제도단위 기준은 1993 SNA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이며, 이를 적용하여 IMF와 OECD에 각각 제출하는 재정통계의 회계처리 방식과 포괄범위 기준 등을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재정통계를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하는 정비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통계 개편안의 포괄 범위

개편안에서는 GFSM 2001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 포괄범위를 일반정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제도단위를 다음의 3가지 단계에 걸쳐 분류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첫째, 단계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제도단위(독립적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과 자금운용을 하는 경우)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닌 경우(일반·특별회계 및 정부기금)는 일반정부로 분류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원가보상률을 산정한다. 독립적인 제도단위일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원가보상률(= 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로 분류하고, 50%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특수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원가보상률 기준과 관계없이 일반정부로 분류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사회보장기구(국민건강보험 등), 구조조정기구(구조조정기금, 예보채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와 부과식 또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직역연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정부가 유일한 고객이거나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출연연구기관 등)이 속한다. 또한, '정부가 유일한 고객'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출연연구기관은 세부기준에 따라 공기업으로 재분류하며, 당초 원가보상율 50%를 초과하여 공기업으로 분류된 기관 중 정부판매 수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일반정부로 재분류하기 위해 해외사례(독일은 80% 기준 적용)

²⁾ 이하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 관련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11, 11)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등을 반영하여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 후 이를 부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충당부채를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를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신용도 평가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재원 부족시 국가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 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비교환거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여 지급에 대한 국민기대 등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산정 기준, 보험수리적 가정 및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부기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등이 보유하는 국채의 경우도 GFSM 2001에서 내부거래로 보아 재정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EU 및 미국 등도 동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정통계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010년 기준으로 84.9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보유 국채가 통계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보유 국채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자산이며 향후 연금이 국채 매도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경우 국가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국가 부채 통계에서 제외하더라도 별도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재정통계를 MF 등에 제출하여 국제비교용으로 활용하고,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활용되는 재정관리용 통계는 기존과 같이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하여 별도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표 1-7] 정부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른 주요 변화

			개편 전	개편 후		
	통기	ᅨ기준	GFSM 1986	GFSM 2001		
	회기	ᅨ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포골	말범위	기능중심	제도단위		
국 제 기	이 반	중앙 정부	・ 일반회계 ・ 18개 특별회계 ・ 64개 기금 중 11개 기금 제외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재정수지 산출시)	· 일반회계 · 15개 특별회계 (우정사업본부 관련 3개 특별회계 제외) · 64개 기금 중 원가보상률 50% 초과하는 4개의 민간관리기금(사학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60개 기금		
구 제 출	정 부	지방 정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제도단위, 원가보상률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일반정부 포함여부 결정 예정		
J め		공공 기관	·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282개 공공기관(2010년 기준) 중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136개를 제외한 146개 기관 포함 · 131개 지방공기업 중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일부 포함 예정		
	공적연금 충당부채		· 고려 없음	· 공적연금 충당부채는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부기		
	연금 보유국채		· 국민연금 등 연금 보유국채 국가채무에 포함	ㆍ 국민연금 보유국채는 내부거래로 보아 제외		
예 산 (재정 관리용 통계)	· 변화없음 (현금주의 기준) · 「국가재정법」제91조에 의한 국가채무 규정(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그대로 적용					
결 산			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결신 부터 국가결산보고서상 재무제:	보고서 작성 표(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작성/제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11. 11

제2절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1.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이다. 일반회계는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 · 지분매각 수입 등의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국방 · 외교 · 치안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 기능은 물론, 교육 · 주택 · 사회기반시설 투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사업 등과 같은 핵심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재정활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더불어 예산을 구성하게 되며,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의 재원조달은 세입으로, 지출은 세출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일반회계의 총계규모는 1962년 733억원이었으나, 1990년에는 27.4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223.1조원에 이르고 있다.

2012년 중앙정부 일반회계 총계규모 223.1조원



주: 2010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1~2012년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1. 대한민국정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각 연도 2.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962

1970

🚅 정부이전지출 비교

국가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 업자, 그리고 각 회계와 기금 등에 교부, 보조, 출연, 출자, 예탁 · 예수, 전출 · 전입, 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재원을 이전하여 지출하고 있다.

[정부이전지출 비교]

	보조	출연	출자	예탁	전출	융자
개 념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금	각 회계와 기금이 다른 회계와 기금 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공자금을 특정 대상에게 융자
개별법상 근 거	불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지급대상	사업자 ·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 기관 · 기금 · 공단 등 정부 출연기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회계, 기금	회계, 기금	개인, 법인 등
구체적 용도 지정여부	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지정
2012년 예산(억원)	464,724	258,775	40,623	373,161	496,416	276,04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 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 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대상사업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교부되나, 규모가 영세 한 여러 세부사업들을 통합하여 교부하거나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포괄 보조금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2012년 예산상 국고보조금 규모는 총 46.5조원으로 민간경상보조 9조 3.704억원, 민간자 본보조 2조 9,055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9조 3,100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4조 8,865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9%씩 증가하여 중앙정부 총지 출 증가율(5.5%)을 상회하고 있으며,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회계연도별 예산상 국고보조금 규모]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총지	출(조원, A)	262,8	301.8	292.8	309.1	325.4
보조금합	[계(B)	347,478	400,755	421,854	436,899	464,724
비율(B//	Δ)	13,2	13.3	14.4	14.1	14.3
	경상보조	72,613	84,527	83,109	85,527	93,704
민 간 보 조	자본보조	25,253	22,169	22,353	28,083	29,055
	소계	97,866	106,696	105,462	113,610	122,759
TI 71	경상보조	139,798	160,088	173,926	181,227	193,100
자치 단체	자본보조	109,814	133,971	142,466	142,062	148,865
보조	소계	249,612	294,059	316,392	323,289	341,96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출연금

출연금은 행정주체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기관 · 기금 · 공단 등 정부출연기관에 대 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2012년 중앙정부 출연금 규모(총지출 기준)는 28개 부처 총 25조 8,775억원으로 2008년 (17조 5.975억원)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10.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예산 기준 출연금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7조 6,781억원이며, 다음 으로 지식경제부 5조 5,131억원, 국토해양부 5조 1,042억원, 방위사업청 1조 5,661억원 등의 순이다.

[회계연도별 예산상 출연금 규모]

(단위: 억원, %)

					(2 11 12)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총지출(조원, A)	262.8	301.8	292.8	309.1	325.4
출연금합계(B)	175,975	217,323	215,826	228,043	258,775
비율(B/A)	6.7	7.2	7.4	7.4	8.0
회계	143,346	186,031	182,455	191,089	221,206
기금	32,629	31,292	33,372	36,954	37,568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출자금

출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금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대상 법인의 설립 근거법에서 "자본금" 또는 "자본금 및 출자"라는 제목의 형식으로 규정되며 법정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출자된다.

2012년 출자금 규모(총지출 기준)는 4조 623억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유전개발사업출자 (6,903억원), 영구임대출자(5,01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2,200억원) 등이 있다.

🛂 출자금

[회계연도별 예산상 출자금 규모]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총지출(조원, A)	262.8	301.8	292.8	309.1	325.4
출연금합계(B)	31,633	57,908	47,849	40,380	40,623
비율(B/A)	1.2	1.9	1.6	1.3	1.3
회계	18,046	46,025	31,028	23,476	27,204
기금	13,587	11,883	16,821	16,904	13,419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편, 출자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이루어지는데, 현행 「국가재정법」은 현물 출자의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60조에 따른 요건만 충 족되는 경우 정부가 재량적으로 출자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현물출자 내역]

(단위: 억원)

	출자대상기관	출자재산	출자가액
	한국산업은행	도로공사주식	5,000
2008	한국수출입은행	도로공사주식, 교보생명주식, 신세계주식	6,500
2006	중소기업은행	토지, 건물 등 철도운영자산	5,000
	한국철도공사	용담다목적댐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등	3,519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주식	1,740
2009	한국수출입은행	도로공사주식	5,000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주식	149,000
2010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시설관리권	907
	한국전력공사	군배전선로 및 전신주 등	106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생활공업용수 댐사용권	121
2011	여수광양항만공사	시설관리권, 건물 · 공작물 등	15,523
	울산항만공사	시설관리권, 건물 · 공작물 등	2,859
	부산항만공사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등	1,742

자료: 감사원, 회계연도별 결산검사보고

🚅 예탁 · 예수금

예탁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을 의미한다. 예탁금을 지급받는 회계 또는 기금에서는 이를 수입항목 중 예수금으로 계상한다. 예탁금은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므로 예탁금을 받는 측, 즉 예수금이 있는 회계 또는 기금은 차후 해당 예탁금을 빌려준 회계 또는 기금에 이를 상환해야 하며,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예탁 · 예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금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자금 에 여유가 있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예수받은 자금과 국고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일반회계나 외국환평형기금 등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2년 예탁금 규모는 총 37조 3.161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은 13조 8.400억 원. 기타특별회계로의 예탁금은 4.754억원. 기금으로의 예탁금은 23조 6억원이다.

예탁금은 융자금과 구분되는데. 예탁금은 정부내부거래로서 각 회계와 기금이 다른 회계와 기금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융자금은 정부외부거래로서 각 회계 와 기금 등 공공분야가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외부부문에 유 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을 의미한다.

또한, 예수금은 차입금과도 구분되는데, 예수금은 각 회계와 기금이 정부내부의 다른 회계 와 기금에게 유상으로 빌려오는 자금을 의미하나 차입금은 각 회계와 기금이 정부 외부의 통 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민간과 해외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오는 자금을 의미한다.



🚅 전출 · 전입금

전출금은 각 회계와 기금이 다른 회계와 기금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예탁금과 달리 무상으 로 주는 자금을 의미한다. 전출금은 재원을 받는 회계 또는 기금에서는 수입이 되며, 수입항목 중 전입금으로 분류된다. 전출금은 무상으로 주는 자금이므로 전출금을 받은, 즉 전입금이 있 는 회계 또는 기금은 차후 전출금을 준 회계 또는 기금에게 전입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2012년 전출금 예산은 총 49조 6.416원이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5.305억원, 기타특별회 계로의 전출금 32조 3,855억원, 기금으로의 전출금 15조 178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전출금에는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로의 전출금 7조 8.573억원,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로의 전출금 4조 1,999억원,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로의 전출금 3조 5,423억원 등이 있다.

전출금은 예치금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전출금은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각 회계와

기금이 다른 회계와 기금에게 무상으로 주는 자금을 의미하나 예치금은 공공분야가 여유자 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 통화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또한 전출금 은 차후 원금을 회수할 수 없으나 예치금은 다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자금을 예치한 기 관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재정융자

재정융자사업이란 국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제도 또는 신용을 배경으로 조성 된 각종 공공자금을 특정 대상에게 융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융자금은 금융시장으로부터 필 요한 자금을 공급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거해 자금을 공급해 줌으로써 해당 계층의 자금부족현상을 완화시키고, 시중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함으 로써 융자대상자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모든 재정융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융자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융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나 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융자사업은 보통 융자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며,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기간 · 금리 등 정해진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2012년 재정융자사업은 17개 부처, 134개 사업에 총 27조 6,040억원 규모이며, 이 중 특별회 계가 1조 2,465억원(4.5%), 기금이 26조 3,575억원(95.5%)의 융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도별 재정융자사업의 규모]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총지출(조원, A)	262.8	301.8	292.8	309.1	325.4
융자금합계(B)	251,993	261,211	256,802	261,801	276,040
비율(B/A)	9.6	8.7	8.8	8.5	8.5
회계	15,687	13,979	12,693	13,910	12,465
기금	236,306	247,232	244,109	247,890	263,57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특별회계

가. 특별회계의 개념과 종류

2012년 특별회계 18개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회계이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더불어 예산을 구성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총 18개가 존재한다.

특별회계 중「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된 조달, 양곡관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5개는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해 설치된 기업특별회계로 분류된다. 그 밖의 13개 특별회계는 각각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수질보전·대기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와 수입 농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 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이 있다.

[표 1-8] 2012년 중앙정부 특별회계 설치 현황 : 총 18개

		소관부처	근거법률
1	교도작업	법무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	광역·지역발전	기획재정부, 각 소관부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	양곡관리	농림수산식품부	정부기업예산법
4	조달	조달청	정부기업예산법
5	우체국예금	지식경제부	정부기업예산법
6	우편사업	지식경제부	정부기업예산법
7	농어촌구조개선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8	등기	대법원	등기특별회계법
9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국토해양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1	에너지 및 자원사업	지식경제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12	우체국보험	지식경제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13	주한미군기지이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에 관한 특별법
14	책임운영기관	행정안전부, 각 소관부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5	환경개선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6	국방 · 군사시설이전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17	혁신도시건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	교통시설	국토해양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주: 순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기재된 설치 근거법률에 따른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특별회계의 규모와 추이

특별회계의 수와 총계규모를 살펴보면, 1962년 17개, 801억원에서 2000년 23개, 64.8조원으로 확대되었다가, 2012년 현재 18개, 59.5조원에 이르고 있다.

2012년 특별회계 총계 59.5조원

[그림 1-4] 연도별 특별회계 수 및 총계규모 추이



주: 2010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1~2012년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1. 대한민국정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각 연도 2.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기금

가. 기금제도의 이해

2012년 기금현황 65개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지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 즉, 기금은 국가가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보다는 출연금 ·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에 비해 보다 더 많은 자율과 탄력성이 허용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단, 금융성기금의 경우라도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경우 20%), 그 외의 기금의 경우에는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과 예산의 형식적 절차, 즉, 기금운용계획의 확정 및 기금결산의 절차가 세입세출예산의 확정 및 세입세출결산과 동일한 절차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됨으로써 재정운용수단으로서 둘 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좁혀지고 있다.

[표 1-9] 예산과 기금의 비교

	q	산	717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사업 운영특정자금 운용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다양한 목적사업 수행
수입 · 지출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배제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확정절차	• 부처의 예산 요 • 기획재정부의 • 국회의 심의 ·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획재정부 장관과 운용주체간의 협의 · 조정 •국회의 심의 · 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합법성에 입각 •목적외 사용금	하여 엄격히 통제 지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추경예산 편성 •이용 · 전용 · I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초과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금융성기금의 경우30%)
결산		국회결산 심의 · 의결	

자료: 기획재정부

나, 기금 현황

기금의 종류

일반적으로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기금의 성질별 분류

사업성기금

예산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기 금이다. 사업성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남북협력기 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산업, 과학기술, 교육, 환경, 문화관광, 국방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2012년 현재 44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다.

금융성기금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재정·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금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수반하여 보증· 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이다. 금융성기금은 2012년 현재 신용보증기금 등 5 개 신용보증 관련 기금을 비롯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총 10개가 설치·운용 되고 있다.

사회보험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은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급여 및 여유자금 을 운용하는 연금성기금과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성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현 재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6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다.

계정성기금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 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이다. 계정성기금은 2012년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 양 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복권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설치·운용 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설치 ·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5개로, 사업성 기금 44개, 금융성 기금 10개, 사회보험성 기금 6개, 계정성 기금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별 기금 수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이 9개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8개,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소관이 각 6개 등이다.

[표 1-10] 부처별 기금 현황

위원회 (기금수)	소관부처 (기금수)	기금명	유형	관리운용주체
법제사법위원회 (1개)	법 무부 (1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성	법무부
	국가보훈처 (2개)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사업성 사업성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정무위원회 (11개)	금융위원회 (9개)	공적자금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계정성 금융성 금융성 금융성 금융성 금융성 금융성 금융성 금융성 금융성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재정위원회 (6개)	기획재정부 (6개)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계정성 계정성 계정성 금융성 사업성 사업성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외교 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1개)	국제교류기금	사업성	한국국제교류재단
(2개)	통일부 (1개)	남북협력기금	사업성	통일부
국방위원회 (2개)	국방부 (2개)	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	보험성 사업성	국방부 국방부
행정안전위원회 (1개)	행정안전부 (1개)	공무원연금기금	보험성	공무원연금공단
교육 과학기술위원회 (4개)	교육과학 기술부 (4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보험성 사업성 사업성 사업성 사업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과학기술부

위원회 (기금수)	소관부처 (기금수)	기금명	유형	관리운용주체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성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개)	언론진흥기금	사업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발전기금	사업성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8개)	문화재청 (1개)	문화재보호기금	사업성	문화재청
	방송통신 위원회(1개)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성	방송통신위원회
		양곡증권정리기금	계정성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	농지관리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위원회 (8개)	식품부 (8개)	수산발전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0/1)	(0/1)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5개)	무역보험기금	금융성	한국무역보험공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성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성	지식경제부
지식경제위원회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성	지식경제부
(6711)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사업성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중소기업청 (1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사업성	중소기업진흥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보험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오건독시우 (3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성	보건복지부
(3711)	(3711)	응급의료기금	사업성	보건복지부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금강수계위원회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낙동강수계위원회
	(5개)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영산강 · 섬진강수계위원회
	(= 11)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한강수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성	환경부
(10개)		고용보험기금	보험성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보험성	고용노동부
	(5개)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성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업성 사업성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위원회 (1개)	국토해양부 (1개)	국민주택기금	사업성	국토해양부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사업성	여성가족부

주: 위원회 건재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기금의 규모

2012년 기금운용규모 379.5조원

2012년 기금운용규모는 379.5조원으로 2001년의 216.8조원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총계 223.1조원의 1.7배에 달한다. 사업비는 86.8조원으로 2001년 대비 15.1% 증가하였으며, 여유지금 운용규모도 131.0조원으로 2001년 대비 100% 증가하였다.

[표 1-11] 기금운용규모 규모 (단위: 조원											(단위: 조원)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금운용규모	216.8	263.3	311.0	331.9	358.2	308.6	369.6	442.1	476.9	369.3	379.5
사업비	75.4	76.8	85.0	87.7	91.5	84.7	87.3	95.5	92.7	85.6	86.8
기금운영비	0.9	2	2.4	2.2	2.4	2.2	2.3	2.5	2.1	2.4	2.3
여유자금운용	65.5	93.2	115.7	123.4	116.9	111.1	146.6	149.1	145.5	129.2	131.0
내부거래	75.0	91.3	107.9	118.6	147.4	110.6	133.4	195.0	236.6	152.1	159.3

주: 1, 2005년까지 실적치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3절 재정수입의 체계

1. 재정수입의 구조

재정수입은 조세(국세와 지방세) · 세외수입 ·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재정주체별로 구분하면,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국세 · 세외수입 · 기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 지방기금수입으로 구성된다.

^{2, 2006~2012}년은 국회 심의 · 의결된 금액

가.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예산수입(세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된다. 세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입원천별로 국세와 세외수입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12년 중앙정부 총수입 343,5조원

총수입 규모

예산과 기금을 합한 2012년 중앙정부 총수입은 2011년 예산 대비 9.3% 증가한 343.5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234.0조원 수준이며, 예산수입의 주축이 되는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205.8조원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입이 209.3조원, 특별회계수입이 24.7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109.5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1-12] 2012년 총수입전망

(단위: 조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총수입	314.4	343.5	29.1	9.3
예산수입	212.1	234,0	21.9	10.3
(국세 수입¹)	(187.6)	(205.8)	(18,2)	(9.7)
일반회계	188.9	209.3	20.4	10.8
특별회계	23.2	24.7	1.5	6.5
기금수입	102,2	109.5	7.3	7.1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²)	(55.4)	(59.4)	(4)	(7.2)

주: 1.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차감 기준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나라살림」, 2012, 2

2012년 예산수입

일반회계 세입 209.3조원 특별회계 세입 24.7조원

예산수입

예산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재산수입(출자배당 수입 등)·공기업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데, 2012년 일반회계 세입 (209.3조원) 중 국세수입은 2011년 본예산 대비 9.1% 증가한 197.3조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8.1% 증가한 12.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융자회수, 수수료 등 자체세입으로 구성되는데, 특별회계 세입(24.7조원) 중 국세는 전년대비 23.2% 증가한 8.5조원, 부담금 및 수수료 등 자체세입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16.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3] 2012년 예산수입(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

	2011 예산	2012 예산	2012 예산 중 감	
	(A)	(B)	(B-A)	(B-A)/A
예산수입	212.1	234.0	21.9	10.3
일반회계	188.9	209.3	20.4	10.8
(국세)	(180.8)	(197.3)	(16.5)	(9.1)
(세외수입)	(8.1)	(12.0)	(3.9)	(48.1)
특별회계	23.2	24.7	1.5	6.5
(국세)	(6.9)	(8.5)	(1.6)	(23.2)
(자체세입)	(16.3)	(16.3)	(O)	(O)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나라살림」, 2012, 2

기금수입

2012년 기금수입 109.5조원 기금의 수입은 수입원천별로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로 구성), 융자원금 회수(중소기업 융자자금 등의 만기회수), 그리고 기타수입(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구분된다. 2012년 기금수입은 2011년 당초 계획 대비 7.1% 증가한 109.5조원 규모로 전망되는데,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40.5조원, 융자원금 회수는 23.0조원,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은 46.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표 1-14] 2012년 기금수입(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

	2011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		감
	(A)	(B)	(B-A)	(B-A)/A
기금수입	102.2	109.5	7.3	7.1
사회보장기여금	37.6	40.5	2.9	7.7
융자원금 회수	21.9	23.0	1.1	5.0
이자수입 등 기타	42.8	46.0	3,2	7.5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나라살림」, 2012, 2

나.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교육재정 제외)은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채 발행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지방정부의 세입규모는 141,0조원(예산순계기준)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49.7조원과 세외수입 29.6조원 등 총 79.3조원(56.3%), 의존수입은 58.0조원(41.1%), 지방채 발행수입은 3.7조원(2.6%)이다.

2011년 지방정부 세입(예산순계 기준) 141.0조원

[표 1-15]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 예산 규모

(단위: 조원, %)

						(271. 22. 70)	
	201	0년	2011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200	동감	
	(A)	비ठ	(B)	ਾਠ	(B-A)	(B-A)/A	
자체수입	79.4	56.8	79.3	56.3	-0.1	-0.1	
지방세	47.9	34.2	49.7	35.3	1.8	3.9	
세외수입	31.5	22.6	29.6	21.0	-2.0	-6.3	
의존수입	55.3	39.5	58.0	41.1	2.7	4.9	
지방교부세	25.6	18.3	27.4	19.4	1.8	7.3	
보조금	29.7	21.2	30.6	21.7	0.9	2.9	
지방채	5.2	3.7	3.7	2.6	-1.4	-27.8	
합 계	139.9	100.0	141.0	100.0	1,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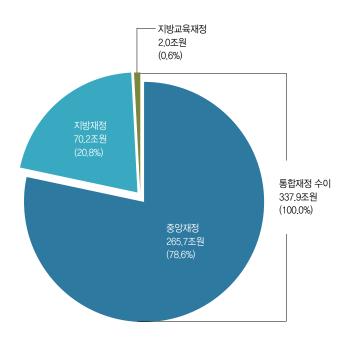
주: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당초 예산(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1. 4

다. 정부 전체의 재정수입 규모

2010년 정부전체의 통합재정수입 337.9조원 정부가 2005회계연도 결산부터 IMF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는 정부 전체의 통합재정통계에 따르면, 2010년 결산 기준으로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지방교육재정 포함)을 모두 포괄하는 정부 전체의 통합재정수입은 337.9조원이다. 재정주체별로는 중앙정부재정수입이 265.7조원으로 전체 통합재정수입의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수입은 70.2조원으로 20.8%, 지방교육재정수입은 2.0조원으로 0.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림 1-5] 정부부분 전체의 통합재정수입 규모(2010년 결산 기준)



주: 괄호안은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 조세체계

조세는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자원을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강제로 이 전하는 수단이며, 정부수입의 근간이 된다. 우리나라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 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는 부과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조세는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직접세와 전가가 가능한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부과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는 2012년 현재 14개의 국세 세목과 11개의 지방세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그 체계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국세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된다. 국세 14개 세목 따라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원은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된다.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관세 를 제외한 국세이고, 관세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 이다.

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타인 에게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타인에게 조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속한다.

국세 세입의 회계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인 농어 촌특별세. 기획재정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인 주세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국세는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된다.

[표 1-16] 2010년 국세 수납액				
회계	소관	세목	수납액	
	기획재정부	소득세	37,461,850	
		법인세	37,268,222	
		상속세	1,202,808	
		증여세	1,873,336	
		부가가치세	49,121,209	
일반회계		개별소비세	5,065,791	
		관세	10,666,286	
		인지세	521,915	
		증권거래세	3,667,144	
		종합부동산세	1,028,932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13,970,115	
		교육세	4,645,00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기획재정부	주세	2,786,46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특별세	3,901,43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지방세

지방세 11개 세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 · 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와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재정수요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하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9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상 2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 \cdot 군세로 구분한다.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직 접 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 간접세 개별소비세 - 내국세 (14개) 주세법 주세 인지세 인지세법 -유 통 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_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목 적 세 교육세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조 세 (25개) 관세 관 세 관세법 취득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도 세 지방소비세 지원자원시설세 목 적 세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지방세 주민세 (11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될 예정임

-시·군세— 보통세

나. 조세지출

조세지출이란 국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세율 등 세법상 일반원칙에서 벗어 나는 특례규정의 형식으로 개인 또는 기업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조세지출은 각종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등의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예산지출과는 구분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2011년 각종 비과세 · 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지방세 부문을 제외한 국세감면 금액)을 총 30조 6,194억원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의 13.7%에 달하는 규모이다. 국세수입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인 국세 감면율은 2000년 이래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15.8%로 정점을 기록하였고, 2011년의 경우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조세지출의 큰 폭의 증가추세는 유가환급금,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등과 같이 고유가 대책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각종 비과세 · 감면을 확대한데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 1-17]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추이
144 1 1/1	그에 다 다 그(ㅗ에스) 출/ 포의

(단위: 조원, %)

		(ETI: ±		
	국세감면액	국세수입	국세감면비율	
2000	13.3	92.9	12,5	
2001	13.7	95.8	12,5	
2002	14.7	104.0	12.4	
2003	17.5	114.7	13,2	
2004	18.3	117.8	13.4	
2005	20.0	127.5	13.6	
2006	21.3	138.0	13.4	
2007	23.0	161.5	12,5	
2008	28.8	167.3	14,7	
2009	31.1	164.6	15.8	
2010	30.0	177.7	14.4	
2011(잠정)	30.6	192.8	13.7	

주: 1.국세감면비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2, 2000~2010}년 수치는 실적기준, 2011년은 잠정치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국세감면율한도제

「국가재정법」(제88조)은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 해 국세감면율한도제를 2007년부터 도입 · 운용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시행령」제41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감면율은 당해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 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08년 및 2009년의 국세감면율(실적기준)은 각각 14.7% ,15.8%로 나타나 국세감면률의 법정한도인 13.6%, 14.0%를 각각 초과하였으나, 2010년 국세감면율(실적기준)은 국세감면 율의 법정한도 14.8%보다 낮은 14.4%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 정집계되고 있는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5.5%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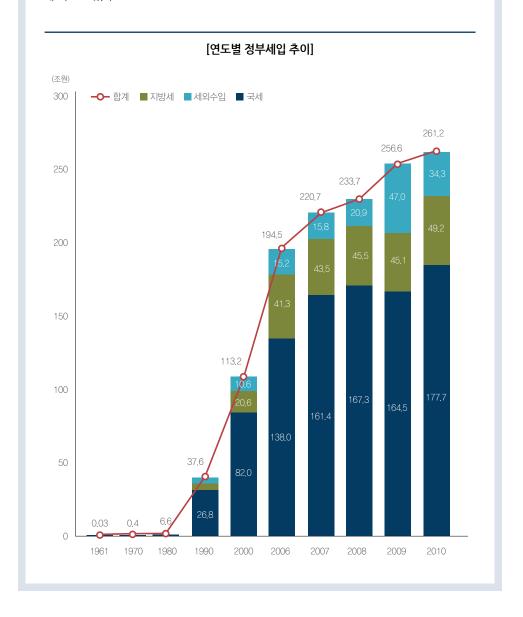
3.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정부의 세입 가운데 조세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에는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 매각대, 융자 및 전대 차관 회수,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차관수입, 전년도 이월금,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등 10개의 구성요소가 있다.

재산수입에는 관유물 대여료, 정부출자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경상이전수입 은 벌금 및 몰수금, 가산금 등을 말하며,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입장료 · 면허료 · 수수료 등으로, 관 유물 매각대는 고정자산 및 토지 등의 매각으로,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는 국공채의 발행, 주식매각, 공기업 매각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 · 지방세 · 세외수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입원천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있다. 2010 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국세는 177.7조원, 지방세는 49.2조원, 세외수입은 34.3조원 에 이르고 있다.



4. 기금수입

기금운용계획상의 기금수입

중앙정부의 기금운용계획상의 전체 기금수입을 살펴보면, 2012년 379.5조원으로 2011년 당초 계획 대비 2.7% 증가한 규모이다. 기금운용계획상 전체 기금수입은 외형상 기금수입으로 계상되는 모든 항목을 합산한 것으로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항목이 모두 포함된다.

2012년 기금수입

379.5조원(총계) 19.5조원(총수입)

[표 1-18] 2012년 기금수입(총수입 기준)

(단위: 조워 %)

				(E11: 40, 70,7	
	2011 예산	2012 예산 (B)	증 감		
	(A)		(B-A)	(B-A)/A	
기금수입(총계)	369.3	379.5	10.2	2.7	
자체수입	117.3	125,0	7,7	6.6	
정부내부수입	61.6	68.7	7.1	11.5	
차입금	102.0	98.6	-3.4	-3.3	
여유지금회수	88.5	87.2	-0.7	-1.5	

주: 각 연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나라살림」, 2012 1

총수입 상의 기금수입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 중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등은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으로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중앙정부 총수입을 산정할 때는 이와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 융자회수금 · 이자수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자체수입만을 기금수입으로 간주한다. 또한 금융성 기금(10개)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IMF 기준상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총수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2년 총수입에 포함되는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40.5조원, 융자원금회수 23.0조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46.0조원으로 총 109.5조원이다.

이를 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성 기금(44개)은 2011년 대비 2.1% 증가한 31.2조원, 사회보험성 기금(6개)은 7.9% 증가한 70.8조원, 계정성 기금(4개)은 1.3% 감소한 7.5조원으로 각각 전망된다.

[표 1-19] 2012년 수입원천 · 기금유형별 기금수입(총수입 기준) (단위: 조덕					
	2011	2012	증감		
	(A)	(B)	(B-A)	(B-A)/A	
기금수입	102,2	109.5	7.3	7.1	
수입원천별					
사회보장기여금	37.6	40.5	2.9	7.7	
융자원금 회수	21.9	23.0	1,1	5.0	
이자수입 등 기타	42.8	46.0	3.2	7.5	
기금유형별					
사업성 기금(44개)	29.1	31.2	2.1	7.2	
사회보험성 기금(6개)	65.6	70.8	5.2	7.9	
계정성 기금(4개)	7.6	7.5	0.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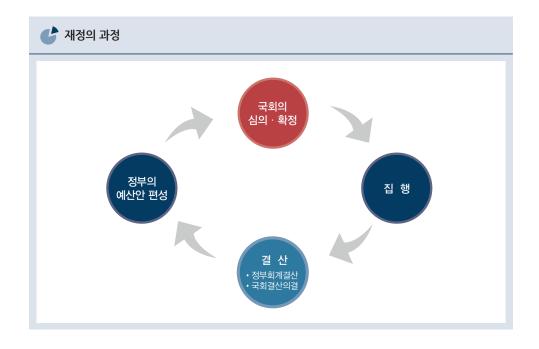
주: 1, 금융성기금 10개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2, 각 연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나라살림」, 2012, 2

제1절 재정과정 개관

재정과정은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과정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 안 심의·확정,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결산과정은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의 결산 검사 확인, 국회의 결산심사로 이루어진다.

재정과정은 3년의 기간에 걸쳐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이 행해지는데,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2012년의 경우, 2011회계연도 결산, 2012회계연도 예산의 집행, 2013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가 이루어진다.

기금의 경우에도 기금운용계획의 편성 · 확정 및 결산 등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예산과 동일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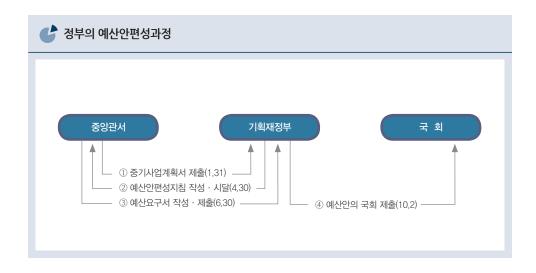
[표 1-20] 재정과정 예시

	전년도(2011년)	당해연도(2012년)	다음연도(2013년)
예산안 편성	2012년 예산편성	2013년 예산편성	2014년 예산편성
예산집행	2011년 예산집행	2012년 예산집행	2013년 예산집행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제2절 예산과정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기획재 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정부예산안 의 국회제출로 마무리된다.



독립기관의 예산안 편성

우리나라는 국회 \cdot 대법원 \cdot 헌법재판소 \cdo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의 독립기관에 대 하여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정부(기획재정부)가 그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국가재정법」은 독립기관의 의견존중, 사전협의, 의견청취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일부 마련하고 있다. 이 는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하여 독립기관의 사업내용이나 규모를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독립기관의 헌법상 위상을 저해하고, 권력분립의 원리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 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우 행정부가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간여할 수 없고 국가예산의 전체로서 총괄차워에서 독립기관의 예산을 제 출받아 국가예산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독립기관의 예산상의 자율성 이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독립기관에 자율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할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4조제2항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과, 예산편성과정에서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지의 문제는 정부의 예산편성 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와 독립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권력분립 원리 등을 비 교 · 형량하여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주

주) 김인철, 「해설 국가재정법」, 2007

2. 국회의 예산안 심의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은 주로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시정연설, 상임위원회의 예 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 확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정기국회의 예산국회화

9월 정기국회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 |은 정기회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만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안들이 정기국회에 집중적으로 제출됨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가 곤란하고, 또한 예산안 심의마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2003년 2월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어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정감사를 9 월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 년 2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제306회 본회의(2012년 2월 27일)에서 원안가결되 었다.

「국회법」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②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 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조 ①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 사를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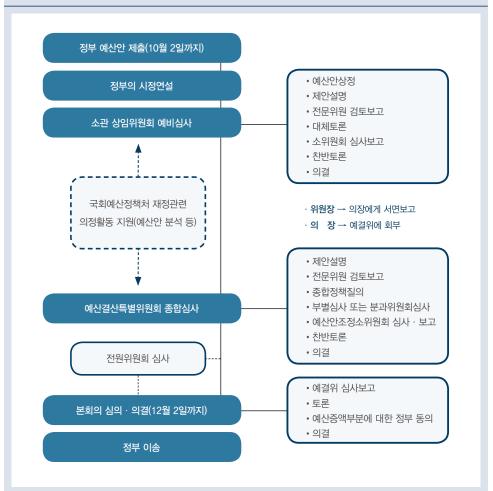
🛂 국회 예산심의권의 제약

「헌법」제57조는 국회의 예산안 수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적극적 수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예산증액의 폐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 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예산안에 대한 다 른나라 의회의 수정권한을 살펴보면, 미국과 프랑스는 의회에서 자유롭게 증액 및 삭감을 할 수 있고, 일본은 수입증액이나 지출삭감만이 가능하며, 영국은 삭감만 가능하다.



준예산제도는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일부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제54조제3항은 '헌법 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 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임시예산제도를 모델로 하여 1960년 3차 개헌시 도입하였으나, 현 재까지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여 준예산이 집행된 사례는 없다.

🚅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



🚅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관계

국회의 예결산심사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예결위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확정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인 예결산심사의 주체는 예결위가 되고 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 결위의 심사에 앞선 예비적인 심사의 성격을 가지며 예결위를 구속하지는 못한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국회법」은 예결위로 하여금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금액을 증가시킬 때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부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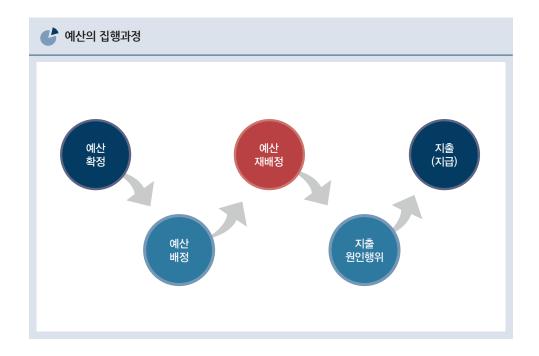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가 특정 예산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의지를 표명하는 별도의 수 단으로 부대의견이 활용되고 있다.

부대의견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대 한 구속력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대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수정안에 포함(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대의견 의 대 정부 구속력을 부인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제 54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부대의견의 내용이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조건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효력에 준하는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조건 등에 관한 국회의 재정의지를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할 경우 부대의견이 아닌 예산총칙에 규정하거나 더 나아가 부대의견의 근거ㆍ효력 등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와 더불어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이다. 이는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예산 및 자금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국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약의 체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활동이다. 예산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산배정은 확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기관에게 허용하는 일종의 승인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배정된 예산은 다시 하급기관에 재배정된다. 예산의 배정은 국가의 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이나 경제안정화시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배정 시기를 조정하기도 한다. 배정된 예산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통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그 정한 목적과 용도에따라 소정의 과정에 의하여 집행된다. 세출예산의 경우, 각 수요부서에서 예산집행요구를 하면 재무관이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관계서류를 지출관에게 송부하고, 지출관은 채권자 또는 국고금의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 예산배정

예산배정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② 기 획재정부장관이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③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 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개시 전의 예산배 정, 수시배정, 예산배정의 유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①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각 관 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⑤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⑥ 여비, ⑦ 경 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⑧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되 어 있다(「국가재정법 시행령」제16조제5항).

수시배정은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 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국가재정 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 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어떤 사업에 대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경제정책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배정의 유보 등을 할 수도 있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 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 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移用)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각 장 · 관 · 항(입법과목) 사이에 상호융통하는 것을 말한 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 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예산의 이용은 예산총칙에 규정되어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

전용(轉用)은 각 세항·목(행정과목) 사이에 상호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범 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 ·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 그에 따라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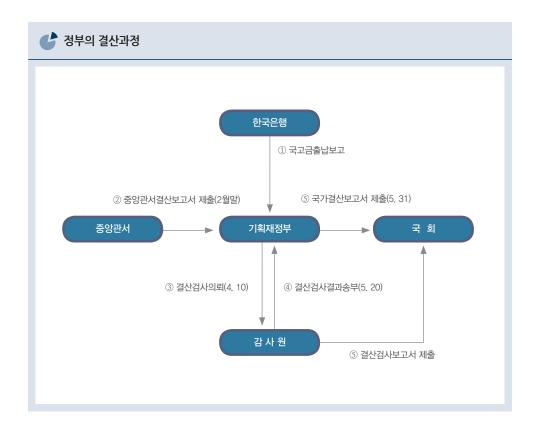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 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및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 서 가능하다.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 기금운용계 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 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금융성 기금의 경우 30% 이내.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의 경우 20% 이내인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의 이용 · 이체 · 전용과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분 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절 결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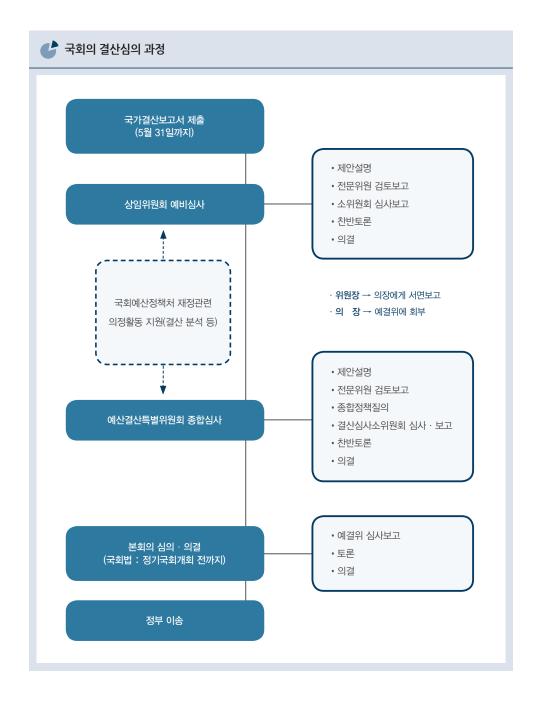
1. 정부의 결산과정

정부의 결산과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출납사무 완결, 각 부처의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무회의 심의, 감사원의 결산검사,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으로 이루어진다.



2.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으로 이루어진다.



🚅 결산의 의의와 심의방향

결산의 의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 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진다. 행정기관 등의 예산유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이다.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징을 가진다.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는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징을 지닌다. 국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산심의의 기능

국회의 결산심의·의결은 재정집행에 대한 승인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예산집행에 대한 사 후적 심의를 통하여 적법 ·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결산심의는 첫째, 위법 · 부당 한 지출여부 및 국회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한 재정통제기능과, 둘 째, 재정운용결과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에 반영하는 환류기능(feedback)을 가지고 있다.

성과중심의 결산심의로 전환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 서가 포함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국 가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국회의 결산심사 는 종전의 집행실적점검, 회계검사 위주에서 성과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성과중 심의 심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결산의 후속조치

결산은 사후적인 것이므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84조제2항 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 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은 국회가 그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결산 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매년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고 있다.

[결산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현황]

(단위: 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시정요구	549	760	669	756	1,039	1,107
감사요구	5	4	6	6	5	5

「국회법」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재정 관련 기관과 그 역할

「헌법」제54조는 예산안의 편성권을 정부에,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각각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예 산안 편성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여 수행 한다.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하며, 국회예 산정책처는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회심의와 재정관련 의정활 동을 지원하고 있다. 결산도 예산안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다만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앞서 감사원의 검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1. 행정부: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 기금의 편성 · 집행 ·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예산 안 편성 및 결산을 총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 및 중앙관서결 산보고서에 따라 예산안 및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정된 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집행지침을 통하여 조정 ·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산 전용 · 이용에 대하여 승인 또는 위임 과정을 통하여 통제한다. 그 밖에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예비비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관서의 소관 별로 구분 편성되며,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예산을 각각 집행하게 된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그 소관 수입의 징수·수납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여기서 중앙관서란「헌법」 또는「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등)을 뜻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예산요구서,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예산배정요구서, 결산과정에서는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하여 소관 예결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독립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감사원은 「헌법」 제99조 및 「감사원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확인하는데, 이는 결산과정의 필수과정이다. 감사원은 수입과 지출, 재산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하는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결산을 확인한다. 이를 통하여 결산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점검하게 된다. 감사원은 검사결과에 따라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문책 요구, 시정·개선요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결산 관련 감사요구를 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국회: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본회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및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선 예비적인 심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 못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야 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예산안과 결산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된다.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이다. 예산안의 경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 ·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예산안은 예산으로 확정되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결산도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 ·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 ·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의장 소속하의 기관이다. 행정부와 독립된 시각에서 독자적 · 중립적으로 조사 · 연구 및 분석함으로써 국회가 재정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안 · 결산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 전망,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 평가와 중 · 장기재정소요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재정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1-21] 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과 정	내용	제출시한	근거규정
중기사업 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매년 1월 31일	「국가재정법」§ 28
예산안편성 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매년 4월 30일	「국가재정법」§ 29 ①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매년 6월 30일	「국가재정법」§ 31 ①
정부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_	「국가재정법」§ 32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헌법」§ 54 ② 「국가재정법」§ 33
예산안의 본회의 보고	결산과 달리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음	-	「국회법」 § 84 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 의장은 예산안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	의장이 심사 기한을 정할 수 있음	「국회법」§ 84 ①, ②, ⑥
예결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함 ※예결위 심사절차: 제안설명(기획재정부장관) → 전문위원 검토 보고 →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 소위원회심사 → 토론 및 표결 → 심사보고	_	「국회법」 § 84 ②, ③, ⑤
본회의 심의 · 확정	본회의 부의 →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 토론 → 표결·확정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헌법」§ 54 ②

[표 1-22] 세입세출결산 과정

과 정	내용	제출시한	근거규정
출납정리 기한	수입 · 지출의 출납사무의 완결 → 결산작성의 전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그 밖의 공무원의 참여하에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함 → 출납정리기한이 지나면 먼저 각급 기관이 소관정부를 정리 · 마감한 다음 그 실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후적으로 정부차원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함으로써 사실상 출납사무가 완결되고 폐쇄됨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2월 10일	「국고금관리법」 § 4의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 94③
중앙관서결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국가재정법」§ 58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의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4월 10일	「국가재정법」§ 59
감사원 결산 검사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5월 20일	「헌법」§ 99 「국가재정법」§ 60
국가결산 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해당 회계연도 의 다음연도 5월 31일	「국가재정법」 § 6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정부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	의장이 심사 기한을 정할 수 있음	「국회법」 § 84 ①, ②, ⑥
예결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결산을 종합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함	_	「국회법」 § 84 ②, ③
본회의 심의 · 의결	결산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됨.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함	-	「국회법」§ 84 ②, ③

제1절 국가재정운용계획

1. 개념 및 주요 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정책방향과 재원 배분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이란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 상의 거시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세입, 세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국가채무 등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 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정책방향과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되며, 매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연동·보완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도입됨으로써 각 부처를 비롯한 정부의 단년도 예산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시계에서 편성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이 「국가재정법」(제7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재정규모 증가율 및 그 근거' ⁴,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첨부서류로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⁴⁾ 의무지출, 재량지출, 재정수입(세입 · 세외수입 · 기급수입 등)의 증기율 및 그 근거

[표 1-23] 국가재정운용계획 개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거시경제 전망	2011년 이후 5% 내외 성장	2012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 (4% 대 중반)의 성장세 유지
중기 재정수입 전망	 연평균 7.7% 증가(국세수입 9.1%) 2014년 조세부담률 19.8%, 국민부담률 26.1% 	 연평균 7.2% 증가(국세수입 8.7%) 2014년 조세부담률 19.7%, 국민부담률 25.7%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 재정지출 증가율 연평균 4.8% 30%대 초반 수준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재정지출 증가율 연평균 4.8% 2014년 이후 20%대 후반 수준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재원배분의 중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추진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성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 중산층 생활 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2. 제도 변화와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

1982년 제5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되었지만, 계획이 비정기적으로 작성되었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 단지 예산당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재정당국은 이후 2004년부터 중기적 시계에서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은 2006.10. 4.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었으며, 2010년 동법 개정으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근거,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가 추가됐다. 또한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그리고 '국가채무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이 신설됐다. 아울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안을 제출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 안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의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이 신설됐다.

2012년부터 국가재 정운용계획 제출시 의무지출과 재량지 출 구분

🚅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제2차 개정(2010. 5. 17)의 주요 내용

- 1. 중기재정전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규모 증가율 및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2.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도록 함
- 3. 의무지춤과 재량지춤 개념을 도입하고 재량지춤의 분야별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을 제출하도록 함
- 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및 5회계년도 이상의 국가채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 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도록 의무화 함

3 개선과제

지금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모두 8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4년에 「2004~2008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여덟 번째로 수립ㆍ제 출⁵⁾되었지만, 운용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 · 공개되고 예산총액배분 지율편성제도와 성과관리제도 등의 재정운 용제도들이 시행되면서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 보완되는데 미흡하였다. 즉. 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 성과평가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환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둘째,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예산안과는 달리 국회의 심의 를 받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계획의 달성여부에 대한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는 동 계 획의 수립과 운용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는 예산안에 앞서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지출한도를 결정할 시기에 동 계획을 국 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 확정 이전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중 하나로 5년 이상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5년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

⁵⁾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중앙관서 수립 지침 통보→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렵→자료 제출 요청 및 협의→중앙관서의 장과 협의→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제출 등의 단계를 밟아 진행

보하기 위해서는 30년 가량의 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경우 장기적인 재정영향을 파악하고 저출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 재정관리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상의 문제점 중 매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 치를 비교하면 2010년을 제외하고는 전망치가 실적치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재정건전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입전망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절 예산의 총액배분·자율편성

1. 개념 및 법적 근거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부처별 지출한도가 설정되면, 이에 입각하여 각 부처가 예산을 지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부처별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2005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도입되었다.

총액배분 · 자율편성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제29조 제2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 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부처요구 · 중앙편성 예산제도와 총액배분 · 자율편성 예산 제도의 비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이전에는 부처요구·중앙편성(bottom—up)제도였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재원배분 방식인데, 기존의 부처요구·중앙편성 제도가 '사업별→분야별→전체'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에 반해,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는 '전체→분야별→사업별'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이 외에 재정운용 방식이나 예산편성 방식,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총액배분·자율편성 (top-down) 예산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 거하여 부처별 지출한 도가 설정되면, 이에 입 각하여 각 부처가 예산 을 자율적으로 편성하 는 제도

[표 1-24] 부처요구 중앙편성 예산제도와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비교

	부처요구 · 중앙편성 예산제도	총액배분 · 자율편성 예산제도
재원배분 순서	지출총액 ↑ 분야별 · 부처별 예산규모 ↑ 사업별 예산규모	지출총액 ↓ 분야별 · 부처별 예산규모 ↓ 사업별 예산규모
편성기간	4개월(6~9월)	9개월(1~9월)
 개별사업위주의 분석 단년도 재정운영 주요특징 예산편성을 통하여 재정지출 통제 기획재정부 중심의 편성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재원분석 중기적 재정운영 각부처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율성 확대 각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합동편성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

3. 문제점과 개선방향

총액배분 · 자율편성 제도는 부처의 예산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사업의 전문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 한도를 미리 정해주고 각 부처는 그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예산편성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7년간(2005-2011년) 동 제도의 실제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예산안편성시 의무적 지출 소요를 전략적으로 과소요구하고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산을 첫해에는 소규모로 편성함으로써 신규사업의 진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의무지출 소요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지 않고 재량지출 위주의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과소 편성한 의무지출사업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총량적인 예산증액을 시도하는 예산 자율편성의 왜곡된 형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예산편성 현장에서는 여전히부처요구 · 중앙편성의 방식을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어, 자율편성을 통한 각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도 본래의 목적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절히 구현되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표로 도입된 총액배분·지율편성 제도가 제도의 취지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기재정운영의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회가 지출 한도를 보고받고 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⁶⁾ 기획재정부는 「2012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2011. 7)에서 "지출한도를 자의적으로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경비를 줄여 요구한 경우에는 추후 편성과정에서 기본경비 삭감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제외하고 보고하고 있다.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의 설정은 사실상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이므로 재정총량 및 부처별·사업별 총량 등의 지출한도 설정과정에 국회가 참여하는 것도 제도의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절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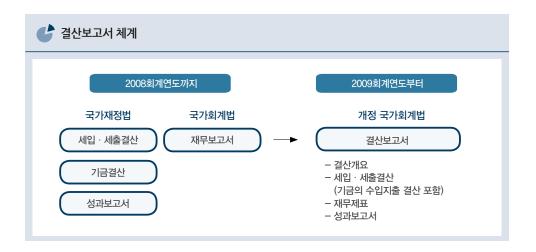
종전 우리나라의 국가회계는 현금주의 · 단식부기 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기금과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설치목적을 감안하여 발생주의 · 복식부기 방식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나 현금주의 · 단식부기 방식은 예산의 집행실적이 제시되어 예산 통제가 용이한 반면, 자산이나 부채 등이 연계성 없이 각각 기록되므로 국가재정에 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IMF 외환위 기를 계기로 국가회계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7년 「국가회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중앙관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종전 현금주의방식에 따른 세입 · 세출결산서 외에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결산보고서에 세입 · 세출결산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현금주의 회계방식에서는 제공하기 곤란했던 재정상태 (자산 · 부채)의 변동내역, 재정사업의 운영원가 등과 같은 유용한 회계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산보고서 체계 정비

종전에는 결산관련 서류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성과보고서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보고서로 분산되어 있었다. 2008년에 두 법을 개정하여 「국가회계법」의 결산보고서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2009 회계연도부터 결산보고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작성되고,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방식에 의한 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재무제표 국회 제출



재무제표의 구성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한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사업별 원가 등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 증감내역을 나타낸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국가회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무제표에는 부속서류로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및 물품관리운용보고서가 첨부된다. 한편,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자산・부채 평가 등을 위한 세부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령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한계와 과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시 재정사업에 대하여 사업원가 등 회계정보까지 추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재정사업의 성과를 집행실적 위주로 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회계제도는 발생주의방식을 결산에는 적용하지만 예산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재무제표의 선수금, 예수금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추정예산을 산출하기업지 않고, 오히려 예산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재정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생주의에따른 재무정보를 예산이나 성과평가에 환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결산에서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프로그램 단위이지만, 예산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되고, 성과평가는 단위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회계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정보가 성과관리나 예산심의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예ㆍ결산심사 과정에서는 확대되는 재정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이용자의 전문성확보가 요구된다.

제4절 조세지출예산

1. 의의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의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지출은 영구적인 세수감소를 의미하는 '직접감면'과 일정 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나뉜다. '직접감면'에는 비과세(특정소득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 소득공제(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저율과세(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세액공제(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등이 있다. '간접감면'에는 과세이연(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준비금(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금을 사내 적립하는 경우 과세를 연기) 등이 있다.

「국가재정법」제27조⁷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 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조세특례를 통한 재정지원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작성·공 표함으로써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조세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가재정법」 제88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0.5%)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체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능별 · 세목별 규모

조세지출 예산을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11년 예산지출(직접지출) 과 조세지출 규모는 각각 309.1조원과 30.6조원으로 조세지출을 통한 재정지원은 전체지출 339.7조원의 9.0%에 이른다. 2012년 예산지출과 조세지출 규모는 각각 325.4조원과 32.0조원으로 조세지출 비중은 9.0%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양 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37.6%), 보건(32.7%), 농림수산(22.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지출

조세특례를 통한 재정 지원

국세감면 제한

직전 3년 평균 국세감 세율 +0.5% 이하

조세지출 규모

2011년 30.6조원 2012년 32.0조원

^{7) 「}국가재정법」제27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課稅移延)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 1-25]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조세지출 (A)			예산 (B)			[A/(A+B)]	중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	일반공공행정	2.0	1.7	1.8	48.7	52.4	56.6	3.9	3.1	3.0
2	공공질서 및 안전	_	_	_	12.9	13.7	14.5	_	_	_
3	외교 통일	0.0	0.0	0.0	3,3	3.7	3.9	0.0	0.0	0.0
4	국방	0.3	0.2	0.3	29.0	30.9	32.2	0.9	8.0	0.9
5	교육	1.3	1.4	1.4	38,3	41.2	45.1	3.4	3.3	3.0
6	문화 및 관광	0.0	0.0	0.0	3.9	4.2	4.4	0.1	0.1	0.2
7	환경	0.7	0.7	0.7	5.4	5.8	6.1	11.7	10.7	10.5
8	사회복지	6.6	7.1	8.2	73.9	78,9	84.1	8.2	8.3	8.9
9	보건	3.3	3.6	3.8	7.3	7.5	7.8	31.3	32.5	32.7
10	농림수산	5.3	4.4	5.1	17.3	17.6	18.1	23,3	19.9	22.1
11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8.4	10.2	9.2	15.1	15.2	15.2	35.9	40.1	37.6
12	교통 및 물류	1.0	0.6	0.6	17.5	16.8	17.1	5.2	3.2	3.2
13	통신	-	-	-	6.2	6.6	7.0	_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	0.8	0.9	7.6	7.6	5.5	12.7	9.3	14.3
15	과학기술	0.0	0.0	0.0	4.3	4.7	5.4	0.5	0.5	0.5
16	예비비	-	-	-	2.1	2.4	2.8	-	-	-
	합계	30.0	30.6	32.0	292.8	309.1	326.1	9.3	9.0	8.9

주: 2012년은 예산안 기준임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대한민국정부

2012년 조세지출 세목별 규모

직접세 25.0조원 간접세 6.7조원 조세지출 예산을 세목(稅目)별로 분류하면, 2012년의 경우 직접세 25.0조원, 간접세 6.7조원으로 직접세의 비중이 78.3%이다.

[표 1-26]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안
직접세	22.4	24.0	25.0
(비중)	(74.5)	(78.3)	(78.3)
소득세	15.3	15.1	16.4
법인세	7.0	8.9	8.6
상속 · 증여세	0.0	0.0	0.0
간접세	7.4	6.4	6.7
(비중)	(24.6)	(20.9)	(21.0)
부가가치세	4.6	4.4	4.8
교통세	1.1	0.9	1.0
개별소비세	1.2	0.7	0.5
주세	0.0	0.0	0.0
인지세	0.0	0.0	0.0
증권거래세	0.0	0.0	0.0
전화세	_	_	_
교육세	0.4	0.3	0.3
관세	0.3	0.2	0.2
(비중)	(0.9)	(0.8)	(0.7)
합계	30.0	30.6	32.0

자료:「조세지출예산서」, 대한민국정부

3. 제도개선 과제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조세지출 총규모에서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사회복지(기부 금 공제, 근로장려세제 등), 농림수산, 보건 등 4개 분야가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지출을 통해 외부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R&D, 환경 등의 분야에 조세지출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접세의 경우 과세소득이 낮아 면제점 이하인 납세자들에게는 조세지원이 어렵고, 간접세의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여러 집단에 귀속되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조세감 면에 따른 혜택이 정책대상 집단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비과세·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지출예산서의 추계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에 추계근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3년(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전망액) 단위의 추계기간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제5절 성인지 예산

1. 개념과 법적근거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예산의 특정 범주가 아닌 '자원배분과정' 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경과를 살펴보면, 2002년 11월 국회 여성위원회가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06년 말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성인지 예산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0년 예산안부터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결산서의 국회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국가재정법」제16조제5호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성인지 예산서 · 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 · 기금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일종의 성별영향평가서로서, "예산(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제26조제1항 및 제68조의2제1항)이며 성인지 결산서 · 기금결산 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실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제57조 및 제73조의2)이다.

^{8)「}지방재정법」이 개정(2011. 3. 8)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3회계연도 예산서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시행 경과 및 재원 규모

성인지 예산서는 2009년 7조 3,144억원 규모로 제출된 「2010년 성인지 예산서」가 처음이고, 2010년에 개정(2010. 5,17)된 「국가재정법」제68조의2⁹⁾의 취지를 반영한 「2011년 성인지 예산서」 ¹⁰⁾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34개 중앙관서의 254개 세부사업과 기금을 포함하는 10조 7,042억원 규모의「2012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표 1-27]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제출 현황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비고
2009	「2010년 성인지 예산서」		
2010	「2011년 성인지 예산서」		기금포함
2011	「2012년 성인지 예산서」	「2010년 성인지 결산서」	
2012	「2013년 성인지 예산서」	「2011년 성인지 결산서」	제출예정

주: 1, 2011회계연도부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 기금결산서가 제출됨

「2012년 성인지 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8개 사업(10조 2,725억원), 기금 46개 사업(3조 6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지 예산 작성기관을 2011년과 비교하면 대법원·국가보훈처가 새롭게 참여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공정거래위원회가 제외되었다.

^{2,} 지방정부는 2013회계연도 예산서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제출함

⁹⁾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10) 34}개 중앙관서의 245개 세부사업. 10조 1,749억원

[표 1-28] 2012년 성인지 예산

(단위: 억원, %)

			2012 예산	증감	
		(A)	(B)	(B-A)	(B-A)/A
	제출기관	34	34	_	_
회계	 사업수	202	208	6	3.0
최계	예산액	84,311	102,725	18.414	21.8
717	사업수	43	46	3	7.0
기금	예산액	17,584	34,066	16,482	93.7
	사업수	245	254	9	3.7
합계	예산액	101,895	136,791	34,896	34.2
	(총지출대비)	(3.3)	(4.2)		

자료: 정부제출 성인지 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문제점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목표 분야,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 분석,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12년 성인지 예산서의 경우 각 항목이 부적절하게 작성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사업의 성평등 목표 분야 – 성별수혜분석 – 성과목표가 예산사업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목별로 각각의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 성인지 예산서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성평등 목표 분야의 경우, 성평등 목표 분야를 다양화함으로써 부처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다양한 성평등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과제로 한정함으로써 성평등 목표 분야가 부적합하게 제시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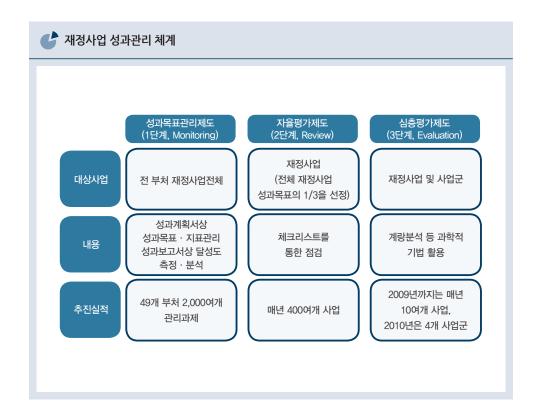
양성평등 또는 여성을 위한 사업과 같이 성별분석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새로운 방법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미흡한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제6절 성과관리

1. 의의

성과관리란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사업목표 설정과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설계 초기부터 달성할 목표와 산출결과를 계획하고, 사업집행 이후 획득한 성과정보를 조직·인사·예산 등의 의사결 정에 반영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성과관리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규정하고 있는「국가 재정법」제1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조직과 인사분야에 대한 성과관리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는 3단계에 걸쳐 현재의 3가지 유형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3년 4대 재정개혁의 하나로 도입된 「성과목표관리(Performance Monitoring)」, 2005년 성과목표관리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된「재정사업자율평가(Program Review)」와 2006년 시행된 「재정사업심층평가(Program Evaluation)」가 그것이다.



2. 유형 및 현황

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목표관리제도(Performance Monitoring)는 정부가 매년 기관의 임무와 비전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11 이를 결산 시점에서는 계획서에 제시된 목표에 따른 성과결과를 성과보고서로 제출하여 평가받는 것이다.

2012년 성과계획서의 작성대상 기관은 49개 중앙관서이며, 191개 전략목표와 479개 성과목표, 관리 과제 2,155개로 구별되며, 운영절차는 [표 1-29]와 같다.

[표 1-29]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운영절차

		합계
	5월 중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통보
	\sim 6.30	성과계획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전년도	7. 1 ∼ 8.31	기획재정부의 사전검토 및 보완요청
	회계연도 90일 전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sim 12.31	기획재정부의 보완 요구사항, 국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계획서 수정
당해연도	1, 1 ~ 12, 31	예산 집행
	1월 중	성과보고서 직상지침 통보
	\sim 2.29	성과보고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다음연도	\sim 4. 10	감사원 제출
	\sim 5. 20	감사원 검사 및 기획재정부에 송부
	~ 5. 31	감사원 의견반영 및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제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2011. 7)



🚅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주의 예산체계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분야(function)-부문(sub-function)-프로그램(program)-단위사업 (activity)-세부사업(task)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란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목표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을 분류할 것을 말하며, 2012년 기준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¹¹⁾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제9항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게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총 16개 분야가 설정되어 있다. 분야를 세분화한 하위 수준의 기능이 설정된 '부문'은 총 69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프로그램은 총 781개, 단위사업은 3,237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으로서 부처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최소단위를 의미하는 세부사업은 총 8.847개에 이르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체계: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주의 예산체계는 임무(mission)-비전(vision)-전략목표(strategic goals)-성과목표 (performance goals)-관리과제(task)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각각의 성과지표가 있다. 임무는 각 부처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의미하며, 부처 고유의 사명과 역할을 의미한다. 비전은 각 부처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의 전략방향설정 기능을 수행한다. 전략목표는 해당 부처가 최대 중점을 두고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의미하며 2012년 기준으로 총 191개의 전략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향으로서 연간단위의 단기적이고 구체화된 계획이다. 성과목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프로그램과 대응되는 개념이며 2012년 총 479개가 설정되어 있다. 관리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정책 또는 사업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단위사업에 대응된다. 2012년 기준으로 총 2,155개의 관리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2012년 프로그램 예산 및 성과주의 예산체계]

(단위: 개)

					(271.71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프로그램 예산체계	16	69	781	3,237	8,847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주의 예산체계		191	479 (1,453)	2,155 (5,084)	

주: 1)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분야는 16개 분야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2개 분야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Program Review)란 각 부처가 전체 재정사업을 매년 3분의 1씩(3년 주기)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예산당국이 이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미흡한 점은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재정법」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행하며, 기획재정부의 평가지침 「재정사업자율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가 없거나, 유사·중복 사업으로 평가받을 경우 재검토하여 예산편성에 환류한다.

평가대상사업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Program Evaluation)는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계량분석기법 등을 동원하여 심층적으로 분석 · 평가하는 제도이다.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성과자율평가제도가 부처 스스로 작성하고 평가하는 것인 반면, 심층평가제도는 문제시 되는 사업을 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2005년 시범사업 이후 2006년부터 본격 도입되었고, 운영절차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위원장인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계획을 확정하면 '심층평가자문 단'을 중심으로 종합평가분석을 수행한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과목표관리제도: 모든 예산사업으로 관리과제 확대

2012년 제출된 성과계획서 분석결과,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관리과제 비율이 총지출 대비 58%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예산심의에 필요한 성과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처가 임의적으로 비재정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에도 재정투입이 이뤄지고 있어,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예산으로 관리과제를 확대하여, 성과에 입각한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성과목표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0년 성과보고서」의 경우, 평가대상 47개 기관의 관리과제 중 64.1%만이 성과보고서에 포함 (주요 정책과제가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35.9%의 재정지출이 성과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처의 기본임무를 반영하는 중요사업과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예산과의 연계 미흡

정부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율평가 운영평가 결과 '미흡'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10% 예산삭감이 이뤄져야 함에도 오히려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미흡'이하 사업의 예산감액 원칙이 지켜져서 예산과 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성과계획서 등과의 연계 강화 필요

재정사업심층평가는 문제시 되는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심층분석 및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므로, 부처가 작성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상의 성과지표들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평가지표와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상 성과달성도 간에 괴리되어 있다. 따라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상 부처들이 계획하고 측정한 성과정보가 심층평가 지표와 연계되도록 설계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에 따라 지출효율화 조치가 취해지고, 향후 성과목표관리제도와도 연계되

어야 하지만, 2010년 심층평가사업 10개 중 4개 사업은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외부기관이 주도한 성과평과 결과를 해당 부처에 지출효율회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심층평가결과 대상 전 사업이 예산과정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7절 지방재정조정

1.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일정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지자체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정은 지방의 일반재정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와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계발계정의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지방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에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률(지방교부세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일반재원이다.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특정사업 지원을 위하여 용도가 정해져 있는 조건부 재원이다.

지방이전재원의 재원

지방교부세: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27%

[표 1-30]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예산 현황

(단위: 조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광역 ·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근거법률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 법률 등	국기균형발전특별법
목적	지자체재원보장 재정불균형완화	교육의 균형발전	특정사업 지원	재정기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재원	− 법정교부금: 내국세의 19.24% − 부동산교부세: 종부세 총액	— 법정교부금: 내국세의 20,27% — 교육세 총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주세 100%, 과밀부담금, 개발지역훼손부담금, 농특세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재원성격	일반재원	일반재원	목적사업에 한정	포괄보조
2011예산	30.2	35.3	32.3	(6.2)
2012예산	33.0	38.4	34.2	(5.9)

주: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국고보조금이 포함됨

자료: 각 법령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되는 2012년 지방이전재원 예산은 총 105.6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7.8조원 증가하였다(증가율은 8.0%). 2012년 지방이전재원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총지출 (325.4조원)의 증가율(5.3%)을 상회하며, 총지출 대비 비중도 32.5%로서 2011년 수준인 31.6% 보다 높다.

[표 1-31] 2012년 지방이전재원 예산 현황

(단위: 조원, %)

	2010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예간	(A)	(B)	(B-A)	(B-A)/A
지방이전재원(a)	91.3	97.8	105.6	7.8	8.0
지방교부세	27.4	30.2	33.0	2.8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3	35.3	38.4	3.1	8.8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31.6	32,3	34.2	1.9	5.9
총지출(b)	292,8	309.1	325.4	16.4	5.3
비중(a/b)	31.2	31.6	32.5		

주: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더한 금액인. 광특회계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에 포함 되어 있음

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의 2012년 예산은 33.0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2.8조원 증가하였고(증가율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12년 예산은 38.4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3.1조원 증가(증가율 8.8%)하였다.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2012년 예산은 34.2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1.9조원 증가(증가율은 5.3%)하였다.

총지출에서 지방이전재원을 제외한 지방이전재원 외 총지출은 2011년 211.3조원에서 2012년 219.8조원으로 8.5조원 증가(증가율 4.0%)하였지만, 지방이전재원은 2011년 97.8조원에서 2012년 105.6조원으로 7.8조원 증가(증가율 8.0%)하였다. 특히 2012년 지방이전재원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친 교부금이 71.5조원으로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지방이전재원의 연도별 추이와 특징

총지출은 2005년 209.6조원에서 2012년 325.4조원으로 동 기간동안 연평균 6.5% 증가하였지만, 지방이전재원은 2005년 60.6조원에서 2012년 105.6조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하였다.

지방이전재원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28.9%에서 2012년 32.5%로 증가하였다.

지방이전재원의 총지출 대비 비중

2005년 28.9% 2012년 32.5%

[표 1-32]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예산 현황: 2005~2012년

(단위: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2000	2000	2007	2000	2000	2010	2011	2012	2005 – 12	2008 – 12
지방이전	60.6	67.0	73.0	84.8	88.9	91.3	97.8	105.6	8.3	5.6
재원(A)		(10.6)	(9.0)	(16.2)	(4.8)	(2.7)	(7.1)	(7.8)		
총지출(B)	209.6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325.4	6.5	
중시돌(D)		(6.9)	(5.8)	(10.8)	(14.8)	(-3.0)	(5.6)	(5.3)		5.5
비중(A/B)	28.9	29.9	30.8	32,3	29.5	31.2	31.6	32.5		

주: 1, 2005~2011년까지는 각 연도 추경 최종예산,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3. 지방이전재원별 현황 및 특징

가.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일반재원이자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구체적인 세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만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기능

자치단체 재원보장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

^{2, 2009}년은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어 정부 총지출 대비 지방이전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33] 2012년 지방교부세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10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에건	(A)	(B)	(B–A)	(B-A)/A	
지방교부세	273,564	301,904	330,295	28,391	9.4	
법정교부금	263,459	291,223	319,664	28,441	9.8	
부동산교부세	10,105	10,681	10,631	-50	-0.5	

주: 지방교부세의 정부예산 세부사업명은 지방교부금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2년 세입·세출 예산개요」, 2012, 2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금과 부동산 교부세로 구성되는데, 법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내국세의 17.59%, 재정부족액보전), 특별교부세(내국세의 0.71%),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의 2012년 예산은 29조 1,884억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2조 5,629억원 증가(9.6% 증)하였고, 특별교부세의 2012년 예산이 1조 2,162억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1,422억원 증가(13.2% 증)하였으며, 분권교부세의 2012년 예산이 1조 5,618억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1,390억원 증가(9.8% 증)하였다.

나.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혹은 법인과 개인)에게 보조하는 것으로,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세부사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보조금과 분야별로 포괄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포괄보조금이 있다. 포괄보조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의 국고보조금에서 운영 중에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20.7조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2009년에는 29.4조원, 2012년 34.2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는 다르게 국가재정 여건과 국고보조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지원규모에 변화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치단체 국고 보조금 규모

2006년 20.7조원 2012년 34.2조원

[표 1-34]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고보조금	207,084	224,101	265,717	294,059	316,392	323,289	341,965
증기율	_	8.2	18.6	10.7	7.6	2.2	5.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및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 되고, 그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 해당하는 내국세분과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분(교육세 총액)으로 조성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12년 예산은 전년대비 9.0% 증액된 38조 4,47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2년 38.4조원

[표 1-35]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합 계	352,831	384,473	31,642	9.0	
내국세분	306,913	336,777	29,864	9.7	
교육세분	46,018	47,696	1,678	3.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우리나라의 재정을 크게 중앙재정, 지방일반재정,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누어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조세자원이 재원의 이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배분되고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원의 이전을 감안한 최종적인 재정사용액은 201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137.4 조원, 일반자치단체 136.5조원, 교육자치단체 47.4조원이다. 또한 중앙정부, 일반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간 재정사용액의 비율은 「42.8:42.5:14.7」이며, 교육자치단체를 지방으로 포함시켰을 경우, 국가 : 지방의 재정사용액 비율은 「42.8:57.2」가 된다.

중앙정부의 총재정사용액 비율은 2006년 46.1%에서 2008년 40.3%, 2011년 42.8%이며, 지방정부 (교육자치단체 포함)의 총재정사용액 비율은 2006년 53.9%, 2008년 59.7%, 2011년 57.2%이다.

재정사용액 비율 (2011년)

중앙정부: 일반자치 단체: 교육자치단체 = 42.8: 42.5: 14.7

[표 1-36] 중앙 - 지방정부 간 총재정사용액 배분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앙정부	1,111,272	1,048,450	1,105,467	1,327,124	1,362,357	1,373,856				
(비중)	(46.1)	(42.3)	(40.3)	(42.9)	(43.7)	(42,8)				
자치단체	976,066	1,080,497	1,235,229	1,339,061	1,335,584	1,364,800				
(비중)	(40.5)	(43.6)	(45.1)	(43.3)	(42.8)	(42,5)				
지방교육	324,699	350,831	399,919	427,326	421,205	473,857				
(비중)	(13.4)	(14,1)	(14,6)	(13,8)	(13.5)	(14,7)				

주: 각 연도 당초예산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제8절 법안비용추계

1. 법안비용추계의 의의

법안비용추계¹²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법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추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법안이 수반하는 비용을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즉, 법안이 의결될 경우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가용성 및 조달방법, 재정부담 주체에 미치는 영향 등 재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¹²⁾ 법안비용추계의 근거법인 국회법 제79조의2에 의하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발의, 위원회제안, 정부제출 등 모든 의안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연혁

국회는 1973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에 대하여 예산명세서를 첨 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예산명세서 첨부 실적은 제13대 국회에서 제16대 국회까지 총 의원발의 법안 수 대비 3.8%(121건/3.171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재정소요 추계 근거는 1999년에 마련되었으나 실적은 많지 않았다.

비용추계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2004년 개원한 제17대국회부터이다. 2005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하 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6월부터 비용추계업무를 시작하였고, 정부의 경우에도 2006년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비용추계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구체 화하여 정부입법안에 적용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 7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요국의 법안비용 추계 사례

미국의 경우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지출관련 법안의 비용추 계를 전담하고 있다. CBO가 작성하는 비용추계서에는 향후 10년간 혹은 그 이후까지 당해 법안으로 인해 세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추정치와 특정 제안에 대한 부가적 해설 및 비 용추계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계 결과는 법안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법안심사시 재정소요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CBO의 비용추계는 입법의 주요단계마다 예산위원회에 제출되어 해당 법안이 '세입세출 균형원칙(PAYGO)', '재량지출한도(Spending Cap)' 등 재정규율을 준수하는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BO의 공식적인 추계는 하원이나 상원의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심사보고 된 법안과 직접지출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의 원들의 개별적 요청에 의해 입법과정 전 단계의 법안유형에 대해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있다.

EU는 법률안에 대한 재정영향평가(Ex-Ante Evaluation)를 실시함에 있어 비용추계를 활 용하고 있다. 재정영향평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제도이다.

🚅 세법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세법개정과 관련한 세수변화는 국회예산정책처 내의 세제분석팀과 세 수추계팀에서 추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제안하는 세제개편에 대한 세수추계는 기획재정부 에서 담당하고 있다. 추계는 새로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전망치와 현행 세법 하에서의 세 수실적 사이의 차이를 산출하여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추계를 의회의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와 정부의 재무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JCT에서도 현행 세법

체계 하에서 예상되는 CBO의 기준선 전망(baseline) 수치와 새로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3. 법안비용추계 실적

전망치를 비교하여 세법개정 효과를 산출한다.

가. 제17대국회 이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제17대국회(2004. 5. 30~2008. 5. 29) 중인 2005년 7월 「국회법」이 개정되어 재정을 수반하는 의 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었고, 2006년 10월 유사한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 다. 이때부터 법안비용추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17대국회의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비 율은 21.7%(1,628건/7,489건)이고 17대국회 임기 말인 2008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제18대국회(2008, 5, 30~)에서 2011년 말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중 비용추계가 첨부된 비율은 32.1%(4.381건/13.668건)로 제17대국회보다 높은 첨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37] 제17대국회 이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단위: 건,%)

<u> </u>		의원 발의	의원 발의 -		정부 제출		우	원회 제 <u>(</u>	안	합계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2004 (5.30~)	807	149	18.5	201	0	0.0	50	0	0.0	1,058	149	14.1
제	2005	1,817	331	18.2	242	23	9.5	174	3	1.7	2,233	357	16.0
17 대	2006	1,452	317	21.8	325	64	19.7	165	5	3.0	1,942	386	19.9
국	2007	1,476	513	34.8	319	149	46.7	192	6	3.1	1,987	669	33.7
회	2008 (~5,29)	176	57	32.4	15	7	46.7	78	3	3.8	269	67	24.9
	계	5,728	1,367	23.9	1,102	243	22.1	659	17	2.6	7,489	1,628	21.7
T.II	2008 (5.30~)	2,675	782	29,2	548	175	31.9	37	0	0.0	3,260	957	29.4
제 18	2009	3,009	1,099	36.5	399	123	30.8	272	9	3.3	3,680	1,231	33.5
대 국	2010	2,439	906	37.1	406	108	26.6	166	0	0.0	3,011	1,014	33.7
회	2011	2,893	1,067	36.9	330	112	33.9	494	0	0.0	3,717	1,179	31.7
	계	11,016	3,854	35.0	1,683	518	30.8	969	9	0.9	13,668	4,381	32,1

주: 제18대국회는 2011, 12, 31까지 집계한 결과임.

나.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실적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비용추계서의 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는 법안비용추계와 세수추계를 합쳐 62건을 국회의원에게 회신하였으나 그 후 회신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약 180건 내외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580건 정도를 기록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추계 회신건수를 보이고 있다.

매년 비용추계 580여건 회신

2009년 588건 2010년 564건 2011년 585건

[표 1-38]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실적
------------------	---------

(단위: 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법안비용추계	54	145	139	143	402	442	455	414
세수추계	8	23	39	78	177	146	109	171
계	62	168	178	221	579	588	564	585

제9절 민간투자사업

1. 개념 및 현황

민간투자사업 규모

사업수 565개 금액 80.5조원 민간투자시업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해 온 도로, 철도, 항만시설, 학교, 군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며, 동 법에 열거된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시설은 15개 분야, 48개 유형이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 완공된 사업은 BTL 209개, BTO 133개로 342개로 42,1조원 규모이고, 공사 중인 사업은 BTO 40개, BTL 141개로 181개, 23,9조원 규모이다.

[표 1-39] 민간투자사업 규모 현황(협약체결 기준, 2010. 12)

(단위: 개, 조원)

					(211 111 - 27
		합계	완공	공사중	준비중
ВТО	사업수	190	133	40	17
	금액	58.3	33.7	13.3	11.3
BTL	사업수	375	209	141	25
	금액	22,2	8.4	10.6	3.2
합 계	사업수	565	342	181	42
	금액	80.5	42,1	23.9	14.5

자료: 기획재정부, 「2010년 민간투자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2011, 12

민간투자사업은「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에 따라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 후 1999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근거법률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인프라펀드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¹³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MRG의 경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을 야기함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은 2006년 1월, 정부고시사업은 2009년 10월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2005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학교·군주거·보건의료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민간투자대상에 추가되고,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 – Transfer – Lease) 방식이 도입되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되었다.

¹³⁾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2. 유형

민간투자사업은 시행방식에 따라 크게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구분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이 지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 권을 국가·지자체 등에 이전(Transfer)하고,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시설을 운영(Operate)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지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 권을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방식으로 이전(Transfer)하고,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한 대가로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고 관리운영권에 근거하여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유사하나,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수익형(BTO) 임대형(BTL)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분석한 보고서(정부지급금 추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은 1조 2,06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할 정부지급금 규모는 3조 6,679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1조 2,065억원

[표 1-40] 기획재정부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규모(실시계획 승인 기준)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국고 부담	3,727	6,026	8,347	9,173	9,407	36,679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계획 승인 사업 외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과 지방비 부담 사업까지 합하여 추계한 결과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조 7,11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41] 국회예산정책처의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결과(실시협약 체결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국고 부담	3,889	6,721	9,263	10,243	10,523	40,640		
지방비 부담	9,437	10,666	11,509	12,298	12,567	56,476		
합계	13,326	17,387	20,772	22,541	23,090	97,116		

주: 기획재정부는 실시협약 승인을 기준으로 국고 부담 3조 6,679억원을 추계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시협약 체결을 기준으로 국고 부담 4조 640억원 으로 추계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2011. 10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과 국고부담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비 부담까지 추계에 포함시킨 결과 BTL 지급금 규모가 2배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지급금 중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지 않고 지방비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 현황을 국회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계 대상을 지방비 부담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0절 공공기관

1. 개요

의의

공공기관

정부의 투자 · 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 운영되는 기관 중 기획재 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 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지정의 목적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직접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유형에 따라 임원임명, 감독, 경영실적평가, 중장기 재무계획이나 결산서의 제출 여부 등에 있어 국회, 정부, 감사원 등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유형분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2012년 2월 현재 총 286개 기관이며, 공기업(28개), 준정부기관(82개), 기타 공공기관(176개)으로 나뉜다.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의 비중(85%)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 뉜다. 시장형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기관이며, 준시장형공기 업은 한국조폐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기관 이 있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등 65개 기관이 해당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176개 기관이 해당된다.

[표 1-42] 공공기관의 분류

		분류 기준	기관 예시	운영방향
공기업	시장형 (14개)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총수입 85% 이상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민간기업 수준 자율보장내부견제시스템 강화
(287)	준시장형 (14개)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총수입 50% 이상 85% 미만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자율 확대하되,일부 공공성 감안외부감독 강화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7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관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 기금운용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82711)	위탁집행형 (65개)	■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한국농어촌공사 교통안전공단	- 주무부처 정책과 연계성 확보
기타공공기관 (17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출연연구기관	– 성과관리, 업무 효율성 중시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공기업 28개, 준정기관 82개, 기타공공기관 176개 총 286개 기관

2012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전년 대비 1개 증가한 286개 기관

2012년 지정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새로이 지정하거 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고 있다.

2012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286개 기관이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11년 285개에 비하여 1개 기관이 증가된 것이다.

[표 1-43] 2012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09 2010	2010	2011	2012년 지정			
		2010		신규	해제	변경	계
공기업	24	22	27	_	_	+1	28(+1)
준정부기관	80	79	82	_	_	-1/+1	82
기타공공기관	193	185	176	+5	-3	-2	176
계	297	286	285	+5	-3	-1	286(+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1.31)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2012년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요구하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함으로써 2012년에 새로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5개 기관이며,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지정요 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3개 기관은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에 따라 기존의 2개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그 밖에 자체수입비율, 직원 정원 변동 등에 따라 2개 기관이 변경 지정되었다. 이외에도 법개정 등에 따라 8개 기관의 명 칭이 변경 지정되었다.

[2012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현황]

	공공기관명					
신규 (5)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제 (3)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변경 (2)	여수광양항만공사(준시장형 공기업)	(구) 컨테이너부두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진흥원(기타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통합 (1)	노사발전재단	(구) 노사발전재단, (구)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				
명칭변경 (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구) 수산자원사업단 (구)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구) (재)한국우편사업지원단 (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구) 부산항만보안(주) (구) 인천항만보안(주) (구)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은금융지주 등 3개의 공공기관은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관련법의 개정 및 폐지 없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다고 함. 공공기관의 지정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범위의 문제로 공공기관의 지정해제가 반드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폐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가 되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 국회, 주무부처,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은 받아야 함)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 1. 31)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2. 재무 현황

자산 현황

2010년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자산은 2006년의 455조 1,038 억원에서 2010년에는 753조 1,724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298조 686억원(65.5%)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13.4% 가량 증가한 것으로 준시장형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장형공기업에서 대부분 증가가 이루어졌다.

2010년 공공기관 자산

753조 1,724억원

ı	Ŧ	1-44	공공기	과 7	사사	추이

(단위: 억원)

	2006 (A)	2007	2008	2009	2010 (B)	증감액 (B-A)
공기업(28)	2,821,622	3,127,618	3,583,248	4,033,343	4,456,806	1,635,184
시장형(14)	1,428,805	1,511,421	1,696,332	1,818,752	1,967,852	539,047
준시장형(14)	1,392,817	1,616,196	1,886,917	2,214,591	2,488,954	1,096,137
준정부기관(82)	1,387,464	1,409,633	1,331,905	1,640,420	1,826,537	439,073
기금관리형(17)	867,579	840,937	738,961	955,990	1,041,965	174,386
위탁집행형(65)	519,884	568,696	592,944	684,430	784,572	264,688
기타공공기관(176)	341,952	422,156	563,700	1,061,539	1,248,381	906,429
합 계(286)	4,551,038	4,959,407	5,478,853	6,735,303	7,531,724	2,980,686

주: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공공기관별 예산자료

부채 현황

2010년 <mark>공공기관</mark> 부채

460조 4,477억원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6년 239조 5,312억원에서 2010년에는 460조 4,477억원으로 220조 9,165 억원(92,2%)이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연평균 17,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동 기간 자산의 연평 균 증가율 13,4%를 상회하고 있다.

표 1-45] 공공기관 부채 추이 (단위: 약:						(단위: 억원)
	2006 (A)	2007	2008	2009	2010 (B)	증감액 (B-A)
공기업(28)	1,355,040	1,579,907	2,008,397	2,386,539	2,728,183	1,373,143
시장형(14)	548,423	595,103	797,458	882,630	991,346	442,923
준시장형(14)	806,617	984,804	1,210,940	1,503,909	1,736,837	930,220
준정부기관(82)	845,654	838,005	853,607	934,096	1,034,839	189,185
기금관리형(17)	597,854	565,647	555,884	593,996	629,736	31,882
위탁집행형(65)	247,800	272,358	297,723	340,101	405,103	157,303
기타공공기관(176)	194,618	262,332	392,475	674,631	841,455	646,837
합 계(286)	2,395,312	2,680,243	3,254,479	3,995,266	4,604,477	2,209,165

주: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공공기관별 예산자료

당기순이익 현황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 79조 7,805억원에서 2010년에는 7조 7,190억원으로 615억원 (0.8%)이 감소하였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크게 감소한 이래 2010년 현재 거의 2006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2010년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7조 7.190억원

(단위: 억원)

						1-11
	2006 (A)	2007	2008	2009	2010 (B)	증감액 (B-A)
공기업(28)	57,639	66,420	85	36,057	50,293	-7,346
시장형(14)	41,504	38,787	-24,921	23,392	30,148	-11,356
준시장형(14)	16,134	27,632	25,006	12,665	20,145	4,011
준정부기관(82)	13,901	9,970	27,620	13,580	11,476	-2,425
기금관리형(17)	9,237	7,123	7,466	6,009	14,974	5,737
위탁집행형(65)	4,665	2,848	20,154	7,570	-3,499	-8,164
기타공공기관(176)	6,265	6,778	6,655	9,266	15,420	9,156
합 계(286)	77,805	83,168	34,360	58,902	77,190	-615

주: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공공기관별 예산자료

3. 정부 예산지원

예산지원 형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마련된 「공공기관의 통합공 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정부지원항목은 공공기관의 자체수입과 구분되는 항목으로서, 출연금, 출자 금, 보조금, 융자 등의 직접지원과 위탁수입, 독점수입 등의 간접지원을 포괄하고 있다.

2012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조 764억원(5.9%) 증가한 37조 303 억원이다. 준공공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1조 8,051억원(7.7%), 3,581억원(5.9%) 증가하였으나 공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868(1.6%) 감소하였다. 특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하였고(전년 대비 10.6% 증가),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가장 큰 비중으로 감소하였다(전년 대비 5.3% 감소).

또한 정부출연금과 정부보조금은 각각 1조 5,447억원(8.8%), 8,377억원(7.2%)이 증가하였고, 반면 정부출자금과 융자는 각각 1,241억원(3.2%), 1,819억원(9.7%)이 감소하였다.

2012년 공공기관 직접지원 예산

전년 대비 5.9% 증가한 37조 303억원

[丑 1-4	[표 1-47]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추이 (E위: 억원)										
		정부출연금	정부출자금	정부보조금	융자	합계					
	공기업	570	37,995	13,061	2,901	54,527					
	시장형	_	8,360	2,969	2,217	13,547					
	준시장형	570	29,635	10,092	684	40,980					
2011	준정부기관	125,251	350	94,617	13,702	233,920					
	기금관리형	37,362	_	693	61	38,115					
	위탁집행형	87,890	350	93,924	13,641	195,805					
	기타공공기관	48,776	1,000	9,106	2,210	61,092					
	합 계	174,597	39,345	116,784	18,813	349,539					
	공기업	138	37,662	13,859	2,000	53,659					
	시장형	-	7,726	3,561	1,544	12,831					
	준시장형	138	29,936	10,298	456	40,828					
2012	준정부기관	136,347	442	101,637	13,544	251,971					
2012	기금관리형	40,150	_	974	1,041	42,165					
	위탁집행형	96,197	442	100,664	12,503	209,806					
	기타공공기관	53,559	-	9,664	1,450	64,673					
	합 계	190,044	38,104	125,160	16,994	370,303					

주: 2012년 기준 286개 공공기관 대상 자료: 각 기관별 예산자료

제11절 부담금

1. 부담금의 정의 및 현황

부담금이란 국가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서 일반국민 또는 기업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금전적 납부의 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금은 조세와 함께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 중 하나이며,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의 주요한 재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구성한다.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는데, 2011년 7월 25일 개정으로 각 부처 소관의 부담금은 총 97개에 이른다.

부담금 징수실적 및 귀속주체별 부담금 규모

부담금의 징수실적은 GDP의 1.24%에 해당하는 14.5조원(2010년 기준 94개)에 이른다.

± 1-48] 2010년 -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단위: 억원, %
	부담금	금액	비중
금융위원회(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8개	29,264	20.24
기획재정부(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_	_
교육과학기술부(3)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3개	4,389	3.04
외교통상부(2)	국제교류기여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2개	626	0.43
행정자치부(1)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1개	652	0.45
문화체육관광부(6)	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대한부가금 등 6개	4,223	2,92
농립수산식품부 (10)	농지보전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농안법·FTA법),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등 10개	10,103	6.99
지식경제부(10)	특정물질제조업자 · 수입업자로부터징수하는 수입금, 전력산업기 반기금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등 10개	40,390	27.93
보건복지부(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등 2개	15,848	10.96
환경부(20)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수질개선부담금 등 20개	22,842	15.80
고용부(2)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2개	3,548	2,45
국토해양부(24)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24개	8,790	6.08
산림청(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임산물 수입이익금 등 3개	1,148	0.79
방 <u>송통</u> 신위원회(1)	방송발전기금징수금 1개	1,681	1.16
중소기업청(1)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1개	1,085	0.75
	합 계(94개 부담금)	44,591	10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1. 5

2010년 전체 부담금의 87.0%인 12.6조원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 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5개 특별회계)와 국민건 강증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28개 기금의 수입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9.7%인 1.4조원은 지방자 치단체의 수입으로, 나머지 0.5조원은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사용되었다.

[표 1-49] 귀속주체별 부담금 규모 추이

(단위: 억워 %)

(En-						(= : : :=, ;		
	2006	2007	2008	2009	20	10	증감	
	2000		2000	(A)	금액(B)	비중	B–A	(B-A)/A
중앙정부	94,647	109,558	120,174	117,739	125,854	87.0	8,115	6.9
특별회계(5개)	29,994	33,526	32,598	33,266	33,837	23.4	571	1.7
기 금(28개)	64,653	76,032	87,576	84,473	92,017	63.6	7,544	8.9
지방자치단체	11,700	17.771	13,694	13,277	13,947	9.6	670	5.0
광 역	5,805	8,565	6,580	5,797	6,847	4.7	1,050	18.1
기초	5,805	9,206	7,114	7,480	7,100	4.9	-380	-5.1
공공기관 등	13,187	16,321	18,911	17,031	4,790	3.3	-12,241	-71.9
합 계	119,534	143,650	152,780	148,047	144,591	100.0	-3,456	-2.3
총국세수입대비비중	8.7	8.9	9.1	9.0	8.5		-	_
GDP 대비 비중	1.3	1.5	1.5	1.4	1.2		_	_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 부담금 관리제도와 개선과제

부담금 관리제도

부담금은 국가 재정수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특별회계나 기금의 주요 재원이지만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는 필요최소한 부과의 원칙(제5조), 이중부과 금지(제5조), 10년 이내의 존속기한 설정(제5조의2), 부담금 신설에 관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사(제6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속적인 점검·평가를 통한 부담금 정비(제8조)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제7조).

부담금운용계획안(가칭)의 국회제출 필요

현재 정부는 차년도 부담금 징수 규모 및 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 각 회계별 · 기금별 세입예산안과 수입계획안에 개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각각의 부담금규모 및 운용계획을 별도로 파악하여 부담금의 부과총액, 부담금별 적정부과 수준, 부담금 부과목적에 적합한 사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공단 등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규모나 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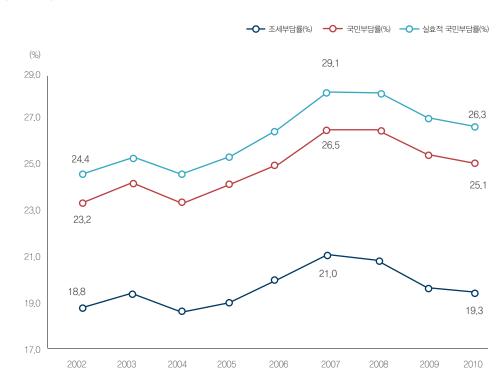
따라서 투명한 재정운용과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차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별도의 「부담금운용계획안」(가칭) 제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을 포함한 실효적 국민부담률 지표 산출 필요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 통계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16조제2호는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제7조제2항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에는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 부담과 사회보험 보험료인 '사회보장기여금'은 포함되지만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정책 수립 및 국민부담의 국제비교 등에 있어 현행 국민부담률 뿐 아니라, GDP의 1.2~1.5%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담까지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⁴.

¹⁴⁾ OECD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Total tax revenue' 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조세' 뿐 아니라, 특정 물품/재화의 사용 또는 이에 대한 허용 등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비용, '사회보장기여금' 인 사회보장세(payroll taxes) 등을 포함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의무적이며 필수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원문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axes are defined as compulsory, unrequited payments to general government. They are unrequited in the sense that benefits provided by government to taxpayers are not normally in proportion to their payment. Taxes on incomes and profits covers all taxes........Taxes on goods and services covers all taxes levied on the production............ or the use of goods or permission to use goods or to perform activities.......Note that the sum of taxes on goods and services and taxes on income and profits do not equal total tax revenues, which also includes payments by employers and employees made under compulsory social security schemes as well as payroll taxes, taxes related to the ownership and transfer of property, and other taxes." (OECD, OECD Factbook 2008, p 224)



[그림 1-6]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실효적 국민부담률 추이

자료: OECD,Staf와 GDP 대비 부담금 비율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제12절 총사업비관리

1. 의의 및 법적 근거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각 단계별로 조정 ·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 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및 착공 등과 같이 각 단계별로 사업비 변동에 대한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수단의 일환으로 구「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기반을 두고

199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06년에 이르러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해당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운영현황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은 2000년 483개 사업, 182조원 규모에서 2011년 964개 사업, 26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1-50]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추이

(단위: 건, 조원, %)

	합계		토독	토목사업		사업	정보회	화사업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비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2000	483	182	395	174	88	8.1	-	-
2001	693	184	595	176	98	8.3	_	-
2002	602	183	517	176	85	6.5	_	-
2003	668	205	570	198	98	7	_	-
2004	698	206	586	198	112	8	_	-
2005	718	221	567	208	151	13	_	-
2006	766	223	605	211	161	12	_	-
2007	780	221	625	208	155	13	_	-
2008	1,126	241	870	224	256	17	_	-
2009	1,268	251	931	227	337	24	_	-
2010	1,351	276	951	247	398	28	2	0.9
2011	964	264	699	236	263	26	2	0.9

자료: 기획재정부(2012)

총사업비관리제도 도입 초기인 1990년대에는 총사업비 총액 대비 증가액의 비율이 10% 이상이었으나, 15 2000년대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는 등 총사업비관리의 강화로 총사업비 증가율이 1%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표 1-51] 총사업비 변경 추이 (단위: 조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사업비 총액 (A)	182	184	183	205	206	221	223	221	241	251	276	264
변경액 (B)	1.4	4.8	1.4	0.3	0.5	1.5	-1.4	1.9	2.8	3.4	3.2	0.3
비중 (B/A)	0.8	2.6	0.8	0.1	0.2	0.7	-0.6	0.9	1.2	1.3	1.1	0.1

자료: 기획재정부(2012)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총사업비 추정단계에서 소요물량, 단가, 중요한 전제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예산확보를 의식하여 사업비를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 분산투자로 사업이 필요 이상 장기 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총사업비관리제도 운영상에 내재된 제반문제에 대처하고 제도 도입의 원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50조에서 기획재 정부장관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 소관부처가 지 켜야할 절차나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만, 총사업비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의 의무나 책임은 명확히 규정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총사업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진을 위해 총사업비관 리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와 아울러 총사업비관리 정 보를 예산 · 결산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의 국가재정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 1. 총사업비 총액(A)는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계한 금액 2. 변경액(B)는 연도 중 총사업비 변경금액을 합계한 금액

^{3.} 낙찰차액 감액분을 포함

¹⁵⁾ 국회예산정책처, 「총사업비관리제도 평가」(2009)

제13절 예비타당성조사

1. 의의

예비타당성조시는 「국가재정법」 제38조¹⁶⁾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당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11년 말까지 실시된 총 588건(272,4조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이 중 37%인 220개 사업, 금액으로는 43%인 117.8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1-521	ЮIH	IFFC	H서구	.사 추(n
ш.	I "DZ I	MID	ᄓᄓᄀ	101	.시 구	7

(단위: 건, 조원, %)

	조사	내상		타당성 있음			중ㆍ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999	19	27.2	12	63	7.4	27	7	37	19.8	73
2000	30	14.0	15	50	6.1	44	15	50	7.9	56
2001	41	19.8	14	34	6.5	33	27	66	13.3	67
2002	30	16.2	13	43	6.2	38	17	57	10.0	62
2003	33	21.5	20	61	17.5	81	13	39	4.0	19
2004	55	18.7	41	75	13.3	71	14	25	5.4	29
2005	30	12.4	19	63	8.4	68	11	37	4.0	32
2006	52	21.5	28	54	9.3	43	24	46	12.2	57
2007	45	16.7	26	58	10.5	63	19	42	6.2	37
2008	43	11.0	28	65	5.2	47	15	35	5.8	53
2009	72	35.3	48	67	24.9	71	24	33	10.4	29
2010	77	35.2	59	77	23	65	18	23	12.2	35
2011	61	23	45	74	16.3	71	16	26	6.6	29
합계	588	272.4	368	63	154.6	57	220	37	117.8	43

주: 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6) 「}국가재정법」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대상사업과 조사면제대상사업

조사대상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¹⁷⁾ 대상사업은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300억원 이상)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 안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적격성조사로 대체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 132^{18} 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등이며, 2011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제8호(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를 삭제하여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제50조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¹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¹⁷⁾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의 재정투자평가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편성된다.

¹⁸⁾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 · 중등 교육시설의 신 · 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 ·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 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⁸ 삭제

^{9.} 출연 ·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타당성 기준 B/C 비율이 1 이상.

AHP 0.5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수행한 후, 각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 분석 방법의 일종인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기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최종 결론을 내린다.

경제성 분석은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하는데, B/C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사업특수 평가항목과 환경영향 등을 평가하며,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용유발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선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종합평가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단계이다. 종합평가는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데, AHP ≥ 0.5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가 4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사전에 심사하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제도(구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2008년부터 도입하였고 검토 결과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에 근거하여 국회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 재정법」 제50조제3항에 근거하여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3. 개선과제

가. 예산안 제출 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의 첨부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르면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신규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은 총 신규사업 수의 16.1%인 57개이고,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은 21개이다. 국토해양부의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건설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로 대체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학비지원 사업 등 33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이다.

[표 1-53]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

(단위: 건)

예타대상 신규사업	시행		미시행	
			36	
57	21	민자적격성조사	면제	대상이나 미시행
		1	33	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중점분석 ॥」를 기초로 재작성

이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만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

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법률 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등 대상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가 좌우되는 등 법률이 규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를 없애 동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부 2012년 재정개요

제1장 2012년 재정 개관

제2장 2012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제3장 2012년 예산 및 기금

제4장 2012년 예산안의 국회심의

제1절 2012년 재정운용 여건

1. 세계경제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재정긴축의 영향으로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전망이며, 중국 등 신흥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 약화가 신흥국의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MF, OECD 등 주요기관들은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1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MF는 2012년 1월 미국 1.8%, 유로지역 $\Delta 0.5\%$, 일본 1.7%, 중국 8.2%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의 과도한 재정긴 축,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가별 · 지역별 위험요인이 악화 또는 실현되는 경우 세계적 경기 위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3,3% OECD 3.4%

[표 2-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1		20	12	2013		
	IMF	OECD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3.8	3.8	3.3	3.4	3.9	4.3	
선진국 경제	1.6	1.9	1.2	1.6	1.9	2.3	
미국	1.8	1.7	1.8	2.0	2.2	2.5	
유로지역	1.6	1.6	-0.5	0.2	0.8	1.4	
일 본	-0.9	-0.3	1.7	2.0	1.6	1.6	
개도국 및 신흥국	6.2	_	5.4	_	5.9	_	
중 국	9.2	9.3	8.2	8.5	8.8	8.8	

주: MF 및 OECD의 세계경제전망은 각각 2012년 1월, 2011년 11월 발표

자료: IMF, OECD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및 향후 전망

PIIGS(포르투칼,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과 국가채무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신용위험이 높아 지기 시작하였다. 그리스의 경우 과도한 재정지출 등으로 인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5%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비교적 건전한 재정과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가졌던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20007년 이후 자산가격의 버블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였고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국가채무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2011년 상반기에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가 현 저히 둔화되고 하반기에는 금융불안 및 심리위축이 심화되어 독일 등 핵심국 경제에까지 부 정적 영향이 확대되었다. OECD(2011.11)는 유로의 재정위기가 역내주변국에 국한될 경우 2012년 유로경제는 0.2% 성장하나 그리스의 무질서한 디폴트에 이어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나아가 프랑스 등 핵심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9%로 감소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시나리오와 세계경제]

시니	리오	중립	비관		
상황		위기가 현 수준 유지	무질서한 디폴트		
사건 전개		국가채무위기 및 은행시스템 불안이 대체로 현 수준에서 억제	그리스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으로 전염되지만 유로체제는 유지		
실물경제 영향		1/4분기에 유로지역이 제한된 경기침체(mild recession 경험)	유로의 심각한 경기침체 및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발생확률		60%	40%		
2012년	유로지역	0.2%	-1.9%		
경제성장률	세계	3.4%	2.1%		

자료: OECD(2011, 11, 28)

이러한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로존 의회는 2011년 10월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의 대출금을 4,400억 유로로 증액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2012년 1월 EU 정상 회담에서 역내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5,000억 유로 규모)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12년 7월 출범시키는데 합의하였고. 같은 해 2월 유로존은 그리스 정부의 부채비 율 감소(2020년까지 GDP 대비 121% 이내)를 조건으로 1,300억 유로 규모의 제2차 구제금 융 지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공조 노력이 약화되거나 유로존 재정통합 및 금융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정책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은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경제

한국은행은 2012년 1월 발표한 「2011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에서 우리나라의 2011년 경제성장률을 전년 보다 2.6% 낮은 3.6%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높은 수출증가율 (10.2%)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건설투자가 감소($\triangle 6.5\%$)한 것 등에 기인한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년 10월 국회예산정 책처는 2012년 국내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하였으며,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 4.5%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12월 3.7%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였다. 이러한 경제전망에는 유로지역 국가채무 문제의 향방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성장의 상·하방리스크에 있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3.5% 정부 3.7%

[표 2-2] 국내외 주요기관의 2012년 경제전망

(단위: % 억달러)

	- 12 120.21	_ 0 "L0			(단위: %, 억달러)
	국회예산정책처 (2011, 10)	정부 (2011, 12)	한국은행 (2011, 12)	IMF (2012, 1)	OECD (2011, 11)
경제성장률	3.5	3.7	3.7	3.5	3.8
민간소비	2.7	3.1	3.2	_	3.2
설비투자	2.9	3.3	4.2	_	_
건설투자	-0.6	2.9	2.8	_	-
경상수지	148	160	130	_	0.3
실업률	3.7	3.5	3.3	_	3.4
소비자물가	3.6	3.2	3.3	_	3.6

주: 1, OECD의 경상수지 전망치는 GDP 대비 비중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전망」, 2011, 12 한국은행, 「2012년 경제전망」, 2011, 12 MF, 「세계경제전망과 정책 변화」, 2012, 1 OECD, 「Economic Outlook No.90」, 2011, 11

^{2,} 괄호안은 기관별 전망시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2015년 경제전망」, 2011. 10

3.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5.5%(2010년 말 기준)

세계경기 · 국제금융시장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여건 및 대내여건의 불확실 성은 올해 우리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는 경기둔화로 가계의 소득창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자산가격 하락, 대출금리 상승, 금융기관의 대출 엄격화 등으로 국내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증가 세가 지속되었다. 2011년 9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892,5조원으로 전년 대비 73.3조원, 글로벌 금융위가 발생 이후인 2008년에 비해서는 177.5조원이 증가하였다. 가계 부채는 질적 측면에서도 점차 취약해 지고 있다. 비은행권 대출, 생계형 대출, 고금리의 신용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저소 득 · 저신용자의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5.5%로 경쟁국 중 최상위권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183.6%)과 미국(137.8%)의 중간 수준이다.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현상이 지속될 경우 저소득 및 저자산 가계를 중심으로 상환능력이약화되면서 차입 비중이 높은 가계와 금융권의 위기가 동시에 촉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가계의 주택관련 대출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저소득 과다채무자들이 높아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원(고용 여건 개선 등)을 확보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을추진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구조(변동금리 대출 비중 및 일시상환형 대출 비중)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2-1]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주: 2009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제2절 재정규모

총지출¹⁾은 325.4조원, 총수입은 343.5조원

국회는 2011년 12월 31일 총지출 325.4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2012년 총지출 325.4조원은 2011년 대비 5.3%(16.4조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안 326.1조원에 비해서는 0.7조원 감액된 규모이다. 국회는 영유아(0~2세) 무상보육 예산을 0.4조원, 한 · 미 FTA 관련 농어업지원예산을 0.3조원, 재정지원 일자리에 0.4조원을 확대하는 등 총 3.3조원을 증액하고, 국채이자상환 1.3조원, 예비비 0.4조원, 제주해군기지 0.1조원, 유전개발사업 0.1조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조원을 감액하였다.

2012년 총수입 343.5조원은 2011년 대비 9.3%(29.2조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안 344.1조원에 비해서는 0.6조원 감액된 규모이다. 국회는 인천공항 매각대금 0.4조원, 근로장려세제(ETTC)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확대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0.2조원 등을 통해 총수입을 감액하였다.

2012년 재정규모

총지출 325.4조원 총수입 343.5조원

[표 2-3] 2012년 재정규모

(단위: 조원, %)

			2012 국회 확정					
	2011 예산 2012 정부안 규모 (C)		규모	정부안대비	전년도 (ᅨ산 대비		
		(C-B)	(C-A)	(C-A)/A				
총수입	314.4	344.1	343.5	-0.6	29.2	9.3		
(국세)	(187.6)	(205.9)	(205.8)	(-0.2)	(18.2)	(9.7)		
총지출	309.1	326.1	325.4	-0.7	16.4	5.3		
예산	216.3	227.0	228.1	1.1	11.8	5.4		
기금	92.7	99.1	97.3	-1.8	4.6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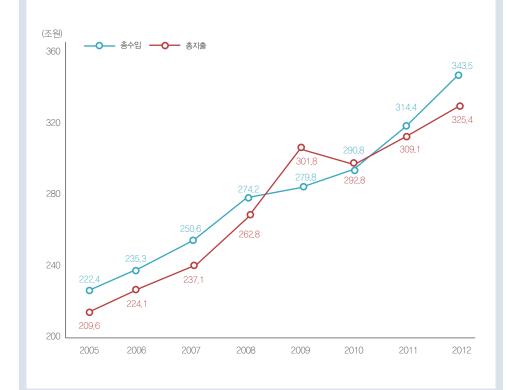
주: 2011년 예산, 2012년 정부안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2012년도 확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¹⁾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것이다.

연도별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정부는 2005년부터 총수입·총지출 기준의 중앙정부 재정규모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추 이를 살펴보면, 먼저 총수입의 경우 2005년 222.4조원에서 2012년 343.5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총지출은 2005년 209.6조원에서 2012년 325.4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고 있어 총수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 추이]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입은 312.4조원,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은 294.3조원

2012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입은 2011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312.4조원이고 통합재정지출은 2011년 예산 대비 5.3% 증가한 294.3조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8년 및 2009년의 경우 통합재정수입에 비하여 통합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경제 여건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통합재정지출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통합재정 규모

수입 312.4조원 지출 294.3조원

[표 2-4] 중앙정부 통합재정 규모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입	250.7	250.8	270.9	284.8	312.4			
(전년대비 증가율)	(2.9)	(0.0)	(8.1)	(5.1)	(9.7)			
통합재정지출	238.8	268.4	254.2	279.5	294.3			
(전년대비 증가율)	(13.8)	(12.4)	(-5.3)	(10.0)	(5.3)			

주: 2008~2010년은 결산 기준이며, 2011년과 2012년은 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지출 규모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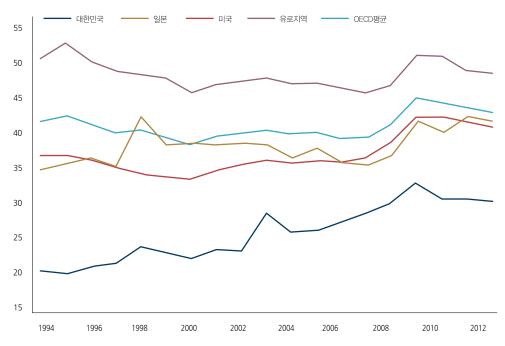
우리나라 통합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1980~1990년대 중반까지 10% 중 ·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98년에 23.0%를 기록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2002년을 제외하고는 GDP 대비 2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GDP 대비 25.7%까지 지출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다시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 2012년에는 예산 및 정부 전망 GDP 기준으로 GDP 대비 22.0% 수준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재정지출 규모(통합재정기준)

GDP 대비 22.0%

재정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재정지출(General government total outlays)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이며, 유로 지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50% 내외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도 OECD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2012년 기준 GDP의 30.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자료: OECD(2011,11)

그러나 재정지출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재정지출 수준이 높은 유로지역과 미국, 일본 등은 GDP 대비 지출 규모의 변동성이 작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OECD 통계(Economic Outlook No.90)에 수록되어 있는 1994년부터 2012년 까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미국, 일본, 유로지역 등 다른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미국은 0.22%p, 일본은 0.39%p, 유로지역은 -0.12%p OECD 평균은 0.08%p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동 기간에 연평균 0.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성숙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재정건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차원의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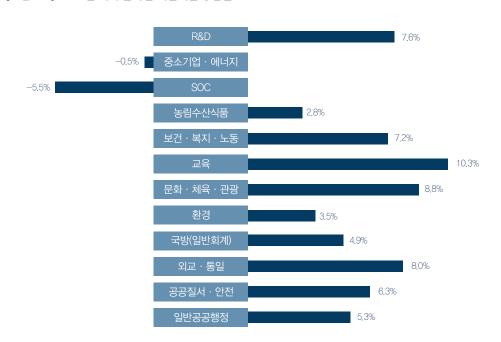
제3절 분야별 재원배분

1. 현 황

2012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5.3%) 보다 높은 분야는 교육(10.3%), 문화ㆍ체육ㆍ관광(8.8%), 외교ㆍ통일(8.0%), R&D(7.6%), 보건ㆍ복지ㆍ노동(7.2%), 공공질서ㆍ안전(6.3%)이다. 교육 분야의 전년 대비 증기율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증가(0.3조원 \rightarrow 1.75조원) 등에 기인한다. 12개 분야 중 2011년 대비 총지출이 감소한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triangle 0.1조원)와 SOC(\triangle 1.3조원)이다. 다만, 4대강사업을 제외한 SOC 투자는 6.6%(1.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분야는 R&D(0.05조원), SOC(0.44조원), 농림·수산·식품(0.02조원), 보건·복지·노동(0.67조원), 교육(0.43조원), 문화·체육·관광(0.13조원) 등 6개 분 야이며, 감액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triangle 0.15조원), 환경(\triangle 0.16조원), 국방(\triangle 0.20조원), 외교·통일(\triangle 0.004조원), 공공질서·안전(\triangle 0.03조원), 일반공공행정(\triangle 1.47조원) 등 6개 분야이다.





주: 상기 증감률은 2011년 대비 2012년 분야별 재원배분 증감률

[표 2-5]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단위: 조원, %)

		201	2년		(단위: 조원, % 증감			
	2011 (A)	정부안	국회확정	정부안 대비	2011년 대비			
		(B)	(C)	(C-B)	(C-A)	(C-A)/A		
1. R&D	14.9	16.0	16.0	0.05	1.1	7.6		
2.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5.2	15.2	15.1	-0.15	-0.1	-0.5		
3. SOC	24.4	22.6	23.1	0.44	-1.3	-5.5		
4. 농림 · 수산 · 식품	17.6	18.1	18.1	0.02	0.5	2.8		
5. 보건 · 복지 · 노동	86.4	92.0	92,6	0.67	6.2	7.2		
6. 교육	41.2	45.1	45.5	0.43	4.3	10.3		
7. 문화 · 체육 · 관광	4,2	4.4	4.6	0.13	0.4	8.8		
8. 환 경	5.8	6.1	6.0	-0.16	0.2	3.5		
9. 국 방(일반회계)	31.4	33,2	33.0	-0.20	1.6	4.9		
10. 외교 · 통일	3.7	3.9	3.9	-0.004	0.2	8.0		
11. 공공 질서 · 안전	13,7	14.5	14.5	-0.03	0.8	6.3		
12. 일반 공공 행정	52.4	56.6	55.1	-1.47	2.7	5.3		
총 지 출	309.1	326.1	325.4	-0.7	16.4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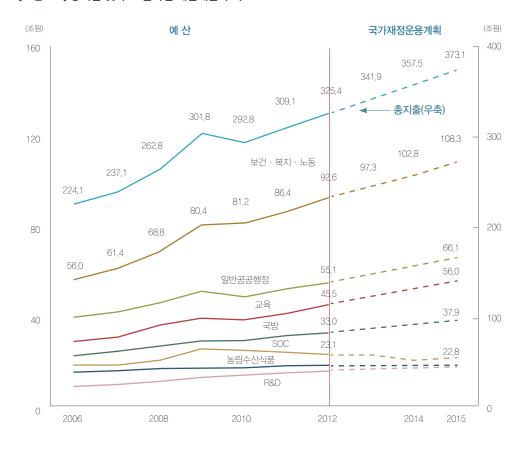
주: R&D는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R&D 지출을 합계한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2.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다. 나라살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의 경우 2015년에 108.3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교육 분야의 경우 5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C 분야의 경우 2009년에 25.5조원으로 2006~2015년 중 가장 높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에는 23.1조원, 2015년에는 22.8조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4%이며, 같은 기간 보건·복지·노동, 일반공공행정, 교육, 국방, 농림수산식품 및 R&D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7%, 5.8%, 7.9%, 6.6%, 3.1%, 10.3%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4] 총지출 및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2) 2013~2015}년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제시된 전망치이다.

[표 2-6] 주요 분야별 총지출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비교

(단위: 조원, %)

		총지출	보건복지노동	일반공공행정	교육	국방	농림수산식품	R&D
2012년	규모	325.4	92.6	55.1	45.5	33.0	18,1	16.0
연평균	2006~2012	6.4	8.7	5.8	7.9	6.6	3.1	10.3
증가율	2011~2015 (국가재정 운용 계획)	4.8	5.8	6.0	8.0	4.8	1.0	5.3

3.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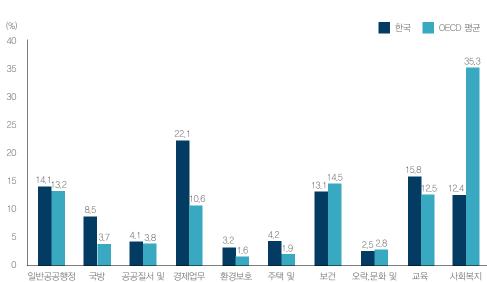
국방분야

OECD 평균의 2.4배

사회복지분야

OECD 평균의 1/3

OECD는 정부지출을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 국방(Defense), 공공 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경제업무(Economic affairs),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주택 및 지역개발(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보건(Health), 오락 · 문화 및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교육(Education), 사회복지(Social protection) 등 10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지출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분야 별 비중을 OECD 평균과 비교(2009년 기준)하면, 국방, 경제업무, 주택 및 지역개발, 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 분야의 비중은 8.5%로 OECD 평균(3.7%)의 2.4배에 이르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은 12.4%로 OECD 평균(35.3%)의약 1/3 수준이다.



[그림 2-5] 분야별 비중의 국제비교

주: 1, 2009년 일반정부(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포함) 기준이며, COFOG 분류에 따른 것임 2, OECD 평균은 통계가 제공되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등 8개 국가를 제외한 28개 회원국가의 평균임 자료: OECD.Stat(2011,11)

지역개발

종교

동일소득(구매력 기준 1인당 GDP 27,000 달러) 기준 주요국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업무와 교육 분야의 비중이 각각 22.1%, 15.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 비중(12.4%)은 미국(20.1%)과 함께 낮은 편에 속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 1 인당 소득수준의 향상 및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복지와 의료 분야 등의 정부지출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와 유사한 수준에 달할 정도로 동 분야의 정부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소규모 대외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의 도입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7] 동일 소득	[표 2-7] 동일 소득(1인당 GDP) 기준 분야별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프랑스 (2001)	독일 (2001)	그리스 (2006)	이태리 (2003)	일본 (2002)	스웨덴 (2000)	영국 (2001)	미국 (1995)	한국 (2009)		
일반공공행정	14.5	13.1	20.5	19.1	14.8	17.2	10.6	17.8	14.1		
국방	4.0	2.5	5.8	3.0	2.6	4.2	5.7	10.6	8.5		
공공질서 및 안전	2.4	3.5	3.4	4.0	3.8	2.3	5.6	5.2	4.1		
경제업무	5.9	8.8	11.0	8.4	12,7	6.7	6.3	9.6	22.1		
환경보호	1.4	1,2	1,3	1,8	4.5	0.5	1.7		3,2		
주택 및 지역개발	3.3	2,2	0.7	1.5	2.1	1,7	1.9	2.0	4,2		
보건	14.0	13,2	11.7	13,1	17.6	11.0	14.7	18.0	13.1		
오락, 문화 및 종교	2.3	1.5	1.3	1,7	0.5	1.9	2.5	0.8	2.5		
교육	12,3	8.9	8.8	10.1	10.8	12,2	13,1	15.9	15.8		
사회복지	39.9	45.2	35.4	37.2	30.8	42.1	37.8	20.1	1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국가별 1인당 GDP가 27,000 달러(구매력 기준)인 시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OECD,Stat(2011,11)

제4절 의무지출

1. 정의

「국가재정법」제7조제2항은 매년 국회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 그 적용시기를 2012년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0.5.17, 개정)

한편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서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³⁾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2011, 12, 30 신설)은 의무지출의 범위로 ①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②국제조약 또는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③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지출 분석이 가지는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상 및 단가 등이 법령에서 규정되는 의무지출은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는 한 국회의 예산 심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둘째, 의무지출은 지출규모가 법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둔화(또는 침체)로 세입여건과 같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 방법과 내용 등이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부터 「2012년 예산안 분석」까지 총 4번에 걸쳐 총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의무지출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해석 여부, 지출사업의 성격과 내용 등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실제 분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4

2012년부터 국가재 정운용계획에 의무 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내역 포함 의무지출 : 법정지출+이자지출

^{3)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

⁴⁾ 이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012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법령에 지출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의무지출로 선정하였다. 동일한 사업에 의무지출성 예산과 재량지출성 예산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목별 또는 기능별 예산안 세부내역을 이용하여 법령에 규정된 지출만을 집계하였다. 또한 이전재원의 경우 의무지출사업에 재량지출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이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의 예산액 전부를 의무지출액으로 집계하였다.

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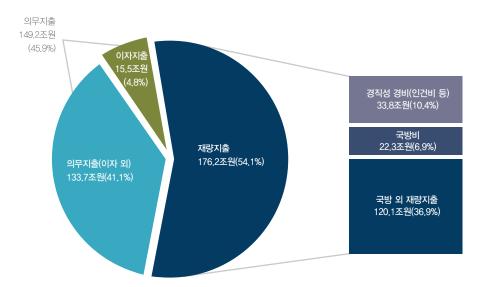
2012년 의무지출⁵⁾

2012년 의무지출

총지출 기준 149.2조원 정부총지출의 45.9% 국회예산정책처의 분류기준에 따른 2012년 의무지출 사업은 총 116개이며, 재정규모는 총 149.2조 원으로 총지출(325.4조원) 대비 45.9%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중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15.5조원⁶⁾으로 총지출 대비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자상환액을 제외한 의무지출은 133.7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41.1%를 차지하고 있다.

재량지출 중 인건비, 기본경비 및 계속비를 합한 경직성 재량지출은 33.8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10.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비경직성 재량지출은 142.4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43.8%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6]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조



- 주: 1. 의무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류기준을 적용
 - 2.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중앙관서 유지·운영 경비
 - 3. 재량지출 중 국방비 22,3조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지출(33,0조원)에서 인건비(9,3조원), 기본경비(0,4조원) 및 의무지출(1,0조원, 건강보험 국가부담금 등) 제외
 - 4. 이자지출 15.5조원은 공자기금(외평채 이자상환 제외), 공무원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상환액만을 포함

⁵⁾ 대부분의 의무지출 사업을 식별하였으나, 사업설명 자료의 부실 등으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⁶⁾ 총지출 기준 의무지출에서 제외된 외평기금(원화외평채 및 외화외평채 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채),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기금차입금), 구조조정기금(구조조정채권)의 이자지출을 모두 합할 경우 총 이자지출은 27,0조원이다.

2012년 의무지출 예산안 조정내역

국회는 2012년 의무지출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1.1조원을 감액한 149.2조원을 심의·확정하였다. 심의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755억원을 증액하고, 928억원을 감액하여 95조 5,947억원으로 확정하였다. 특별회계는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은 1조 3,684억원을 감액하여 52조 4,581억원으로 확정하였다. 기금의 감액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국채발행 규모 축소와 이자상환 기준금리를 하향조정⁷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상환액이 1조 2,685억원 감액되었다.

[표 2-8] 의무지출 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 억원)

	0040		국회 심의					
	2012 정부안 (A)	감액 (B)	증액 (C)	순증 (D=B+C)	2012년 예산 (E=A+D)			
예 산	964,368	-928	3,755	2,827	967,195			
일반회계	953,120	-928	3,755	2,827	955,947			
특별회계	11,244	_	_	_	11,248			
기금	538,265	-13,684	_	-13,684	524,581			
합 계	1,502,633	-14,612	3,755	-10,857	1,491,7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의무지출 추이

법령에 따른 신규 의무지출사업 추가, 기존 의무지출사업 대상의 확대 및 지급단가의 인상 등으로 2007년 총지출 대비 41.7%이던 의무지출규모는 2012년 45.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07년 결산부터 2012년 예산까지 6년 동안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나타나고 있어 총지출 증가율 6.4%보다 2.0%p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7~2012년 의무지출 추이 연평균 8.4% 증가

⁷⁾ 정부는 국채이자율을 5.0%로 적용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국회는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4.5%로 0.5%p 하 향조정함에 따라 이자상환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림 2-7] 의무지출 및 총지출 추이 연평균 증가



복지분야 의무지출 추이

2007년 이후 연평균 10.7% 증가 의무지출 사업을 교부금, 복지, 농림, 이자상환 및 기타의 5개 분야⁸로 구분하고, 2007년 이후 분야별 의무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은 2007년 50.8조원에서 2012년 71.5조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하였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보건(건강보험 국가부담금), 국민기초생활보장 · 보육 등, 노동 및 보훈부문의 의무지출로 구성된다. 예산규모는 2007년 34,9조원에서 2012년 58.1조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하여 복지 지출의 증가가 전체 의무지출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의무지출(149.2조원)에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71.5조원)과 국가채무 및 국고채권 발행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지출(15.5조원)을 제외한 의무지출(62.2조원)에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점유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93.4%에 달하고 있다.

농림 분야 의무지출의 200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2%이며, 이자상환 예산은 2007년 10.4조 원에서 2012년 15.5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였다.

⁸⁾ 의무지출의 성질에 따른 분류는 국회예산정책처 내부 기준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분류하는 12개 재원배분분야의 구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표 2-9] 분야별 의무지출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기율
합 계		99.44 (100.0)	113.89 (100.0)	119.75 (100.0)	125,77 (100.0)	138,87 (100.0)	149.18 (100.0)	8.4
교부금		50.79 (51.1)	58.78 (51.6)	58.56 (48.9)	59.65 (47.4)	65.50 (47.2)	71.48 (47.9)	7.1
	공적연금	15.06 (15.1)	17.36 (15.2)	18.63 (15.6)	20.90 (16.6)	23,71 (17.1)	26.68 (17.9)	12.1
	보건	4.26 (4.3)	4.69 (4.1)	5.40 (4.5)	5.62 (4.5)	5.95 (4.3)	6.28 (4.2)	8.1
사회복지	기초생활 · 보육 등	7.22 (7.3)	9.53 (8.4)	10.98 (9.2)	11.76 (9.4)	12.48 (9.0)	13.59 (9.1)	13.5
시외국시	노동	6.01 (6.0)	6.71 (5.9)	8.22 (6.9)	7.72 (6.1)	8.01 (5.8)	8.16 (5.5)	6.3
	보훈	2,37 (2.4)	2.55 (2.2)	2.70 (2.3)	2.86 (2.3)	3.11 (2.2)	3.35 (2.2)	7.1
	소계	34,92 (35.1)	40.85 (35.9)	45.94 (38.4)	48.86 (38.9)	53.25 (38.3)	58.06 (38.9)	10,7
농 림		1.18 (1.2)	1.29 (1.1)	1.23 (1.0)	1.34 (1.1)	1.08 (0.8)	1.05 (0.7)	-2,2
이자상환		10.44 (10.5)	10.56 (9.3)	11.58 (9.7)	13.41 (10.7)	16.47 (11.9)	15.48 (10.4)	8,2
	국제분담금	0.26 (0.3)	0.25 (0.2)	0.34 (0.3)	0.48 (0.4)	0.56 (0.4)	0.74 (0.5)	22,7
7 5	보상	0.24 (0.2)	0.23 (0.2)	0.35 (0.3)	0.24 (0.2)	0.18 (0.1)	0.19 (0.1)	-4.4
기타	기타	1.61 (1.6)	1.94 (1.7)	1.74 (1.5)	1.77 (1.4)	1.84 (1.3)	2.18 (1.5)	6.3
	소계	2.11 (2.1)	2.42 (2.1)	2,43 (2,0)	2,50 (2,0)	2,57 (1,9)	3.10 (2.1)	8.1

주:1,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상환액을 복지분야로 포함하는 등 기금의 이자상환액을 분야별 재원배분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있으나, 본서에서는 「국가재정법」의 의무지출의 정의를 준용하여 이자지출로 포함

^{2.} 교부금, 복지, 농림, 이자상환에 포함되지 않는 의무지출은 기타로 처리

^{2.} 보구다. 국시, 0로, 에시스에 보다 기계 등은 기기 등은 기기로 시다 3. 반올림하여 차액의 끝자리가 일차하지 않을 수 있음 4.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결산기준이며, 2011년과 2012년은 예산기준 5. 괄호안은 전체 의무지출대비 점유비중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2012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제1절 재정수지의 의의 및 현황

재정수지의 의의

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당해연도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더 커서 재정수지 적자가 되면 차입이나 국채발행, 자산매각 등을 통한 보 전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채무의 증가 또는 국가자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재정수입이 재 정지출보다 더 커서 재정수지 흑자가 되면 국채상환이나 예치금 등에 사용하게 되므로 국가채무가 감 소하거나 국가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재정수지라 하면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 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며.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수 융자'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가재정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통합재정수지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국 가재정운용계획에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고, 결산에 통합재정수지표를 첨부하 도록 하고 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 지로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 보험성기금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통합재정수지 의 흑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보험료 수입은 누적됨으로써 큰 폭의 흑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회보장성 기금의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금의 흑자를 통합 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관리대상수지 역시 유용한 재정지표라고 할 수 있다.

-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지출 + 순융자)
-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분

2012년 통합재정수지는 18.1조원 흑자(관리대상수지는 14.3조원 적자)

2012년 통합재정수지는 예산 기준으로 18.1조원(GDP 대비 1.4%)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1년 예산 기준 5.3조원(GDP 대비 0.4%)에 비하여 12.8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⁹ 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 예산 기준 25.0조 원 적자(GDP 대비 \triangle 2.0%)에서 2012년에는 14.3조원 적자(GDP 대비 \triangle 1.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¹⁰ 되고 있다.

2012년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중 $\Delta 1.1\%$ 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12년 전망치 $\Delta 1.3\%$ 보다 0.2%0 개선된 것이며, 국회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및 복지 등 예산 증액수요를 불요불급한 예산안의 감액 범위 내에서 반영함으로써 관리대상수지적자 규모를 예산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2012년 통합재정수지

18.1조원 (GDP 대비 1.4%)

2012년 관리대상수지

△14.3조원 (GDP 대비 △1.1%)

[표 2-10] 2012년 재정수지

(단위: 조워 %)

	2010 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B-A)
통합재정수지	16.7	5.3	18.1	12.8
(GDP 대비)	(1.4)	(0.4)	(1.4)	(1.0%p)
관리대상수지	-13.0	-25.0	-14.3	10.7
(GDP 대비)	(-1.1)	(-2.0)	(-1.1)	(0.9%p)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제2절 재정수지의 변화 추이와 국제비교

최근 재정수지 변화 추이

[그림 2-8]은 최근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수지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1980년대 전반까지 경제개발지원 등의 영향으로 적자기조가 지속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재정

⁹⁾ 사회보장성 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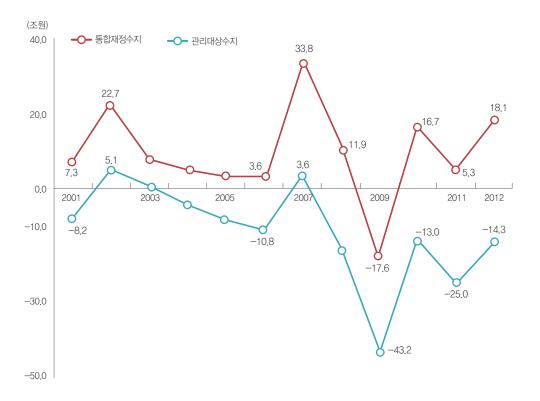
¹⁰⁾ GDP 대비 비율은 2012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치(예산안 편성 당시에 비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을 4.5%에서 3.7%로 하향 조정)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이다.

긴축, 3저호황 등으로 전반적인 균형기조에 진입하였다. 이후 1998년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의 재정적 자가 발생하였으나 지출억제 노력과 재정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에는 흑자를 회복하여 2002년에는 5.1조원(GDP대비 0.7%)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시적으로 3.6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던 2007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수지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었던 2008년과 2009년에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여 그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43.2조원(2009년)에 이르렀다.

2010년 이후 경제 회복세에 의한 재정수입 증가 등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추세이며, 정부는 2012년에 이러한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망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관리 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큰 상황이다.

이울러 국회예산정책처(3.5%), 한국경제연구원(3.2%) 등 다수의 기관들이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4.5%)에 비하여 낮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을 하회할 경우 조세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재정수지 개선 규모가 정부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8] 최근 재정수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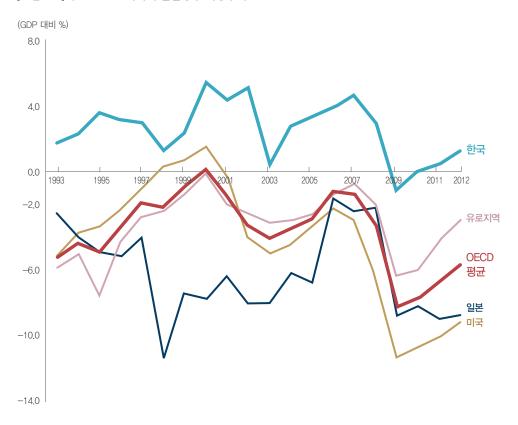
주: 2010년까지는 결산기준이며, 2011년과 2012년은 예산기준

재정수지 국제비교

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s)는 GDP 대비 $\Delta 5.9\%$ 수준으로 2009년 $\Delta 8.3\%$ 이후 개선 추세가 지속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Δ 1 \sim Δ 4%)으로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 자료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1.3% 흑자로 전망되며 이는 OECD 평균 뿐 아니 라 일본($\triangle 8.9\%$), 미국($\triangle 9.3\%$)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OECD국가 일반정부 재정수지 GDP 대비 평균 △5.9%

[그림 2-9] 주요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0, 2011,11

제3절 국가채무의 의의 및 구성

1. 국가채무의 의의

국가채무의 정의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는 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제91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는 국가채무에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발행채권',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국가보증채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은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과 '채권 또는 차입금 가운데 국가의다른 회계 또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화

「국가재정법」 제86조는 정부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동법 제91조제1항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실적ㆍ계획 및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 증감 전망 등을 포함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국회가 예산안 심의 시 동 계획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4항에서도 국가결산보고서에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결산 심의 시에도 국회가 국가채무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국가채무의 종류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등으로 구성된다.

국채

국채의 종류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채권(외화표시)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의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국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2010회계연도 결산 기준 392,2조원의 국가채무 총액 중

국가채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순채무 93.6%인 367.2조원이 국채일 정도로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세 종류로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 제2종), 외화표시 외국환평형 채권 등으로 구분된다.¹¹⁾ 제3종 국민주택채권과 출자재정증권은 제도상 발행은 가능하나 2000년 이후 발행되지 않고 잔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차입금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의미한다. 차입대상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국내차입금과 IBRD, ADB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해외차입금으로 구분된다. 2010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 중 차입금은 3.5조원 규모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2010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 중 국고채무부담행위는 3,1조원 규모이다.

지방정부 순채무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제비교 등을 위해 국가 채무관리계획에서 1997년 이후 매년 지방정부 순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2010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 중 지방정부 순채무는 18.4조원 규모이다.

¹¹⁾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2003년 11월부터 국고채로 통합발행 되고 있다.

제4절 국가채무 현황

2012년 국가채무

445.9조원 (GDP 대비 33.3%)

2012년 유형별 국가채무

적자성채무 221.0조원 금융성채무 225.0조원

2012년 국가채무는 445.9조원(GDP 대비 33.3%)

2012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2011년 예산 기준 435.5조원¹²보다 10.4조원 증가한 445.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예산 기준 35.1%에서 2012년에는 33.3%¹³로 1.8%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 규모는 448.2조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3조원 축소 조정하였다.

최근 국가채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 말 대비 2009년에 50.6조원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¹⁴⁾은 9.6%이다.

국가채무 규모를 그 성질에 따라 향후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 자성 채무와 대응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채무인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2년 예산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가 221.0조원으로 전체의 49.6%, 금융성 채무가 225.0조원으로 50.4%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 총 149.2조원(2012년 순증 규모는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일반회계 적자국채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 국가채무 전체 증가율 9.6% 및 적자성 채무 증가율 13.6%를 크게 웃도는 24.1%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바, 최근 국가채무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에 총 15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무의 경우도 동 기간 중 연 평균 증가율이 13.4%에 이르고 있어 최근 금융성 채무(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 6.3%)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12) 435,5}조원은 2011년 예산 기준 전망치이며, 기획재정부가 2011년 10월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일반회 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10,4조원) 및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2,7조원) 발행 감소 등에 따라 2011년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를 422,7조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GDP 대비 비율은 2012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치(예산안 편성 당시에 비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을 4.5%에서 3.7%로 하향 조정)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이다.

¹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1년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2011.10)에 따른 전망치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2-11]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2008 경사	2008 결산 2009 결산 2010 결산 -		2011		2012 예산	연평균
	2000 달년			예산	전망	2012 에닌	증가율
국가채무 (GDP 대비)	309.0 (30.2)	359.6 (33.8)	392.2 (33.5)	435.5 (35.1)	422.7 (33.3)	445.9 (33.3)	9.6 -
적자성 채무	132,6	168,7	193.3	220.0	208.7	221,0	13.6
일반회계 적자국채	63.0	97.0	119.7	146.7	136.3	149.2	24.1
공적자금 국채전환	49.2	49.5	47.0	47.0	45.7	45.7	-1.8
기타	20.4	22,2	26.6	26.3	26.7	26.1	6.4
금융성 채무	176.4	190.9	199.0	215.5	214.0	225.0	6.3
외평기금·채권	94.0	104.9	120.6	138.4	137.7	155.7	13.4
국민주택기금 · 채권	45.2	48.5	49.3	48.2	48.6	48.5	1.8
기타	37.2	37.5	29.1	28.9	27.7	20.7	-13.6

주: 2008~2010년은 결산 기준, 2011년 전망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2010.10) 기준이며,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2011년 전망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대한민국정부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2011.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그림 2-10] 국가채무 및 일반회계 적자국채 추이



국가채무 중기 전망 및 실현가능성

[표 2-12] 성질별 국가채무 중기 전망

정부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및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중기 전망을 살펴보면, 향후 국가채무 전체의 증가 속도 및 적자성 채무의 증가속도가 이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속도의 감소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15년 27.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예산 및 정부의 중기 전망에 따른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9.6%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동 기간 중 연평균 일반회계 적지국채는 $\Delta 0.1\%$ 로 오히려 감소하며, 외국환평형기금의 채무는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이는 각각의 2008 \sim 2012년간 증가율인 24.1%, 13.4%에 비하여 대폭 감소된 수치이다.

(단위: 조원, %)

1.8

-13.6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2011~2014	2008~2012
국가채무 (GDP 대비)	445.9 (33.3)	460.0 (31.3)	466.4 (29.6)	471.6 (27.9)	1.9 -	9.6
적자성 채무	221,0	223,2	218,6	214.0	-1.1	13.6
일반회계 적자국채	149.2	152.0	150.9	148.8	-0.1	24.1
공적자금 국채전환	45.7	45.5	43.6	42.6	-2.3	-1.8
기타	26.1	25.7	24.1	22.6	-4.7	6.4
금융성 채무	224.9	236,8	247.8	257.6	4.6	6.3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155.7	170.8	183.9	195.8	7.9	13.4

48.8

17.2

48.6

15.3

48.5

13.3

0.0

-13.7

주: 2012년은 확정예산, 2013~2015년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기준

서민주거안정용 국채

기타

자료: 대한민국정부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2011.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48.5

20.7

정부의 이러한 전망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2011~2015년 중 실질성장률 4.5%, 경상성장률 7.4%가 유지되며 국세수입은 연평균 8.7%가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4.8% 증가에 그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것인바, 최근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주요 선진국의 경제 회복세 둔화, 유럽지역 재정악화 문제 확산 및 이

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¹⁵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표 2-13] 중기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9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5.3	18.1	33.8	38.3	42.2
(GDP 대비)	(0.4)	(1.4)	(2.3)	(2.4)	(2.5)
관리대상수지	-25.0	-14.3	0.2 (0.0)	3.1	5.3
(GDP 대비)	(-2.0)	(-1.1)		(0.2)	(0.3)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표 2-14] 중기 총수	·입·총지출 전당	방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총수입)	314.4	343.5	375.7	395.8	415.3	7,2
예산 수입	212,1	234.0	259,4	273.9	286.8	7.8
국세수입	187.6	205.8	224.2	242.6	262.3	8.7
세외수입	24.5	28.2	35.2	31.3	24.5	0.0
기금 수입	102.2	109.5	116.3	121.9	128.5	5.9
재정지출(총지출)	309.1	325.4	341.9	357.5	373.1	4.8
예산 지출	216.3	228.1	239.1	248.9	260.0	4.7
기금 지출	92.7	97.3	102.9	108.6	113.1	5.1

주: 2011 · 2012년은 확정예산, 2013~2015년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1,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따라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의 주안점을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재정수입 증가 보다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와 최근 재정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의무지출 성격의 재정지출 증가 억제 및 재정규율 확립을 통한 지출 총량 통제장치 마련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증가율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 및 세무행정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과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지출 증가¹⁶ 및 남북 경제협력 · 통일정책 관련 재정부담 등 국가채무 증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중 · 장기 재정위험요소들에 대한 지속적 점 검 및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2년 국가보증채무

38.0조원 (GDP 대비 2.8%)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란 정부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58조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2011년말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36.5조원(GDP 대비 2.9%) 규모이다.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24조원으로 보증채무의 대부분(65.8%)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보증잔액이 5.9조원이며, 장학재단채권의 보증잔액이 5.3조원 규모이다. 정부는 2012년말 보증채무의 규모를 2011년에 비해 1.5조원 증가한 38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보증잔액이 3.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주로 기인하 며, 한국장학재단채권의 경우 향후 보증채무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한편, 정부는 2012년 GDP 대비 보증채무 비중이 2009년 수준인 2.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보증채무 현황]

(단위: 조워 %)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망
보증채무 (GDP대비 %)	28.1 (2.7)	29.8 (2.8)	34.8 (3.0)	36.5 (2.9)	38.0 (2.8)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8.0	27.3	26.7	24.0	24.1
구조조정기금채권	_	0.8	4.0	5.9	5.4
한국장학재단채권	_	_	2.5	5.3	8.4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_	1.5	1.5	1.2	_
수리자금	0.15	0.1	0.1	0.1	0.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1~201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1, 10

¹⁶⁾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사회보장재정 장기추계 결과에 따르면 가장 보수적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2011년 91.5조원(GDP 대비 7.8%)인 공공사회복지지출비가 2030년에는 482,5조원(GDP대비 13.85%), 2050년에는 1,209.7조원(GDP대비 17.62%)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 및 통계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2.2.), 조세연구원도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기초로 2050년까지의 중앙정부 재정을 전망한 결과 조세부담률을 20.8%로 유지할 경우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증가하면서 2050년에는 국가채무규모가 GDP 대비 1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하였다.(자료: 박형수·전병목,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2012년 예산 및 기금

제1절 2012년 예산

1, 예산 총칙

세입세출예산총액

2012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는 223조 1,384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조 5,490억원으로 9.9% 증가하였다. 특별회계 중 증가율이 높은 순서는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가 56.8% 증가한 13조 6,814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가 37.7% 증가한 990억원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감소율이 높은 순서는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가 35.4% 감소한 5,317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34.2% 감소한 8,986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회계

223조 1,384억원

특별회계

59조 5.490억원

[표 2-15] 세입세출예산총액

(단위: 억원, %)

	2011	2012	증	: : 감
	(A)	(B)	(B-A)	(B-A)/A
일반회계	2,099,303	2,231,384	132,081	6.3
특별회계	541,628	595,490	53,862	9.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7,267	136,814	49,547	56.8
교통시설특별회계	144,899	150,101	5,202	3.6
등기특별회계	2,401	2,494	93	3.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0,847	46,946	6,099	14.9
교도작업특별회계	430	420	-10	-2.3
환경개선특별회계	42,715	43,640	925	2.2
우체국보험특별회계	6,528	7,038	510	7.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869	3,850	-19	-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7,859	8,028	169	2.2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8,227	5,317	-2,910	-35.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3,664	8,986	-4,678	-3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9	990	271	37.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526	94,085	-4,441	-4.5
양곡관리특별회계	13,890	14,287	397	2.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164	7,759	595	8.3
조달특별회계	3,822	2,547	-1,275	-33.4
우편사업특별회계	36,721	36,992	271	0.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2,080	25,197	3,117	14.1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국가재정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조 3,000억원이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재정증권 최고한도액

2012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2012년 통합계정의 최고한도액은 20조원으로 전년 대비 5조원(33.3%) 증가하였다. 양곡관리특별 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최고한도액은 전년과 변동 없이 각각 2조원, 10조원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최고한도액은 각각 3.000억원, 3.500억원이다.

[표 2-16] 재정증권 최고한도액

(단위: 억원, %)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통합계정	150,000	200,000	50,000	33.3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20,000	_	_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0	100,000	_	_	
국유재산관리기금	_	3,000	3,000	순증	
공적자금상환기금	_	3,500	3,500	순증	

주: 통합계정은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연도

차입금 · 국채발행한도액

2012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2012년 국민주택기금의 한도액은 2011년 대비 5,000억원(4.3%) 감소한 11조원이다. 2012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한도액은 2011년 대비 2조 5,000억원(3.0%) 감소한 80조원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의 한도액은 2011년과 동일한 10억달러이다. 이 중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2-17] 차입금·국채발행한도액

(단위: 억원, %)

	2011	2012	증감	
	(A)	(B)	(B-A)	(B-A)/A
국민주택기금	115,000	110,000	-5,000	-4.3
공공자금관리기금	825,000	800,000	-25,000	-3.0
외국환평형기금	10억달러	10억달러	_	_

주: 외국환평형기금은 미합중국화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연도

이용(移用)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표 2-18] 이용가능 경비 또는 비목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자료: 기획재정부,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2, 2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 통신 사업·기동전력 사업·함정 사업·항공기 사업·화력탄약 사업·감시정찰 정보 전자전 사업·정밀타격/신특수무기 사업·국방연구개발 사업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

「정부기업예산법」제19조,「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표 2-19] 수입금 마련 지출의 범위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2. 2

목적예비비

2012년 목적예비비는 1조 2,000억원으로 예비비 총액(2조 4,000억원)의 50,0%에 해당한다.

[표 2-20] 목	·적예비비 규모 및 용도 현황	(단위: 억원)
	2011	2012
규모	12,000	12,000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액 및 전염병 예방 · 대책비 포함)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액 및 전염병 예방 · 대책비 포함)
용도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레바논 · 아이티 · 소말리아 및 아랍에미리트 (UAE) 해외 파병경비	레바논 · 아이티 · 소말리 해외 파병경비
예외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않음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않음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연도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정부기업예산법」제14조 및 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2012 년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1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은 각각 100억원, 1,100억원이다. 2012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금은 2011년 (364억원) 대비 154억원(42,3%) 증가한 518억원이며, 2012년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2011년(3,294억원) 대비 202억원(6,1%) 감소한 3,093억원이다.

[표 2-21]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단위: 억원, %)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전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300	100	-200	-66.7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전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700	1,100	400	57.1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금	364	518	154	42.3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294	3,093	-202	-6.1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연도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

「정부기업예산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살펴보면, 2012년 우체국예금 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은 2011년(612억원) 대비 342억원(56.0%) 증가한 954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1년 (1,459억원) 대비 407억원(27.9%) 증가한 1,866억원이다. 반면 2012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 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은 2011년(169억원) 대비 57억원(33.9%) 감소한 112억원으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2012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은 2011년(3,294억원) 대비 202억원(6.1%) 감소한 3,093억원이다.

[표 2-22]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

(단위: 억원, %)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6,349	7,051	702	11,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459	1,866	407	27.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69	112	- 57	-33.9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5	58	3	5.4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902	3,057	156	5.4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3,294	3,093	-202	-6.1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12	954	342	56.0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연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011년(2,070억 8,000만원) 대비 519억 8,000만원 증가한 2,590억 6,000만원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세입예산

2012년 세입예산

2012년 세입예산총액은 2011년 예산 대비 18.6조원(7.0%) 증가한 총 282,7조원이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2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3,2조원(6.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5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9.8%)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223.1조원 특별회계 59.5조원

[丑 2-23	2012	년 세입	J예산
---------	------	------	-----

(단위: 조원, %)

	2011	2011	증감			
	(A)	(B)	(B-A)	(B-A)/A		
예산총계	264.1	282,7	18.6	7,0		
일반회계	209.9	223.1	13.2	6.3		
국세	180.8	197.3	16.5	9.1		
세외수입	29.2	25.9	-3.3	-11.3		
특별회계	54.2	59.5	5.3	9,8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세수입

국세수입(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은 2007년에 161.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입실적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2008년에는 167.3조원으로 전년 대비 3.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9년에는 164.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2010년 국세수입 실적은 177.7조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하였으며, 2011년 국세수입 예산은 187.6조원으로 2010년 결산 대비 5.6% 증가하였다. 2012년 국세수입 예산은 205.8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9.7%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세수입 205.8조원

[표 2-24] 국세수입 추이

(단위: 억원, %)

	-					(단취, 작편, 76)
	2007 실적	2008 실적	2009 실적	2010 실적	2011 예산	2012 예산
국세	1,614,591	1,673,020	1,645,407	1,777,184	1,876,361	2,057,575
일반회계	1,553,902	1,607,200	1,579,287	1,709,387	1,807,656	1,972,755
내국세	1,302,401	1,337,252	1,337,060	1,406,279	1,513,632	1,661,454
소득세	388,560	363,551	344,233	374,619	400,379	457,699
법인세	354,173	391,545	352,514	372,682	413,001	445,458
상속증여세	28,419	27,771	24,303	30,762	30,921	36,879
재평가세	_	_	_	_	_	_
부가가치세	409,419	438,198	469,915	491,212	529,373	568,016
개별소비세	51,611	44,994	36,420	50,658	50,124	60,377
증권거래세	34,688	27,875	35,339	36,671	39,207	42,480
인지세	5,880	5,729	5,437	5,219	5,324	6,108
과년도수입	29,651	37,589	68,899	44,456	45,303	44,437
전화세	_	_	_	_	_	_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114,635	119,093	100,920	139,701	123,668	136,863
교육세	38,612	41,796	37,543	46,450	46,018	47,696
종합부동산세	24,143	21,299	12,071	10,289	10,681	10,631
방위세	3	3	_	_	_	_
관세	74,108	87,757	91,691	106,663	113,657	116,111
특별회계	60,689	65,860	66,120	67,797	68,705	84,820
주세	22,680	28,311	27,708	28,783	26,465	29,481
농어촌특별세	38,009	37,549	38,412	39,014	42,240	55,339

주: 2010년까지는 실적 기준, 2011년과 2012년은 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위원회,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소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 12

🚅 국세수입 추이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함으로 인해 현재의 14개 세목으로 모습을 갖춘 2005년의 국 세수입은 127.5조원이었다. 3년 후인 2008년의 국세수입은 167.3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국제금융 위기로 나빠진 거시경제 환경으로 인해 2009년의 국 세수입은 164.5조원으로 전년도 국세수입에 비해 1.7% 감소하였다.

2011년 10월에 행정부는 2012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2011년 예산보다 약 9.7% 증가한 205.9조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세법 개정 등을 이유로 0.1조원 감소한 205.8조워으로 확정하였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수입은 연평균 7.0%씩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 GDP 연평균 증가율 6.6%보다 약 0.4%p 높은 증가율이다.

경상 GDP에 대한 국세수입 비중은 2007년에 16.6%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0년, 2011 년, 2012년에 각각 15.3%, 15.0%, 15.4%를 나타내면서 15%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상 GDP와 국세수입의 추이]

(다의· 조워 %)

							(E11. 42, 7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가율
경상 GDP	975.0	1,026.5	1,065.0	1,172.8	1,250.5	1,334.4	6.6
국세수입	161.5	167.3	164.5	177,7	187,6	205,8	7.0
GDP 대비	16,6	16.3	15.4	15.2	15.0	15.4	_

주: 1, 2011~2012년의 경상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금액임

^{2, 2010}년까지의 국세수입은 실적치이며, 2011 \sim 2012년의 국세수입은 확정예산임

자료: 1. 통계청 e-나라지표

^{2.} 국회예산정책처, 「2011~2015년 경제 전망」, 2011. 10

^{3.}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세출예산

2012년 세출예산

일반회계 223.1조원 특별회계 59.5조원 2012년 세출예산은 2011년 예산 대비 18.6조원(7.0%) 증가한 총 282,7조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3.2조원(6.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5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9.8%) 증가하였다.

[표 2-25] 2012년 세출예산 (단위: 조원, %)									
	2011년	2012년	증	·감					
	(A)	(B)	(B-A)	(B-A)/A					
예산총계	264.1	282.7	18.6	7.0					
일반회계	209.9	223.1	13.2	6.3					
특별회계	54.2	59.5	5.3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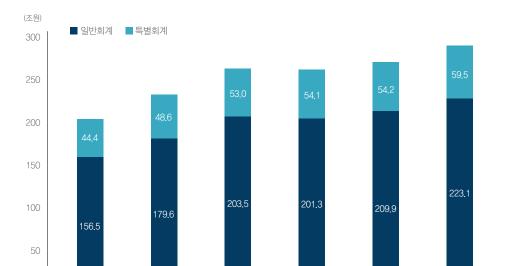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세출예산 추이

2012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18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이후 회계별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6] 회계별 세출예산	추이					(단위: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회계	1,565,177	1,795,537	2,035,497	2,012,835	2,099,303	2,231,384
특별회계	444,342	486,322	529,750	540,509	541,626	595,490
농어촌구조개선	86,715	83,583	87,853	93,305	87,267	136,814
교통시설	129,027	139,424	170,800	146,999	144,899	150,101
등기	2,727	2,563	2,238	2,298	2,401	2,494
교도작업	507	440	450	420	430	420
에너지및자원사업	38,944	56,178	38,018	45,075	40,847	46,946
환경개선	28,967	31,309	41,172	39,651	42,715	43,640
우체국보험	5,941	5,795	5,701	6,152	6,528	7,038
광역·지역발전	67,929	78,377	90,769	98,615	98,526	94,085
주한미군기지이전	5,049	2,629	2,130	6,967	3,869	3,8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801	3,267	5,771	6,951	7,859	8,028
국방 · 군사시설이전	2,951	3,275	2,218	2,599	8,227	5,317
혁신도시건설	_	1,113	2,956	11,469	13,664	8,98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917	569	497	719	990
양곡관리	12,937	15,307	14,658	13,368	13,890	14,287
책임운영기관	10,572	8,923	9,038	8,476	7,164	7,759
조달	2,022	2,272	2,947	3,437	3,822	2,547
우편사업	30,384	31,854	33,343	34,427	36,721	36,992
우체국예금	18,872	19,095	19,119	19,804	22,080	25,197

주: 1. 확정예산 기준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명 변경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그림 2-11] 회계별 세출예산 추이

0

🚅 예비비

2007

2008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계상해놓은 경비를 말한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필요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9

2010

2011

2012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된다. 일반예비비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목적예비비는 매년 예산 총칙에서 용도를 제한하는 예비비를 말한다.

2012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1조 2,000억원과 목적예비비 1조 2,000억원으로 총 2 조 4,000억원이다. 2012년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 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레바논·아이티·소말리 해외 파병경비에만 사용하 도록 용도를 제한하였다.

[연도별 예비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Olucel에 대중	Mulul	일반0	H H	
	일반회계 세출 (A)	예비비 합계	금 액 (B)	비 중 (B/A)	목적예비비
2006	1,469,625	25,498	10,498	0.70	15,000
2007	1,565,177	23,000	11,000	0.70	12,000
2008	1,795,537	23,000	11,000	0.61	12,000
2009	2,035,497	39,885	11,000	0.54	28,885
2010	2,012,834	21,000	11,000	0.55	10,000
2011	2,099,303	24,000	12,000	0.57	12,000
2012	2,231,384	24,000	12,000	0.54	12,000

주: 1. 추경 포함한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당해연도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채무를 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에 서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제외한 2012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 1조 6,598억원, 특별회계 5,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1,082억원 감소한 2조 1,598억원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성격상 당해연도의 재원형편상 세출예산이나 계속비에 계상하지 못하는 필수불 가결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제도이므로 그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2, 2006}년 일반예비비에는 용도지정 250억원(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포함

[표 2-27] 2012년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단위: 억원, 백만 달러)

	회계 및 소관	IL 하		금 액	
	외계 및 소단	사항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외교통상부	재외공관국유화사업	(\$50) 570	- -	(-\$50) -570
일	국 방 부	경상운영비 (급식, 장비유지 등)	(\$495) 16,894	(\$498) 16,485	(\$3) -409
반 회	방위사업성	방위력개선비	94	_	-94
계	해양경찰청 대형함정		122	113	-9
		소 계	(\$545) 17,680	(\$498) 16,598	(-\$47) -1,082
<u></u> 특	국토해양부	일반국도 건설	4,000	4,000	-
별회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00	1,000	-
계		소 계	5,000	5,000	_
	합 계		(\$545) 22,680	(\$498) 21,598	(-\$47) -1,082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때에는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명시이월비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제도이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라는 예산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이므로 가급적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28] 2012년 명시이월비 내역

(단위: 억원, 백만 달러)

		금액			
소관	사 업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사유 및 내역
	· 군수지원및협력	(\$6) 64	- -	(-\$6) -64	설계 지연에 의한 현물 군사건설사업
국 방 부 (일반회계)	·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420	323	-97	지연 등
	소 계	(\$6) 484	323	(–\$6) –161	
	· 기동전력	115	_	-115	
	· 함정	20	-	-20	
	· 항공기	(\$8) 97	(\$65) 693	(\$56) 596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 정밀타격/신특 수무 기	(\$10) 110	-	(-\$10) -110	지연 및 신장비 개발 지연 등
	· 국방연구개발	71	-	-71	
	· 성능개량	-	70	70	
	소 계	(\$18) 413	– 763	(–\$18) 350	
	합 계	(\$24) 897	(\$65) 1,086	(\$41) 189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명시이월 · 계속비 · 사고이월

명시이월비는 원칙적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점 에서 2년 이상 5년간 집행할 수 있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또한 명시이월비는 당초예산 편 성 시에 계상하므로 사전결정이 필요한 반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당시에는 연도 내 지출이 가 능하였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출하지 못하여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결정되는 사고이월과 차이가 있다.

계속비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예산을 말한다.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비 제도는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대형건설 사업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사업 등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집중 투자 등 계속비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행계획 수립, 경제·사회 환경 변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사업 기간과 연부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공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계속비 예산의 총 사업비는 31조 9.293억원이며, 2012년 연부액은 4조 292억원이다.

[표 2-29] 2012년 계속비 예산

(단위: 억원)

	계속비						계속비	연부액					
	총액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예산	277,916	2,225	5,200	10,693	14,346	57,293	52,810	46,915	39,359	23,430	16,784	8,860	-
2012 예산	319,293	2,225	5,200	10,693	14,346	57,293	52,810	46,915	40,292	32,443	28,048	24,181	4,847

주: 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12년 계속비 예산의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30억원 증가하였으며, 2012년 계속비 연부액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역간선국도 건설사업 등의 사업비 증액 소요를 반영하여 635억원이 증가되었고, 2013년에 605억원 감액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표 2-30] 2012년 계속비 예산의 국회 심의 결과

(단위: 억원)

	총사업비			계속비 연부액		
	증시합니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안(A)	319,263	39,657	33,048	28,048	24,181	4,847
예산(B)	319,293	40,292	32,443	28,048	24,181	4,847
차이(B-A)	30	635	-605	-	_	-

주: 확정예산 기준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 12

(단위: 백만원)

2012년에 추진되는 계속비 예산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대법원, 환경부 등 총 3개 부처에 24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22개 사업, 대법원 1개 사업(국유재산관리기금), 환경부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액	2011 이신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역간선 국도	2011예산	2,461,582	2,268,636	192,946	_	-	-	-
2차건설	2012예산	2,450,795	2,268,636	182,159	_	_	_	-
지역간선 국도 3차건설	2011예산 2012예산	2,965,370 3,197,181	2,416,604 2,416,604	450,000 374,730	98,766 217,000	- 188,847	-	- -
지역간선	2011예산	2.389.929	1.494.329	400.000	495,600	_	_	_
국도 4차건설	2012예산	2,541,495	1,494,329	393,515	335,000	318,651	_	_

600,000

595,301

400,000

196,602

520,000

459,705

600,000

680,500

400,000

342,000

550,000

424,000

600,000

653,000

400,000

350,000

556,537

376,000

527,580

666,456

358,457

340,000

283,109

325,377

지역간선

5차건설

지역간선

6차건설

물류간선 1차건설

국도

국도

2011예산 4,086,280

2012예산 1,878,209

2012예산 3,156,168

2012예산 3,072,445

4,353,957

1,882,687

2012예산

2011예산

[표 2-31] 2012년 주요 계속비 사업 현황

계속비 2011 이저

1,758,700

1,758,700

324,230

324,230

1,529,631

1,529,631

주: 확정예산 기준

자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 12

제2절 2012년 기금

1. 기금 현황

2012년 기금 수

65개

2012년 기금 운용 규모(총계)

379조 4,581억원

2012년 기금 수는 총 65개로, 사업성 기금 44개, 사회보험성 기금 6개, 계정성 기금 5개, 금융성 기금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11년 64개에 비하여 1개 증가한 것으로 2011년 3월 30일 「국유재산법」개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정부 내부수입 등을 포함한 기금 수입은 379조 4,581억원이며,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지출은 136조 1,219억원이다.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내부지출 159조 3,145억원과 여유자 금운용 131조 253억원을 지출개념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2-32] 2012년 기금 수입 및 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수 입	사업비				
사업성(44)	692,808	375,446				
사회보험성(6)	1,259,055	891,181				
계정성(5)	1,557,251	22,579				
금융성(10)	285,467	72,013				
합 계(65)	3,794,581	1,361,219				

주: 사업비에는 기금운영비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2012년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2011년 대비 10.2조원(2.7%) 증가한 379.5조원이다. 수입은 자체수입 125.0조원, 정부내부수입 68.7조원, 차입금 98.6조원, 여유자금 회수 87.2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출은 사업비로 86.8조원, 기금운영비로 2.3조원, 정부내부지출등으로 159.3조원, 여유자금운용으로 131.0조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비로 사회보험성 기금에서 41.2조원, 금융성 · 계정성 기금에서 8.6조원, 사업성 기금에서 37.1조원 등을 지출할 계획이다.

[표 2-33] 2012년 기금 운용 규모 및 조성 규모

(단위: 조원, %)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운용규모		369.3	379.5	10.2	2.7
	자체수입	117,3	125.0	7.7	6,6
수입	정부내부수입	61.6	68.7	7.1	11.5
₩ 〒日	차입금	102.0	98.6	-3.4	-3.3
	여유자금회수	88.5	87.2	-1.3	-1.5
	사업비	85.7	86.8	1,1	1,3
	사회보험성	37.9	41.2	3.3	8.4
	금융성 · 계정성	12,8	8.6	-4.2	-33.3
지출	사업성	34.9	37.1	2.2	6.4
	기금운영비	2.4	2,3	-0.1	-3.1
	정부내부지출 등	152,1	159.3	7.2	4.8
	여유자금운용	129,2	131.0	1.8	1.4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2,2

3. 기금 수입

2012년 각 기금별 수입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2년에 자체수입이 큰 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43조 5,893억원), 국민주택기금(12조 1,166억원), 공무원연금기금(10조 9,562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기금(5조 6,634억원) 등이 있다.

[표 2-34] 2012년 기금별 수입 계획

(단위: 억원)

	31,20122116216117					(단위: 억원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지금회수	합계
	과학기술진흥기금	500	749	-	149	1,399
	관광진흥개발기금	6,705	41	_	405	7,150
	국민건강증진기금	16,662	2,500	_	1,051	20,213
	국민주택기금	121,166	90,282	90,000	70,852	372,300
	국민체육진흥기금	6,091	1,771	_	1,620	9,482
	국유재산관리기금	9,686	_	_	_	9,686
	국제교류기금	599	103	_	300	1,002
	군인복지기금	4,840	238	_	2,799	7,877
	근로복지진흥기금	1,800	222	_	2,425	4,447
	금강수계관리기금	974	_	_	_	97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071	_	_	_	2,071
	남북협력기금	885	7,000	_	8,253	16,13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826	32	_	3,299	26,15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86	350	_	2,094	2,629
	농지관리기금	10,940	113	_	5,593	16,645
	대외경제협력기금	1,130	4,990	_	693	6,813
사	문화예술진흥기금	802	590	_	1,277	2,669
업 성	문화재보호기금	55	939	_	308	1,302
(4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797	1,578	_	3,788	9,163
	방 송통 신발전기금	3,251	652	_	4,356	8,25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	558	_	69	633
	보훈기금	2,483	250	_	3,160	5,894
	사학진흥기금	2,041	1,450	_	510	4,002
	석면피해구제기금	95	45	_	5	145
	수산발전기금	5,302	660	_	828	6,79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18	53	_	448	619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2	2,137	_	27	2,185
	언론진흥기금	104	100	_	357	561
	여성발전기금	47	1,009	_	43	1,09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26	_	_	47	773
	영화발전기금	1,170	419	_	1,289	2,877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904	_	_	190	2,095
	응급의료기금	126	1,901	_	353	2,380
	임금채권보장기금	4,061	32	_	2,110	6,49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29	5,323	_	318	6,270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합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782	330	-	870	3,981
	전력산업기반기금	18,675	132	_	3,167	21,974
	정보통신진흥기금	3,102	3,642	_	4,554	11,298
11	중소기업진흥및창업기반기금	42,742	3,877	26,517	267	73,402
사 업	지역신문발전기금	23	_	_	230	253
성 (44)	청소년육성기금	261	344	_	230	835
(44)	축산발전기금	5,777	-	_	1,593	7,37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76	-	_	79	155
	한강수계관리기금	4,346	_	_	_	4,346
	소계	311,584	134,412	116,517	130,006	692,808
	공공자금관리기금	45,230	285,891	798,336	1,909	1,131,366
	공적자금상환기금	20	22,896	_	-	22,916
계 정	복권기금	30,037	155		6,742	36,934
성	양곡증권정리기금	3	4,300	_	80	4,383
(5)	외국환평형기금	35,155	180,000	10,700	135,796	361,652
-	소계	110,445	493,242	809,036	144,527	1,557,251
	구조조정기금	4,816	_	_	4,936	9,752
	기술신용보증기금	11,167	38	_	11,886	23,09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008	-		10,644	14,65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373	369	_	345	1,088
금	무역보험기금	10,455	300		14,518	25,272
융 성	부실채권정리기금	21,770	-	_	1,568	23,339
(1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66	180	_	1,723	2,239
	신용보증기금	25,690	88	_	34,153	59,93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1,188	-	58,000	16,227	105,4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897	_	_	10,792	20,689
	소계	119,730	975	58,000	106,792	285,467
	고용보험기금	56,889	4,814	_	22,767	84,471
사	공무원연금기금	109,562	22,736	2,268	27,441	162,007
회	국민연금기금	435,893	107	_	356,307	792,307
보 험	군인연금기금	5,021	21,892	_	164	27,077
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4,498	4,940	_	43,474	92,912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6,634	3,453	-	40,194	100,281
	소계	708,497	57,942	2,268	490,347	1,259,055
	합계	1,250,256	686,571	985,821	871,672	3,794,581

자료: 기획재정부

4. 기금 지출

2012년 기금 사업비 총액

86.8조원

2012년 기금 운영비 총액

2.3조원

2012년 각 기금별 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2년에 사업비 지출이 큰 기금에는 국민주택기금(16조 5,557억원), 공무원연금기금(12조 5,615억원), 국민연금기금(12조 335억원) 등이 있다.

[표 2-35] 2012년 기금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기금명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등	여유자금운용	합계
	과학기술진흥기금	1,007	9	344	39	1,399
	관광진흥개발기금	6,088	6	600	457	7,150
	국민건강증진기금	18,717	1	385	1,109	20,213
	국민주택기금	165,557	5	159,752	46,986	372,300
	국민체육진흥기금	7,120	224	-	2,138	9,482
	국유재산관리기금	9,618	18	50	_	9,686
	국제교류기금	493	126	-	383	1,002
	군인복지기금	4,745	-	-	3,131	7,877
	근로복지진흥기금	667	108	1,313	2,360	4,447
	금강수계관리기금	928	17	-	29	97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95	33	-	43	2,071
	남북협력기금	10,060	56	5,321	701	16,13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023	625	-	3,509	26,15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80	7	-	2,543	2,629
사	농지관리기금	8,933	575	5,000	2,137	16,645
업	대외경제협력기금	6,277	85	121	330	6,813
성 (44)	문화예술진흥기금	1,099	256	-	1,314	2,669
(44)	문화재보호기금	1,098	2	-	202	1,30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737	427	1,500	5,499	9,163
	방송통신발전기금	5,339	38	200	2,682	8,25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65	1	-	67	633
	보훈기금	1,222	13	4	4,655	5,894
	사학진흥기금	2,453	42	719	788	4,002
	석면피해구제기금	83	18	_	44	145
	수산발전기금	5,723	15	36	1,017	6,79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0	2	_	557	619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620	76	118	1,371	2,185
	언론진흥기금	231	10	_	320	561
	여성발전기금	1,041	_	15	43	1,099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기금	696	12	-	65	773
	영화발전기금	1,021	96	-	1,761	2,877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751	39		305	2,095

응급의로기급 1,989 1		기금명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등	여유자금운용	합계
자유무역해정이행지원기금 5,700 35 — 3,376 6,270 장애인교용축진및직업재활가금 1,830 459 227 6,495 3,981 전력산업기반기금 15,764 92 2,000 534 21,974 전력산업기반기금 15,764 92 2,000 6,270 11,298 전보통신전용기금 6,723 167 2,000 6,270 11,298 중소기민광업및전용기금 35,060 809 37,543 1,465 73,402 지역신문발전기금 105 7 — 3,981 253 참선목성기금 6,879 35 56 21,974 7,370 목절월실사용합리화기금 42 5 — 4,411 8 835 전략산업기반기금 4,262 73 — 11,298 4,346 전계 370,718 4,728 217,604 — 692,808 247,402기금 2,533 1 1,128,528 73,402 11,31,366 2,407 2,407 105 2,407 2,40		응급의료기금	1,989	1	_	390	2,380
상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임금채권보장기금	2,717	102	300	2,380	6,495
점택산업기반기금 15,764 92 2,000 534 21,974 정보통산진흥기금 6,723 167 2,000 6,270 11,298 중소기업참업및진흥기금 35,050 809 37,543 1,465 73,402 청산대용강기금 105 7 — 3,981 253 청산대용강기금 6,879 35 56 21,974 7,370 독창물질사용합리화기금 42 5 — 2,407 155 소계 370,718 4,728 217,604 — 692,808 공공자금관리기금 2,533 1 1,128,528 73,402 1,131,366 공격자금산환기금 4,7 — 2,233 142 22,916 보건기금 19,976 17 14,707 253 36,934 외국흥권정리기금 19,976 13 14,707 9,525 기술산용보증기금 12,577 1,551 1,500 108 23,091 논립수산업차산용보증기금 2,981 1,613 18,745 99,762 23,339 대로보험기금제점환리기금 9,975 968 — 4,346 25,272 부실채권정리기금 2,981 1,613 18,745 99,762 23,339 대로보험기금제점환리기금 2,981 1,613 18,745 99,762 23,339 대로보험기금제점환기금 4,79 153 69,613 1,131,366 105,415 주택금융산용보증기금 1,197 623 322 476 20,668 소계 63,074 8,939 99,838 22,916 285,467 교용보험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70 교용보험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70 교원인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70 교원인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교인인금기금 25,066 5 — 4,383 27,077 교인인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700	35	_	3,376	6,270
합성 정보통신원환기금 6.723 167 2,000 6,270 11,288 정소기업참업됐진하금 35,050 809 37,543 1,465 73,402 전설년환성기금 105 7 - 3,981 253 청소년왕전기금 6,879 35 56 21,974 7,370 통청물실사양합리화기금 42 5 - 2,407 155 한경수개관기금 4,252 73 - 11,208 4,346 조계 370,718 4,728 217,604 - 692,808 공공자금관리기금 2,533 1 11,28,528 73,402 1,131,366 공공자금관리기금 2,533 1 11,28,528 73,402 1,131,366 공공자금관리기금 4,77 - 22,393 142 22,916 설탕 4月 - - 2,4300 215 4,383 3248 현기금 - - - 4,300 215 4,383 324 한국한경원기금 - -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830	459	227	6,495	3,981
정성		전력산업기반기금	15,764	92	2,000	534	21,974
응답기담당답당[점 35,000 8,66 37,343 1,465 13,402 [44] 지역신문발전기금 105 77 - 3,981 253 35 4 실본당기금 6,879 35 56 21,974 7,370 특정물실사용합리하기금 4,252 73 - 11,298 4,346 2세 370,718 4,728 21,7604 - 692,808 24,346 24 3 1,128,528 73,402 1,131,366 24 2 3 2,393 142 22,916 24 2,393 142 22,916 24 2,393 142 22,916 24 2,393 142 22,916 24 2,393 142 22,916 24 2,393 24 2,391 24 22,916 24 2,391		정보통신진흥기금	6,723	167	2,000	6,270	11,298
(44) 지역신문발전기금 105 7 - 3,961 253 청소년육성기금 620 1 - 4,118 835 청소년육성기금 620 1 - 4,118 835 축산발전기금 6,879 35 56 21,974 7,370 특청출심사용합리화기금 42 5 - 2,407 155 한강수개관리기금 4,252 73 - 11,298 4,346 전계 370,718 4,728 217,604 - 692,808 공자금관리기금 2,533 1 1,128,528 73,402 1,131,366 공작지금상환기금 47 - 22,393 142 22,916 복권기금 19,976 17 14,707 253 36,934 3구분명항기금 - 5 102,567 835 36,934 3구분명항기금 - 5 102,567 835 36,934 3구분명항기금 - 144 6,158 7,370 9,752 소계 2,2556 23 1,272,495 400 1,557,251 2,259 2,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5,050	809	37,543	1,465	73,402
지수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지역신문발전기금	105	7	_	3,981	253
응점불사용합리화기금 425 73 - 11.298 4.346 전기		청소년육성기금	620	1	_	4,118	835
한강수개관기금 4,252 73		축산발전기금	6,879	35	56	21,974	7,370
공개 370,718 4,728 217,804 — 692,808 경공자금관리기금 2,533 1 1,128,528 73,402 1,131,366 공작자금산환기금 47 — 22,393 142 22,916 복권기금 19,976 17 14,707 253 36,934 양곡주권정리기금 — 4,300 215 4,383 외국환평양기금 — 5 102,567 835 361,652 전계 22,556 23 1,272,495 400 1,557,251 기술신용보증기금 12,577 1,551 1,500 108 23,091 동념산업자산용보증기금 2,775 583 — 155 14,652 동성사업자산용보증기금 2,775 583 — 4,346 25,272 부실채권정리기금 2,981 1,613 18,745 99,762 23,339 산업기반산용보증기금 1,88 105 — 692,808 2,239 산업기반산용보증기금 1,88 105 — 692,808 2,239 선명보험기금채권산환기금 479 153 69,613 1,131,366 105,4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97 623 322 4,76 20,689 소계 요청보험기금 4,197 623 322 4,76 20,689 소계 요청보험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국민연금기금 25,066 5 — 4,383 27,0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42	5	_	2,407	155
정상 대한 전 1,131,366 경제대상환기금 2,533 1 1,128,528 73,402 1,131,366 경제대상환기금 47 - 22,393 142 22,916 복권기금 19,976 17 14,707 253 36,934 양곡증권정기금 19,976 17 14,707 253 36,934 양곡증권정기금 4,300 215 4,383 361,652 전계 22,556 23 1,272,495 400 1,557,251 전계 22,556 23 1,272,495 400 1,557,251 기술신용보증기금 12,577 1,551 1,500 108 23,091 동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775 583 - 155 14,652 동어가목돈마런저축장려기금 9,727 583 - 155 14,652 동어가목돈마런저축장려기금 9,727 583 - 155 14,652 동어가목돈마런저축장려기금 9,727 688 - 4,346 25,272 부실채권정기금 2,981 1,613 18,745 99,762 23,339 선임기반신용보증기금 1,88 105 - 692,808 2,239 선임기반신용보증기금 1,88 105 - 692,808 2,239 선임기반신용보증기금 1,88 105 - 692,808 2,239 선임기반신용보증기금 4,197 623 3,500 304 59,930 에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9 153 69,613 1,131,366 105,415 주택금용신용보증기금 4,197 623 3,22 476 20,689 4계 63,074 8,939 99,838 22,916 285,467 3무원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4,015 4,		한강수계관리기금	4,252	73	_	11,298	4,346
정착		소계	370,718	4,728	217,604	_	692,808
지점 성성 (6) 임곡증권정리기금 19,976 17 14,707 253 36,934 성성 (6) 임곡증권정리기금 4,300 215 4,383 36,1652 전계 22,556 23 1,272,495 400 1,557,251 소계 22,556 23 1,272,495 400 1,557,251 구조조정기금 12,577 1,551 1,500 108 23,091 농립수산업자산용보증기금 2,775 583 - 155 14,652 농어가목돈마런저축장려기금 9,775 583 - 155 14,652 농어가목돈마런저축장려기금 9,775 583 - 155 14,652 농어가목돈마런저축장려기금 9,275 968 - 4,346 25,272 부실채권정리기금 2,981 1,613 18,745 99,762 23,339 산업기반산용보증기금 2,981 1,613 18,745 99,762 23,339 산용보증기금 29,630 3,199 3,500 304 59,930 에금보험기금채권산환기금 479 153 69,613 1,131,366 105,4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97 623 322 4,76 20,689 소계 63,074 8,939 99,838 22,916 285,467 국민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국민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산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공공지금관리기금	2,533	1	1,128,528	73,402	1,131,366
정성(5) 복권기금 19,976 17 14,707 253 36,934 양곡증권정리기금 - - 4,300 215 4,383 외국분평형기금 - 5 102,567 835 361,652 소계 22,556 23 1,272,495 400 1,557,251 소계 63,074 1,551 1,500 108 23,091 ★일소년양보증기금 2,775 583 - 155 14,652 농업사업무문만려지를 9,275 968 - 4,346 25,272 부실채권정리기금 2,981 1,613 18,745 99,762 23,33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8 105 - 692,808 2,239 <td>741</td> <td>공적지금상환기금</td> <td>47</td> <td>_</td> <td>22,393</td> <td>142</td> <td>22,916</td>	741	공적지금상환기금	47	_	22,393	142	22,916
(10년) 의국환평형기금		복권기금	19,976	17	14,707	253	36,934
의국환명항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_	_	4,300	215	4,383
구조조정기금 12,577 1,561 1,500 108 23,09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775 583 - 155 14,652 농어가목돈마런저축장려기금 972 22 1,088 무역보험기금 9,275 968 - 4,346 25,272 부실채권정리기금 2,981 1,613 18,745 99,762 23,33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8 105 - 692,808 2,239 신용보증기금 29,630 3,199 3,500 304 59,93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9 153 69,613 1,131,366 105,4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97 623 322 476 20,689 소계 63,074 8,939 99,838 22,916 285,467 공무원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국민연금기금 125,066 5 - 4,383 27,0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5)	외국환평형기금	_	5	102,567	835	361,652
기술신용보증기금 12,577 1,551 1,500 108 23,091 동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775 583 - 155 14,65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972 - - 22 1,088 무역보험기금 9,275 968 - 4,346 25,272 부실채권정리기금 2,981 1,613 18,745 99,762 23,33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8 105 - 692,808 2,239 산용보증기금 29,630 3,199 3,500 304 59,93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9 153 69,613 1,131,366 105,4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97 623 322 476 20,689 소계 63,074 8,939 99,838 22,916 285,467 국민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국민연금기금 25,066 5 - 4,383 27,0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ľ	소계	22,556	23	1,272,495	400	1,557,251
동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775 583		구조조정기금	-	144	6,158	7,370	9,752
동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972		기술신용보증기금	12,577	1,551	1,500	108	23,091
공 성 (10)무역보험기금9,275968-4,34625,272부실채권정리기금2,9811,61318,74599,76223,339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188105-692,8082,239신용보증기금29,6303,1993,50030459,930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47915369,6131,131,366105,415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4,19762332247620,689소계63,0748,93999,83822,916285,467공무원연금기금60,0491,021-2,23384,471공무원연금기금125,61590520836,934162,007국민연금기금120,3354,070-83792,307군인연금기금25,0665-4,38327,077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35,798774-259,07992,912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44,6442,8613,000361,652100,281소계411,5079,6363,208262,1751,259,05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775	583	_	155	14,652
용성(10)부실채권정리기금2,9811,61318,74599,76223,339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188105-692,8082,239신용보증기금29,6303,1993,50030459,930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47915369,6131,131,366105,415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4,19762332247620,689소계63,0748,93999,83822,916285,467고용보험기금60,0491,021-2,23384,471공무원연금기금125,61590520836,934162,007국민연금기금120,3354,070-83792,307군인연금기금25,0665-4,38327,077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35,798774-259,07992,912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44,6442,8613,000361,652100,281소계411,5079,6363,208262,1751,259,05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972	_	_	22	1,088
(1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8 105 — 692,808 2,239 신용보증기금 29,630 3,199 3,500 304 59,93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9 153 69,613 1,131,366 105,4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97 623 322 476 20,689 소계 63,074 8,939 99,838 22,916 285,467 고용보험기금 60,049 1,021 — 2,233 84,471 공무원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보험 성 시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무역보험기금	9,275	968	_	4,346	25,272
(1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8 105 — 692,808 2,239 신용보증기금 29,630 3,199 3,500 304 59,93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9 153 69,613 1,131,366 105,4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97 623 322 476 20,689 소계 63,074 8,939 99,838 22,916 285,467 고용보험기금 60,049 1,021 — 2,233 84,471 공무원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보험 건민연금기금 25,066 5 — 4,383 27,0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부실채권정리기금	2,981	1,613	18,745	99,762	23,339
에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9 153 69,613 1,131,366 105,4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97 623 322 476 20,689 소계 63,074 8,939 99,838 22,916 285,467 고용보험기금 60,049 1,021 - 2,233 84,471 공무원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구인연금기금 25,066 5 - 4,383 27,0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8	105	_	692,808	2,23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97 623 322 476 20,689 소계 63,074 8,939 99,838 22,916 285,467 고용보험기금 60,049 1,021 - 2,233 84,471 공무원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군인연금기금 25,066 5 - 4,383 27,0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신용보증기금	29,630	3,199	3,500	304	59,930
소계 63,074 8,939 99,838 22,916 285,467 사 로 보험 기금 60,049 1,021 - 2,233 84,471 공무원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군인연금기금 25,066 5 - 4,383 27,0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9	153	69,613	1,131,366	105,415
고용보험기금 60,049 1,021 - 2,233 84,471 공무원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본 군인연금기금 25,066 5 - 4,383 27,0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97	623	322	476	20,689
사 회 국민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보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본 군인연금기금 25,066 5 - 4,383 27,077 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소계	63,074	8,939	99,838	22,916	285,467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 83 792,307 보 군인연금기금 25,066 5 — 4,383 27,077 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고용보험기금	60,049	1,021	_	2,233	84,471
회 보 성 (6)국민연금기금 건연 (건지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120,335 25,066 35 4,0704,070 5 5- 4,383 774 7 4 4,644 4,644 2,861 3,0004,383 361,65227,077 92,912(6) 소계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4,644 4,6442,861 3,0003,000 3,208361,652 262,1751,259,055	٨.	공무원연금기금	125,615	905	208	36,934	162,007
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5,066 5 - 4,383 27,077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회	국민연금기금	120,335	4,070	_	83	792,307
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 259,079 92,912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군인연금기금	25,066	5	_	4,383	27,077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798	774	_	259,079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644	2,861	3,000	361,652	100,281
합계 867,855 23,326 1,593,145 1,557,251 3,794,581	-	소계	411,507	9,636	3,208	262,175	1,259,055
		합계	867,855	23,326	1,593,145	1,557,251	3,794,581

자료: 기획재정부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등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에 따라 2012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등과 2011년에 사용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을 정부안 4,944억원 대비 2,621억원(53.0%) 증가한 7,565억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총한도액 및 예비한도액

2012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은 7,565억원으로, 2011년의 3,704억원에 비해 104.2% 증가한 규모이다. 이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5,920억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한도액은 1,285억원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360억원이다.

총한도액 7,565억원

2012년 BTL

[표 2-36]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단위: 억원, %)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총한도액	3,704	7,565	3,861	104.2	
국가사업	345	5,920	5,575	1,615.9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3,183	1,285	-1,898	-59.6	
예비한도액	176	360	184	104.5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심사보고서, 2011. 12

대상시설별 한도액 규모와 증감내역

정부가 2012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상시설별 한도액은 학교시설(충남대 등 국립대 대학 시설) 5,014억원, 공공보건의료시설(영주적십자병원, 국립마산병원) 906억원, 하수관거시설(예산, 부산) 1,28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2011년 한도액에는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으로 도서관, 문회복합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년 한도액에는 동 대상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2012년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한도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12년 한도액에는 국가사업 대상시설로 공공보건의료시설이 포함되었으며, 학교시설 한도액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확대의 주 요인이다.

[표 2-37]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2012한도액 (B)	증감 (B-A)
	학교시설	345	5,014	4,669
국가사업	공공보건의료시설	_	906	906
	소 계	345	5,920	5,575
	도서관	101	_	-101
	문화복합시설	423	_	-423
국고보조	공공보건의료시설	541	_	-541
지자체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393	_	-393
	하수관거시설	1,725	1,285	-440
	소 계	3,183	1,285	-1,898
예비한도액		176	360	184
	합 계	3,704	7,565	3,861

자료: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심사보고서, 2011. 12

2. 대한민국정부, 「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0. 10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 2011~2015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 중 2011년 6월 30일 현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할 정부지급금 규모를 3조 6,679억원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향후 정부지급금 규모는 새롭게 운영되는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지만, 연도별 증가율은 2012년 61.7%, 2013년 38.5%, 2014년 9.9%, 2015년 2.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2-38]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단위: 5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국가사업	2,207	3,749	5,520	5,555	5,572	22,603	
국고보조	1,520	2,277	2,826	3,618	3,835	14,076	
합 계	3,727	6,026	8,347	9,173	9,407	36,679	

자료: 기획재정부, 「2011~2015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2011. 10

제4절 성인지 예산

2012년 성인지 예산서

34개 부처, 254개 사업 10.7조원

2012년 성인지 예산서

[표 2-39] 2012년 성인지예산서 현황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26조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2012년에는 34개 중앙관서의 25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10조 7,042억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을 2011년과 비교하면, 대법원이 새롭게 참여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외되었다. 사업별로는 2011년 245개 사업에서 21개 사업이 제외되었고, 26개 사업이 신규로 편입되었으며, 과목구조개편에 따른 분할 5개 사업과 통합 1개 사업을 고려하여 총 254개 사업이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예산 사업이 208개 사업(8조 8,463억원), 기금이 46개 사업(1조 8,57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A)	2012년 (B)	증감 (B-A)
제출기관		34	34	-
OILL	사업수	202	208	6
예산	예산액	84,233	88,463	4,230
기금	사업수	43	46	3
/10	예산액	17,516	18,579	1,063
	사업수	245	254	9
계	예산액	101,749	107,042	5,293

(3.3)

(3.3)

(단위: 개, 억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2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2011. 10

(총지출 대비)

(단위: 억원, %)

성인지 예산¹⁷⁾에 대한 국회 심의 및 결과

[표 2-40] 2012년 성인지 예산 국회 심의 결과

통일부

소 계

【국방위원회】 국방부 2

12

3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액 증감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지 대상사업 전체 예산액은 정부안보다 2조 9,749억원(27.8%) 증가된 13조 6,79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 당초 예산안보다 6,324억원(106.6%), 고용노동부소관이 1조 9,441억원(102.4%) 각각 증액된 것이 성인지 예산액 증가의 주 요인이다.

	세부사업수	2012 예산안	2012 확정예산	국회 심의 (B−A)	
	,,,,,,,,,,,,,,,,,,,,,,,,,,,,,,,,,,,,,,,	(A)	(B)	증감액	증감률
【국회운영위원회】					
국 회	1	83	91	8	10.0
국가인권위원회	2	1	1	-	_
소 계	3	84	92	8	9.5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2	524	524	-	_
법무부	12	745	774	29	3.9
법제처	1	8	8	-	_
소 계	15	1,277	1,307	29	2,3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1	14	13	-0.5	-3.6
국민권익위원회	1	0.3	0.3	-	_
국가보훈처	2	280	280	-	_
소 계	4	294	293	-0.5	-0.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3	33	33	-	_
국세청	1	1	1	-	_
조달청	1	2	2	-	_
통계청	1	12	12	-	_
소 계	6	48	48	_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10	1,354	1,354	_	-

176

1,530

119

176

1,530

119

^{17) *}성인지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상의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한다.

	세부사업수	2012 예산안	2012 확정예산		l 심의 3–A)	
		(A)	(B)	증감액	증감률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0	744	796	53	7.1	
경찰청	2	13	17	4	30.8	
소 계	12	756	813	56	7.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14	5,932	12,256	6,324	106.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3	1,362	1,379	18	1.3	
문화재청	3	154	154	_	_	
소 계	26	1,516	1,533	18	1.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22	1,724	,1724	-	_	
농촌진흥청	11	295	325	30	10.2	
산림청	4	289	289	_	_	
소 계	37	2,309	2,339	30	1.3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3	385	385	_	_	
중소기업청	9	4,268	4,278	10	0.2	
특허청	3	51	51	_	_	
소 계	15	4,704	4,714	10	0.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34	66,263	70,062	3,799	5.7	
식품의약품안전청	2	45	45	_	_	
소 계	36	66,308	70,107	3,799	5.7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7	286	286	_	_	
고용노동부	26	18,990	38,431	19,441	102.4	
 소 계	33	19,276	38,717	19,441	100,9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5	497	512	15	3.0	
해양경찰청	1	3	3	_	_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8	8	_	_	
 소 계	7	508	523	15	3.0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31	2,389	2,401	20	0.8	
합 계	254	107,043	136,792	29,749	27.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1절 국회심의 개관

국회가 심의 · 확정한 2012년 총수입은 343.5조원(정부안 대비 0.6조원 감소)이고, 총지출은 325.4조 원(정부안 대비 0.7조원 감소)이다.

2012년 총수입 343.5조원

2012년 총지출

325.4조원

[표 2-41] 2011년 및 2012년 예사와 국회신의 내연

[# Z-41] Z	# 2-41] 2011년 및 2012년 예산안 국외심의 대역 (단위						(단위: 조원, %)		
2011				2012					
		국호	l확정			국회	확정		
	정부안 (A)	규모	정부안 대비	정부안 (C)		정부안 대비	전년	대비	
	(A)	(B)	증가액 (B-A)	(0)	⁾) 증가액 (D-C)	증가액 (D-B)	증가율 (D-B)/B	
총수입	314.6	314.4	-0.2	344.1	343.5	-0.6	29.2	9.3	
(국세)	(187.8)	(187.6)	-0.2	(205.9)	(205.8)	(-0.1)	(18.2)	(9.7)	
총지출	309.6	309.1	-0.5	326.1	325.4	-0.7	16.4	5.3	
예산	215.9	216.3	0.4	227.0	228.1	1,1	11.8	5.5	
기금	93.7	92.8	-0.9	99.1	97.3	-1.8	4.5	4.8	

주: 정부안은 2011년 및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국회 확정은 2011년 및 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제2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1년 9월 30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부터 12월 27일(정보위원회)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후 소위심사 등을 거쳐 11월 3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31일 정보위원회를 마지막으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되었다.

[표 2-4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국회운영	2011-09-30	2011-11-02	2011–11–08
법제사법	2011-09-30	2011-10-24	2011-11-03
정무	2011-09-30	2011-10-24	2011-11-09
기획재정	2011-09-30	2011-10-27	2011–12–28
외교통상통일	2011-09-30	2011-11-02	2011-11-09
국방	2011-09-30	2011-11-01	2011-11-09
행정안전	2011-09-30	2011-10-25	2011-11-07
교육과학기술	2011-09-30	2011-10-28	2011-11-2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2011-09-30	2011-11-01	2011-11-08
농림수산식품	2011-09-30	2011-11-04	2011-11-21
지식경제	2011-09-30	2011-11-01	2011-11-08
보건복지	2011-09-30	2011-11-01	2011-11-10
환경노동	2011-09-30	2011-11-01	2011-11-08
국토해양	2011-09-30	2011-10-26	2011-11-08
정보	2011-09-30	2011-12-27	2011–12–31
여성가족 	2011-09-30	2011-10-31	2011–11–07

자료: 각 상임위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11월 7일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인」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총 3회, 11.7~11.9)와 부별심사(총 4회, 11.14~11.17) 및 조정소위(총 15회, 11.21~12.31) 등을 거쳐 12월 31일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세입예산은 순계 기준으로 정부안 대비 8,016억원이 감액되고, 1,869억원이 증액되어 총 6,147억원이 순감되었다. 세출예산은 순계 기준으로 정부안 대비 3조 9,209억원이 감액되고, 3조 3,062억원이 증액되어 6,147억원이 순감되었다.

정부안 대비 세입세 출예산 조정규모 (순계기준)

세입예산 : 8,016억원 감액 1,869억원 증액 세출예산 : 3조 9,209억원 감액 3조 3,062억원 증액

[표 2-43] 2012년 예산안 조정 규모: 종합심사 결고
세 입

(단위: 억원)

세 출

〈감 액〉	-8,016	〈감 액〉	-39,209
국세수입	-2,743	일반공공행정	-10,199
소득세	-2,600	국방	-2,980
법인세	-120	환경	-3,066
부가가치세	-23	복지	-559
		농림수산	-4,522
세외수입	-5,273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2,438
토지매각대	-170	SOC	-8,407
기타유가증권매각대	-4,314	기타	-7,038
기금예탁이자수입(교특)	-185		
면허료및수수료	-4		
공자기금예수금	-600		
〈증 액〉	1,869	〈증 액〉	33,062
국세수입	1,068	국방	1,029
법인세	1,000	교육	5,027
상속증여세	18	환경	1,474
관세	50	복지	8,138
		농림수산	4,883
세외수입	801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3,581
기타경상이전	432	SOC	5,210
기타잡수입	159	기타	3,720
벌금및과료	101		
위약금	100		
기타	10		
〈합계(순계)〉	-6,147	〈합계(순계)〉	-6,147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	т -	4.41	20421	1 41114	7717	T. 11010	NOI-IH	マーレルコ	~-1
п	サノユ	441	ノリエノヤ	ᄀᄱᆝᄼᅩᅡᆉ	소성 ㅠ'	로, 성임후	1워외벜	종한심사	コエト

(단위: 백만원)

[표 2 44] 2012년 에앤인 그 6 대그 6 급규전되고 등합급시 크피								
	세 입				세 출			
	증 액	감 액	순 증	증 액	감 액	순 증		
국회운영	3	_	3	6,893	-3,348	3,545		
법제사법	440	_	440	15,837	-7,030	8,807		
정무	_	_	_	32,158	-48,986	-16,828		
기획재정	96,966	-262,300	-165,334	18,032	-1,920,948	-1,902,916		
외교통상통일	_	_	_	5,588	-9,069	-3,481		
국방	30,000	_	30,000	100,308	-298,014	-197,706		
행정안전	10,000	_	10,000	113,001	-120,296	-7,295		
교육과학기술	615	-31,591	-30,976	624,648	-224,655	399,99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10,000	_	10,000	148,250	-15,698	132,552		
농림수산식품	_	_	_	473,676	-457,111	16,565		
지식경제	_	_	_	175,852	-308,084	-132,232		
보건복지	_	-10	-10	470,368	-119,047	351,321		
환경노동	_	-413	-413	508,718	-332,332	176,386		
국토해양	26,900	-448,447	-421,547	557,842	-78,260	479,582		
정보	_	_	_	_	-5,220	-5,220		
여성가족			_	5,400	-1,239	4,161		
합 계	174,924	-742,761	-567,837	3,256,571	-3,949,337	-692,766		

주: 총지출 기준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정부안에 비하여 운용규모가 2조 6,314억원 감소되었다. 정부안 대비 기금 운용규모가 감소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2조 3,370억원 감소),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4,000억원 감소) 등 6개 기금으로 총 2조 8,217억원이 감소되었다. 정부안 대비 운용규모가 증가한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523억원 증가), 축산발전기금(415억원 증가) 등 8개 기금으로 총 1,903억원이 증가하였다.

정부안 대비 기금 운용계획 조정규모 2조 6,314억원 감소

[표 2-45]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규모: 종합심사 결과

(단위: 억원,)

기금	정부안	증감	학정
/10	ÖTÜ	<u>0</u> =	4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703	-70	633
공적자금상환기금	22,393	523	22,916
부실채권정리기금	22,817	522	23,33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0,585	104	20,689
공공자금관리기금	1,154,736	-23,370	1,131,36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250	-11	2,239
외국환평형기금	361,622	30	361,652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410	-316	2,095
문화예술진흥기금	2,667	2	2,669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6,185	-4,000	2,18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967	303	6,270
축산발전기금	6,955	415	7,37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3,852	-450	73,402
청소년육성기금	831	4	835
소 계	1,683,973	-26,314	1,657,659
총 계(65개)	3,820,892	-26,314	3,794,578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4절 분야별 총지출의 국회수정

2012년 분야별 국회 수정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등 6개 분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6개 분야는 정부 제출안보다 감액되었다.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6,700억원 증액)이고,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 는 '일반공공행정' 분야(1조 4,700억원 감액)이다.

[표 2-46] 분야별 총지출 국회 수정 현	표 2-46] 분야별 총지출 국회 수정 현황 (단위: 조원 %)						
	정부안	확정예산	증감				
보건·복지·노동	92,0	92,6	0.67				
SOC	22,6	23.1	0.44				
교육	45.1	45,5	0.43				
문화·체육·관광	4.4	4.6	0.13				
R&D	16.0	16.0	0.05				
농림 · 수산 · 식품	18.1	18,1	0.02				
외교 · 통일	3.9	3.9	-0.004				
공공질서 · 안전	14.5	14.5	-0.03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5.2	15,1	-0.15				
환경	6.1	6.0	-0.16				
국방(일반회계)	33,2	33,0	-0.20				
일반 공공 행정	56.6	55.1	-1.47				
합 계	326.1	325.4	-0.7				

자료: 기획재정부

제5절 부대의견

국회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첨부한 부대의견은 총 27건으로 2010년 예산의 17건, 2011년 예산의 1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채택된 부대의견은 177건이며 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건수는 3건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외에도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표 2-47] 부대의견 성질별 구분

(단위: 건)

	2009		2010	2011	2012
	본예산 추경	2011	2012		
제도개선	41	9	4	_	16
국회보고	7	3	1	-	1
지원조건설정	3	4	11	11	8
집행유보	5	1	1	1	2
합 계	56	17	17	12	27

주:1. 제도개선: 정책방향 제시 또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 내용

2. 국회보고: 제도개선사항 또는 사업수행 내용에 대한 국회보고를 의무화한 내용

3. 집행조건설정: 예산 지원 기간,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내용

4. 집행유보: 부대의견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내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丑 2-48	상임위원회별	부대의견	채택 건수

국회운영	1건	국방	11건	지식경제	4건
법제사법	3건	행정안전	9건	보건복지	11건
정무	16건	교육과학기술	8건	환경노동	9건
기획재정	27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26건	국토해양	1건
외교통상통일	8건	농림수산식품 (대정부 촉구사항 포함)	37건	여성가족	6건

총 177건

2012년 부대의견

국회는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의 · 의결 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1)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국제행 사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지정, 행사특성에 따른 PM 선정, 외 부 전문가 참여 등과 관련된 사항을 훈령으로 정한다.
- (2)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교에서 운영중인 기성회 회계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3) 문화재청 소관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사업 예산은 정부와 울산광역시 간에 암각화 보 존대책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배정되도록 하여 집행한다.
- (4) 정부는 2012년 신설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한다.
- (5)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의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중 경증환자 응급 진료실운영지원 예산을 중증환자 응급진료실운영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여 집행한다. 중 증외상센터의 당초 설치계획과 규모를 변경하여 권역별로 설립한다.
- (6) 홍도과선교 개량사업의 경부선~대전선 구간(170m)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정 비사업비(4,997억원)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한다.
- (7) 국토해양부는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디지털운행기록장치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화물ㆍ버스ㆍ택시 사업자 및 소유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8) 정부는 예산 외로 운영되는 현물출자, 기술료수입,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에 대한 국회 심사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9)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 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9개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을 위반하여 조성한 인건비초과 계상분을 국고로 환수토록 조치한다.
- (10) 정부는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하다고 파단되는 기관은 편성대상에서 제외하며 특수활동 비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여 편성한다. 감사원은 특수활동 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특수활동비에 관한 계산증명제도 등 관련 제 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11) 정부는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012년 부대의견(계속)

- (12)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년 도 예산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유사 · 중복사업을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13)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을 2012년에 한 하여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및 지 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난방비 집행과 관련, 농어촌의 저소득 노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 여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이 우선적으로 취약지역 경로당의 양곡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14) 정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 금이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한다.
- (15) 방위사업청은 영유권(독도, 이어도) 수호를 위해 추진하는 '중 · 일 해군력 강화에 대 응한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합참/해군/방사청)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후,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
- (16)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을 전투예비탄 확보 에 활용할 수 있다.
- (17) 국유재산관리기금 성남보호관찰지소 매입사업은 지자체 주민 등과 합의 후에 집행한다.
- (18)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요불급 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지구별 실태를 재점검하여야 하며, 사업 진척도 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고 댐 높이를 높이는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준 설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강구하도록 한다.
- (19)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식세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성과와 무관한 과 도한 전시성 · 홍보성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20)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2012년 신규사업인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1) 방위사업청은 K-2전차의 파워팩 관련 예산은 시험평가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하 고, 부품생산 등 협력중소기업체의 예산(466억원)은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 (22) 정부는 상시 ·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하는 등 합리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한다.

2012년 부대의견(계속)

- (23)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해 2012년에 2조원을 유동화가 가능한 현 물로 출자하고,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발행하는 3조원의 농금채를 연기금 등에서 전액 인수하며, 농협중앙회의 차입금(농금채) 3조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5년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2012년 2월말까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여 여 · 야 합의로 신용과 경 제사업의 분리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농협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2012년 예산에 계상 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사업 예산 1,500억원은 불용 처리한다.
- (24)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다목적 방 사광가속기 등 가속기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 (25) 정부는 2012년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462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012 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대응하여 토요일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26)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 재정의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7)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증액부분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집행하되 특정대학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6절 2011년 의결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 예산

국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편성된다. 이러한 법률 중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편성근거로 사용되는 법률을 재정수반 법률¹⁸이라 한다. 2012년 확정 예산 또한 2011년에 의결된 재정수반 법률에 따라 반영된 부분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1년에 의결된 재정수반 법률에 따라 한영된 부분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1년에 의결된 재정수반 법률에 따라 확정된 2012년 예산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법률 제·개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본 보고서에서는 지출관련 재정수반 법률에 의한 영향만을살펴본다.

1, 2011년 의결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 예산 규모

재정수반 법률과 이에 근거하여 확정된 2012년 예산은 [표 2-49]과 같다. 2011년 의결 재정수반 법률은 총 76개이며, 이를 근거로 확정된 2012년 예산은 6조 7,339억원이다. 의결된 재정수반 법률76개를 제·개정 형태로 보면, 신규 제정 법률이 21개이며 나머지 55개는 개정된 법률이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2011년 예산에 반영된 의결 재정수반 법률은 56개이며, 금액으로는 4,714억원이다.

재정수반법률 반영 76건, 6조 7339억원

가. 개관

재정수반 법률이 제·개정된 위원회는 총 12개 이며, 위원회별로 재정수반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농 림수산식품위원회 12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1개, 환경노동위원회 10개 등이다.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된 예산을 소관 행정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5조 4,461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 4,434억원, 고용노동부 3,094억원, 국토해양부 2,502억원, 국가보훈처 1,492억원 등의 순이다.

^{18]} 재정수반 법률에 관해 「국회법」제79조의2에서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 「국가재정법」제87조에서는 '재 정지총 또는 조세각면을 수반하는 법률'로 정의되고 있다.

[표 2-49] 2011년 의결 재정수반 법률의 위원회별 현황

(단위: 억원)

	16+6 824 1642		(단위: 억원)
	소관 행정부처	재정수반 법률(개)	2012년 예산
법제사법위원회(2)	법무부	2	81.4
	국무총리실	1	14.6
정무위원회(6)	공정거래위원회	2	4.4
811124(0)	국민권익위원회	1	5.3
	국가보훈처	2	1,492.0
외교통일통상위원회(2)	외교통상부	1	27.4
되파운 들은 있다 단점(c)	통일부	1	3,1
	행정안전부	6	216.5
행정안전위원회(10)	경찰청	4	132,9
교육과학기술위원회(3)	교육과학기술부	3	26.2
문화체 육관 광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부	7	294.7
유원회(11)	방 송통 신위원회	1	38.0
TE쪽(II)	문화재청	3	9.9
	농림수산식품부	9	4,190,9
농림수산식품위원회(12)	산림청	3	242.7
지식경제위원회(7)	지식경제부	4	167.6
110 1112 (6)	중소기업청	3	238,5
보건복지위원회(8)	보건복지부	7	54,461.1
포인국시[[전최(0)	식품의약품안전청	1	3.0
한거! 드이이크(40)	환경부	5	60.0
환경노동위원회(10)	고용노동부	5	3,093.7
국토해양위원회(3)	국토해양부	3	2,502.0
여성가족위원회(2)	여성가족부	2	33.1
합 계		76	67,3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2011년에 제정된 재정수반 법률

2011년에 의결된 재정수반 법률 중 제정된 법률은 총 21개 이다. 법률 소관 부처는 총 16개 이고, 제정된 법률 시행을 위하여 2012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총 543억원이다. 위원회별로 제정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4개, 행정안전위원회 3개 등 총 9개 위원회에서 법률이 신규 제정되었다. 제정 법률과 관련 예산을 소관 행정부처별로 보면, 중소기업청이 2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경찰청 90억원, 지식경제부 70억원 등의 순이다.

재정수반법률

제정건수 : 21건 반영예산 : 543.4억원

[표 2-50] 2011년 의결 재정수반 법률 중 제정 법률 현황

(단위: 억원)

	부처명	법률명	예산
	국무총리실	지식재산기본법	14.6
정무위원회(3)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2.6 5.3
		3 .2	
외교통일통상	외교통상부	국립외교원법	27.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23.9
행정안전위원회(3)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4.0
	경찰청	재일교포 북송저지 경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89.5
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4.2
위원회(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0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23.0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법 씨름진흥법률	10.0
방송통신위원회(4)		씨금신응답팔 	1,0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1.9
농림수산위원회(2)	농림수산식품부	김치산업진흥법	3.0
중립구선귀현회(2)	산림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1.0
TLUZZIIO(0)=1/0)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촉진법	70,0
지식경제위원회(2)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0,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9.0
보건복지위원회(2)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0
하다 도이이들(이	āl7iH	석면안전관리법	10.0
환경노동위원회(2)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0
계	16개 부처	21개 법률	54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수반 법률

재정수반법률

500억 이상 8건 6조 3,762억원 반영 법률시행에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수반 법률은 [표 2-51]과 같이 8개이며 금액으로는 6조 3,762억원이다. 이들 8개 법률에 의하여 증액된 금액은 2011년에 의결된 76개 재정수반 법률 전체에 의하여 증액된 금액의 94,7%를 차지한다. 8개 법률의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함에 따른 증액분 5조 4,065억원, 「하천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관리 사업 예산 증액분 1,997억원 등이다.

[표 2-51]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수반 법률				
	법률명	사업명	예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2,654	
국가보훈처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	1,490	
국토해양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원	500	
4_00+	하천법	국가하천 유지관리	1,997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농업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원	1,500	
OBTERBT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대책비	1,556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43,434	
보신 독 시구	국민건강증진법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10,631	
합계	8711		63,7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3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사업

제1장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제2장 국회운영위원회

제3장 법제사법위원회

제4장 정무위원회

제5장 기획재정위원회

제6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7장 국방위원회

제8장 행정안전위원회

제9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10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1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12장 지식경제위원회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제15장 국토해양위원회

제16장 정보위원회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제 1 장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2012년 국회 확정 예산을 상임위원회별 총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2012년 소관 부처의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위원회는 행전안전위원회로 57조 8,853억원이며, 뒤를 이어 교육과학기술 위원회 53조 4,000억원, 국토해양위원회 42조 9,689억원의 재정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규모가 작은 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로 4,127억원이다.

2011년 대비 2012년 소관 부처의 총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위원회는 4조 9,664억원이 증가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며, 국토해양위원회는 2,553억원이 감소하였다. 2011년 대비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1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뒤를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9.4%, 보건복지위원회 9.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정보위원회는 5.5% 감소하였으며, 여성가족위원회는 3.2% 감소하였다.

2012년 정부 총지출은 325.4조원이며 2011년 대비 5.3% 증가하였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한 위원회는 외교통상통일, 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보건복지 등 5개 위원회이며, 국회운영, 기획재정, 국토해양, 여성가족, 정보 등 5개 위원회는 2011년보다 재정규모가 감소하였다.

[표 3-1]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단위: 억원, %)

[표 3*1] 중립귀현외글 세종때크	2011		(단위: 억원, 9 - - 증 감		
	(A)	2012 (B)	(B-A)	(B-A)/A	
국회운영	7,108	7,066	-42	-0.6	
법제사법	41,070	41,170	100	0,2	
정무	45,815	47,571	1,756	3.8	
기획재정	211,957	211,337	-620	-0.3	
외교통상통일	30,274	32,418	2,144	7.1	
국방	332,052	344,861	12,809	3.9	
행정안전	529,303	578,853	49,550	9.4	
교육과학기술	484,336	534,000	49,664	10,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47,453	51,092	3,639	7.7	
농림수산식품	176,303	180,787	4,484	2.5	
지식경제	220,971	225,106	4,135	1.9	
보건복지	337,993	369,365	31,372	9.3	
환경노동	184,708	191,973	7,265	3,9	
국토해양	432,242	429,689	-2,553	-0.6	
정보	4,964	4,690	-274	-5.5	
여성가족	4,265	4,127	-138	-3.2	

주: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총계에서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 기준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7,066억원이다. 이는 2011년 대비 42억원 (0.6%) 감소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이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국회가 5,060억원(2.2% 감소), 대통령실이 1,680억원(3.8% 증가), 국가인권위원회가 231억원(4.3% 증가), 특임장관실이 95억원(1.1% 증가)이다.

2012년 국회운영위 원회 소관 총지출 0.7조원

[표 3-2] 2012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단위: 직원, 70)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국회운영위원회	7,108	7,066	-42	-0.6
총지출 대비 비중	0.2	0.2	_	-
국회	5,175 (72,8)	5,060 (71,6)	-115	-2.2
대통령실	1,618 (22.8)	1,680 (23,8)	62	3.8
국가인권위원회	221 (3.1)	231 (3,3)	10	4.3
특임장관실	94 (1.3)	95 (1.3)	1	1,1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각 부처,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2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지출 7,066억원은 모두 재량지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한 비경직성 재량지출은 2,937억원으로 총지출의 41.6%에 해당한다.

[표 3-3]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지출	의무		:	재량지출(A−B)		
	합계	지출		경직성 기	대량지출		비경직성
	(A)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국회운영위원회	7,066 (100,0)	-	3,539 (50,1)	590 (8.3)	_	4,129 (58.4)	2,937 (41.6)
 국회	5,060	_	2,729	239	_	2,968	2,092
대통령실	1,680	_	677	261	_	938	742
국가인권위	231	_	108	72	_	180	51
특임장관실	95	_	25	18	_	43	52

주: 괄호안은 지출합계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각 부처,「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2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국회

2012년 국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예산은 10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00만원(4.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0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5,800만원(2.2%) 감소하였다. 2012년 신규 사업으로는 제19대국회 개원경비 47억원이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국회 방송운영사업(120억원, 18.3% 증액)과 입법활동지원사업(448억원, 14.3%증액)이 있다.

[표 3-4] 국회 소관 세입·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일산	(A)	(B)	(B-A)	(B-A)/A
세입	9.5	10.4	10.9	0.5	4.5
세출	4,658	5,175	5,069	-115	-2.2

자료: 국회사무처,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2

대통령실

2012년 대통령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00만원(30.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68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원(3.8%) 증액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170억원, 20.8% 증가), 정보화추진(12억원, 34.6% 증가)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35억원, 30.5% 감소), 핵안보정상회의 경호(47억원, 15.7%감소) 등이 있다.

[표 3-5] 대통령실 소관 세입·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744			2012 예산 증 등	
	2010 결산	(A)	(B)	(B-A)	(B-A)/A
세입	5.7	0,8	1,1	0.3	30.9
세출	1,532	1,619	1,680	61	3.8

자료: 대통령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2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예산은 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23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원(4.4%) 증액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권전문 상담원 운영(4.8억원, 102.1% 증가), 국제교류협력 강화(4.9억원, 57.7% 증가), 탈북자 및 북한인권 연구사업(2.8억원, 39.5% 증가)이 있다.

[표 3-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세입	0.2	0.2	0.2	-	-
세출	201	221	231	10	4.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2

특임장관실

2012년 특임장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000만원(0,9%) 증가하였다. 2011년까지 기본경비로 편성하던 정보화예산을 주요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라 동 사업비 2억 8,3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특임장관실의 유일한 사업인 특임활동사업은 48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 증액되었다.

[표 3-7] 특임장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

	2010 7411	2011 예산		증 감	
	2010 설신	(A)	(B)	(B-A)	(B-A)/A
세입	_	-	_	-	-
세출	5,568	9,409	9,499	90	0.9

자료: 특임장관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운영위원회는 2011년 11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을 상정하고, 2차례 소위 심사를 거쳐 11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심사과정에서 국회연수원 건축 과 관련하여 1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11월 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2년 예산안을 상정하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 2011년 11월 21일부터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5차례의 소 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1년 12월 31일 제304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국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확정된 예산안 감액 규모는 17억 2,400만원으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의 14억 1,4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 많았다. 확정된 감액안의 주요내역을 보면, '의사 국운영' 사업 예산 중 전자출입관리시스템 설치비 13억 1,300만원과 '세계전자의회지원' 사업 예산안 3억원 전액을 감액하였다. 한편,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국회소관 예산안 규모는 13개 사업, 81억 5,500만원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0개 사업, 26억 2,500만원이 반영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입법활동지원사업' 14억 7,4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3억 4,200만원, '국회방송운영사업' 3억원, '법률정보지원사업' 2억 3,000만원 등이다. 한편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국회 연수원 건립 및 국회경비대 신축'과 관련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 46억 1,300만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요청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이 중 국회연수원 건립관련 설계비 30억원이 반영되었다.

대통령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12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확정한 대통령실 소관 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42억 6,800만원으로 예비심사의 41억 3,600만원보다 1억 3,200만원 많았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전직대통령 경호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4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기 매입한 내곡동 부지를 둘러싼 적정가 논란을 감안하여 관리전환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면 감액의 경우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와 동일한 6,500만원을 확정하였다. 운영위원회 증액의견은 3개 사업의 2억 1,800만원이었으나반영되지 않았다. 감액된 6,500만원의 내역은 탈북자 및 북한인권 연구사업 5,000만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1,500만원이다.

특임장관실은 예비심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증액 없이 2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다. 감액 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최근 신설된 사업으로 사업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아 전년 대비 증액분 1억원을 삭감하였고, 여론조사비는 개발 완료된 여론조사모델에 해당하는 예산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등 집행의 투명성 미흡을 이유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법제사법 위원회 소관 총지출 4.1조원 2012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4조 1,171억원으로 2011년 대비 101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이다.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법무부가 전년대비 328억원(1,3%)이 증가한 2조 5,870억원, 법제처 256억원(4,9% 증가), 감사원 1,036억원(2.6% 증가), 헌법재판소 343억원(8,9% 증가), 대법원 1조 3,666억원(2,1% 감소)이다.

[표 3 8] 2012년 납세시납위전		(단위: 억원, %)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법제사법위원회	41,070	41,171	101	0.2	
총지출 대비 비중	1.3	1.3	_	_	
법무부	25,542 (62,2)	25,870 (62,8)	328	1.3	
법제처	244 (0.6)	256 (0.6)	12	4.9	
감사원	1,010 (2.5)	1,036 (2,5)	26	2.6	
헌법재판소	315 (0.8)	343 (0.8)	28	8.9	
대법원	13,959 (34.0)	13,666 (33.2)	-293	-2.1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총지출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표 3-8] 2012년 번제사번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 괄호안은 법제시법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총지출 4조 1,171억원은 대부분 재량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재량지출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한 비경직성 재량지출은 1조 2,164억원으로 총지출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 2012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지출	의무		:	재량지출(A−B)		
	합계	지출		경직성 기	비경직성		
	(A)	(A)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법제사법위원회	41,171 (100.0)	246 (0.6)	26,397 (64.1)	2,184 (5.3)	180 (0.5)	28,761 (69.9)	12,164 (29.5)
법무부	25,870	246	16,542	1,275	_	17,817	7,807
법제처	256	_	119	32	_	151	105
감사원	1,036	_	659	106	_	765	271
헌법재판소	343	_	182	55	_	237	106
대법원	13,666	_	8,895	716	180	9,791	3,875

주: 괄호안은 지출합계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각 부처,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2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법무부

2012년 법무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있다.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438억원(2.4% 증가) 증액,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0억원(2.3% 감소) 감액,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이 9억원 증액되어 총 437억원이 증액되었다. 세출예산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123억원(15.3% 증가) 증액되는 등 총 335억원(1.3%)이 증액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11년에 신설된 기금으로 전년대비 9억원(1.4% 증가) 증액되었다.

신규사업으로는 변호사시험합격자 실무연수지원(5억원),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 실질화(12억 3,100 만원),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교육(11억 6,500만원),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5억 200만원) 등이 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가배상금 지급(200억원, 115.1% 증가), 변호사시험 관리 및 신법조인 양성(23억 9,900만원, 681.4% 증가), 형사보상(79억 7,200만원, 95.4% 증가)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비교도대 관리(7억 500만원, 63.1% 감소), 신임검사교육제도 개선(2억 2,400만원, 47.3% 감소) 등이 있다.

[표 3-10] 법무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0040 7411	2011 예산 2012 예	2012 예산	증	감
	2010 결산	(A)	(A) (B)	(B-A)	(B-A)/A
일반회계	14,525	18,052	18,490	438	2,4
교도작업특별회계	444	430	420	-10	-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_	624	633	9	1.4
합 계	14,969	19,106	19,543	437	2,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11] 법무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7411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2010 결산			(B-A)	(B-A)/A
일반회계	22,319	24,304	24,517	213	0.9
교도작업특별회계	320	430	420	-10	-2.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68	804	927	123	15.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_	624	633	9	1.4
합 계	22,807	26,162	26,497	335	1.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제처

2012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2억원(4.9% 증가) 증액된 256억원이 편성되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세계법제정보서비스(6억 7,100만원, 76.5% 증가), 법제전문인력육성(6억 5,600만원, 17.1% 증가) 등이 있다.

[표 3-12] 법제처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일반회계	215	244	256	12	4.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감사원

2012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00만원 (9.0% 감소) 감액된 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대비 26억원(2.6% 증가) 증액된 1,036억원이 편성되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감사활동경비(239억 3,200만원, 32,5% 증가)이다.

[표 3-13] 감사원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란	(A) (B)	(B)	(B-A)	(B-A)/A
세입	3.2	3.7	3.3	-0.3	-9.0
세출	849	1,010	1,036	26	2.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헌법재판소

2012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순증된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억원(8.9% 증가) 증액된 34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전자도서관운영(4억원, 48.7% 증가), 청사및공관시설관리 (25억 8,700만원, 38.9% 증가) 등이 있다.

[표 3-14]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세입	0.7	-	4.4	4.4	순증
세출	270	315	343	28	8.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대법원

2012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은 6,328억원으로 전년대비 214억원(3.5% 증가) 증액되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원(3.3% 증가) 증액되었고,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억원(3.9% 증가) 증액되었다.

[표 3-15] 대법원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2411	2010 248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B)	(B-A)	(B-A)/A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2,698 2,103	3,713 2,401	3,834 2,494	121 93	3.3 3.9
합 계	4,801	6,114	6,328	214	3.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은 1조 4,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원(1,3% 감소) 감액되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5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억원(2,4% 감소) 감액되었으며, 등 기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억원(3,9% 증가) 증액되었다. 2012년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사유는 전주지법 신축 등 12개 사업 예산(971억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표 3-16] 대법원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0 경사 2011 예산	2012 예산 (B)	증 감	
	2010 달란	(A)		(B–A)	(B-A)/A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10,934 1,896	11,842 2,400	11,562 2,493	-280 93	-2.4 3.9
합 계	12,830	14,242	14,055	-187	-1,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법제사법위원회는 2011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두 차례의 예산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3일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수의견으로는 법원 예산에 특정업무경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11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2년 예산안을 상정하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 2011년 11월 21일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 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5차례의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011년 12월 31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법무부 세출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5,000만원(로스쿨 출신 신임검사교육사업)이 감액되었고 9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결위 심의결과 33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10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성남보호관찰소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건물 매입비용과 리모델링비용을 각각 다른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예산 32억 8,4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수활동비 5,600만원을 감액하였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변호사시험합격자 실무연수지 원사업(5억원 순증), 국민생활 침해사범단속사업(23억 3,000만원 증액),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20억원 증액) 등이 있다.

법제처 세출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입법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법제처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로 연구용역비 중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1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다. 예결위 심의결과 상임위 연구용역비 6,000만원 삭감을 반영하고, 법제업무정보화추진사업 8억원을 증액하였다.

감사원 세출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원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예결위 심의결과 감사원의 복식부 기분석에 대한 노하우가 확보되었다고 보아 국가재무제표 결산 연구용역비 10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다.

헌법재판소 세출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원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예결위 심의결과 재판자료 확충사업이 외국기관과 협정 등을 체결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의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고 보아 1,000만원이 감액되었다.

대법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85억 1,900만원 증액, 15억 4,000만원 감액되었고, 등기특별회계는 증액 없이 5억원이 감액되었다. 예결위 심의결과 일반회계가 30억원 증액, 20억 1,700만원 감액되었다. 등기특별회계는 예비심사결과와 동일하였다. 증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민사재판운영지원 조정사건지원 사업 70억원 등 10개 사업을 증액하였으나, 확정예산에는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의 업무추진비 30억원만 증액되었다.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는 일반 인건비 14억 8,800만원 등 3개 사업을 감액하였으나, 확정예산에는 일반인건비에서 4억 7,700만원이 추가 감액되었다.

제3절 주요 사업

1.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정부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2012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9억원(1.4% 증가) 증가된 633억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가 일반회계 및 여성발전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이관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등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가족보호시설 · 해바라기아동센터 ·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경상적 지출에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지원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시설운영비 지원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주로 정보활동 수행자의 교통비·식비·숙박비,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금, 기타 국가기밀의 보안유지와 사업내용이 노출될 경우 정책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가 포함된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대통령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전체 특수활동비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편성 단계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될 뿐만 아니라, 집행이 이뤄진 이후에도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국회는 2008년 결산 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는 일체의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특수활동비의 적정규모를 판단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각 중앙관서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을 의결하였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예산안 심의시 검찰 특수활동비 1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로 검사수사활동지원경비 10억원과 부수사활동비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012년 예산의 경우 검찰 특수활동비 총 5,500만원을 감액하였다.

2. 대법원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은 판결문 및 재판기록공개 등 형사 및 민사재판을 제외한 일반재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 예산은 전년 대비 19.2%(56억원) 증가한 349억원이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법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필요한 예산 증액 의견과 재 판부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므로 전액(122억원)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 시되었다.

법사위 예비심사에서는 동 사업에 대하여 사법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3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20억원을 증액하였다.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에 편성된 재판부활동비, 판례심사활동비 등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으로 특정업무경비의 대상비목이 될 수 없으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확정예산에는 사법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필요한 예산 중 업무추진비 30억원이 증액되었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정무위원회 소관 총지출 4조 7,571억원 2012년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4조 7,571억원으로 2011년 대비 3.8% 증가한 규모이며,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이다. 이를 정무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로 보면, 국무총리실이 2011년 대비 2.3% 증가한 4,991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846억원(7.4% 증가), 금융위원회가 864억원(16.2% 감소), 국민권익위원회가 656억원(7.0% 증가), 국가보훈처가 4조 214억원(4.4% 증가)이다.

[표 3-17] 2012년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E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정무위원회	45,815	47,571	1,756	3.8		
총지출 대비 비중	1.5	1.5	_	_		
국무총리실	4,879 (10.6)	4,991 (10.5)	112	2,3		
공정거래위원회	788 (1.7)	846 (1.8)	58	7.4		
금융위원회	1,031 (2.3)	864 (1.8)	-167	-16.2		
국민권익위원회	613 (1.3)	656 (1.4)	43	7.0		
국가보훈처	38,504 (84.0)	40,214 (84.5)	1,710	4.4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정무위 소관 기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정무 분야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무위원회 소관 총지출 4조 7,571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1.1%, 28.9%로 의무지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총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예산 중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의무지출 성격의 경비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총지출에서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24.1%로 나타난다.

[표 3-18] 정무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0.11) 70, 70
	TI축	717 010		재량지 <u>출</u> (A−B)			
	지출 합계 (A)	의무 저출		경직성 기	대량지출 -		비경직성
	(A)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정무위원회 소관	47,571 (100.0)	33,847 (71.1)	1,786 (3.8)	479 (1.0)	_	2,265 (4.8)	11,459 (24.1)
국무총리실	4,992	_	321	105	_	426	4,566
공정위	846	-	325	59	_	384	462
금융위	864	369	171	80	_	251	244
국민권익위	656	-	300	128	_	428	228
국가보훈처	40,213	33,478	669	107	_	776	5,959

주: 괄호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총 5개 기관에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11개의 기금에 편성되어 있다.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을 분야 ·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4개 분야, 국정운영, 재정금융, 일반행정, 보훈, 농업농촌, 산업금융지원, 주택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국무총리실 소관 예산

세입 10.2억원 세출 4,992억원

국무총리실

2012년 국무총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예산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외부 임차사무실 보증금 반환금 10억 1,800만원¹⁾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1년에 비해 112억원(2,3%) 증액된 4,991억 6,800만원이다.

[표 3-19] 국무총리실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열산	(A)	(B)	(B-A)	(B-A)/A
일반회계	3,901	4,772	4,886	114	24
에특회계	95	108	106	-2	-1.9
합 계	3,996	4,879	4,992	112	2,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국무총리실 전체 예산 중 86.6%인 4,324억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국무총리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고유의 일반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4.4%인 689억원에 불과하다.

2012년 국무총리실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트위터 ·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총리 및 총리실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통해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다.

[표 3-20] 2012년 국무총리실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뉴미디어 정책정보서비스	-	291	291	순증	
조세심판정보화	_	249	249	순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¹⁾ 조세심판원 9억 5,400만원, 주한미국기지이전지원단 사무실 6,4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 예산대비 32억원(0.8%) 감소한 4,051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대부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2012년 세출예산은 총 846억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58억원(7.3%)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소비자보호활동 지원,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운영(정보회), 한국소비자원 출연 등 소비자후생증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2011년 대비 33억원(56.9%)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12년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 4,051억원 세출 846억원

[표 3-21]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일반회계 세입	5,084	4,082	4,051	-32	-0.8
일반회계 세출	710	788	846	58	7.3

자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개요, 2012, 1

한편 2012년 신규사업으로는 동반성장 협약내용에 대한 대기업들의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3,200만원이 편성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시스템 구축 · 운용사업이 있다.

[표 3-22]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 시스템 구축 · 운용사업	_	132	132	순증	

자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개요, 2012, 1

금융위원회

2012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운용된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8.5%(9억 700만원) 증가한 116억 17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9.4억원 증가한 104.4억원을 계상하였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72.8%(1조 1,325억원) 감소한 4,231억원이다. 세출예산은 금융정책, 금융서비스, 금융정보분석, 금융행정지원,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

2012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 116억원 세출 4,231억원 환),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의 7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지금상환기금 전출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1,111억원 감액되었다.

금융위원회 소관 9개 기금 중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전년보다 운용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공적자금상환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은 전년보다 운용규모가 줄어들 었다. 특히, 구조조정기금은 82.5% 축소된 규모이다.

[표 3-23] 금융위원회 세입·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744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결산	(A)	(B)	(B-A)	(B-A)/A
일반회계 세입	124	107	116	9	8.5
일반회계 세출	31,427	15,556	4,231	-11,325	-72.8

자료: 금융위원회,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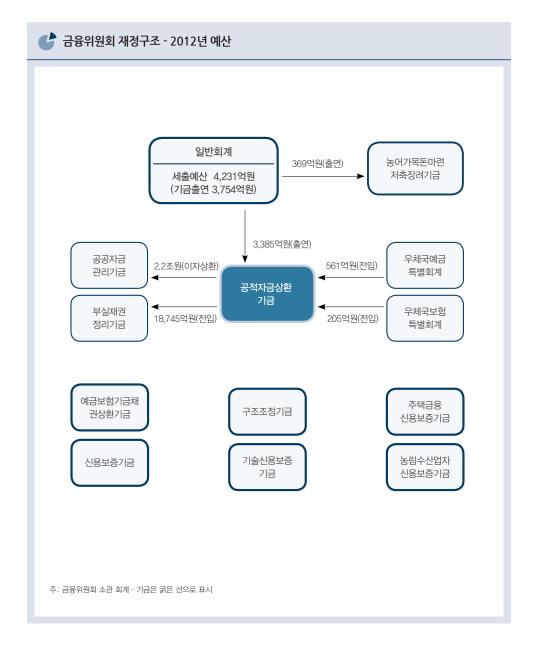
금융위원회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385억원을 출연하 고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외에도 우체국예금특별회계(561억원)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05억원)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전입금(18,745억원) 등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리금 상환(2 조 2,393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표 3-24] 금융위원회 기금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글린	(A)	(B)	(B–A)	(B-A)/A
공적자금상환기금	351,663	24,685	22,916	-1,769	-7.2
기술신용보증기금	30,645	25,067	23,091	-1,976	-7.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460	24,406	14,652	-9,754	-4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275	1,542	1,088	-454	-29.0
신용보증기금	47,082	46,245	59,930	13,685	29.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26,090	80,691	105,415	24,724	30.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4,569	14,709	20,689	5,980	40.7
부실채권정리기금	24,731	28,914	23,339	-5,575	-19.3
구조조정기금	37,277	55,751	9,752	-45,999	-82.5
합 계	650,792	302,010	280,871	-21,139	-7.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국민권익 위원회 소관 예산

세출 656억원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운용된다.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7.0%)된 656억원이다.

[표 3-2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년	(A)	(B)	(B-A)	(B-A)/A
일반회계	566	613	656	43	7.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는 300억 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경비는 127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2012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

세출 3조 8,977억원

2012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운용된다. 2012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 예산 대비 1,744억원 증가한(4.7%) 3조 8,977억원이다. 세출예산의 증액은 고엽제후유증 인정범위의 확대에 따른 보상금 증가및 보상금과 각종 수당 등 보훈급여금의 단가가 인상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표 3-26]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란		(B)	(B-A)	(B-A)/A
일반회계	34,207	36,878	38,638	1,760	4.8
에특회계	342	342	325	-17	-5.0
광특회계	12	13	14	1	7.7
합 계	34,561	37,233	38,977	1,744	4.7

자료: 2012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예산 개요, 2012, 1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3조 8,977억원 중 보훈보상금, 의료지원비, 교육지원비, 인건비 등 법정 의무지출 및 경직적 성격의 경비가 3조 7,166억원으로서 전체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량적 사업의 경우에도 국립묘지 및 의료시설 건립, 독립기념관 운영등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공훈선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등 2개가 있다. 보훈기금의 2012년 계획액은 총 5,894억원으로 2011년 계획에 비해 625억원(9.6%) 감소하였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619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111억원(21.9%) 증가하였다.

2012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규모

보훈기금 5,894억원 순애기금 619억원

[표 3-27]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규모

(단위: 억원, %)

기금	2010 결산	2011 계획	2012 계획	증	감
/10	2010 결선	(A)	(B)	B–A	(B-A)/A
보훈기금	3,862	6,519	5,894	-625	-9.6
순애기금	300	508	619	111	21.9
합 계	4,162	7,027	6,513	-514	7.3

자료: 2012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예산 개요, 2012, 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1년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7일에 걸쳐서 정무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제303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11년 11월 9일)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예비심사 결과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3.232억원이 증액되고 316억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2.916억원이 증액 조정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11월 7일부터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및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 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12월 31일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심사결과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정부안에 비해 490억원이 감액되고 322억원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안인 4조 7,739억원에 비해 168억원 감소한 4조 7,571억원으로 감액 의결되었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정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대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시 2,916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초 종합심사에서 168억원 감액 조정된 것은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출연 2,000억원 신규 증액 요구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고, 각 부처별로 추가 감액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회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무총리실은 45억 5,000만원 증액되고 190억 2,000만원 감액되어 확정예산에는 144억 7,000만원 순감하였다.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2012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뉴미디어정책정보 서비스사업은 2,200만원 감액되었고, 녹색성장사업 추진은 6억 5,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편성된 협동연구비 예산이 53억 5,000만원 감액되어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에너지외교협력 활동지원 예산은 정무위원회의 조정요구보다 큰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세심판 정보화 사업은 정부안(2억 4,900만원)으로 의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비해 2억 6,000만원 증액되고, 3억 2,400만원 감액되어 6,400만원 순감하였다. 이는 정무위원회의 8억 7,000만원 증액, 1억 5,000만원 감액 요구보다 더 적게 증액하고 더 크게 감액한 것이다. 정무위원회의 증액요구에 비해 더 작아진 것은 한국소비자원 출연 6억 1,000만원 증액 요구를 예결위 심사에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2012년에 신규로 편성된 소비자보호 활동지원 중 소비생활패턴개선에서 1억원, 디지털조사센터 구축 사업에서 1억 7,4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비해 일반회계에서 27억 800만원, 기금에서 1,148억 5,000만원 순증하였다. 이는 정무위원회의 2,002억 1,200만원 증액 요구에 비해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앞서 언급했 듯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출연을 위해 정무위원회가 요구한 2,000억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에서는 금융정보분석, 금융행정지원 프로그램과 금융중심지조성과발전 사업 등에서 2억 4,200만원 감액이 있었지만 모기지론이차보전에서 2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기금은 주택금융신 용보증기금에서 104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521억 5,000만원,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523억원 증액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세출예산은 정부제출 예산안(658억원) 대비 1억 8,700만원 순감되었다. 주요 조정 사업을 살펴보면, 공익신고제도 운영사업이 2억 8,900만원 증액되고,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이 2억 5,900만원 감액되어 정무위원회의 요구가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세출예산은 정부제출 예산안(3조 9,071억원) 대비 95억원이 순감하였다. 이는 고 엽제후유증 추가 질병 관련 법률안 통과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보상금 2개월 소요(23,959백만원)를 감 액하고,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개월 소요를 증액(12,122백만원)하였으며,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을 6억 6,800만원 감액하는 등에 주로 기인한다.

[표 3-28] 정무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 주요사업 심의내역

(단위: 백만원)

				(ETT: 42 <i>E</i>)
부처	사업명	정부안 (A)	상임위 (B) (B-A)	예결위 (C) (C-A)
	뉴미디어정책정보 서비스	313	291 (22)	291 (22)
그므호기시	녹색성장사업 추진	6,475	5,825 (650)	5,825 (650)
국무총리실	에너지외교협력활동 지원	294	200 (94)	170 (1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931	19,581 (5,350)	19,581 (5,350)
77101	소비자보호활동지원	1,440	1,340 (100)	1,340 (100)
공정위	디지털 조사센터 구축	574	574 (0)	400 (174)
금융위	모기지론 이차보전	6,770	6,770 (0)	9,720 (–2,950)
권익위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4,555	4,296 (259)	4,296 (259)
	보상금	2,179,578	2,168,329 (11,249)	2,159,948 (19,630)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19,448	231,570 (12,122)	231,570 (12,122)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4,909	4,241 (668)	4,241 (668)

자료: 정무위원회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3절 주요 사업

1.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사업

공직복무관리 사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00만원(14.4%) 감소한 6억원이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공직기강 확립,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과 공직자 비위 적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공무원 발굴, 고충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기능과 조직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추진하였고, 2010년 7월 26일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변경하였다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사업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관련 별표에 따라 설립된 23개 연구기관 외에 4개의 부설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제정책대학원, 농촌정보문화센터, 육아정책연구소)이 설립 ·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예산은 4,323억 900만원으로 2011년대비 132억 6,000만원(3,2%) 증액되었다.

2012년 경제 · 인문 사회연구회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원 사업 예산 4,324억원

[표 3-2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2 23] SMICENALI A	1162 41668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8,130	19,581	-8,549	-30.4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194	11,509	315	2.8
2. 국토연구원	26,192	27,482	1,290	4.9
본원	19,117	19,801	684	3.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075	7,681	606	8.6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099	30,450	5,351	21.3
4. 산업연구원	15,924	16,749	825	5.2
5. 에너지경제연구원	10,803	10,569	-234	-2,2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431	7,066	-365	-4.9
7. 통일연구원	9,726	9,740	14	0.1
8. 한국개발연구원	60,418	62,995	2,577	4.3
본원	50,894	47,121	-3,773	-7.4
국제정책대학원	9,524	15,874	6,350	66.7
9. 한국교육개발원	15,117	17,605	2,488	16.5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7,158	28,914	1,756	6.5
11. 한국교통연구원	10,977	11,434	457	4,2
12. 한국노동연구원	10,569	10,280	-289	-2.7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596	17,220	-376	-2.1
본원	15,915	15,708	-207	-1.3
농촌정보문화센터	1,681	1,512	-169	-10.1
14. 한국법제연구원	10,339	11,176	837	8.1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984	23,495	1,511	6.9
본원	16,746	17,504	758	4.5
육아정책연구소	5,238	5,991	753	14.4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856	14,439	583	4.2
17. 한국조세연구원	22,610	23,354	744	3.3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079	17,681	602	3.5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212	7,639	427	5.9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416	14,387	-29	-0.2
21. 한국행정연구원	10,957	11,858	901	8.2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715	9,188	473	5.4
23.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15,547	17,498	1,951	12.5
합 계	419,049	432,309	13,260	3,2

2. 금융위원회

공적자금 관리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 12월 여야합의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적자금(공적자금 I)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조성(공적자금 II)하고 2009년 5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여 공적자금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켰다.

[표 3-30] 공적자금 [과 공적자금 Ⅱ의 분류

	공적자금 [공적자금 🏿
조성시기	1997~2001년	2009년~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한 자금	
조성재원	 1)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 2)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6) 공공차관(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한 자금 1)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 당시 별도 상환대책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분류된 공적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백서」, 2011, 8

이러한 공적자금은 조성-지원-회수 및 상환-사후관리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재원은 외환위기 초 창기를 제외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정부 보증을 받아 발행한 채권과 공공자금 등으로 조 성하고 있다. 조성한 재원은 「공공자금관리특별법」의 지원원칙에 따라 지원되며, 이후에 회수한 지금 등으로 상환을 한다.

1997년말 이후 2011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 I 은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는데,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에 63.5조원, 매각 또는 계약이전 결정시 순자산 부족분에 대한 출연 및 폐쇄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등에 48.9조원을 지원하였으며,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등으로 17.8조원,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38.5조원을 지원하였다.

[표 3-31] 공적자금 I 지원현황(1997, 11월-2011, 9월말)

(단위: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 매입	합계
은행		34.0	13.9	_	14.4	24.6	86.9
	종금	2.7	0.7	18.3	_	1.0	22,8
제	증권 투신	10.9	0.4	0.01	2,1	8.5	21.9
2	보험	15.9	3.1	_	0.3	1.8	21.2
금 융 권	신협	_	_	4.7	0.3	_	5.0
권	저축은행	_	0.4	7.3	0.6	0.2	8.5
	소계	29.5	4.7	30.3	3,3	11.5	79.4
	금융기관 등	_	_	_	_	2,4	2,4
	합계	63.5	18.6	30.3	17.8	38.5	168.6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 운영현황 보고」, 2011.12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정부 등은 2011년 6월까지 지원된 공적자금 168조 6,457억원 중 총 101조 5,491억원을 회수하여 60.2%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회수 주체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47조 7,306억원, 자산관리공사가 44조 8,330억원, 정부 등이 8조 9,855억원을 회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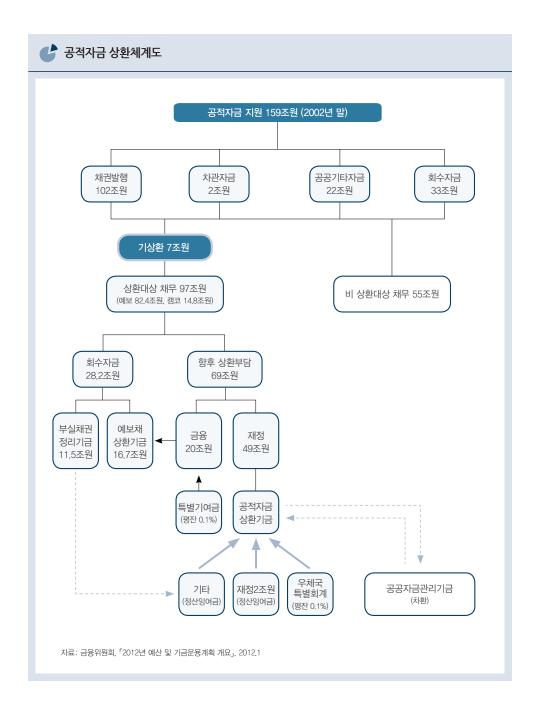
[표 3-32] 공적자금 회수실적(1997, 11월~2011, 9월말)

(단위: 조원)

	회수방법	규모	합계	
	출자금 회수	20.8		
예금보험공사	파산배당등	19.1	48.3	
	자산매각등	8.4		
	국제입찰	1.7		
	ABS 발행	5.1		
TLAFZFIZIT	AMC, CRC, CRV매각	2.7	18.6	
자산관리공사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13.3	10.0	
	대우채권변제회수	11.9		
	환매, 해제	10.3		
저ㅂ	출지금회수	2.4	0.0	
정부	후순위채권회수	6.6	9.0	
	합계		102,2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 운영현황 보고」, 2011.9

공적자금 I 의 상환대책은 2002년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심의로 확정된 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2년말 기준 상환부담이 있는 공적자금의 채무원금 97조원중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27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말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우체국 예금·보험 출연금, 국채발행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45.7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에 3.3조원을 출연(원금기준)하였다. 2002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출연 계획은 매년 2~3조원 정도로 총 23조 4천억원이었는데, 실제 실적은 일반회계와 세계잉여금을 합하여 17조 9.900억원을 출연하였다. 그리고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으로 출연 부족분을 충당하였다.

2003~2011년 공적 자금상환기금에 대 한 재정상환 실적

일반회계 11조 2,300억원 세계잉여금 6조 7,600억원

[표 3-33]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재정상환

(단위: 조워)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상환대책(2002)	2.0	2.1	2.3	2,4	2.6	2.7	2.9	3,1	3,3	23.4
상환실적	2.1	0.25	1.3	3.4	0.02	3.0	1,37	3.8	2.75	17.99
일반회계	2.1	0.25	1.3	3.0	0.02	0.02	0.08	3.0	1.45	11.23
세계잉여금	-	-	-	0.38	-	2.98	1.3	0.8	1.3	6.76

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실채권기금 잉여금 8,0조원(2007년 3조원, 2008년 3조원, 2009년 0,65조원, 2010년 1,05조원, 2011년 0,3조원)을 공적 지금상환기금 상환채원으로 활용하였음(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2011.8)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9.2조원을 조성하여 금융회사 부실채권 111.5조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 24일 설치되었으며 2012년 11월 22일까지 청산될 예정이다.²⁾

기금은 2012년 보유자산 매각과 여유자금의 회수 등으로 총 2조 3,339억원을 조달하여 기금운영비 1,613억원을 지출후 잔여재산을 출연기관(정부 및 금융회사)에 반환함으로써 청산할 계획이다. 기금의 청산으로 인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은 1조 8,745억원으로 2011년 대비 9,245억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의 전출금은 3,385억원으로 2011년 계획대비 1조 1,108억원이 감액되었다.

참고로 2011년 말 현재 기금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산 및 매각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 금융위원회,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1

^{2) 2006}년 12월 30일자로 운용시한이 2012년까지 5년 연장되었다.

[표 3-34] 부실채권정리기금 매각 대상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지분율 (%)	취득가액 (2011)	장부가액 (2011)	매각추진현황 (2012, 2)
채무증권				
국민주택채권	_	1	1	일괄매각대상
기타지분증권				
지엠대우자동차기술	_	135,424	135,424	일괄매각대상
지분증권(주식)				
(주)대우일렉트로닉스	57.42	143,817	143,817	재매각추진예정
교보생명보험(주)	9.93	175,962	175,962	매각주간사선정 완료
대우조선해양(주)	19.10	147,181	888,574	매각주간사선정완료
새롬성원산업(주)	0.03	40	40	일괄매각대상
쌍용건설(주)	38.75	40,476	79,142	재매각추진예정
쌍용양회공업(주)	9.34	126,000	30,975	매각주간사선정
한마음금융(주)	0.01	227	155	일괄매각대상

자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공적신용보증규모

정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기업을 위한 공적신용보증제도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 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³⁾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 관련기금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운용배수로서 운용배수 는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것이다. 보증을 과다하게 공급할 경우 기금의 재원이 고갈되는 사 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용배수를 관리하여야 하며, 각 기금의 근거법률은 운용배수의 한도를 규 정(20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40배)하고 있다. 각 신용보증기금의 2011년 보증잔액실적 등은 다 음과 같다.

[표 3-35] 5개 신용보증기금 현황

(단위: 배수, 억원, %)

	법정 운용배수	운용 배수 (2011)	보증잔액 (2011)	대위변제율 (2011)	정부출연금 (2012 예산)
신용보증기금	20	6.9	454,868	3.6	-
기술신용보증기금	20	6.1	173,154	3.6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	4.9	85,615	2.1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0	10.2	285,206	0.8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	12.9	67,763	_	180

자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³⁾ 이 중 기획재정부 소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 및 혐의거래 보고제도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범죄자금의 자금세탁 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테러)자 금조달 금지를 통하여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1년에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혐의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금융기관이 1,000만원 또는 5,000불 상당 이상의 거래로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거나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는 일정 금액(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이러한 보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3-36] FIU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실적

(단위: 천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혐의거래보고	52	92	136	236
고액현금거래보고	3,875	6,678	6,441	11,101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연차보고서」, 2011.12

2012년 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세출은 총 59억 3,600만원으로 이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해복구시스템, 보안관제시스템, 특정금융거래정보 통합시스템의 신규 구축 등에 따른 전산망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47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규제와 과징금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에 따라 과징금⁴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과징금은 세입예산의 경상이전수입 중 벌금 목으로 수납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예산의 대부분(99.5%)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 세입예산으로 4,029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2012년 공정거래위 원회 과징금 세입예산 4,029억원

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은 해당 법 규상의 일정한 행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 · 징수하는 금전" 등으로 정의된다.

[표 3-37]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현황

유 형	부과 기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매출액의 3%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10억원 이내)
경제력집중억제 규정위반	상호출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이내 출자총액제한 위반: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이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채무보증액의 10%이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법제17조4항의 각호 금액의 10% 이내
부당한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20억원 이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5억원 이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참가: 관련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5억원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5억원 이내) 관련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5억원 이내) 재판매가격유지: 매출액의 2%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5억원 이내)
부당한지원행위	법 위반 지원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산출이 어려울시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 액으로 봄)
가맹사업법위반행위	매출액의 2% 이내
하도급법위반행위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표시·광고위반행위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5억원 이내)
방문판매법위반행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5천만원 이내)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5천만원 이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12.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과징금 환급액 과다 발생 및 수납률 저조 문제와 함께 과징금 부과 요건과 금액 산정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제기되어 왔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예산 및 징수실적을 보면, 예산액은 2007년 1,352억원에서 2011년 4,07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역시 2007년 3,896억원에서 2011년 8,84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7년을 제외하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60%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보이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매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 3-38]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예산 및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A) (B)		(C)	(C/B)	(C/A)	
2007	135,221	389,632	300,336	77.1	222.1	
2008	136,064	252,853	131,131	51.9	96.4	
2009	189,697	454,705	110,796	24.4	58.4	
2010	372,676	881,839	507.629	57.6	136.2	
2011	407,823	884,831	348,723	39.4	85.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국가보휴처

보상금 및 수당

2011년 11월 30일 현재 보훈대상 인원은 총 88만 2,056명이며, 이 중 본인은 70만 5,793명으로 80.0%를 차지하고, 유족은 17만 6,263명이다. 6 · 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전몰 · 전상 · 순 직 · 공상군경인 보훈대상자가 각각 20만명을 상회하여 모두 62만 5,695명으로 70.9%를 차지한다. '보훈심사 및 보상(프로그램)'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동 프로그램 예산은 국가보훈처 세출예산 총계(3조 8,976억원)의 79.1%에 해당하는 3조 82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중 보상금(세부사업)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본적인 급여, 그리고 이에 부가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2012년 보상금 예산은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단가를 4.0%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질병 인정범위의 확대로 인한 보상금 증가(1,200억원)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1% 증액된 2조 1,59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주요 수당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보상금 인상률과 연계한 6.25 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 2세 수당도 단가를 각 4.0% 인상하였으며, 2011년 신설된 1급 중상이자 특별수당은 보상금의 5~15%에서 15~45%수준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중상이자(1~2급)에게 간병인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실 소요를 감안하여 단가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였다. 다만,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답과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6.25 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2012년 국가보훈처 보상금 예산

2조 1,599억원

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8만원, 12만원(월지급액)으로 편성되었다.

이외에도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이 2011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활조정 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수당, 재해보상금, 영주귀국정착금 등은 2011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다.

[표 3-39] 주요 보훈보상 내역 및 보훈대상자 현황 (EPI: 백만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감	'			
	2010 열전	(A)	(B)	(B-A)	(B-A)/A			
보상금	1,860,394	1,961,788	2,159,948	198,160	10.1			
	(177,943명)	(178,518명)	(176,284명)	(-2,234명)	(-1.3)			
간호수당	62,868	65,469	66,957	1,488	2,3			
	(4,449명)	(4,348명)	(4,033명)	(-315명)	(-7.2)			
생활조정수당	8,946	11,804	11,551	-253	-2.1			
	(5,229명)	(5,696명)	(5,756명)	(60명)	(1.1)			
6.25자녀수당	142,909	164,537	175,778	11,241	6.8			
	(15,841명)	(16,595명)	(16,536명)	(-59명)	(-0.4)			
무공영예수당	53,249	64,800	58,406	-6,394	-9.9			
	(31,032명)	(30,000명)	(27,040명)	(-2,960명)	(-9.9)			
고엽제수당	241,130	269,748	232,281	-37,467	-13.9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40,572	269,074	231,570	-37,504	-13.9			
	(44,045명)	(47,962명)	(49,808명)	(1,846명)	(3.8)			
고엽제환자2세수당	558	674	711	37	5.5			
	(36명)	(64명)	(65명)	(1명)	(1.6)			
참전명예수당	256,211	337,400	356,239	18,839	5.6			
	(219,070명)	(233,340명)	(246,505명)	(13,165명)	(5.6)			
사망일시금	5,532	5,800	5,800	-	-			
	(5,369명)	(5,961명)	(5,961명)	-	-			
재해보상금	16,203	11,000	10,644	-356	-3.2			
	(160명)	(174명)	(155명)	(-19명)	(-10.9)			
영주귀국정착금	1,885	2,546	2,200	-346	-13.6			
	(65명)	(49명)	(42명)	-7	-14.3			
계	2,649,327	2,894,892	3,079,804	184,912	6.4			

주: 1. 고엽제후유증 질병 확대 인원 제외(보상금 12,518명/간호수당 413명/고엽제후유의증 -11,984명)

^{2, 2010}년 인원은 2010년 예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조사평가

부패방지조사평가 사업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및 일반국민, 외국인 등의 부패인식을 점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 예산은 24억 8,600만원 편성되었다.

주요 사업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일반국민대상 공무원 부패인식도 조사가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2002년 71개 기관, 30,639명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1년에는 705개 기관 218,124명으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10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청렴도 역시 2002년 처음 조사시 6.4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7년에는 8.89까지 증가했다. 이후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8.2~8.5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노력도와 성과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74개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2011년은 20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일반국민대상 공무원 부패인식도는 2006년 조사이래 지난 해까지 공무원들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57% 수준으로 지속해서 과반을 넘고 있다.

2012년 부패방지 조사평가 사업 예산 24억 8,600만원

기획재정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기획재정 위원회 소관 총지출 21.1조원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21조 1,337억원으로 2011년 대비 0.3% 감소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이다. 이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각 부처 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2011년 대비 0.2% 증가한 18조 9,583억원, 국세청이 1조 3,876억원(5.2% 감소), 관세청이 4,240억원(0.9% 증가), 조달청이 1,182억원(5.3% 증가), 통계청이 2,356억원(15.9% 감소)이다.

[표 3-40]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211: 72, 70)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11,957	211,337	-620	-0.3
총지출 대비 비중	6.9	6.5	-0.4%p	
기획재정부	189,199 (89.3)	189,583 (89.7)	384	0.2
국세청	14,631 (6.9)	13,876 (6.6)	-755	-5.2
관세청	4,202 (2.0)	4,240 (2.0)	38	0.9
조달청	1,123 (0.5)	1,182 (0.6)	59	5.3
통계청	2,802 (1.3)	2,356 (1.1)	-446	-15.9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괄호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지출 21조 1,337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6%, 39.4%이며,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31.5%이다. 의무지출 비중이 큰 이유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상환 규모가 총지출 기준 12조 4,14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며, 그 밖에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금(2,216억원), 국세청의 납세조합법정교부금(19억원) 등이 의무지출로 분류된다.

[표 3-4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지출	의무			재량지출(A-B)			
	합계			비경직성				
	(A)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기획재정 위원회 소관	211,337 (100)	128,152 (60.6)	14,233 (6.7)	2,313 (1.1)	-	16,546 (7.8)	66,639 (31.5)	
기획재정부	189,199	128,117	761	301	_	1,062	60,020	
국세청	13,876	19	9,353	1,467	_	10,820	3,037	
관세청	4,240	_	2,411	270		2,681	1,559	
조달청	1,182	16	560	126		686	480	
통계청	2,356	_	1,148	149	_	1,297	1,059	

주: 괄호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지출에서 해당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5개 부처가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관에 일반회계, 1개의 특별회계 및 6개의 기금이 있고, 국세청 및 관세청 소관에 각각 일반회계 및 1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며, 조달청 소관에 2개의 특별회계, 통계청 소관에 일반회계가 있다.

기획재정부

2012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 개의 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복권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 매각·임대 등의 수입을 각 부처의 청사·관사 매입 등에 충당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2012년 신설된 기금이다. 5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11조 6.213억원) 증가한 225조 303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16조 243억원(국세수입 약 197조 2,755억원, 세외수입 18조 7,488억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9조 60억원이다.

[표 3-42] 2012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글린	(A)	(B)	(B-A)	(B-A)/A
일반회계	1,995,602	2,040,012	2,160,243	120,231	5.9
광특회계	98,752	94,077	90,060	-4,017	-4.3
합 계	2,094,354	2,134,090	2,250,303	116,213	5.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1.9%(2,938억원) 증가한 16조 1,538억원 이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2011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의 세수부족분을 충당하 기 위하여 공자기금에서 인수한 지방채 원리금 보전 예산 2조 1,393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경제 발전경험공유사업(KSP) 예산이 전년 대비 52억원 증가한 반면, 광특회계의 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 라 광특회계 전출금이 전년 대비 1조 6,725억원 감소하였고, 2011년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한국 수출입은행 출자가 2012년에는 전액 감액되었다.

[표 3-43] 2012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일반회계	118,633	158,600	161,538	2,938	1.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⁵⁾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운용 · 관리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와 실제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제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수정을 가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국회법」은 기금사업 수행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의견제시 전에 해당 부처가 기금사업에 대하여 보고 하도록 규정(2010년 3월 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운용규모는 154조 8,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복권기금의 운용규모가 10.5% 증가한 반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7.6% 감소하였다. 복권기금의 운용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복권판매수입 증가에 따라 복권판매사업비(당첨금, 위탁수수료 등)와 법정배분사업이 전년 대비 각각 9.0%(1,350억원), 17.9%(647억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규모가 감소한 것은 공자기금 예수금원금상환액 및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대개도 국차관(융자) 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원 증가하였다. 국유재산관리기금(9,686억원)은 공용재산 취득사업에 9,059억원,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비축토지 매입사업에 560억원, 기금운영비 및 이자상환에 68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표 3-44] 2012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총괄

(단위: 억원, %)

기금	2010 결산 2011 계획 2012 계획		증	감	
	2010 열전	(A)	(B)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1,562,179	1,111,545	1,131,366	19,821	1.8
복권기금	31,208	33,413	36,934	3,521	10.5
대외경제협력기금	7,183	7,375	6,813	-562	-7.6
외국환평형기금	712,997	365,729	361,652	-4,077	-1.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456	2,198	2,239	41	1.9
국유재산관리기금	_	_	9,686	9,686	순증
합 계	2,315,023	1,520,260	1,548,690	28,430	1.9

주: 총계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수 있다. 2011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1조원 상당의 도로공사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동 은행에 대한 출자 예산(2011년 1,000억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복권기금의 경우 소송적립금 잔액을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미반영하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잔액 추정액 5,600억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에도 재정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 대비 10억원 감액하였다.

또 다른 특징으로 이러한 예산 편성 기조 하에서도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증가된 것을 들수 있다. 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이 전년 대비 143억원,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 52억원 증액되었으며, G20서울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한 G20관련협력사업(1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표 3-45] 2012년 기획재정부 소관 주요 국제협력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국제금융기구 출연	68,195	82,535	14,340	21.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4,000	19,156	5,156	36.8
G20관련협력사업	-	1,533	1,533	순증
ASEAN+3금융협력사업	1,403	1,987	584	41.6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338	889	551	163.0

자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2012.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재정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개 기금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재정구조의 특징은 국세 및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타부처 기금으로 재원을 배분한다는 것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타부처의 여유자금을 예수받아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점 또한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재정구조 - 2012년 예산 타부처 특별회계 타부처 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특허관리특별회계, 남북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등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 예탁·예수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 〈운용규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3조 1,366억원 〈세입〉 예탁 · 예수 9조 60억원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규모〉 전출(2조 8,699억원) 36조 1,652억원 예탁 · 예수 예탁·예수 일반회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180억원) 〈세입〉 〈소관세출〉 〈운용규모〉 216조 243억원 16조 1,538억원 2,239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3,490억원) 〈운용규모〉 6,813억원 타부처 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복권기금 전출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보훈기금, 〈운용규모〉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3조 6.934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규모〉 9,686억원

국세청

2012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1조 4,211억원) 대비 3.6% 감소한 1조 3,708억원이고,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419억원) 대비 59.9% 감소한 168억원이다.

국세청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정·금융부문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9,353억원)와 기본경비(1,467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8.0%에 달한다.

[표 3-46] 2012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글랜	(A)	(B)	(B-A)	(B-A)/A
일반회계	13,418	14,212	13,708	504	-3.6
혁신도시특별회계	0	419	168	251	-59.9
합 계	13,418	14,631	13,876	755	-5.1

자료: 국세청, 「2012년 국세청 소관 예산 개요」, 2012.1

관세청

2012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예산액이 총 243억원으로서 전년(218억원) 대비 11.5% 증액되었다. 세입 증액은 주로 벌금, 과태료, 위약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16.1%(28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정·금융 부문에 속해 있는데, 일반회계와 혁신도 시건설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이 4,240억원으로 2011년(4,202억원) 대비 0.9%(38억원) 증액되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컨테이너검색기, X-RAY검색기 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년(47억원) 대비 32%(15억원) 증액된 감시장비 위탁관리사업(62억원), 2009년 AEO(수출입안전공인업체)제도 도입 이후 인증신청 수요의 급증에 따라 전년(3억원) 대비 200%(6억원) 증액된 AEO공인심사 민간위탁사업(9억원) 등이 있다.

[표 3-47] 2012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년	(A)	(B)	(B-A)	(B–A)/A
세입	일반회계	198	218	243	25	11.5
	일반회계	3,856	4,172	4,160	-12	-0.3
세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	30	80	50	166.7
	세출 총계	3,862	4,202	4,240	38	0.9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조달청

2011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자본계정)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조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회전자금을 보유·운용하고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을 합한 예산액이 총 2,546억원으로써 전년 (3,822억원) 대비 33.4%(13억원) 감액되었다. 영업수익은 비축사업 수익이 299.1% 증가하였으나, 내자구매, 시설사업 수익이 각각 11.6%, 26.4%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자본계정)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이 2,688억원으로 전년(3,960억원) 대비 32,1%(13억원) 감액되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운영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15억원이 감액된 조달정보회(199억원), 청사신축 대신 현 청사유지 계획에 따라 사업비 8,5억원이 순감한 부산지방청사 신축 등이 있다.

[표 3-48] 2012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년	(A)	(B)	(B-A)	(B-A)/A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2,441	2,358	1,936	-422	-17.9
세입	조달특별회계 자본계정	1,232	1,464	610	-854	-58.3
	세입 총계	3,673	3,822	2,546	-1,275	-33.4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2,134	2,358	1,936	-422	-17.9
세출	조달특별회계 자본계정	1,222	1,464	610	-854	-58.3
세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802	138	142	4	3.0
	세출 총계	3,375	3,960	2,688	-1,272	-32,1

자료: 조달청,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2.1

통계청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15.9% 감소한 2,356억원이다. 주요 감액사업에는 전년 대비 522억원(\triangle 99.2%) 감액된 경제총조사 사업(4억원), 전년 대비 50억원(\triangle 47.8%) 감액된 인구주택총조사 사업(54억원) 등이 있다.

[표 3-49] 2012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결선	(A)	(B)	(B-A)	(B-A)/A
일반회계	3,913	2,802	2,356	-446	-15.9

자료: 통계청,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2.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2012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제외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년 11월 4일)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는 관련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조세소위원회의 심사가 12월 27일 완료됨에 따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1년 12월 28일)에서 세법개정 등에 따른 감액분(\triangle 1,675억원)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의 특징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예비심사 결과 감액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3,352억원, 국세청은 60억원 감액 조정되는 등 총 3,414억원이 감액(순계 기준)되었다. 전체 기금의 지출규모(공자기금과의 전출입 및 여유자금 증감액 제외)는 정부안 대비 23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SOC 대외변제 지출을 23억원 감액한 것 등에 기인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의 경우 최종 감액규모는 예비심사 결과인 3,352억원 보다 1조 58억원 많은 1조 3,410억원으로 이는 주로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소용,398억원)과 예비비(소4,000억원)의 감액에 주로 기인한다.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의 2012년 운용규모는 총 154.9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안(157.2조원) 대비 2.3 조원 감소한 것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규모 축소 등에 따른 국채이자 감액(소1조 2,685억원) 등에 기인한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회조정내역

세출예산 △1.3조원 기금운용규모 △2.3조원

	E 01 -1-1-11-	1 4 7 1 0 0	4014 0111		7 ~
丑 3-	·50] 기회재정	1무 소관 20	12년 예산	안 심의 :	수요 내역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 - A)	예결위(C) (C-A)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상환	76,406	75,059 (-1,347)	68,008 (-8,398)
일반	예비비	28,000	27,000 (-1,000)	24,000 (-4,0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195	195 (-)	192 (-3)
공자기금	국채이자상환(총괄계정)	201,814	201,814 (–)	189,129 (–12,685)

자료: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국세청의 경우 당초 예비심사결과 감액규모인 60억 5,5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 많은 62억 9,500만원이 최종 감액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대부분 반영하였다.

국세청 소관 국회조정내역

세출예산 △63억원

[표 3-51] 국세청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지방국세청 인건비	8,190	8,150 (-40)	8,150 (-40)
ОІНЬ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33	32 (-1.8)	31 (-2)
일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전면개편	305	292 (-13)	292 (-13)
	조사반활동비(특활비)	55	55 (0)	55 (-0.3)

자료: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관세청 소관 국회조정내역

세출예산 +11억원

관세청의 경우 정보관리사업 예산(418억원) 중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시스템 구축비용 등 9억원을 감액하였고, 밀수단속 사업(71억원) 중 환적화물 검사비용은 운송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므로 국가부담으로 하였던 동 검사비용 1.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다. 또한 조사감시장비현대화 사업(192억원) 중 감독공무원 체재비 0.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반영함과 동시에 노후감시정 적기교체를 위한 조사감시장비현대화 사업 예산 23억원을 증액 조정하였다.

[표 3-52] 관세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정보관리	418	409 (-9)	409 (-9)
일반	밀수단속	71	70 (-1.6)	70 (-1.6)
	조사감시장비현대화	192	192 (-0.4)	215 (23)

자료: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조달청 소관 국회조정내역

세출예산 +4억원

조달청의 경우 상임위는 예비심사에서 2009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지금 258억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하면서 이자상환금 63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군산비축기지 창고 관리동을 필요 최소규모만 증축하도록 하여 1.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다. 또한 타계정 전출금 증가 및 자본계정 세출감액을 반영하여 회전자금전출금을 9억원 증액 조정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모두 반영함과 동시에 2012년 군산비축창고 2개동 완공(4월, 8월)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의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수입증가를 사유로 세입예산 중 건물대여료 수입을 4억원 증액 조정하였다.

[표 3-53] 조달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조달특별 (손익계정)	조달특별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전출금(이자상환)	12.6	6.3 (-6.3)	6.3 (-6.3)
조달특별 (자본계정)	군산비축창고신축	91.2	89.9 (-1.3)	89.9 (-1.3)
	회전자금전출금	476	486 (9.3)	490 (13.3)

자료: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통계청의 경우 상임위는 예비심사에서 통계생산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계상 문제 개선을 위해 동 예산을 15억원 증액 조정하고,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사업 예산 중 필요성 · 시급성이 크지 않은 행정지원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선 · 개발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추가 현장조사 및 조사항목확대가 필요한 농어업통계작성 사업 예산을 7억원 증액 조정하는 등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27억원을 조정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대체로반영하였으나, 농어업통계작성 사업에 대하여는 상임위의 증액 조정규모 보다 작은 5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통계청 소관 국회조정내역 세출예산 +17억원

[표 3-54] 통계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억워)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통계생산대행수입대체경비	10	25 (15)	25 (15)
일반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44	43 (-1)	43 (-1)
	농어업통계작성	10	17 (7)	15 (5)

자료: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제3절 주요 사업

1.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사업(ODA 사업)이다. 2004년부터 예산규모 1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예산은 전년 대비 36.8% 증가한 192억원이다.⁶⁾ 당초 정부안은 195억원이었으나 국회는 정책자문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13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새마을운동경험 전수사업(10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3억원을 감액하였다.

⁶⁾ 동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인 정책자문사업의 지원대상국은 2011년 25개국에서 2012년 32개국(잠정)으로 확대되었다.

[표 3-55]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5,989	14,000	19,156	5,156	36.8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1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5.2%~72.5%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 집행률 또한 66.0%로 부진한 편이다. 2008년 이후 이월률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동 사업의 집행실적 부 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2012년 에 최초로 연례적 이월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책자문사업에 "장기계속계약"제도 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1차 연도(2012년)에는 2012년 총 사업규모의 70%(선금)인 119억원을 반영 하였는바,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 계약체결기간 지연 방지, 연구용역 수행기간의 연장에 대한 엄격한 관 리 등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3-56]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집행실적 추이: 2006~2011년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2006	800	291	1,091	695	367	29	63.7	33.6 (2.7)
2007	1,500	367	1,867	844	1,015	8	45.2	54.4 (0.4)
2008	2,500	1,015	3,515	2,517	752	246	71.6	21.4 (7.0)
2009	5,000	752	5,752	4,169	1,453	130	72.5	25.3 (2.3)
2010	7,450	1,453	8,903	5,989	2,233	681	67.3	25.1 (7.6)
2011	14,000	2,234	16,234	10,710	4,401	1,123	66.0	27.1 (6.9)

주: 진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진행액의 비율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 차관사업

대개도국 차관사업은 개도국 경제발전 지원 및 이를 통한 국격 제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정부는 국제적 위상 변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등을 위하여 ODA/GNI 비율을 2012년 0.15%,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차관 제공 규모는 전년 대비 105억원 증가한 6.152억원이 계획되었으며, 2011년 23개국 80개 사업 대비 3개국 13개 사업이 증가한 26개국 9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8년 이후 연도별 차관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7.7%, 2009년 89.4%, 2010년 87.4%, 2011년 84.3%로서 집행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행 부진은 정부의 ODA 확대 정책으로 EDCF 집행목표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차관사업 성격상 승인 후 집행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소요되는 것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EDCF사업 업무추진 단계(정부간협정(AG/AR)⁷⁾(외교통상부) → 차관공여계약(L/A: Loan Agreement) 체결(한국수출입은행) → 컨설턴트 고용 → 구매계약 체결)별로 기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가능성과 수원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획(A)	2,600	3,000	3,500	3,500	4,700	6,047
실적(B)	1,361	1,553	2,371	3,128	4,107	5,097
집행률(B/A)	52.3	51.8	67.7	89.4	87.4	84.3

자료: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원사업

복권판매수익금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저소득층, 소외계측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1조 2,699억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에 따라 법정배분사업(4,259억원)과 공익사업(8,440억원)으로 구분된다.

동법 제23조제1항은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비율에 의해 10개 기관에 배분 (법정배분사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개정(2011.2.30)에 따라 법정배분사업에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2012년 최초로 '배분비율 가감조정제'(±10%)를 적용하였다.⁸⁾

⁷⁾ 정부간 협정은 기본협정(A/G: Agreement), 시행약정(A/R: Arrangement) 및 기본약정(F/A: Framework Arrangement), 기본약정에 대한 보충약정(Arrangement Supplementing The Framework Arrangement)으로 구성된다.

⁸⁾ 법정배분기관의 지금소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감조정하였으며, 2012년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정한 가감조정범 위 $\pm 20\%$ 보다는 낮은 $\pm 10\%$ 를 적용하였다.

[표 3-58] 복권수익금 법정 배분비율

(단위: 억원, %)

	지 방 자치단체	제주도	과학기술 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공단	보훈복지 의료공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산림청	근 로 복지공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문화재 보호기금	합계
비율	6.0435	6.0435	4.404	3.63	2.25	2.2245	2.046	1.8585	1.5	5	35
배정액	736	736	549	413	295	291	271	222	178	568	4,259

자료: 기획재정부

공익사업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8,4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문화바우처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동법 개정(2011.3.30)으로 성과평가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와 기금사업 심의간 연계를 반영하여 2012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건립사업 등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으며, 법무부의 출소자 기능취득 전문처우센터 운영사업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아 예산이 감액 되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 적자 규모 확대

2012년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 규모는 2011년 대비 2조원(12,5%) 증가한 1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조달하고, 보유한 외화자산은 미국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함에 따라 발행금리와 수취금리간의 격차에 의해 외평기금의 구조적인 이치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이 경제위기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외평기금의 운용금리차가 확대되어 외평기금 수지는 2010년 기준 18조 8,834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표 3-59] 외평금리 조달·운용금리 격차 및 수지 추이: 2007~2010년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수취금리(%)	4.59	3.83	2,37	2,25
금리갭	지급금리(%)	4.85	4.88	4.83	4.95
	금리차(%p)	-0.26	-1.05	-2.46	-2.70
	당기순손익	-3,328	151,923	-46,966	-50,968
수지	환평가손익	-8,315	-64,627	-8,170	-36,511
	이차손익	4,987	216,550	-38,796	-14,457
	누적손익	-263,675	-90,900	-137,866	-188,834

주: 2008년말 누적적자는 세계잉여금 20,852억원 출연에 따른 누적결손 감소분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외환시장의 급변동에 대응하여 외평기금의 재원을 활용한 적절한 외환시장 안정조치의 시행이 긴요한 시점으로 잠재적 환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신호효과(signaling effect) 측면에서 충분한 규모의한도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할 경우 외평기금의 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 있고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의 누적 수지 결손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세청

근로장려세제(EITC) 운영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전통적 복지제도를 근로와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차상위 계층의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⁹

근로장려금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590,720가구에 4,537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에는 522,098가구에 총 4,020억원을 지급하였다.

[표 3-60] 근로장려금 지급실적 추이

(단위: 가구, 백만원)

2009년		201	10년	2011년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590,720	453,731	566,080	436,903	522,098	402,003

주: 전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지급실적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2012년 근로장려세제 조세지출은 2011년 4,020억원 대비 4,880억원(121.4%) 증가한 8,9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는 지급대상이 무자녀 가구까지 확대되고 총소득 및 지급금액 확대와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 변화에 기인하며, 이러한 제도 개편에 따라 수급가구는 개정 전에 비하여 58만 가구가 증가한 1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⁹⁾ 우리나라는 동 제도를 2009년 도입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3-61] 2012년 EITC 제도 개편 내용

	개정전		개정전 정부안		국회확정	
	소득기준	최대지급 금액	소득기준	최대지급 금액	소득기준	최대지급 금액
무자녀 가구	-	_	1,300만원	60만원	1,300만원	70만원
1자녀 가구			1,700만원	120만원	1,700만원	140만원
2자녀 가구	1,700만원	120만원	2,100만원	150만원	2,100만원	170만원
3자녀이상 가구			2,500만원	180만원	2,500만원	200만원
지원 규모	4,020억원		6,300 (현행대비:-)억원 -2,280억원)	(현행대비:-	0억원 +4,880억원) +2,600억원)
주택요건		무주택 또는 5,00	00만원 이하 주택	무주택 또는 6,000만원 이하 주택		
수급대상		근5	=====================================		일부 특수직	사업자 포함

주: 국세청

3. 관세청

관세탈루심사

관세탈루심사 사업은 불성실 납세행위에 대한 엄정관리를 위해 탈루여부를 심사하고, 위해 물품의 유입이나 FTA특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시장단속을 강화하며, 국제적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의 시행 ·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동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0%(7.3억원) 증가한 46억원이다.

[표 3-62] 관세탈루심사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결선	(A)	(B)	(B-A)	(B-A)/A		
관세탈루심사	3,107	3,858 (3,697)	4,590	732	19.0		

주: 기존 동사업에 포함되어있던 '국제원산지검증' 업무는 2011년 4월 조직개편(FIA집행기획관실 신설)에 따라 2012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시부터 FTA이행지원사 업의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었으며, 괄호속의 금액은 조직개편('11.4월)에 따라 '국제원산지검증'을 'FTA이행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후의 예산규모를 의미함 자료: 관세청,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2.1

이와 같은 예산의 증가는 세부사업 중 전년 대비 6억원 증액된 AEO공인심사 민간위탁(9억원), 전년 대비 3억원 증액된 중소기업 AEO공인지원(9억원), 전년 대비 0.5억원 증액된 AEO제도추진지원(4.9억원) 등에 주로 기인한다.

AEO제도는 수출입업체, 관세사, 창고업자 등 수출입관련 물류기업들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AEO)에 대하여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간 상호인정협상(MPA)을 통해 자국 AEO에 부여하던 통관상 혜택을 상대국 AEO에도 부여하게 됨에 따라 AEO가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국가간 AEO 상호인정의 확대 및 국내기업의 AEO 인증심사를 가속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EO공인 획득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등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지원대상을 중소 수출업체와 이에 연계된 물류업체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업체당 AEO공인획득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AEO컨설팅 사업의 수행방식을 개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는바, 관세청은 영세중소업체들이 AEO공인획득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지원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조달청

회전자금 및 비축사업

회전자금은 수요물자사업과 비축물자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하고, 수요기관 또는 실수요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수수료를 수납하는 자금이다.¹⁰⁾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수요물자사업과 원자재 비축사업 등 조달사업을 위해 운용하고 있다.¹¹⁾ 회전자금 규모는 원자재 비축 규모의 증가에 따라 2008년 이후 연도별 10%를 전후하여 증가하였으며, 2012년은 전년 실적 대비 4.1% 증가한 1조 2,14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회전자금 규**모(전망)** 1조 2,140억원

¹⁰⁾ 수요물자사업이란 내자 물품의 대가를 계약자에게 대지급한 후 수요기관에 납입 고지하여 회수하는 사업이며, 비축물자사업은 비철 금속, 희소금속 등 원자재를 비축한 후 필요할 때 중소기업에 방출하는 사업으로서 회전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축물자 판매 및 대여 등 에 따른 수익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의 비축물자사업수익으로 전입된다.

^{11)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표 3-63] 계정별 회전자금 규모

(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획)
수요물자계정(A)	2,572	2,500	2,232	2,076	2,076
비축물자계정(B)	6,171	7,150	8,323	9,574	10,064
합계(C=A+B)	8,743	9,650	10,555	11,650	12,140
전년대비 증감	591	907	905	1,095	490
%	7.3	10.4	9.4	10.4	4.1

자료: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원자재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2012년 조달청 비축사업 총 규모(구매 및 방출)는 5,300억원으로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를 2011년 실적과 비교하면, 경기침체로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약세를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매가 확대되고 방출 규모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유럽재정위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급격한 재고변화 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11년 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원자재 비축현황 및대응방안」에서 제시한 비축목표¹²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표 3-64] 2012년 비축사업 계획

(단위: 억원, %)

	2011년 실적(추정치) (A)	2012년 계획 (B)	증감률 [(B-A)/A]
구 매	3,628	5,300	46.1
방출	6,592	5,300	19.6
재고일수	52.4	49.2	

주: 재고일수는 스트론튬 등 신규 희소금속 비축으로 2011년 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조달청

^{12]} 당초 2012년까지 비축물자 전 품목에 대하여 60일분의 재고를 비축하기로 하였으나, 품목별로 재고목표를 차등화(평균 58.7일)하는 한편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5. 통계청

통계작성사업

통계청 작성통계는 총 53종으로 조사통계 42종, 가공통계 9종, 보고통계 2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조사·작성 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¹³⁾ 2012년 예산은 전년 대비 64.7%(516억원) 감소한 282억원이다. 이러한 예산 감소는 작성주기가 5년인 경제총조사가 2011년에 실시됨으로써 2012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표 3-65] 통계청 조사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란	2011 에건	2012 에건	(B-A)	(B–A)/A
인구주택총조사	169,535	10,388	5,426	-4,962	-47.8
경제총조사	3,160	52,586	402	-52,184	-99.2
농림어업총조사	19,078	1,341	306	-1,035	-77.2
경제구조통계작성	6,831	567	7,904	7,337	1,294.0
경제동향작성	511	1,812	425	-1,387	-76.5
사회통계작성	4,642	11,801	12,676	875	7.4
농어업통계작성	1,930	1,307	1,041	-266	-20.4
합 계	205,687	79,802	28,180	-51,622	-64.7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5년 주기의 국 가기본통계로서 2011년에 실시된 경제총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0년에 실시되었다.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부문조사(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 전국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 등 사업체 및 기업체에 대한 경영실태와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고, 경제동향작성사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활동 동향을 조사하며, 사회통계작성사업은 지역별고용조사, 가계금융조사 등 사회부문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농어업통계작성은 9종의 농어업생산통계 및 3종의 농수산통계를 제공한다.

각 통계별 작성방법 및 작성주기는 다음 [표 3-66]과 같다.

^{13]} 다만, 주요 가공통계, 보고통계 등은 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로 수행되고 있으며, 생활시간조사(5년 주기)는 본조사가 실시되기 1년 전인 2013년에 별도사업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표 3-66]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53종)

		작성주기	통 계 명 칭
		5년	· 인구총조사 · 주택총조사 · 농림어업총조사 · 경제총조사
		2년	· 통계인력및예산조사
	전수 조사	매년	· 광업제조업조사 · 건설업조사 · 전국사업체조사 · 농어업법인조사 · 기업활동조사
	(13종)	반기	· 어류양식동향조사
		분기	·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매월	· 인구동향조사
조사 통계		5년	· 생활시간조사 ·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42종)		2년	·녹색생활조사
	표본 조사 (29종)	매년	· 사회조사 · 운수업조사 · 도소매업조사 · 농가경제조사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어가경제조사 · 농림어업조사 · 양곡소비량조사 · 사교육비조사 · 농업면적조사 · 가계금융조사 · 서비스업조사 · 농작물생산조사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조사
		분기	·지역별고용조사 ·가축동향조사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매월	· 경제활동인구조사 · 가계동향조사 · 소비자물가조사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건설경기동향조사 · 기계수주동향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 · 사이버쇼핑동향조사 · 어업생산동향조사
		5년	· 장래인구추계 · 장래가구추계
	가공통계 (9종)		·국가자산통계 ·지역소득 ·생명표 ·사망원인통계
		매월	· 경기종합지수 · 설비투자지수 · 전산업생산지수
보	고통계	매년	· 국제인구이동통계
(2종)		매월	·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1, 2012년 2월 1일 현재

^{2.} 가계금융조사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공동작성 자료: 통계청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3조 2,418억원으로 2011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외교통상부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조 9,943억원, 통일부가 1조 2,245억원(0.2% 감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30억원 (5.3% 감소)이다.

2012년 외통위 소관 총지출

3.2조원

Ì	ĪΨ	3-67	2012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ı		J 01	2012년 의표중요중일합원의 소란 예술비소

(단위: 억워 %)

				(LT: 72, 70)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0,274	32,418	2,144	7.1
총지출 대비 비중	1.0	1.0	_	
외교통상부	17,766 (58.7)	19,943 (61.5)	2,177	12,3
통일부	12,265 (40.5)	12,245 (37.8)	-20	-0.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43 (0.8)	230 (0.7)	-13	-5.3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괄호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2012년 외통위 소관 의무지출 비중

5,729억원(17.7%)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지출합계 3조 2,418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7%, 82,3%이다.

(단위: 억원, %)

	지출	의무		;	대량지출(A-B)		
	합계	지출		경직성 제	내량지출		비경직성
	(A)	(B)	인건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2,418 (100.0)	5,729 (17.7)	2,903 (8.9)	2,792 (8.6)	_	5,695 (17.5)	20,994 (64.8)
외교통상부	19,943	5,724	2,551	2,691	_	5,242	8,977
통일부	12,245	5	311	88	-	399	11,841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230	-	41	13	_	54	176

주: 괄호안은 지출합계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외교통상부

2012년 외교통상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9%(22억 5,000만원) 증가한 1조 9,694억원이고, 국제교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액은 전년 대비 32.9% 증가한 1,002억원이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국제기구분담금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 대한 출연금은 산학협력단 민관파트너십 사업(186억원) 신설,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사업 증액(93억원 증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0%(147억원) 증가한 5,123억원이 편성되었고, 국제기구분담금사업은 UN PKO 분담금 및 사업분담금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37.1%(1,549억원) 증가한 5,724억원이 편성되었다.

국제교류기금에서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시스템 이전비 및 신규청 사 내 인프라 구축비 등의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교류정보화 사업이 대폭 증액(17억원)되었다.

[표 3-69] 외교통상부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결선	(A)	(B)	B–A	(B–A)/A	
일반회계	16,277	17,444	19,694	2,250	12.9	
국제교류기금	781	754	1,002	248	32.9	
합 계	17,058	18,198	20,696	2,498	1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세부사업(인건비 및 기본경비 제외)은 총 70개이며, 2개의 신규사업과 68개의 계속사업으로 구분된다. 2011년 세부사업 중 1개 사업(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 준비기획단)은 폐지되었으며,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477억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이관되었다.

신규사업으로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사업과 2012년 3월 새롭게 출범되는 국립외교원의 시험 및 교육과정 개발과 시설 개보수 등을 수행하는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있다.

[표 3-70] 2012년 신규 편성된 외교통상부 예산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	33,859	33,859	순증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_	2,736	2,736	순증	
합 계	-	36,595	36,595	순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7%(427억원) 감소한 5,129억원이고,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액은 전년 대비 17.2%(2,370억원) 증가한 1조 6,138억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급 사업과 북한종합 DB 구축 및 개발 사업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급 사업은 매년 예비비 및 이 · 전용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충당했던 점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5.0%(150억원) 증가한 750억원이 편성되었고, 북한종합 DB 구축 및 개발 사업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전년 대비 15.3%(11억원) 증가한 81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3-71] 통일부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2011 예 2010 결산	2011 예산	·-	증 감	
	2010 달전	(A)		(B-A)	(B-A)/A
일반회계	1,588	5,556	5,129	-427	-7.7
남북협력기금	19,533	13,768	16,138	2,370	17.2
합 계	21,121	19,324	21,267	1,943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남북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는 2011년에 없었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 원금¹⁴ 상환액 4,000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통일부 일반회계 세부사업(인건비 및 기본경비 제외)은 총 44개이며, 신규사업 3개와 계속사업 41개로 구분된다. 2011년 세부사업 중 2개 사업(이산가족 실태조사, 하나원 시설 개보수)은 종료되었으며, 2개 사업(제2하나원 신축, 하나원 체육관 신축)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이관되었다.

신규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남북회담 대표단 버스 구입을 위한 남북회담 · 행사 대표단 차량 구입 사업,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개선 사업이 있다.

[표 3-72] 2012년 신규 편성된 통일부 예산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_	810	810	순증	
남북회담 · 행사 대표단 차량 구입	_	150	150	순증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개선	_	1,753	1,753	순증	
합 계	-	2,713	2,713	순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3%(13억원) 감소한 230억원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출예산에서는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이 전년 대비 77.0%(13억원) 증가한 30억원이 편성되었고,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이 전년 대비 46.1%(34억원) 감소한 4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내 '여성위원 통일활동' 사업이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되었고, 지역협의회 동추진 내 '청소년 통일공감사업'이 타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및 효과성 미흡 등을 사유로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표 3-7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일반회계	210	243	230	-13	-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11년 11월 2일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 결산 · 기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7일, 8일 양일간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9일 제303회국회(정기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수정 ·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11월 7일 예산안을 상정하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 예산 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안조정소위'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예산안조정소위는 11월 2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1월 22일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감액 심의를 하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감액 심의를 완료한 후 한미FTA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예산안조정소위가 중단됨에 따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연기되었다.

이후 예산안조정소위가 재개되어 12월 20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모든 사업이 보류되었고, 12월 23일 제 4차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감액 심사가 완료되었다.

12월 31일에 제7차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고, 이를 제304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우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은 없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경우, 외교통상부는 117억원 증액, 18억원 감액되었고, 통일부는 42억원 증액, 13억원 감액되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4억원 증액, 18억원 감액되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채택된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일본정세분석팀 예산을 반영할 것, 통일부에 대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정책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중복된 연구과제를 줄일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 사무원의 출산휴기를 보장할 것, 해외대북정책강연회를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실시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교통상부는 43억원 감액, 51억원 증액되었고, 통일부는 24억원 감액, 4억원 증액되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4억원 감액, 1억원 증액되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 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사업이 홍보 및 광고 예산 과다를 사유로 정부안 대비 10억 8,500만원 감액되었고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이 사업 추진 지연을 사유로 정부안 대비 15억 7,000만원 감액되었다. 반면 외교관계 수립 기념 사업은 전년 대비 수교기념 대상국이 30개국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안 대비 10억원 증액되었다.

외통위 소관 예산안 심의 내역

외교통상부: 51억원 증액, 43억원 감액 통일부: 4억원 증액, 24억원 감액 민주평통: 1억원 증액, 24억원 감액

[표 3-74] 2012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단위: 억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	증액	부대의견(건)	감액	증액	부대의견(건)	
외교통상부	18	117	1	43	51	0	
통일부	13	42	5	24	4	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8	4	2	24	1	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 사업 중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증감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대테러 특별 경호·경비 및 보안시설 강화 사업(상임위, 9억원 증액), 협력사업 지원(상임위, 8억원 증액), 국제교류기금의 한국소개간행물출판 사업(예결위, 4억원 감액), 영상물 및 자료배포 사업(예결위, 5억원 감액) 등이 있다.

[표 3-75]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특징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부안 (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34,944	33,859 (-1,085)	33,859 (-1,085)
외교관계 수립 기념 사업	1,677	3,177 (1,500)	2,677 (1,000)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37,360	37,360 (0)	35,790 (-1,5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일부 소관 예산 사업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통일정책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이 정책현장체험, 어린이 기자단 사업의 감액 및 타사업으로 이관으로 인해 4억 4,700만원 감액되었고, 북한정세지수 사업이 사업의 효과성 미흡 우려 등을 사유로 5억 9,900만원 감액되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이산가족면회사무소 운영 사업이 사업실적 부진을 사유로 5억원 감액되었다.

통일부 소관 예산 사업 중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증감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전문가포럼 사업과의 유사성이 지적된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예결위, 11억원 감액), 한국정치학회 지원 예산의 필요성 미흡이 지적된 민간통일단체 지원 사업(예결위, 2억원 감액),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가능성 미흡 우려가 지적된 경협기반(무상) 사업(예결위, 59억원 감액) 등이 있다.

한편, 정부안에 없었던 통일아시아드 공원 지원 사업의 신설의견이 예결위에서 제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표 3-76] 통일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특징 및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부안 (A)	상임위(B) (B - A)	예결위(C) (C-A)
통일정책커뮤니케이션활성화	2,413	1,966 (-447)	1,966 (-447)
북한정세지수	2,121	1,522 (-599)	1,522 (-599)
이산가족면회사무소 운영	1,000	500 (-500)	500 (-5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이 통일부와의 사업중복 및 성과 미흡 등을 사유로 21억 600만원 감액되었다.

[표 3-7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특징 및 내역 (단위: 백만								
사업명	정부안 (A)	예결위(C) (C-A)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6,121	4,315 (-1,806)	4,015 (-2,1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3절 주요 사업

1. 외교통상부

국립외교원 설립에 따른 중장기 예산 소요 증가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은 2012년 3월에 개원하는 국립외교원의 시설 보수 및 교육 과정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은 27억 3,600만원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외교안 보연구원 개조에 20억 5,700만원, 입학시험 문제 개발에 2억 2,500만원, 교과과정 개발에 4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표 3-78] 2012년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_	2,736	2,736	순증
외교안보연구원 개조	_	2,057	2,057	순증
2차시험 문제개발 및 모의평가	_	225	225	순증
교과과정 개발, 교수법 개발 및 연수	_	454	454	순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2011, 11)

국립외교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인건비가 44억원에서 88억원 수준으로 100% 증가하고, 기본경비도 35억원에서 55억원으로 57% 정도 증가할 것이다. 즉, 외교 안보연구원에서 국립외교원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예산 소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79] 국립외교원 운영에 따른 중기재정소요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건비	4,419	8,838	9,278	9,742	10,229	10,740		
기본경비	3,491	5,491	5,766	6,054	6,357	6,674		
교육훈련 및 외교전략 연구	7,865	8,258	8,671	9,105	9,560	10,038		
총 예산	15,775	22,587	23,715	24,901	26,146	27,452		

주: 1, 2012년 1월부터 모든 정원(158명)이 충원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산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2011, 11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추진(ODA)의 집행 부진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추진 사업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개도국에 용수공급 시설 등을 구축하고,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은 전년 대비 28.4%(142억원) 감액된 357억 9,0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 상의 계약완료기간을 기준으로 할경우 몽골은 2013년 12월, 필리핀은 2015년 2월에 완료될 계획이다. 따라서 2012년에 편성된 예산의집행률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결위에서는 집행기능성을 고려하여 15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보다 많이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¹⁵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2.} 교육훈련 및 외교전략연구에는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국내외 교육훈련', '역량평가 및 개발', '글로벌 리더십'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3, 2013}년부터는 전년대비 5%씩 증가한 예산으로 추정함

¹⁵⁾ 정부안 대비 76억 2,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80] 물관리랜드마크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억원)

771		2010~2011.8		2012	2013~	
국가	총사업비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잔여 사업비
몽골	260	2011.08~2013.12	142	78.2	118	0
필리핀	250.4	2011.08~2015.02	168.4	50.4	82	0
아제르바이잔	301.1	2011.11~2013.06	144	15	41.6	115.4

주 1,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제 공정은 조금 더 빠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2011. 11

2. 통일부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및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 지연

경협기반(무상) 사업 내의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은 남북간 공동체 형성 및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은 20억원이다.

동 사업은 2010년 계획에 없었으나 신규로 37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으 며, 2010년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사업이 2011년 11월에 완료되었다. 2011년에는 70억원의 예산 이 편성되었으나 2012년 들어 18개 과제 중 9개 과제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나머지 9개 과제는 2012년 2월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즉, 2011년 과제의 절반이 현재까지 시작되지 않은 실정이고, 이에 따라 2012년에 편성된 예산도 연도 내에 전액 집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경협기반(무상) 사업 내의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은 경기도 연천군에 남북청소년 교류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관, 생활관 등이 갖추어진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은 180억 9,700만원이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2011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를 완료하고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말에 1차 부지매입이 시작되었고, 2012년 2월 20일 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² 잔여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2010~2012년까지의 예산액을 제외한 수치임

^{3.}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한국국제협력단의 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표 3-81]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연도별 투자계획: 2011~2014년

(단위: 백만원)

						1 1 1 1 1 1
	부지매입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011	3,844	476	953	-	-	-
2012	5,766	-	-	11,814	490	27
2013	-	-	-	15,751	654	37
2014	-	_	_	11,815	490	27
총 예산	15,775	22,587	23,715	24,901	26,146	27,452

주: 2011년 투자계획액은 2011년 7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2011년 국회확정 예산액과 다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 」, 2011, 11

한편, 남북청소년교류센터는 2014년에 완공하여 50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에 있어 적자가 예상되나 그 규모나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한국DMZ 평화생명 동산"의 경우 연간 7~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동 센터의 건립 후 운영 방식 및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국방위원회소관 총지출34.5조원

2012년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34조 4,861억원으로 2011년 대비 3.9%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이다. 이를 국방위원회에 속하는 각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가 2011년 대비 4.6% 증가한 24조 4,109억원, 방위사업청이 2.1% 증가한 9조 8,894억원, 병무청이 2.1% 증가한 1,858억원이다.

[표 3-82] 2012년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규도	1
------------------------------	---

(단위: 억원, %)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국방위원회	332,024	344,861	12,837	3.9	
총지출 대비 비중	10,7	10.6	-0.1%p	_	
국방부	233,317 (70,3)	244,109 (70,8)	10,792	4.6	
방위사업청	96,887 (29,2)	98,894 (28.7)	2,007	2.1	
병무청	1,820 (0.5)	1,858 (0.5)	38	2,1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괄호 안은 국방위원회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 34조 4,861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2%, 89.8%이다. 한편,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에는 군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직성 재량지출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방위원회 재정 대비 27.3%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비경직성 재량지출은 국방위원회 재정 중 61.4%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관 인건비 규모 9.4조원

[표 3-83] 국방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워 %)

	지출	의무		재량지출(A−B)				
	·_ 합계	지출		경직성 제	대량지출		비경직성	
	(A) (B)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국방위원회	344,861 (100.0)	35,348 (10,2)	94,130 (27.3)	3,754 (1.1)	_	97,884 (28.4)	211,629 (61.4)	
국방부	244,109	35,304	92,677	3,556	_	96,233	112,572	
방위사업청	98,894	15	493	99	_	592	98,287	
병무청	1,858	29	960	99	_	1,059	770	

주: 괄호 안은 지출합계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구조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총 3개 부처의 재정으로 구성되며, 분야별로 보면 국방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등 2개 분야에 편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방재정은 국방분야에 편성되 어 있으나, 군인연금기금은 사회복지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병력운영, 전력유지, 방위력개선, 병무행정, 공적연금 등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병력운영, 전력유지 및 공적연금부문은 국방부 소관이며, 방위력개선부문은 방위사업청. 병무행정부문은 병무청에 각각 편성되어 있다.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2개의 기금(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2012년 국방부 소관 재정지출 흐름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23조 202억원에는 군인연금 기금으로의 전출금 2조 1,664억원, 군인복지기금으로의 전출금 238억원 및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1,13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국방위원회 재정구조 - 2012년 예산 부문 병력운영 · 전력유지 · 공적연금 부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970억원 세출: 23조 202억원 세입 세출 3,850억원 3,850억원 병력운영 부문 13조 4,923억원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전출금 2조 1,664억원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 1,138억원 2조 7,077억원 국방 · 군사시설이전 군인복지기금 전출금 특별회계 전력유지부문 9조 5,714억원 군인복지기금 전출금 238억원 군인복지기금 세출 세입 7,877억원 5,317억원 5,317억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 세출 100억원 방위력 개선 부문 일반회계 방위사업청 부처 세입 1,052억원 세출 9조 8,938억원 일반회계 부문 병무행정 부처 병무청 세입 3억원 세출 1,753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105억원 주: 전세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병력운영 부문에서 군인복지기금으로 예산을 전출하였으나 2012년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방부

2012년 국방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2개의 기금(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0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세입예산은 5,317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세입예산은 3,850억원으로 총 1조 137억원이다.

[표 3-84] 국방부 소관 2012년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744	2011 예산		증 감	
	2010 결산	(A)	(B)	(B–A)	(B-A)/A
일반회계	969	922	970	48	5.2
국방군사	6,545	8,227	5,317	-2,910	-35.4
주한미군	5,931	3,869	3,850	-19	-0.5
합 계	13,445	13,018	10,137	-2,881	-22,1

주: '국방군사' 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 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를 지칭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9,957억원(4,3%) 증가한 23조 9,905억원이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와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각각35,4%, 86.8%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처우 개선 등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가 2011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군 의무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은 2011년 대비 11.9% 증가된 2,478억원으로확대되었다.

[표 3-85] 국방부 소관 2012년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경사	2010 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	증 감	
	2010 20		(B)	(B-A)	(B-A)/A
일반회계	203,404	217,096	230,638	13,542	6.2
국방군사	2,269	8,227	5,317	-2,910	-35.4
주한미군	5,898	3,869	3,850	-19	-0.5
혁신도시	12	757	100	-657	-86.8
합 계	211,583	229,948	239,905	9,957	4.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방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의 운용규모는 3조 4,9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는데, 이는 군 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이 전년 대비 각각 2.4%, 5.9%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3-86] 국방부 소관 2012년 기금 총괄

(단위: 억원, %)

	2011 계획 2010 결산		2012 계획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군인복지기금	8,449	7,696	7,877	181	2.4
군인연금기금	43,789	25,579	27,077	1,498	5.9
합 계	52,238	33,275	34,954	1,679	5.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국방부 세출예산의 특징은 교육훈련과 군 의료체계 대한 재정투입을 크게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교육훈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군 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2012년 예산규모는 2011년 대비 12.7% 증가한 5,062억원이며, 군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의 2012년 예산규모는 2011년 대비 11.9% 증가한 2,478억원이다.

[표 3-87] 2012년 국방부 주요 증액 프로그램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프로그램	(A)	(B)	(B-A)	(B-A)/A		
군인사 및 교육훈련	449,160	506,198	57,038	12.7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21,474	247,755	26,281	11.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방위사업청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방위력개선 부문에 편성되어 있다. 2012년 방위 사업청 일반회계 예산은 2011년(9조 6,935억원) 대비 2,1% 증가한 9조 8,938억원이다.

[표 3-88] 방위사업청 소관 2012년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설신	(A)	(B)	(B-A)	(B-A)/A
일반회계	87,370	96,935	98,938	2,003	2,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국방비(일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세출예산의 특징은 방위력개선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 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점이다.

반회계)증가율 전력운영비 6.2% 방위력개선비 2.1%

방위력개선 부문에는 무기체계 획득 및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 위주의 군 구조에서 기술 \cdot 정보 중심의 군 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정부는 방위력개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매년 국방비 전체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2.1%에 불과하여 일반회계 국방비 증가율 5.0%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비가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1년 30.9%에서 2012년 30.0%로 0.9%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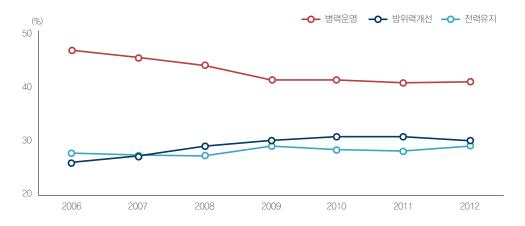
[표 3-89] 국방비 및 방위력개선비 증가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국방	국방비		방위력개선		
	금액(A)	증가율	금액(B)	증가율	(B/A)	
2006	225,129	8.8	58,077	_	25.8	
2007	244,972	8.8	66,807	15.0	27.3	
2008	266,490	8.8	76,813	15.0	28.8	
2009	289,803	8.7	87,140	13.4	30.1	
2010	295,627	2.0	91,030	4.5	30.8	
2011	314,031	6.2	96,935	6.5	30.9	
2012	329,576	5.0	98,938	2.1	30.0	

주: 1. 일반회계에 편성된 국방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그림 3-1] 부문별 국방비 대비 비중 추이: 2006~2012년



^{2,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과목구조가 개편되면서, 2005년 이전 방위력개선비와 2006년 이후 방위력개선비의 내용이 변경됨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병무청

2012년 병무청 소관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11년(1,769억원) 대비 0.9% 감소한 1,753억원이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경우 2011년(52억원) 대비 101.9% 증가한 105억원이다.

[표 3-90] 병무청 소관 2012년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0 경사 2011 예산 2012 예	2012 예산	증	감
	2010 결산 (A)		(B)	B–A	(B-A)/A
일반회계	1,703	1,769	1,753	-16	-0.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	52	105	53	101.9
합 계	1,711	1,821	1,858	37	2,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1년 11월 1일 국방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뒤 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11월 4일과 7일 두 차례의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9일 제303회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2년 예산안을 상정하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 2011년 11월 21일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였다. 2011년 12월 23일에 개의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액심사를 실시하였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5차례의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011년 12월 31일 제304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국방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방위사업청소관 방위력개선 예산을 대규모로 감액조정하는 대신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다는점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고, 전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게 되었다.

국회는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된 예산 중 2,801억원을 감액하고, 389억원을 증액하여 2,412억원을 순감하였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을 대폭 조정하였다.

한편, 국회는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 중 환경보전시설, 방위비분담금 등에 편성된 예산 178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일반훈련 등에 편성된 예산 614억원을 증액하여 436억원을 순증하였다.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식비지원 예산, 장병 기본급식비, 군 의료체계 개선 사업 등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하였다.

을순

[표 3-91] 2012년 국방비 국회조정 내역

(단위: 억원)

	정부안		국회조정		2012 예산
	ÖTÜ -	감액(A)	증액(B)	순조정액 (A+B)	2012 에正
국방비 합계	331,552	-2,980	1,003	-1,977	329,576
전력운영비(국방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	230,202 101,350	-178 -2,801	614 389	436 -2,412	230,638 98,938

주:1. 전력운영비는 병력운영 부문과 전력유지 부문 예산을 포괄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증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경우 국회심의과정에서 군인 복지증진 및 복무환경 개선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 등에 편성된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회는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식비를 신규로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9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장병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급식비 230억원을 증액하였다. 반면,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서는 환경보전시설 일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군관사 BTL 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총 41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다.

국방비 국회조정 규모

2,980억원 감액 1,003억원 증액

^{2,} 국방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92]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프로그램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프로그램	증액	감액	프로그램	증액	감액	
급식 및 피복	24,900	_	기동전력	_	21,744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729	_	함정	3,300	131,870	
군수지원 및 협력	4,844	_	화력탄약	30,000	-	
예비전력관리	9,700	_	감시정찰정보전자전	500	33,100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6,100	4,167	정밀/신특수	_	42,184	
군 책임운영기관	2,540	_	성능개량	_	48,236	
기 타	10,591	13,679	기 타	5,104	3,000	
합 계	61,404	17,846	합 계	38,904	280,134	

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프로그램별 증감액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작성

제3절 주요 사업

1. 국방부

군 의료지원체계 예산 확충

국방부는 장병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군 의료 지원체계 관련 사업에 2011년 대비 29.5% 증액된 2,65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에는 장병 예방백신 접종 확대, 의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신병훈련소 샤워시설 개선 등의 사업이 추 진될 계획이다.

국회 역시 군 의료지원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료체계 관련 사업 예산으로 5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다. 국회의 예산 증액을 통하여 2012년 군 의료체계 관련 예산은 2011년 대비 32.4% 증 액된 2,71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의료체계 개선 관련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 도병원 중증외상센터 신설 예산 25억 4,000만원, 환지수송용 셔틀버스 도입 예산으로 18억 4,800만원, 상병진급시 건강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 8억 2,200만원 등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군 의료지원체계 예산 현황

2,712억원(전년 대비 32.4% 증가)

[표 3-93] 군 의료지원체계 관련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1	2012	국회증액	2012	증 감	
	예산(A)	정부안	4404	예산(B)	(B-A)	(B-A)/A
신병훈련소 위생여건 개선	_	29,173	_	29,173	29,173	순증
신병 예방접종 확대 등 예방활동 강화	9,741	22,072	_	22,072	12,331	126.6
사단의무대 이하 진료능력 보강	188,089	197,060	2,874	199,934	11,845	6.3
군병원전문의료인력 확대 및 연구기능 강화	7,003	16,977	3,086	20,063	13,060	186.5
합계	204,833	265,282	5,960	271,242	66,409	32.4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BTL 정부지급금 예산 증가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군 관사 등의 시설을 BTL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군 관사 등을 BTL 방식으로 건설함에 따라 노후한 군사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BTL 사업을 수행한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간 임대료와 운영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 관사 등에 대한 BTL 정부지급금을 국방시설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부터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BTL 사업이 마무리되고 군 관사 등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BTL 정부지급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군 관사 등에 대한 BTL 정부지급금 규모를 보면 2010년에는 72억원에 불과하였으나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12년 예산에는 1,946억원이 반영되었다. 2013년 이후에도 BTL 정부지급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3-94] 군 시설 BTL 정부지급금 연차별 부담액

(단위: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BTL 정부지급금	7,278	90,721	194,561	336,454	426,668	554,850	556,381

주: 2010년은 결산 기준, 2011년 및 2012년은 예산 기준이며, 2013년부터 계획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방위사업청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방위사업청 소관 2012년 예산에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반영되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사업은 공중장악 및 전쟁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고성능 전투기를 국외구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조원이며 2012년에는 신규로 54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철매—II 양산사업은 국내에서 연구하여 개발이 완료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조원이며 2012년에는 신규로 134억원이 반영되었다. 대형공격헬기는 적의 기갑전력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공격헬기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조원이며 2012년에는 신규로 156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표 3-95] 2012년 대규모 신규사업 현황

	2012 예산	총사업비	사업 내용
F–X	543억원	8.3조원	공중장악 및 전쟁주도권 확보를 위한 고성능 전투기를 국외구매 방식 으로 확보
철매─Ⅱ	134억원	2.1조원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양산하는 사업
대형공격헬기	156억원	1.8조원	적의 기갑전력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형공격헬기를 국외구매로 확 보하는 사업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위 사업에 편성된 2012년 예산 규모는 833억원으로 방위력 개선 부문 전체 예산에 비하여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향후 수 년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추진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같이 국외 구매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규모 조정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총 9,800억원을 투입하여 제주도에 해군 기동전단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접안 부두, 지휘·지원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제주지역 생태계 및 문화재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고,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에 따라 2011년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1,184억원 중 상당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예산안에 1,327억원을 편성하였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2012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방위사업청은 대규모 이월이 예상되는 항만공사를위하여 1,061억원을 편성하고 있었다. 항만공사 예산의 경우 2011년 예산의 이월문제와 공사추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12년에 해당 예산이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2012년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1,327억원 중 96,3%에 해당하는 1,278억원을 감액하였다.

[표 3-96]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2011 예산 2012 정부안 2012 예산 국회감액 제주해군기지 118,390 132,700 4,930 -127,77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해외구매 무기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국회는 방위력개선 부문에 편성된 일부 해외구매 무기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큰 규모로 감액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해외 구매방식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2012년 예산으로 각각 1,031억원, 862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구매기종으로 선정된 글로벌 호크의 경우 구매에 필요한 미국 의회의 수출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며, 무기체계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역시 미국의 대외판매 정책결정 유보 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 역시 연례적으로 불용되거나 이월되고 있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아 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대규모로 감액하였다. 국회는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에 편성된 예산 중 32.1%인 331억원을 감액하였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예산의 29.0%인 250억원을 감액하였다.

[표 3-97] 해외구매 무기사업 예산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2011 예산	2012 정부안	2012 예산	국회감액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25,072	103,119	70,019	-33,100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117	86,187	61,187	-25,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안전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행정안전 위원회 소관 재정 규모

57.9조원 (총지출 대비 17.8%) 2012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7조 8,853억원으로 2011년 대비 9.4%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8%이다. 이를 행정안전위원회 속하는 각 부처별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 대비 220.8% 증가한 8,122억원, 행정안전부가 48조 1,848억원(9.1% 증가), 경찰청이 8조 77억원(3.2% 증가), 소방방재청이 8,807억원(18.9%증가)이다.

[표 3-98] 2012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2011	2012	증	· 감	
	(A)	(B)	(B-A)	(B-A)/A	
행정안전위원회	529,303	578,853	49,550	9.4	
총지출 대비 비중	17.1	17.8	0.7%p		
행정안전부	441,766 (83.5)	481,848 (83,2)	40,082	9.1	
경찰청	77,600 (14.6)	80,077 (13.8)	2,477	3.2	
소방방재청	7,405 (1.4)	8,807 (1.5)	1,402	1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532 (0.5)	8,122 (1.4)	5,590	220.8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출합계 57조 8,853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7.0%, 23,0%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무지출 비중이 큰 이유는 소관 부처 중 행정안전부의 의무지출 사업인 지방교부세의 규모(2012년 예산기준 33조 295억원)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비경직성 재량지출은 지출합계의 11,3%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무지출

44.5조원(행정안전위원 회 소관 지출합계 대비 77.0%)

[표 3-99] 2012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E11: 72, 70)
	지출	의무			재량지출(A−B)		
	합계	지출		경직성 기	대량지출 -		비경직성
	(A)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행정안전위원회	578,853 (100.0)	445,408 (77.0)	63,602 (11.0)	4,335 (0.7)	-	67,937 (11.7)	65,508 (11.3)
행정안전부	481,848	443,295	2,168	393	_	2,561	35,992
경찰청	80,077	9	59,495	3,685	_	63,180	16,888
소방방재청	8,807	_	369	117	_	486	8,3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122	2,104	1,570	140	_	1,710	4,308

주: 괄호안은 지출합계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2.2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4개 부처가 있는 바, 이들 부처 재정의 특징 및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2012년 행정안전부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개의 기금(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398억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44%(122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세입예산 증액분의 대부분은 경상이전수입(259억원)으로서 각종 계약의 위약 및 지체상금 5억원, 국고보조금·위탁사업 집행잔액 및 교육비 등 반환금 254억원 등이다.

[표 3-100]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결산	(A)	(B)	(B-A)	(B-A)/A	
일반회계	376	276	398	122	44.0	

자료: 행정안전부, 「2012년 세입·세출 예산개요」, 2012.2.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특징

의무지출인 지방교부 금 예산의 큰 폭(2.8조 원)증가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조 8,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0%(3조 534 억원)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무지출예산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주요사업예산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즉, 의무지출인 지방교부금 예산은 2011년에 비해서 2조 8,391 억원 증가(9.4% 증가¹⁶⁾)하였고 경직성 재량지출인 인건비(140억원 증), 기본경비(4억원 증) 등이 증가한 반면에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는 1조 6,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감소(442억원 감소)하였다.

[표 3-101]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09 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311,716	337,805	368,339	30,534	9.0
특별회계 광특회계 혁특회계	4,785 4,714 71	6,143 4,996 1,147	5,992 4,636 1,356	-151 -360 209	-2.5 -7.2 18.2
합 계	316,501	343,948	374,331	30,383	8.8

주: 광특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특회계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2년 세입·세출 예산개요」, 2012.2.

일반회계 사업 중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예산액 532억원)은 전년 대비 712억원 감소하였고,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예산액 99억원)은 321억원,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지원사업(예산액 200억원)은 201억원이 각각 감소하였다.

¹⁶⁾ 내국세 추계액이 2011년 151.4조원에서 2012년 166.1조원으로 증가하여 법정교부금은 2조 8,441억원 증가, 반면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감소로 부동산교부세 50억원 감소

행정안전부 소관 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혁특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광특회계 예산은 16개 사업에 4,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억원 감액(비율로는 7.2% 감소)되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413억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예산액 196억원)으로 각각 전년에 비해 333억원과 47억원 감소하였다. 2012년 혁특회계 예산은 1,3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원 증액(비율로는 18.2% 증가)되었다. 증액사유는 2012년 행정안전부 4개 소속기관(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방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방 이전사업비 반영이다.

행정안전부 소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1개이다. 동 기금의 2012년 운용계획 규모는 16조 2,0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42억원 증가(비율로는 14,3%)하였다. 동 기금의 예산(지출계획)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 증가와 이로 인한 연금지급액 증가 때문이다. 2012년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총 34만 5,254명이고, 공무원연금지급액(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은 10조 4,347억원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에 비해 1만 8,379명이 증가하였고, 공무원연금지급액은 전년에 비해 1조 2,311억원 증가(비율로는 13,4% 증가)하였다.

[표 3-102] 행정안전부 기금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설산	(A)	(B)	(B-A)	(B-A)/A
공무원연금기금	133,471	141,765	162,007	20,242	14.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12,2)

2012년에 신규 편성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455억원)", "세종청사유지관리(108억원)",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82억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주변지역 발전지원(23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24억원)" 등 10개 사업이다.

2012년 공무원연금 지급액

10.4조원

2012년 공무원연금 수급자수

34만 5,254명

[표 3-103] 2012년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	45,463	45,463	순증	
세종청사 유지관리	-	10,768	10,768	순증	
접경초광역권발전지원	-	8,170	8,170	순증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지원	_	2,300	2,300	순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_	2,399	2,399	순증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정보화)	_	942	942	순증	
세종시출범준비단 운영	_	722	722	순증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보화)	_	651	651	순증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576	576	순증	
개발도상국 대상 공공행정 컨설팅(ODA)	_	291	291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2012년 세입·세출 예산개요」, 2012,2

행정안전부의 2012년 총지출 규모는 48조 1,848억원이다. 행정안전부 총지출의 구성은 일반회계 총 지출이 34조 9,236억원, 특별회계 총지출 5,992억원, 공무원연금기금 총지출 12조 6,620억원이다. 회 계 · 기금간 전출은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 1조 9,103억원이 전출된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재정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 재정구조 - 2012년 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분야별 세출			
	36조 8,339억원	33조 7,805억원			
	인건비 2,168억원	일반공공행정 34조 8,058억원			
276억원	기본경비 39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644억원			
	지방교부금 33조 295억원	사회복지 1조 9,636억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조 9,103억원	교통 및 물류 2억원			
	사업비 1조 6,380억원				

	광역 · 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	세출					
	4,635억원					
	일반공공행정 2,254억원					
0	공공질서 및 안전 445억원					
	교통 및 물류 1,937억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 세출							
	1,356억원						
	일반공공행정 974억원						
0	공공질서 및 안전 382억원						

	공무원연금기금				
	수입계획	지출계획			
	16조 2,007억원	16조 2,007억원			
	자체수입 10조 9,562억원	사업비 12조 5,615억원			
	→ 정부내부수입 2조 2,736억원	기금운영비 905억원			
	차입금 2,268억원	정부내부지출 100억원			
	여유지금회수 2조 7,441억원	차입금상환 108억원			
		여유지금운용 3조 5,278억원			

행정안전부 총지출 48조 1,848억원 = 일반회계 34조 9,236억원+특별회계 5,992억원+공무원연금기금 12조 6,620억원

경찰청

2012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광 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0.5%(44억 9.600만원) 증가한 9.980억 7.700만원이 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0.7%(62억 200만원) 증가한 9,349억 3,900 만원이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2.6%(17억 600만원) 감소한 631억 3,800만원이다.

[표 3-104] 경찰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2010 달전			(B-A)	(B-A)/A
일반회계	7,185	9,287	9,349	62	0.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993	648	631	-17	-2.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53	0	0	0	0
합 계	10,131	9,936	9,980	45	0.5

자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2.443억 6.900만원) 증가한 8조 433억원이다.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1%(3.094억 9.000만원) 증가한 7 조 9.326억원이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6%(17억 600만원) 감소한 631억 3.800만원 이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4.8%(607억 7.800만원) 감소한 205억 1.300만원이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9%(26억 3,700만원) 감소한 270억 1,40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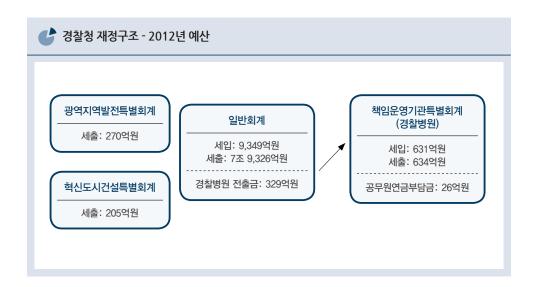
[표 3-105] 경찰청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2010 일신			(B-A)	(B-A)/A
일반회계	69,672	76,231	79,326	3,095	4.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758	648	631	-17	-2.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	813	205	-608	-74.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21	297	270	-26	-8.9
합 계	71,759	77,989	80,433	2,444	3.1

자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경찰청 소관 재정지출 흐름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경찰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7조 9,326 억원이며 이 중 경찰병원 전출금 329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631억원이며 이 중 공무원연금부담금 26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소방방재청

2012년 소방방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광역지역발 전. 혁신도시건설)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소방방재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 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12,0%) 증가하였다.

[표 3-106] 소방방재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S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	(B-A)	(B–A)/A	
일반회계	19	111	124	13	12.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소방방재청 소관 세출예산은 8.8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1.402억원) 증가하였다. 회계 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3%(1,306억원) 증가하였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는 2,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9.5%(197억원)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전년 대비 8.2%(0.3억원) 감소하였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4%(100억원) 감소 하였다.

[표 3-107] 소방방재청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열선	(A)	(B)	(B-A)	(B-A)/A
일반회계	6,781	5,157	6,463	1,306	25.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072	2,072	2,269	197	9.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	4	3	0.3	-8.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73	172	72	-100	-58.4
합 계	9,128	7,405	8,807	1,402	18.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일반회계의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 예산 547억원이 신 규 반영되고,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예산이 605억원,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 예산이 191억원 증액 반 영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예산은 재산수 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세입예산은 전 년도 예산보다 1,299,2%(103억원) 증가한 110억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예산이 전년에 비 해 크게 증가한 것은 2012년 양대 선거(19대 국회의원선거, 18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기탁금 등 국고 귀속(96억원)과 과태료(6억 6,000만원) 등 경상이전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표 3-1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란	(A)	(B)	(B-A)	(B-A)/A
일반회계	16	8	110	103	1,299.2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2.2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20.6%(5,589억원) 증가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2012대 양대 선거와 재외선거관리를 위한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거나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표 3-1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증	감
	2010 열전	(A)	(B)	(B-A)	(B-A)/A
일반회계	2,753	2,533	8,122	5,589	220.6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2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세부사업은 대통령선거관리와 국회의원선거관리이다.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은 2012년 12월 19일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관리와 실시를 위한 경비로서 2012년 예산은 1,462억원이다.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될 제19대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를 위한 경비로서 2012년 예산은 2,713억원이다.

또한 2012년부터 처음으로 양대 선거에서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예산(519억원)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선거보조금의 증가로 법정의무지출인 정당 보조금의 예산(1,114억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110]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규사업 현황

(단위: 억원, %)

	회계	2011 예산	2012 예산 (B)	증 감	
	의계	(A)		(B-A)	(B-A)/A
대통령선거관리	일반	_	1,462	1,462	순증
국회의원선거관리	일반	_	2,713	2,713	순증
합계			4,176	4,176	순증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2)

2012년 선거관리 예산

대통령선거 1,462억원 국회의원선거 2,713억원

[표 3-111]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증액사유
	(A)	(B)	B-A	(B-A)/A	ਰ-ਜੁੰ∧ੀπ
재외선거관리	8,072	51,922	43,850	543,2	양대선거에 재외선거 실시로 법정사무 관리예산 증액
위탁선거관리	987	4,784	3,797	384.7	양대선거 실시로 위탁선거(경선)관리비 증액
정당보조금	33,412	111,384	77,972	233.4	양대선거 실시로 선거보조금 등 증액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136	200	64	47.1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확대
기록물관리 및 자료실운영	191	3,071	2,880	1507.9	위원회 50년사 편찬 및 선거기록물 DB구축
선거전산 운영경비	3,620	11,729	8,109	224.0	선거관리 전산망 망분리 추진
선거연수원운영	259	279	20	7.7	선거연수원 옥상 방수공사
재외선거 인력운영	5,253	5,364	111	2.1	재외선거관 파견에 따른 운영경비 등 증액
중앙청사관리	1,120	1,154	34	3.0	중앙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증액
합 계	53,050	189,887	136,837	257.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1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다. 심사결과, 부대의견으로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공공 목적에 적합 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는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찰청에 대 해서는 보안수사활동사업의 특수활동비 79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경 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해서 경찰병원선진화를 위해 2011년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소관 4개 부처의 예산이 2,599억원 순증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확정 결과 정부제출 예산안이 73억원 순감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시 증액 규모는 2,857억원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30억원을 증액시켰고, 감액 규모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58억원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03억원이 감액되었다.

[표 3-112] 2012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의현황

(단위: 백만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감액	소계	증액	감액	소계	
행정안전부	194,364	-158	194,206	90,905	-34,251	56,654	
경찰청	26,843	-1,634	25,209	1,476	-1,771	-295	
소방방재청	53,156	-20,894	32,262	13,400	-79,494	-66,09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335	-3,080	8,255	7,220	-4,780	2,440	
합계	285,698	-25,766	259,932	113,001	-120,296	-7,295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국회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안전부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전자정부 대표포털 운영"에 대해서만 1억 5,800만원의 감액조정이 있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서는 동 사업이외에 공직선거관리 3억 5,000만원 감액, 사회통합위원회 운영 5억 5,400만원 감액, 지방교부금 331억 8,900만원 감액이 이루어졌다. 지방교부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조정은 내국세 세입예산안의 감액에 따른 것이다.

2012년 행정안전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

행정안전위원회 증액: 2,857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1,130억원 행정안전위원회 감액: 258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 1,203억원

[표 3-113] 행정안전부 소관 2012년 예산안 감액 심의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A)		예결위(C) (C-A)
	전자정부 대표포털 운영	6,898	6,740 (-158)	6,740 (-158)
일반	공직선거관리	20,813	20,813 (0)	20,463 (-350)
<u> </u>	사회통합위원회 운영	4,554	4,554 (0)	4,010 (-544)
	지방교부금	33,062,664	33,062,664 (0)	33,029,475 (33,189)
	감액합계		-158	-34,251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예결위 신설 및 증액 사업

전직대통령기념사업지 원(41억원), 제주해군 기지주변지역발전지원 (23억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사 및 본회의 확정 결과 행정안전부 소관 증액사업은 총 24개 사업이다. 동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예비심사결과 증액조정 규모는 1,485억원이 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예비심사 증액규모보다 576억원이 적은 909억원의 증액조정이 이루어졌다. 행안위 예비심사결과 새마을운동세계화(ODA), 유비쿼터스기반공공서비스촉진, 방재연구원청사신축 등 3개 사업은 행안위의 증액규모와 예결위의 증액규모가 같았지만, 청사시설관리 등위탁,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충남도청 신축, 경북도청 신축 등 12개 사업은 예결위의 증액규모가 행안위의 증액보다 적었다.

행안위 예비심사에서 조정되지 않았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다수 발생하였다. 행안위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었지만, 예결위에서 신규로 신설되었거나, 정부안보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전직대통령기념사업지원(41억원 신규), 제주해군기지주변지역발전지원(23억원신규), 접경권평회누리길조성(정부안 대비 20억원 증액), 공무원교육훈련(정부안 대비 10억원 증액), 정부포상(정부안 대비 3억원 증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정부안 대비 3억원 증액) 등 6개 사업이다.

[표 3-114] 행정안전부 소관 2012년 예산안 증액 심의 내역

(단위: 백만원)

[± 3-1	[4] 행성인선구 오된 2012년 에선인 등역 점속	의 네목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새마을운동세계화(ODA)	1,490	1,990 (500)	1,990 (500)
	정보격치해소지원(정보화)	15,836	16,636 (800)	15,936 (100)
	유비쿼터스기반공공서비스촉진(정보화)	10,700	12,480 (1,780)	12,480 (1,780)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19,046	31,546 (12,500)	20,046 (1,000)
	국가DB구축(정보화)	13,280	16,980 (3,700)	15,280 (2,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정보화)	2,099	2,099 (0)	2,399 (300)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2,141	2,941 (800)	2,341 (2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5,988	6,938 (950)	6,138 (150)
	충남도청신축지원	39,400	102,400 (63,000)	74,400 (35,000)
	경북도청신축지원	25,000	60,300 (35,300)	40,200 (15,20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217,600	218,600 (1,000)	219,800 (2,200)
일반	정부포상	6,028	6,028 (0)	6,348 (320)
	청사시설관리등위탁	34,214	34,446 (232)	34,444 (230)
	제주4·3평화재단지원	5,000	11,000 (6,000)	6,000 (1,000)
	인건비(방재연구원)	0	2,465 (2,465)	1,597 (1,597)
	방재연구원 기본경비(총액)	0	156 (156)	95 (95)
	방재연구원 기본경비	0	291 (291)	152 (152)
	방재기술연구개발(R&D)	0	7,118 (7,118)	7,718 (7,718)
	방재연구원청사신축	0	11,932 (11,932)	11,932 (11,93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주변지역발전지원	0	O (O)	2,300 (2,300)
	전직대통령기념사업지원	0	O (O)	4,100 (4,100)
	공무원교육훈련	44,599	44,599 (0)	45,630 (1,031)
	접경권평화누리길조성	8,160	8,160 (0)	10,160 (2,000)
	증액합계		148,524	90,905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경찰청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모두 원안대 로 의결되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0개 사업, 268억 1,320만원이 증액되었고, 7개 사업, 16억 3,38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개 사업, 17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2개 사업, 14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혁신 도시건설 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는 증감 사항이 없었다.

부대의견으로는 보안수사활동 사업 중 특수활동비 감액, 장비관리유지사업 중 K2소총 구입 예산 감 액 등 5건의 의견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표 3-115] 경찰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내역(감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lal	02 725	92,305	92,305
2-1	92,725	(-420)	(-420)
:cd_	116 026	116,108	116,002
	110,930	(-828)	(-934)
1	27.020	26,690	26,690
=	27,020	(-330)	(-330)
	0.070	9,043	9,043
	9,070	(-27)	(-27)
쿠경HI/초애\	968	957	957
·전 기본경미(종액)		(-11)	(-11)
4HI	1 //20	1,432	1,432
201	1,450	(-6)	(-6)
^크 겨비	106	94	94
-0-1	100	(-12)	(-12)
I/뒤아지히화도HI\	8 102	8,102	8,087
I(시다시케팅O리/	0,102	(O)	(-15)
ETI위/트스화도HI\	1/// 206	144,396	144,338
5시년(국구필증비)	144,390	(0)	(16)
	사업병 관리 출연금 원 본경비(총액) 경비 본경비 비(치안지휘활동비) 통지원(특수활동비)	발리 92,725 출연금 116,936 월 27,020 9,070 본경비(총액) 968 명비 1,438 본경비 106	변리 92,725 92,305 (-420) 116,108 (-828) 26,690 (-330) 9,070 (-27) 본경비(총액) 968 (-11) 1,438 (-6) 원리에 (-12) 원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표 3-116] 경찰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내역(증액)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바	여성청소년보호활동	3,455	3,832 (377)	3,832 (377)
<u>===</u>	전의경운영및관리	96,584	102,499 (5,915)	97,683 (1,099)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소방방재청의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31억 5,600만원 증액, 89억 6,200만원 감액되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정부제출 세출예산안과 동일하였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증액 없이 119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다.

세출예산 확정예산은 일반회계가 134억원 증액, 645억 6,200만원 감액되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는 30억원 감액.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예비심사결과와 동일한 119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다.

증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노후소방차 및 소방장비 보강 사업 402억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9개 사업을 증액하였으나, 확정예산에는 우수저류시설설치(울산혁신도시) 사업 113억원 등 5개 사업의 증액만 반영되었다.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는 2011년 방재연구소가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어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된 방재연구소 인건비 15억 9,700만원 등 4개 사업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편성된 방재연구소 청사 신축 예산 119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확정예산에는 일반회계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 예산 556억원,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 30억원이 추가 감액되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안위 예비심사결과 재외선거관리 사업에 대하여 26억 7,000만원이 감액¹⁷되었지만, 예결위에서는 34억 8,000만원이 감액¹⁸되어 최종 예산은 519억 2,2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표 3-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내역(감액)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재외선거관리	55,402	52,732 (-2,670)	51,922 (-3,480)
	감액합계		-2,670	-3,480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 중 정부안보다 예결위 심사에서 최종 예산이 증액되어 확정된 사업으로는 기록물관리 및 자료실운영(20억원 증액), 선거전산운영경비(38억원 증액), 정당사무지원(1억원 증액) 등 3개 사업이 있다.

¹⁷⁾ 재외선거 투표용지를 우편발송을 기계장치로 대체함에 따른 우편발송료 감액 47억 8,000만원, 재외선거 홍보예산 증액 21억 1,000만원

¹⁸⁾ 우편발송료 감액 47억 8,000만원, 재외선거 홍보예산 증액 13억원

[표 3-1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내역(증액)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행안위(B) (B−A)	예결위(C) (C-A)
	기록물관리및자료실운영	1,071	4,671 (3,600)	3,071 (2,000)
일반	선거전산운영경비	7,909	12,589 (4,680)	11,729 (3,820)
	정당사무지원	297	297 (0)	397 (100)
	증액합계		8,280	5,920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제3절 주요 사업

1.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2012년 지방교부세 33조 295억원(2011년

대비 9.4% 증가)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 2012년 예산안 심의에서 확정된 지방교부세 총액은 2011년 예산 대비 9.4%가 증가한 33조 295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교부금은 2011년 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31조 9.664억원이고,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2011년 예산 대비 0.5% 감소한 1조 631억원이다.

[표 3-119] 2012년 지방교부세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0 경사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	(A)	(B)	(B-A)	(B-A)/A
지방교부금	273,564	301,904	330,295	28,391	9.4
법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263,459 10,105	291,223 10,681	319,664 10,6316	28,441 -50	9.8 -0.5

주: 지방교부세의 정부예산 세부사업명은 지방교부금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2년 세입・세출 예산개요」, 2012.2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1.5조원, 2007년 25.2조원, 2008년 31.1조원, 2009년 28.3조원, 2010년 28.0조원, 2011년 30.2조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는 교부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3조 7.355억원, 5조 9.021억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 2008년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조치와 경제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액추경으로 인해 교부총액이 전년에 비해 2조 7.793억원이 감소되었다. 2010년에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으로 내국세가 감소하여 지방교부세의 감소추이가 이어졌으나, 2011년에는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 추정액의 증가로 지방교부세 예산액이 전년 교부총액에 비해 2조 1.536억원 증가하였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국회 예산 심의의 제약

지방교부세는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표 3-120] 지방교부세 교부 추이

(단위: 억워%)

_	_						(근표: 극면 20)
		법정교부금		증액교부금	부동산	교 부총 액	
	당초분	추경 · 정산분	최종분	(예비비)	당초분	최종분	#T8 4
2006	203,465	949	204,414	_	10,200	10,200	214,614
2007	226,242	6,835	233,077	-	19,455	18,892	251,969
2008	257,797	24,340	282,137	-	31,770	28,853	310,990
2009	272,791	-20,922	251,869	18,600	14,882	12,728	283,197
2010	263,459	6,448	269,907	-	10,461	10,461	280,368
2011	291,229	_	_	-	10,681	-	301,904
2012	319,664	_	_	_	10,631	_	330,29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각 연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그 예산안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제약이 있다.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를 국가주요 사업 및 지자체 사업의 구성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전에 정해진 배분공식에 의해 지자체에게 교부된 이후에는 사용 및 지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예 · 결산 심의의 개선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용 및 집행실태에 대한 분석 필요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예결위, 국회예산처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의 및 분석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교부하는 배분총량과 배분방식의 적정성 여부에만 머물러 왔다. 예컨대, 2012년 예산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2011년 내국세 추정액의 19.24%에서 20.24%로 1%p 상향조정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 최종예산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고,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권교부세 법정교부율(현행 0.94%)을 상향하는 의견(행안위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도 제시된 바 있으나 역시 최종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자체재원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 여러 종류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구성되어 집행의 효율성 파악과 투명성 확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교부세 집행실태 분석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방교부세를 중요사업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교부금 집행실태분석을 통해 내국세 법정교부율 및 배분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발전 프로그램(18개 세부사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프로그램은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자전거 인프라구축,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등 1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 2012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 프로그램의 2012년 예산은 총 5,913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전년 예산 대비 5.6% 증가하였다. 동 프로그램에서 2012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사업은 생활공감정책추진(10억 7,000만원), 제주해군기지주변지역발전지원(23억원), 접경초광역권발전지원(81억 7,000만원),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454억 6,3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지역발전협의회운영지원,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 등 2개 사업이 폐지되었다.

[표 3-121] 행정안전부 지역발전프로그램 18개 세부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0044 0111	0040 01111	증	감
	2011 예산	2012 예산	B–A	(B-A)/A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34,800	32,400	-2,400	-6.9
아름다운화장실조성	679	1,323	644	94.8
생활공감정책추진	0	1,070	1,070	순증
주한미 군공 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217,600	219,800	2,200	1.0
특수상황지역개발	196,800	196,800	0	0.0
접경권평화누리길조성	8,800	10,160	1,360	15.5
제주해군기지주변지역발전지원	0	2,300	2,300	순증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2,569	2,569	0	0.0
도농복합형녹색마을조성	2,362	1,922	-440	-18.6
접경초광역권발전지원	0	8,170	8,170	순증
기초생활권발전계획수립지원	1,078	263	-815	-75.6
지역발전활성화	702	747	45	6.4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지원	40,090	20,045	-20,045	-50.0
온천산업활성화	300	500	200	66.4
지역발전협의회운영지원	508	0	-508	-100.0
간판문화선진화	105	105	0	0.0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	414	0	-414	-100.0
자전거인프라구축	52,800	47,170	-5,630	-10.7
지방물가안정관리	258	486	228	88.4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	0	45,463	45,463	순증
합 계	559,865	591,293	31,427	5.6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2012,2

행정안전부의 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회의 2012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일부 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량을 유지 확대하려 한다는 문제점과 부처간, 프로그램간 분산 추진의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되었다.

지역발전활성화(7억 4,700만원)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인 지역간협력사업 컨설팅(115백만원), 지역핵심자원의 지식재산등록지원(200백만원)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하고 특허청 등 타부처 사업과 중복되므로 예산안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최종예산은 정부안대로 확정되었다.

지역발전 프로그램 18개 세부사업의 특징

5+2 광역경제권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등의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도농복합형녹색마을 조성(19억 2,200만원) 사업은 2011년 9월 현재 토지매입, 주민동의, 기본설계 (기본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나, 2011년 9월 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인허가,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현재 미완료상태이므로 동 사업의 2012년 예산안 중 2012년 공사비, 감리비 등 국비 지원액의 20% 수준 감액필요하다는 의견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최종예산은 정부안대로 확정되었다.

자전거인프라구축(471억 7,000만원) 사업의 경우 지역연계형(관광레저형) 자전거도로를 사업비단가를 줄여서 구축할 예정인데, 이는 이용률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자전거도로 연장구축으로서 예산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2012년 예산안의 50%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역시 최종예산은 정부안대로 확정되었다.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지원(200억 4,500만원)의 경우 동 사업이 환경부, 문광부, 국토부, 산림청 등 4개 부처의 녹색길 조성사업과 유사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이 힘들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재조정하고, 각 부처의 녹색길 조성사업이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삭감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역시 최종예산은 정부안대로 확정되었다.

향후 행정안전부의 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량을 유지 확대한다거나, 부처간, 프로그램간 분산 추진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지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지역발전 프로그램의 사업들은 정부의 국정목표였던 5+2 광역경제권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의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향후 재정지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소방방재청

소하천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서 2012년 예산은 전년 대비 9.5%(197억원) 증가한 2,269억원이다.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은 50%이다. 소방방재청은 동 사업의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다.

[표 3-122]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증감	증감율
	(A)	(B)	(B-A)	(B-A/A)
소하천 정비	2,072	2,269	197	9.5

자료: 소방방재청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결위 부처별 질의에서는 소하천 정비 사업은 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은 총액계상대상 사업이 아닌데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증액 예산(227억)의 감액의견이 제기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하여 소하천정비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이 아닌데도 연례적으로 예산안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심사·확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결과 동 사업과 유사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이 60%로,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비율 50%보다 높은 것은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소하천 정비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을 6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확정예산에는 소하천 정비 사업의 증액 예산 중 30억원의 감액만 반영되었고, 국고보조금 지급비율 상향 조정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사업은 「공직선거법」의 개정(2009, 2, 12)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 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및 제18대 대통령선거(2012, 12, 19)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준비하고, 예방단속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예산은 전년 대비 438억 5,000만원 (543,2%) 증액된 519억 2,200만원이다.

[표 3-123] 재외선거관리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	
	예산	집행	예산(A)	정부안	예산 (B)	(B-A)	(B-A/A)
재외선거관리	1,750	2,030	8,072	55,402	51,922	43,850	543.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가 제출한 동 사업 예산안은 554억 2,000만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4억 8,000만원이 감 액되었다.

당초 2012년 정부안에서는 재외선거인 등에게 국제특급우편(EMS)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재외선 거인의 선거인 등록 및 투표율을 40% 수준으로 전제하고 관련 투표용지 발송료 예산안 9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다. 그러나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특급우편 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선거절차와 발송료 예산이 과다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9) 이와 관련하 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11, 7, 28.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재외 선거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 ·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중앙선관 위는 2011, 9, 26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 지를 발급하고 재외선거인 등에게 교부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위 예비심사에서는 투표용지 우편발송 관련 비용으로 계상된 93억 9.200만원20) 에서 기계장치 이용 투표용지 작성·교부 소요경비 46억 1.200만원을 제외한 47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 고. 예결위 심사에서 행안위의 감액이 그대로 반영되어 확정되었다.

또한 당초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정부안에서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홍보 관련 예산안 이 16억 9.4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전세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TV의 경우 총 15회, 한인라디 오의 경우 총 24회의 광고를 내보낼 것을 계획하여서 횟수 자체가 광고의 홍보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적다는 문제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안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관리 사 업 예산안 중 재외국민 대상 매체 홍보 관련 예산안이 행안위 예비심사에서 21억 1,100만원 증액되었 고. 예결위 심사에서는 13억원 증액이 확정되었다.

당초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정부안 554억 2,000만원은 투표용지 발송료 관련 예산이 47억 8,000만원 감액되고 매체 홍보 관련 예산이 13억원 증액되어 최종 예산은 519억 2,2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¹⁹⁾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 2011.10

²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해외공관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제작 소요경비 20억 3,900만원, 기계장치 운영 소요경비 25억 7,300만원 합계 46억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3조 4,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10.3%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이다. 이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에 속하는 각 부처별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53조 2.637억원(10.0% 증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590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73억원이다.

2012년 교육과학 기술위원회 소관 총지출

53.4조원

[표 3-124] 2012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E11: 72, 10)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교육과학기술위원회	484,336	534,000	49,664	10,3
총지출 대비 비중	15.7	16.4	0.7%p	
교육과학기술부	484,336 (100.0)	532,637 (99.74)	48,301	10,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590 (0.11)	590	순증
원자력안전위원회	-	773 (0.14)	773	순증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년 예산 개요」, 2012, 1

^{3.}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개요」, 2012.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 3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10월 26일에 각각 설치되었 기 때문에 당초 2011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 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예산 및 예비비를 이용하여 2011년 예산을 편성 · 집행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 회의 2011년 예산은 592억원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1년 예산은 74억원이다. 2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총지출 53조 4,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40조 3,428억원으로 75.5%에 해당 하는데, 주요 의무지출내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38조 4,473억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등이다. 총지출에서 경직성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이 며,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21.1%이다.

[표 3-12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지출	의무		:	재량지출(A−B)			
	합계	합계 지출		경직성 재량지출				
	(A)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534,000 (100)	403,428 (75.5)	15,783 (3.0)	2,048 (0.4)	-	17,831 (3.3)	112,741 (21.1)	
교육과학기술부	532,637	403,428	15,656	1,931	_	17,587	111,62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590	_	73	56	_	129	461	
원자력안전위원회	773	_	54	61	_	115	658	

주: 괄호안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년 예산 개요」, 2012. 1

^{3.}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개요」, 2012, 1

^{2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12년 예산은 2011년 대비 2억원 감소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2년 예산은 전년대비 699억원 증 가한 규모이다.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4개의 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6,349억원으로, 일반회계 5,721억원, 특별회계 62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년 세입예산은 2011년 대비 47.6%(2,048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일반회계 세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수원 실험목장 매각에 따른 토지매각대 (2,377억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교육과학 기술부 세입예산 6,349억원

[표 3-12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A) (B)	2012 예산	증	감
			(B)	(B-A)	(B-A)/A
일반회계 특별회계	3,666 452	3,749 552	5,721 628	1,972 76	52.6 13.8
합 계	4,118	4,301	6,349	2,048	47.6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 2.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분야별 비율은 교육 분야 85.4%, 과학기술 분야 7.7%, 사회복지 분야 6.9%이다. 교육 분야의 2012년 확정예산을 부문 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교육 부문은 38조 5,549억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고, 고등교육 부문은 6조 2207억원으로 전년대비 25.1% 증가하였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5,948억원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하였다. 과학기술 분야는 4조 1,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3조 6,572억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다.

[표 3-12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출의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비중	(B-A)	(B-A)/A
교육분야	412,316	454,911	85.4	42,595	10.3
유아및초중교육	354,823	385,549	72.4	30,725	8.7
고등교육	49,724	62,207	11.7	12,483	25.1
평생 · 직업교육	6,514	5,948	1.1	-566	-8.7
교육일반	1,254	1,206	0.2	-48	-3.8
과학기술분야	37,296	41,154	7,7	3,858	10.3
기술개발	19,004	21,924	4.1	2,920	15.4
과학기술연구지원	17,582	18,627	3.5	1,045	5.9
과학기술일반	710	603	0.1	-107	-15.1
사회복지분야	34,724	36,572	6.9	1,848	5.3
합 계	484,336	532,637	100.0	48,301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교육과학 기술부 세출예산 49조 764억원

2012년 세출예산을 보면,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48조 2,169억원, 특별회계는 8,595억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0.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7% 감소하였다. 특히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경우 2011년 대비 100% 감소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7.2% 감소하였다.

[표 3-128]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서	네줌	총괔
------------------------	----	----

(단위: 억원, %)

				(EII: 7E, %
2010 7411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결선	(A)	(B)	(B-A)	(B-A)/A
397,389	434,583	482,169	47,586	10.9
8,465	9,412	8,595	-817	-8.7
970	1,157	1,246	89	7.7
_	456	_	-456	순감
7,156	7,287	6,761	-526	-7.2
184	312	312	_	0.0
155	200	276	76	38.0
405,853	443,995	490,764	46,769	10.5
	8,465 970 - 7,156 184 155	(A) 397,389 434,583 8,465 9,412 970 1,157 456 7,156 7,287 184 312 155 200	2010 결산 (A) (B) 397,389 434,583 482,169 8,465 9,412 8,595 970 1,157 1,246 - 456 - 7,156 7,287 6,761 184 312 312 155 200 276	2010 결단 (A) (B) (B-A) 397,389 434,583 482,169 47,586 8,465 9,412 8,595 -817 970 1,157 1,246 89 - 456456 7,156 7,287 6,761 -526 184 312 312 - 155 200 276 76

주: 총지출 기준

구· 증시를 기년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 2.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기금운용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2011년 대비 3.8% 증가한 4조 1,874억원으로, 전년 대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1,848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이 13억원 증가하고, 사학진흥기금이 330억원 감소하여 기금 전체적으로는 1,53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2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금총괄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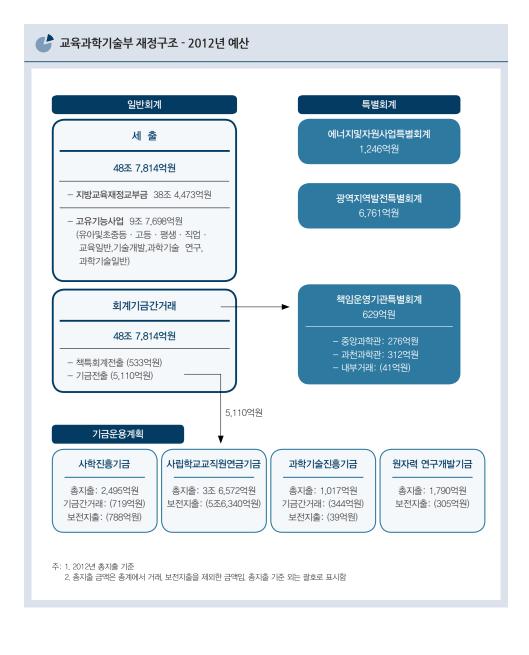
	2010 744	2010 결산 2011 예산		증 감	
	2010 열선	(A)	(B)	(B-A)	(B-A)/A
사학진흥기금	2,869	2,825	2,495	-330	-11.7
과학기술진흥기금	1,195	1,004	1,017	13	1.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757	1,786	1,790	4	0.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2,529	34,724	36,572	1,848	5.3
합 계	38,350	40,339	41,874	1,535	3.8

주: 총지출 기준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

2.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으로 전출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590억원의 세출이 편성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11년 3월 28일에 출범함에 따라 2011년 당초예산은 없으며, 2011년 중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체된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59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12년 세출은 전년대비 2억원 감소한 규모이다. 이 경우 2011년 예산은 약 9개월분에 해당하므로, 실제로는 2012년 예산이 전년대비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본경비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당시 소요된 사무실 보증금 및 설치비와 전산시스템 초기설치 비용 등이 2012년부터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대비 43.4% 감소하였다.

2012년 국가과학기 술위원회 세출예산 590억원

[표 3-13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일반회계	(592)	590	-2	-0.3
인건비	(61)	73	12	19.7
기본경비	(99)	56	-43	-43.4
주요사업비	(432)	460	28	6.5

주: 1. 총지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773억원이 편성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26일에 출범함에 따라 2011년 당초예산은 없으며, 2011년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체된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7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2년 세출은 전년대비 699억원 증가한 규모인데, 이는 2011년 약 2개월분 예산과 비교한 결과이므로 의미가 없다. 주요사업비에 포함된 6개 사업의 2011년 당초예산과 2012년 예산을 비교할 경우 2012년 주요사업비는 전년대비 22.2% 증가하였다.

2012년 원자력안전 위원회 세출예산 773억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11년 3월 28일에 출범함에 따라 2011년 당초예산은 없으며, 표시된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이제, 예비비 등으로

²⁰¹¹년중에 편성된 금액임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년 예산 개요」, 2012. 1

[표 3-13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일반회계	(74)	773	699	944.6
인건비	(9)	54	45	500.0
기본경비	(24)	61	37	154.2
주요사업비	(42)	659	617	1469.0

주: 1. 총지출 기준

[표 3-132]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년 주요사업비와 2011년 당초예산의 비교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 감
	(A)	(B)	(B-A)	(B-A)/A
원자력안전기반구축	3,492	5,563	2,071	59.3
방사선안전기술개발	8,054	8,854	800	9.9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_	1,420	1,420	순증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구축	_	400	400	순증
원자력통제이행체제구축	2,399	2,344	-55	-2.3
출연연구기관지원	40,004	47,329	7,325	18.3
합 계	53,949	65,910	11,961	22,2

주: 해당 사업의 2011년 당초예산(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2012년 예산을 비교한 것임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예산」, 2011. 1

^{2.} 원자들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26일에 출범함에 따라 2011년 당초예산은 없으며, 표시된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체 받은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2011년중에 편성된 금액임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 2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개요」, 2012. 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882억원 감액되고 5,440억원이 증액되어 총 3,557억원이 증액되었다. 기금수입계획안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정부안보다 316억원 감액되었고, 기금지출계획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4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60억원이 감액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이 18억원이 증액되어 총 346억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2011년 10월 28일에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입예산 2억원과 세출예산 773억원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신설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회조정내역3211억원 증액

[표 3-13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12년 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

단위: 억원

				(LT: 72)		
	TJHOL (A)		국회 조정			
	정부안 (A)	증 액 (B)	감 액 (C)	증 감 (D=B-C)	(A+D)	
예산	487,207	5,440	1,882	3,557	490,764	
일반회계	478,590	5,291	1,712	3,579	482,169	
특별회계	8,616	149	170	-21	8,595	
기금	42,219	18	364	-346	41,873	
합계	529,426	5,458	2,246	3,211	532,637	

주: 총지출 기준

자료: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세입 예산안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개 사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개 사업은 증액되었다. 2012년 세출 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출에서 36개 사업이 감액되었고, 36개 사업이 증액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출 감액 사업 중 7개 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출범에 따라 이관된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9개 사업이 증액되었다. 또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출 1개 사업은 증액되었다.

또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수입 관련 1개 사업과 지출 관련 4개 사업은 감액되었으며, 지출 관련 4개 사업은 증액되었다. 세출 및 지출 관련 총 90개 증감 사업 중에서 50억원 이상 증감이 발생한 사업은 10개이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생학자금지원 사업은 1조 5,000억원에서 2,500억원 증액되었으며,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출연은 정부안 대비 398억원 증액되었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출연은 채권대 납이자지원과 군이자면제지원사업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시행과 면제 대상 인원 추계 결과를 고려하여 12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ICL 대출금리 1% 인하와 성적 조건 완화를 위하여 519억원 증액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2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안보다 350억원 감액되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도록 이관할 예정 이었으나,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하면서 1,264억원이 순증하였다.

(단위: 억원)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한국장학재단 출연	1,195	_	1,593 (3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4,822	_	384,473 (-350)
	국가장학금 지원	15,000	19,000 (4,000)	17,500 (2,500)
일	국립대학 시설확충	2,287	3,223 (936)	3,571 (424)
반 회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_	1,264 (1,264)	1,264 (1,264)
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1,600	2,000 (400)	1,700 (10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2,100	3,560 (1,460)	2,200 (1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605	723 (118)	693 (88)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	850	450 (-400)	450 (-400)
혁특	교육과학기술연수원지방이전	170	24 (-146)	0 (–170)

주: 정부안 대비 50억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표시하였음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제3절 주요 사업

국가연구개발 예산

2012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15조 9,725억원이었으나,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519억원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는 16조 244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규모이다.

2012년 국가연구 개발예산

16조 244억원

[표 3-135] 2012년 부처별 연구개발예산안 심사 결과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증	감
	(A)	예산안(B)	예산(C)	증감(C-B)	(C-A)	(C-A)/A
교육과학기술부	47,080	50,400	49,753	-647	2,673	5.7
지식경제부	45,269	46,843	47,448	605	2,179	4.8
방위사업청	20,164	23,179	23,210	31	3,046	15.1
소 계(비 중)	112,513 (75.6)	120,422 (75.4)	120,411 (75.1)	-11	7,898	7.0
중소기업청	6,288	7,150	7,150	_	862	13.7
국토해양부	6,161	6,204	6,196	-8	35	0.6
농촌진흥청	5,028	5,333	5,333	_	305	6.1
국무총리실	4,190	4,438	4,305	-133	115	2.7
보건복지부	3,371	3,970	3,985	15	614	18.2
농림수산식품부	2,799	2,907	2,912	5	113	4.0
환경부	2,355	2,517	2,527	10	172	7.3
방송통신위원회	2,098	2,190	2,190	_	92	4.4
산림청	798	847	844	-3	46	5.8
기상청	607	779	819	40	212	34.9
문화체육관광부	644	772	792	20	148	23.0
식품의약품안전청	583	598	597	-1	14	2.4
원자력안전위원회	_	_	562	562	562	순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_	_	460	460	460	순증
문화재청	332	341	343	2	11	3.3
소방방재청	258	353	263	-90	5	1.9
국방부	309	289	289	_	-20	-6.5
행정안전부	62	63	159	96	97	156.5
기 타	506	552	107	-445	-399	-78.9
합 계	148,902	159,725	160,244	519	11,342	7.6

주: 기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0개 부처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2, 2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의 2012년 연구개발 예산 합계액은 12조 411억원으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75.1%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비중이 축소되었다. 총지출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82%에서 2012년 4.92%로 0.1%p 늘어났다.

[표 3-136] 총지출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원, %)

	2010 (A)	2011 (B)	증	감
	2010 (A)	2011 (b)	(B-A)	(B-A)/A
연구개발 예산	148,902	160,244	11,342	7.6
정부 총지출	3,090,567	3,254,076	163,509	5.3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4.82	4.92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국가장학 및 학자금지원 사업의 변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비지원 사업은 국가 장학금 사업(7개)과 한국 장학재단으로 출연하는 학자금 대출사업(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출 제외) 등 총 8개 사업으로, 2012 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3,698억원(163,1%)이 증가한 2조 2,097억원이다.

[丑 3-1	표 3-137]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사업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2011	2012	증감	증감률	재원	
	국가장학금 지원	-	17,500	17,500	순증	일반회계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성적우수 신설포함)	3,312	-	-3,312	순감	일반회계	
장 학 금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장학생 국가연구장학생 전문대우수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1,095 85 913 0.7 96	930 65 796 - 66 3	-165 -20 -117 -0.7 -30	-15.1 -23.5 -12.8 순감 -31.3 순증	일반회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810	810	_	_	일반회계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	1,264	1,264	_	_	일반회계	
	소 계	6,481	20,504	14,023	216.4		
대 출	한국장학재단 출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1,918	1,593	-325	-16.9	일반회계	
-	합 계	8,399	22,097	13,698	163.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장학 및 학자금대출 사업은 2011년과 비교하여 저소득층 장학금(성적우수 포함)이 폐지되고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국가연구장학생이 폐지되고 대통령드림장학생이 신설되었다.

[표 3-138]	[표 3-138]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확대 및 장학금지원 체계의 변화 (단위 : 억원)						
	2011			2012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규모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그기자하다 . ㅠㅇ형	17,500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	→	국가장학금 I · I 유형	17,500		
	소 계	3,313					
	대통령과학장학생	85		대통령과학장학생	65		
우수 학생	국가장학생 (이공계 · 인문사회계)	913		국가장학생 (이공계 · 인문사회계)	796		
국가	국가연구장학생	1	→	국가연구장학생 (이공계)	_		
장학 사업	(이공계)	ı		전문대학우수학생	66		
10	전문대학우수학생	96		대통령드림장학생	4		
	소 계	1,095		소 계	930		
근로장학시	업	810	→	근로장학사업	810		
합 계		5,218		합 계	16,740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절대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대학생의 학비부담이 가중되었고, 어려운 취업여건과 주거비 등 높은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학생의 반발과 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국가장학금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되는데 I유형은 7,500억원, II유형은 1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I유형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3분위 이하의 대학생에게 소득 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450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00%, 1분위 50%, 2분위 30%, 3분위 20%를 지원한다. II유형은 1조원을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의 재학생 중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비율에 따라 1조원을 대학에 배분한다. 정부가 지급률을 정하지 않고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게 지원대상과 수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1조 7,500억원

[표 3-139] 국가장학금 체계

	2007년	지원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 I 유형 (소득분위 최저지원)	0.75조원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의 100% 1분위: 50% / 2분위: 30% / 3분위: 20%	국가장학금 전체를 대학을
국가장학금 Ⅱ 유형 (자구노력 연계 추가지원)	1조원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지원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

주: I 유형 지원율은 최저율로서 II 유형을 통해 대학자율로 상향 조정 가능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사업

ICL은 2010년 1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이 통과되며 시행되었다. 2012년에 달라진 점은 군이자 면제와 대출 금리 인하이다. 그 동안 ICL 대출을 받은 후 군 복무를 하면 군복무 기간에도 이자가 가산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군복무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여 14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ICL 대출 금리가 정부의 다른 정책 대출에 비하여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012년 금리는 전년보다 1% 인하되어 3.9%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학점조건이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ICL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140] 학자금 대출 수혜자 현황 및 계획: 2010~2012년

(단위: 억원, 명)

		20 ⁻	10	2011		2012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금액	62,575	8,456	17,677	10,874	15,621
ICL	인원	705,000	116,224	225,000	151,896	203,500
	금액	20,992	19,205	20,905	15,979	12,697
일반상환	인원	253,000	264,472	275,000	실적 10,874 151,896	166,500
=1 -11	금액	83,567	27,661	38,582	26,853	28,318
합 계 	인원	958,000	380,696	500,000	366,768	370,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3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5조 1,092억원으로 2011년 대비 7.7%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이다. 이를 각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대비 7.6% 증가한 3조 7,194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8,321억원(8.5% 증가), 문화재청이 5,577억원(6.7% 증가)이다.

2012년 문화체육 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5조 1,092억원

ſπ	3-1/11	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ш	3-14 I I	[2012년 문화제폭한당중중중인위권회 고한 제중표표

(단위: 억워 %)

		(단위: 익천, %)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문화체육관광방 <u>송통</u> 신	47,453	51,092	3,639	7.7
총지출 대비 비중	1.5	1.6	0.1%p	
문화체육관광부	34,557 (72,8)	37,194 (72,8)	2,637	7.6
방송통신위원회	7,668 (16,2)	8,321 (16,3)	653	8.5
문화재청	5,228 (11.0)	5,577 (10.9)	349	6.7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5조 1,092억원의 99,3%가 재량지출에 해당하고, 총지출에 서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91.4%에 달한다.

[표 3-14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지출	의무		;	재량지출(A−B))		
	·_ 합계	지출		비경직성				
	(A)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51,092 (100)	358 (0.7)	3,127 (6.1)	918 (1.8)	_	4,045 (7.9)	46,689 (91.4)	
문화체육관광부	37,194 (100)	126 (0.3)	1,688 (4.5)	676 (1.8	_	2,364 (6.4)	34,704 (93.3)	
방송통신위원회	8,321 (100)	221 (2.7)	967 (11.6)	153 (1.8)	_	1,120 (11.5)	6,980 (83.9)	

472

(8.5)

89

(1.6)

561

(10.1)

5.005

(89.7)

5.577

(100)

11

(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2

문화재청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012년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세입예산 1.408억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3개 부 처의 재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와 통신 분야에 편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사업(2,954억원)은 통신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2012년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세출예산 2조 933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8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0 억원으로 총 1,408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대비 26,8%(298억원) 증가한 규모이 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세입이 증가한 것은 지출 증가로 인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 가하였기 때문이다.

주: 괄호안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표 3-14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억원, %)

	2010	2011 예산	2012 예산	증	증 감	
	결산	산 (A)	(B)	(B-A)	(B-A)/A	
일반회계	344	392	418	26	6.6	
광특회계	28	_	_	_	-	
아특회계	942	719	990	272	37.8	
합 계	1,314	1,111	1,408	298	26.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세출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1조 3,914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990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029억원으로 총 2조 933억원이며 2011년 대비 6.8% 증가하였다.

[표 3-14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억원, %)

	2010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결산	(A)	(B)	(B-A)	(B-A)/A
일반회계	11,865	12,621	13,914	1,292	10,2
광특회계	761	719	990	272	37.8
아특회계	5,589	6,263	6,029	-234	-3.7
합 계	18,215	19,603	20,933	1,329	6.8

주: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9억원, 32억원 감소하였으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669억원(12.3%),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80억원(4.0%) 증가하여, 2011년에 비해 1,307억원이 증가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011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로 편성된 관광레저 기반구축사 업 예산이 162억원 편성되고, 전통문화체험지원사업 예산이 104억원 증액되고,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액이 330억원 증액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표 3-145]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지출총괄

(단위: 억원, %)

	2010	2011 계획	2012 계획	증 감	
	결산	(A)	(A) (B)		(B-A)/A
문화예술진흥기금	3,084	1,116	1,355	238	21.3
영화발전기금	2,782	945	1,116	171	18.0
지역신문발전기금	396	130	112	-19	-14.5
언론진흥기금	648	272	240	-32	-11.7
관광진흥개발기금	6,845	5,425	6,094	669	12,3
국민체육진흥기금	11,335	7,063	7,344	280	4.0
합 계	25,090	14,951	16,261	1,307	8.7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기금지출

1조 6,261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및 기금은 문화예술부문, 관광부문, 체육부문,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으로 분류된다. 2012년에는 문화예술부문의 예산 및 기금이 1조 3,771억원이 편성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부문 9.829억원, 체육부문 8.634억원,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에 2,506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3-146] 최근 3년간 부문별 세출 예산·기금 현황: 2010 ~ 2012년

(단위: 억원, %)

	2010	2011 예산 · 기금	2012 예산 · 기금	증 감	
	예산 · 기금	에건 '기급 (A)	(B)	(B-A)	(B-A)/A
문화예술부문	13,209	14,552	16,226	1,674	11.5
관광부문	8,897	9,257	9,829	572	6.2
체육부문	7,303	8,403	8,634	231	2.7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	2,338	2,346	2,506	160	6.8
합 계	31,747	34,557	37,194	2,636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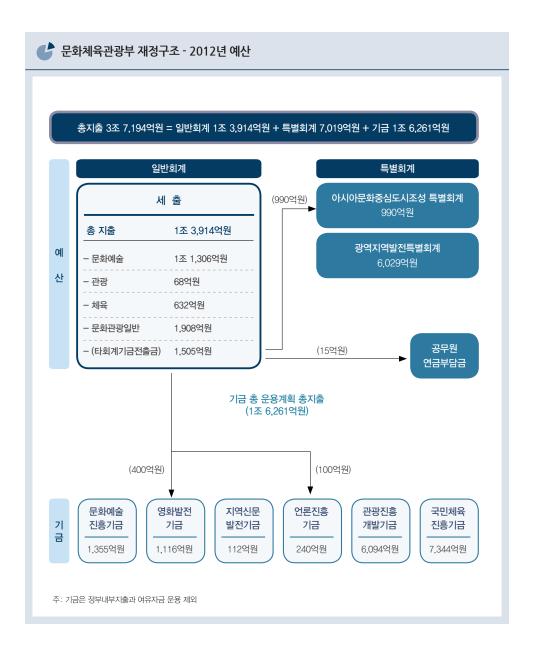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의 특징은 콘텐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2012년 신규, 45억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18억원→75억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의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스마트콘텐츠육성사업(11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영화 해외진출활성화 사업(63억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문화 체험지원 사업(123억원→226억원)을 확대하여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융자를 2011년 대비 331억원 증액하였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 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 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의 기금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 990억원을 전출하고 있으며, 영화발전기 금에 400억원, 언론진흥기금에 100억원을 전출한다. 그 외에 공무원연금부담금에 15억원을 전출한다.



문화재청

2012년 문화재청의 세입·세출 예산구조는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1개의 기금(문화재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5억원으로, 2011년 예산액 269억원 대비 5.3%인 14 억원이 감액되었다. **2012년 문화재청** 소관 세입예산 255억원

[표 3-147] 문화재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일반회계	243	269	255	-14	-5.3

자료: 문화재청,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총지출 기준으로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 지출액은 5,577억원으로 2011년 대비 348억원(6.7%) 증가하였다.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5.9%(241억원) 증가한 4,329억원이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29.6% 감소한 148억원이며, 문화재보호기금은 전년 대비 18.3%(170억원) 증가한 1,100억원이다.

2012년 문화재청 소관 세출 및 기금 지출 5,57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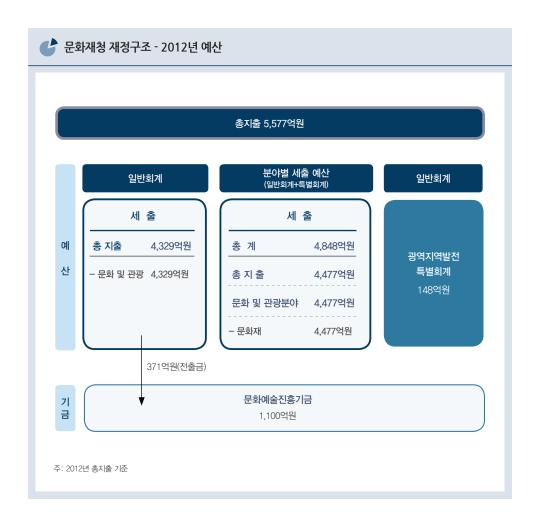
[표 3-148] 문화재청 소관 세출 및 기금 지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결산	2011예산	2012예산	증	감
	201020	(A)	(B)	(B-A)	(B-A)/A
일반회계	3,907	4,088	4,329	241	5.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8	210	148	-62	-29.6
문화재보호기금	820	930	1,100	170	18.3
합 계	5,045	5,228	5,577	349	6.7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문화재청,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방송통신위 원회 소관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 총액 1조 1.616억원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57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세입예산은 8,259억원으로 총 1조 1,616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예산 대비 35.7%(3,055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액은 2011년에 비하여 2,814억원(5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주파수 할당대가 일시금 납부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2011년에 비하여 3,52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49]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결산	2011예산	2012예산	증	감
	2010글건	(A)	(B)	(B-A)	(B-A)/A
일반회계	3,503	3,116	3,357	241	7.7
방 송통 신발전기금	2,661	5,445	8,259	2,814	51.7
합 계	6,164	8,561	11,616	3,055	35.7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총지출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 지출 규모는 8,322억원으로 2011년 대비 592 억원(7.6%) 증가하였다. 일반회계의 경우 2011년(3,050억원) 대비 6.8% 감소한 2,844억원이고, 혁신도 시특별회계의 경우 2011년(158억원) 대비 36.1% 감소한 101억원이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2011년(4,522억원) 대비 18.9% 증가한 5,377억원이다.

2012년 방송통신위 원회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 총액

8.322억원

[표 3-150]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2년 세출 및 기금지출 총괄

(단위: 억원, %)

	(2.11					
	2010결산	2011예산	2012예산	증 감		
	2010글건	(A)	(B)	(B-A)	(B-A)/A	
일반회계	3,256	3,050	2,844	-206	-6.8	
혁신도시특별회계	65	158	101	- 57	-36.1	
방 송통 신발전기금	5,067	4,461	5,377	855	18.9	
합 계	8,388	7,669	8,322	592	7.6	

주: 1. 총지출 기준

 2010년 3월 22일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이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 사업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관되었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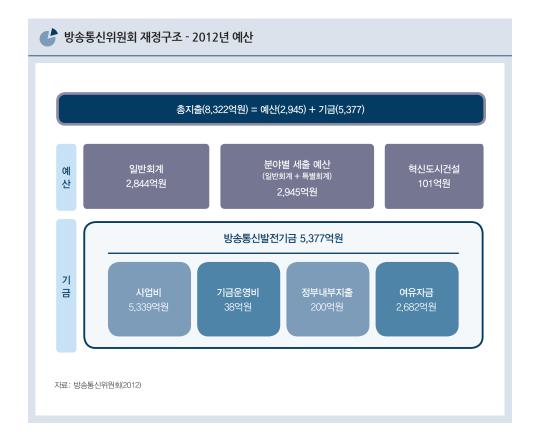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의 분야 · 부문별 현황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와 통신 분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산은 2011년 대비 631억원(27.2%) 증가한 2,953억원이며, 통신분야예산은 2011년 대비 41억원(0.8%) 감소한 5,368억원이다.

[표 3-151]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분야 부문별 현황

(단위: 억원,%)

분야	부문	회계, 기금	2010 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 │ 증감률 (B-A)/A
문화		일반회계	_	_	_	-
및	문화 예술	방 송통 신발전기금	2,499	2,322	2,953	27.2
관광		소 계	2,499	2,322	2,953	27.2
		일반회계	3,131	3,050	2,844	-6.8
EAL	방송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4	158	101	-36.1
통신	통신	방 송통 신발전기금	_	2,201	2,423	10.1
		소 계	3,155	5,409	5,368	-z0,8
		합 계	5,654	7,731	8,321	7.6

주: 총지출 기준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재청에 대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교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등의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12,7,2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편성하라는 의견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의 점검항목을 개편하는 등 안전진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견 등이 채택되었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사업을 모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140억원을 감액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추가적으로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 등의 예산을 감액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도 상임위 감액안을 모두 수용하고 추가적으로 정보보호대응능력 강화사업을 감액(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다.

[표 3-152] 2012년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현황

(단위: 억원)

	문호	l체육관광통신위원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감액	소계	증액	감액	소계	
문화체육관광부	7,293	-137	7,156	1,340	-152	1,188	
문화재청	749	_	749	125	_	125	
방송통신위원회	415	-3	412	18	-5	13	
합 계	8,457	-140	8,317	1,483	-157	1,326	

자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 1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 12

2012년 문화체육관 광부 소관 국회 조정 내역

세출예산: 426억원 증액 기금운용규모: 762억원 증액

둘째, 상임위에서 채택한 26건의 부대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문화재청에 대하여 "문화재청 소관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사업 예산은 정부와 울산광 역시 간에 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배정되도록 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예사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국회 심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최종 감액규모는 예산안의 경우 예비심사 결과인 77억원 보다 12억원 많은 89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감 액되지 않았던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사업,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 내 세사업인 국가이미지홍보사업,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사업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상임위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6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억원이 많은 62억원을 감액의결하였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관광 기금 운용개선사업(2억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은 5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824억원이 증액되어 1,340억원이 증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중 특이한 점은 한류진흥사 업의 사무국 운영비 등은 감액하고 기반 조사연구비는 증액한 것이다. 이는 법정단체가 아닌 한국문화 산업교류재단의 운영비 지원액과 해외 팬클럽을 지원하는 쌍방향문화교류 사업을 감액하되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표 3-15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주요내역

(단위: 억원)

[-11.5]	におかずこのナイン かいこう えいしこのかましょ	3-1 1-4-11-1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전통사찰 보수정비)	220	17,500	230 (10)
	토요문화체육학교운영	50	17,500	70 (20)
	한류진흥	54	51	71
	(한류진흥 기반구축 조사연구)	4	(- 3)	(17) 24 (20)
	(사무국운영)	6.6	6.5	6.5
일반	(쌍방향문화교류)	43	(-0.1) 40 (-3)	(-0.1) 40 (-3)
	해외문화원운영	246	278 (32)	278 (32)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183	240 (5.7)	190 (7)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40	15 (-25)	15 (–2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778	751 (–27)	751 (–27)
아특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576	1,200 (624)	676 (100)
관광기금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117	58 (-58)	58 (-58)
	도시관광활성화	120	120	153 (33)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274	309 (35)	445 (171)
체육기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986	986	1,136 (150)
	국제대회개최지원	33	180 (147)	93 (60)
문예기금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	57	57	59 (2)
영진기금	인적자원육성관리(영화인 교육훈련 지원)	36	66 (30)	41 (5)

자료: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 11 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2011, 11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 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 12

2012년 문화재청 소관 국회 조정 내역

세출예산: 97억원 증액 기금운용규모: 27.5억원 증액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안의 경우 9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2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감액된 사업은 없다

[표 3-154]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내역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ОІНЬ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보조)	1,972	2,300 (328)	2,002 (30)
	일반	무형문화재보호 (보조)	104	184 (80)	148 (47)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	89	96 (7)	99 (10)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2.7	10.1 (7.4)	7.1 (4.4)

자료: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 11

- 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 11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 12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 12

2012년 방송통신위 원회 소관 국회 조정 내역

세출예산: 3억원 감액 기금운용규모: 16.2억원 증액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감액규모는 예산안의 경우 예비심사시에는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6,000만원) 만이 감액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정보보호대응능력강화사업(2억 4,000만원)이 추가로 감액되어 총 3억원이 감액되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방송심의활동강화사업(2억 1,900만원)만이 감액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안의 경우 증액사항이 없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18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보다 총 1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다.

[표 3-155]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내역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정보보호대응능력강화	29	29	27 (-2)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조성	40	39 (-1)	39 (-1)
방통기금	방송심의활동강화	92	90 (-2)	90 (-2)
	디지털전환취약계층지원	777	954 (177)	786 (9)

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여유자금운용에 대한 변경 내역은 제외하였음

자료: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 11

- 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 11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 12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 12

제3절 주요 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체육, 관광 바우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문화행복'측면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문화, 체육, 여행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12년 바우처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총 523억원으로 전년대비 38.0%(144억원) 증가하였다.

[표 3-156] 문화바우처, 체육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워)

-			,					(단위, 익편)
	세부사업명			2012	단	가	수혜자수	
	(기금명)	예산	예산	예산	2011	2012	2011	2012
문화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	50	245	343	(최초)1가구당 5 만원(9월이후) + 청소년 1인당 5 만원	가구당 5만원 + 청소년 1인당 5 만원	118만명	160만명
체 육	체육바우처지원 (국민체육기금)	30	86	106	강좌 6만원 용품 6만5천원	강좌 7만원	3.5만명	4만명
관 광	취약계층복지관광 (관광진흥개발기금)	16	48	74	1인당 15만원		4만명	6.5만명
	합 계	96	379	523			125.5만명	170.5만명

자료: 문화체육관부

2012년 바우처 관련 총 예산은 전년의 379억원보다 38% 증가한 52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대 상인원은 전년보다 35.5% 증가한 170.5만명이다. 이러한 바우처제도는 본래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 었으나, 2011년부터 지자체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자체는 사업비의 30%를 매칭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바우처 제도는 문화, 체육, 관광 바우처가 있으며, 각각 다른 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행하는 문화바우처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 향유권을 지원하고자 시행된다. 문화바우처 사업에서는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도서 구입,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수행하는 체육바우처 사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구내 만7~19 세 청소년에게 월 7만원의 한도 내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이 카드를 활용하여 스포츠 강좌를 신청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1년 스포츠용품비와 강좌비를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2012년에는 스포츠 강좌 지원만을 하고 1인당 지원액을 상향 조정(6만원→7만원)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수행하는 관광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신청한 사람 1인당 15만원의 여행 지원금액을 지원한다. 개인에게 여행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여행사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체에서 여행을 하는 경우 기관에게 직접여행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류진흥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한류진흥사업은 한국문화산업의 해외진출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문화교류 행사 등을 기획·추진한다. 2012년 정부 예산안은 53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 결과 70억 6,100만원으로 16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는 2011년 예산 17억 5,800만원보다 301% 증액된 것이다.

[표 3-157] 한류진흥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에건	(A)	(B)	(B-A)	(B-A)/A				
한류진흥	1,856	1,758	7,061	5,303	3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2012.1)"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진흥사업은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조사연구사업, 사무국 운영사업의 세사업으로 구분·추진된다. 이 중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에서는 아시아 송 페스티벌, 국제영상물 교류 프로그램, 문화교류 행사, 케이팝(K—POP)—제조업 동반진출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류의 세계진출은 국가브랜드의 향상 및 수출의 증가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바 한류진흥사업의 확대 필요성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아날로그 TV로 직접 시청하는 세대는 디지털 TV 시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바, 정부에서는 디지털 방송 수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일반 직접수신 가구들에게 디지털 컨버터 보급 및 안테나 설치비를 지원한다. 2012년에는 2011년보다 624억 5,600만원(386.4%)이 증가한 786억 1,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표 3-158] 2012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2010	2011계획	2012 계획	증 감 	
	결산	(A)	(B)	(B-A)	(B–A)/A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	16,162	78,618	62,456	386.4
저소득층 지원: 컨버터, DTV 구매보조 및 안테나 설치지원	-	13,794	36,748	22,954	166
직접수신 서민가구 지원: 컨버터, 안테나 설치 지원	_	-	27,091	27,091	순증
디지털방송 지원센터 구축 및 콜센터 운영	_	2,368	9,484	7,116	301
읍면동 대규모 현장민원 인력운영	-	-	5,295	5,295	순증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2, 1

동 사업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10조22 및「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²³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수신료 면제 가구. 차상위 계층에게 디지털 컨버터를 보급하고 안테나 설치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88.3만 가구, TV수신료 면제가구 54.1만 가구, 차상위 계 층 42.2만 가구 등 총 184.6만 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직접수신을 하는 가구만을 지원하는 것이 므로, 예상되는 직접수신 가구 비율 18.6%를 적용하여 34.2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정하 였다.

3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보조)사업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전국에 있는 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멸실 · 훼손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 가재정법」제37조에 따라 총액계상 예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예산은 2011년 대비 6.5%(122억 2.400만원) 증가한 2.002억원이다.

[표 3-159] 2012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글전	(A)	(B)	(B-A)	(B-A)/A
문화재보수정비	210,000	187,976	200,200	12,224	6.5

자료: 문화재청,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2, 1

^{2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소득 수준 등 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2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가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중에서 아날로그 텔레비전 수상기만을 보유하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만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2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 제2호의2 ·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가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 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③ (생 략)

이 사업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 3,347건과 등록문화재 470건을 사업의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의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국고에서는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인 바 총액 계상의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2009년 결산 심사시에는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에 대한 엄밀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것으로 요구하여 2011년 예산부터는 세계유산관리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 · 편성되었으며, 2012년 예산안 심사시에도 고도지역 정비사업 분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같이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총액 계상 범위 내에 포함될 사업의 성격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고도(古都)지역 정비사업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던 경주·부여·공주·익산 지역을 보존하려는 사업이다. 이러한 고도지역 정비사업은 2012년 7월 22일부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나, 이러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사업, 보조)에 편성된 고도 정비사업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하며, 특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12.7.2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의 경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내 추진이 어려우므로 총액계상사업에서 별도 사업으로 본리・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지는 않았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농림수산 식품위원회 소관 총지출

18.1조원

2012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18조 758억원으로 2011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이다. 총지출 규모를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대비 3.7% 증가한 15조 4,083억원, 농촌진 흥청이 8,724억원(전년대비 20.1% 감소), 산림청이 1조 7,951억원(전년대비 7.2% 증가)이다.

[표 3-160] 2012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ETT: 42, 70)
	2011	2011 2012		감
	(A)	(B)	(B-A)	(B-A)/A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76,303	180,758	4,455	2,5
총지출 대비 비중	5.7	5.6	-0.1%p	_
농림수산식품부	148,644 (84,3)	154,083 (85,2)	5,439	3.7
농촌진흥청	10,917 (6.2)	8,724 (4.8)	-2,193	-20.1
산림청	16,742 (9.5)	17,951 (9.9)	1,209	7.2

주: 1. 산림분야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복권기금을 제외

^{2.}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

^{3.} 괄호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총지출(18조 758억원) 중 94.3%가 재량지출이며, 특히 총지출 대비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이 90.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의무지출은 농기계환차손(OECD 차관 환치손보험, 2012년 32억원), 국제기구분담금 지원(2012년 221억원), 비료계정적자보전(2012년 480억원), 살처분보상금(2012년 400억원), 수입양곡대(2012년 3,076억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2012년 6,18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의 의무지출은 책임건강보험부담금(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12년 2억원)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의무지출 비중 5.7% 재량지출 비중 94.3%

[표 3-16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지출	의무			재량지출(A-B)	
	합계	지출	경직성 재량지출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A)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180,758 (100.0)	10,391 (5.7)	5,144 (2.8)	885 (0.5)	_	6,029 (3.3)	164,338 (90.9)
농림수산식품부	154,083	10,389	2,863	431	_	3,294	140,400
농촌진흥청	8,724	_	1,205	189	_	1,394	7,330
산림청	17,951	2	1,076	265	_	1,341	16,608

주: 1. 산림분야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복권기금을 제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201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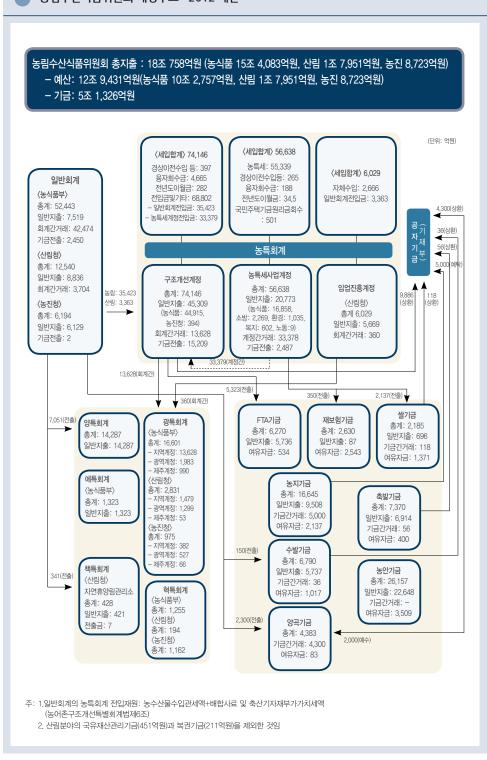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6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8개의 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산발전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재정구조를 보면, 회계와 회계, 회계 내 계정, 회계와 기금 사이의 전입·전출을 통하여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괄호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재정구조 - 2012 예산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 8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조 777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4,287억원으로 총 14조 5,250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예산 대비 52,7%(5조 128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2012년 농림수산 식품부 세입예산 14조 5,250억원

[표 3-16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글린	(A)	(B)	(B-A)	(B–A)/A
일반회계	280	203	186	-17	-8.4
농특회계	88,797	81,029	130,777	49,748	61.4
광특회계	37	-	-	-	-
혁특회계	315	_	_	-	-
양특회계	13,026	13,890	14,287	397	2.9
합 계	102,455	95,122	145,250	50,128	52,7

주: 총지출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1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는 10조 2,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7,429억원(7.8%) 증가하였다. 농업자금이차보전 등 농어촌구조개선과 관련된 10개 사업 8,639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이관되었다.

2012년 농림수산 식품부 세출예산 10조 2,757억원

[표 3-163]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E11: 12; 10)
	2010 결산	2011 예산 2	2012 예산	증 감	
	2010 열선	(A)	(B)	(B-A)	(B-A)/A
일반회계	17,296	16,575	7,519	-9,056	-54.6
농특회계	44,017	44,566	61,773	17,207	38.6
에특회계	880	1,422	1,323	-99	-7.0
광특회계	17,104	17,010	16,600	-410	-2.4
양특회계	11,975	13,890	14,287	397	2.9
혁특회계	212	1,866	1,255	-611	-32.7
합 계	91,484	95,328	102,757	7,429	7.8

주: 총지출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1

2012년 농림수산 식품부 기금운용계획 7조 2,429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의 운용규모는 7조 2,4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표 3-164]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금 총괄

(단위: 억원, %)

	2010 744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결산	(A)	(B)	(B-A)	(B–A)/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587	25,859	26,157	298	1,2
농지관리기금	26,527	10,967	16,645	5,678	51.8
축산발전기금	7,836	6,415	7,370	955	14.9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11,458	8,795	2,185	-6,610	-75.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460	4,134	6,270	2,136	51.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728	1,561	2,629	1,068	68.4
양곡증권정리기금	22,191	6,215	4,383	-1,832	-29.5
수산발전기금	5,756	6,426	6,790	364	5.7
합 계	104,543	70,372	72,429	2,057	2,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1

농촌진흥청

2012년 농촌진흥청 세입예산 67억원 2012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원으로 총 67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예산 대비 1.5%(1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표 3-165]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글산} (A) (B)	(B)	(B-A)	(B-A)/A
일반회계	74	60	60	-	-
농특회계	15	6	7	1	16.7
혁특회계	13	_	_	_	-
합 합 계	102	66	67	1	1.5

주: 총지출 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2012년 예산 개요」, 2012.1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는 8,7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6억원(△17.8%) 감소하였다. 이중 지방이전사업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6,170억원으로 2011년 예산(5,648억원) 대비 522억원 (9.2%) 증가하였다.

2012년 농촌진흥청 세출예산 8,726억원

[표 3-166]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B)	증 감	
	2010 달년	(A)		(B-A)	(B-A)/A
일반회계	5,135	5,691	6,194	503	8.8
농특회계	386	394	394	_	_
광특회계	869	995	976	-19	-1.9
혁특회계	1,060	3,542	1,162	-2,380	-67.2
합 계	7,446	10,622	8,726	-1,896	-17.8

주: 총지출 기준임

산림청

2012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29억원, 책임운영기 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8억원으로 총 7,733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예산 대비 0.3%(2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2012년 산림청 세입 예산

7,733억원

[표 3-167] 산림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²⁰¹⁰ 글전 (A)	(B)	(B-A)	(B-A)/A	
일반회계	756	1,106	1,276	170	15.4
농특회계	7,784	6,232	6,029	-203	-3.3
책특회계	393	371	428	57	15.3
합 계	8,933	7,709	7,733	24	0.3

주: 총지출 기준임

자료: 산림청, 「2012년 예산 개요」, 2012.1

자료: 농촌진흥청, 「2012년 예산 개요」, 2012.1

2012년 산림청 세출 예산

1조 7,951억원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는 1조 7,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3억원(8.2%) 증가한 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등 3개 회계의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3-1	681	산림청	소과	세추	초과
124)	OOL			께도	$\overline{}$

(단위: 억원, %)

	2010 결산	경사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Z010 달전 (A)		(B)	(B-A)	(B–A)/A
일반회계	7,059	7,404	8,836	1,432	19.3
농특회계	6,427	5,799	5,670	-129	-2.2
혁특회계	56	81	194	113	139.5
광특회계	2,132	2,950	2,831	-119	-4.0
책특회계	323	364	420	56	15.4
합 계	15,997	16,598	17,951	1,353	8.2

주: 총지출 기준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이관사업을 제외한 것임

자료: 산림청, 「2012년 예산 개요」, 2012.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011년 11월 4일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3개 부처의 2012년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제안 설명 등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11월 21일에 수정 의결하였다. 예비심사 및 의결과정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사업,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등 4대강 관련사업과 한식세계화사업 등 쟁점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8,005억원을 증액하고 1,511억원을 감액하여 순증규모는 6,494억원이었고,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각각 260억원과 1,218억원을 증액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2011년 12월 31일 수정 의결하고 예산을 확정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3개 부처의 총지출은 정부안 18조 592억원에서 166억원 증가한 18조 758억원으로 확정하였다.

농림수산식품 국회 조정내역

총지출 166억원 증액

[표 3-16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부처 2012년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억워)

	정부안(A)	농림수산	예산결산	증감 (B−A)
		식품위원회	특별위원회(B)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80,592	188,564	180,758	166
농림수산식품부	154,106	160,600	154,083	-23
농촌진흥청	8,659	8,919	8,724	65
산림청	17,827	19,045	17,951	124

주: 산림분야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복권기금을 제외

자료: 각 부처,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각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총지출은 정부안 15조 4,106억원에서 23억원이 감소한 15조 4,083억원으로 확정되었고 농촌진흥청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65억원 증가한 8,72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산림청은 정부안에서 124억원 증가한 1조 7,95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사업별로 보면,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국회는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밭농업직불제 등 50개 사업에서 4,543억원을 증액하고,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쌀소득변동직불금 등 6개 사업에서 4,566억원을 감액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한식세계화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내에서 예산이 조정ㆍ확정되었다. 그리고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 한식세계화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율성 강화 및 현물출자 증액에 관련된 사항이 부대의견으로 적시되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국회는 감액없이 신기술보급사업, 선도농가경영(강소농)육성사업,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예산을 증액ㆍ확정하였다. 산림청의 경우, 국회는 국제산림협력, 사방사업 등 13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고,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연구, 산림휴양등산증진 등 기존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등이 마련되지 못하였거나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감액ㆍ확정하였다.

[표 3-17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부처 2012년 주요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정부안 (A)	국회확정 (B)	증감 (B-A)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2,500	2,800	300
	(신규)밭농업직불제	_	624	624
농림 수산	농업용저수지 둑높 이기	11,560	11,060	-500
식품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4,620	620	-4,000
	한식세계화지원(보조)	236	219	2 (코리아푸드엑스포) -19 (한식재단운영등)
농촌	신기술보급사업	290	300	10
진흥청	선도농가경영(강소농)육성	85	115	30
	국제산림협력	20	25	5
시리처	사방사업	128	143	15
산림청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 연구	35	32	-3
	산림휴양등산증진	92	90	-2

자료: 각 부처,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제3절 주요 사업

한 · 미 FTA 보완대책사업

2012년 한미 FTA 보완대책사업 예산 2조 1,231억원 2007년 4월 2일 타결된 한 · 미 FTA에 대비하여 정부는 같은 해 11월 6일 '한 · 미 FTA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1조원의 투융자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2011년 8월 19일에는 한 · 미 FTA 추가보완대책('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투융자 금액을 1조원 추가 증액하여 투융자 금액은 22.1조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2012년 1월 2일에는 '한 · 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22.1조원에 2.0조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 24.1조원을 2017년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3-171] 한 · 미 FTA 보완대책 재정지원 규모: 2008~2017년

(단위: 조원)

	한 · 미 FTA 보완대책 (2007.11)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11.8)	한 · 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2012.1)
한ㆍ미 FTA 재정지원 규모	21.1	22.1	24.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1

한편 2012년 한 · 미 FTA 보완대책사업의 정부 예산안은 1조 8,594억원이었으나, 국회는 정부의 한 · 미 FTA 보완 대책은 상당부분 기존사업을 일부 보완한 내용으로 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전해 주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완화 등 피해농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을 대정부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해 한 · 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2,637억원을 증액하여 2조 1,231억원으로 확정하였다. 주요 특징을 보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밭농업직불제가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피해보전직불사업 등과 관련하여 발동요건을 '평균 가격대비 90%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의 90%를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하였다.

[표 3-172] 2012년 한 미 FTA 보완대책사업 예산 조정 내역

(단위: 억원)

	정부안	국회증감	확정
한ㆍ미 FTA 지원 예산	18,594	2,637	21,23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1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되고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대 상으로 담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 예산안 심사 시 동 사업에 대해 지구 선정의 신뢰 성 상실, 무리한 턴키발주 등에 대한 지적으로 감액하자는 의견과 더불어, 물부족과 이상 가뭄에 대비하 기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현상 유지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국회는 2011년 예 산안 250억원 감액에 이어, 2012년에도 정부예산안 1조 1,560억원 중 500억원을 감액하여 1조 1,060 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하였다.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국회조정내역 500억원 감액

[표 3-173]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예산 조정 내역: 2011~2012년

(단위: 억원)

	정부안	국회증감	확정
2011	8,730	-250	8,480
2012	11,560	-500	11,06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1

한편, 국회는 동 사업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일부 지구를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바, 100%에 가까운 낙찰률은 담합 또는 부정입찰의 의혹이 있으므로 ①담합 또는 부정입찰 의혹, ②사업장 이격거리 및 공정특성을 토대로 한 턴키발주의 위법성 여부, ③사업지 추가선정 및 잦은 계획변경 실태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 내용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예비조사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3건의 주의와 2건의 문책에 대한 감사결과를 2012년 1월에 최종 확정하였다.

[표 3-174]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요구 요지	감사결과
사업대상지 선정 및 잦은 계획변경의 절차적 정당성	사업지로 선정된 96개 지구 중 8개는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여 사업효과가 낮은데도 선정되었고, 민원 등으로 21개 지구를 교체하면서 우선순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지구를 사업추진 편의성만으로 대상지를 교체함에 따라 사업효과가 낮은 8개 지구가 추가
14개 지구를 신기술 도입 및 공기단축 명	일반경쟁 또는 지역제한 경쟁 대상 공사를 턴키공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으로 2~3개씩 묶어 턴키발주한 것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자료를 사실과 다르
위법성 여부	게 하여 심의를 통과시킴
턴키공사 낙찰률이 100%에 가까워 입찰	턴키발주 시 가격평가 비중을 기준보다 낮춰 가격경쟁을 하지 않도록 유
업체 간 담합 또는 부정입찰 의혹	도, 낙찰률이 높아짐

자료: 감사원,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2, 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지원사업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사업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중 3조원을 중앙회가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 시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해 2012년에 2조원을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로 출자하고,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발행하는 3조원의 농금채를 연기금 등에서 전액 인수하며, 농협중앙회의 차입금(농금채) 3조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5년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국회는 농협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동 사업예산 1,500억원을 매개로 한 3조원과 현물출자 2조원을 더한 5조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원규모 5조원을 유지하되 농협차입 이자보전액을 4조원으로 늘리고 유가증권 현물출자를 1조원으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지원사업 국회 조정내역

지원규모 1조원 증액

[표 3-175] 농협 사업구조 개편 부족자본금 정부지원규모 조정 내역

	정부안	국회증감	국회확정	정부 추진계획
농협차입 이자보전	3조원 (이자보전 1,500억원)	_	3조원 (이자보전 1,500억원)	4조원 (이자보전 2,000억원)
유가증권 현물출자	1조원	1조원	2조원	1조원
합계	4조원	1조원	5조원	5조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2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사업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은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 개방폭 확대 전망 등으로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고정직불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며 쌀값과 관계없이 농지의 형상을 유지할 경우 hq당 70만원을 지급하며 당해연도 12월에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 차액의 85%를 지원하되 고정직불금으로 보전이 안 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익년도 3월에 지급한다.

[표 3-176]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결산내역: 2007~2011년

(단위: 억원, %, 원/80kg, 천ha)

	결산 내역			수확기 산지쌀값			지급대상면적			
	계획액 (A)	지출액 (B)	불용액	집행률 (B/A)	추정값 (C)	실제값 (D)	차액 (C-D)	추정값 (E)	실제값 (F)	차이 (E-F)
2007	9,501	4,370	5,131	46.0	138,222	147,715	-9,493	998	951	47
2008	5,330	2,791	2,539	52.4	141,505	150,810	-9,305	945	932	13
2009	676	-	676	0.0	149,063	162,307	-13,244	943	920	23
2010	5,951	5,945	6	99.9	145,000	142,360	2,640	941	809	132
2011	7,993	7,501	492	93.8	135,000	137,416	-2,416	814	789	25

주: 2011년 집행은 완료된 것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10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의 추정 미흡으로 인해 과거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에도 수확기 산지쌀값 추정 미흡 뿐만 아니라 면적을 과다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이 연례적으로 부적절하였다. 2012년의 경우에도 정부는 145,000원/80kg으로 수확기 산지쌀값을 추정하였으나, 수확기 산지쌀값은 155,000원/80kg으로 결정되었고 차액은 10,000원/80kg이었다. 국회는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사업의 과다예산 편성 문제를 바탕으로 동사업의 예산안을 정부안 4,620억원에서 4,000억원 감액된 620억원으로 확정하였다.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국회조정내역 17억원 감액 한식세계화 사업은 한식의 수출 확대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한식세계화 인프라 구축, 전 문인력양성, 한식당 경쟁력 강화, 한식 홍보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2012년 예산안 심사시 홍보예산의 과다문제, 사업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세사업 중 한식재단 운영지원(5억원 감액),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지원(4억원 감액), 한식홍보(10억원 감액)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Korea Food Expo 사업(2억원 증액) 예산을 증액하여 정부안 236억 4,900만원에서 17억원 감액한 219억 4,9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하였다. 또한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한식세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성과와무관한 과도한 전시성ㆍ홍보성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표 3-177] 2012년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정부안	국회증감	확정
한식세계화	23,649	-1,700 (한식재단 운영지원 5억원 감액)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4억원 감액) (한식홍보 10억원 감액) (코리아푸드엑스포 2억원 증액)	21,94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2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22조 5,106억원 규모이다. 전체 총지출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2011년보다 0,3%p 감소하였다.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지식경제부 소관이 16조 121억원으로 2011년 대비 2,108억원(1.3%)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청 소관이 6조 1,547억원으로 2011년 대비 1,785억원(3,0%) 증가하였다. 특허청 소관 예산은 3,438억원으로 2011년 대비 242억원(7,6%) 증가하였다.

2012년 지식경제 위원회 소관 총지출 22조 5,106억원

[표 3-178]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0010 7411	2011 예산	증	감
	2010 결산	(A)	(B-A)	(B-A)/A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220,971	225,106	4,135	1.9
총지출 대비 비중	7.2	6.9	-0.3%p	_
지식경제부	158,013 (71.5)	160,121 (71.1)	2,108	1,3
중소기업청	59,762 (27.0)	61,547 (27.3)	1,785	3.0
특허청	3,196 (1.5)	3,438 (1.5)	242	7.6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 2

^{2.} 괄호 안은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3.}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지식경제부 총지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12년 지식경제위 원회 소관 의무지출 8.709억원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총지출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총지출 22조 5,106억원 중 의무지출은 8,709억원으로 3.9%를 차지하며, 재량지출 중 인건비 · 기본경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이 2조 397억원, 기타 비경직성 재량지출이 19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87.1%를 차지하고 있다. 의무지출의 세부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 소관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7,67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폐광대책비 545억원 등이 존재한다.

[표 3-179]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지출	의무	재량지출(A-B)					
	합계	합계 지출		경직성 재량지출				
	(A)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지식경제위원회	225,106 (100.0)	8,709 (3.9)	18,453	1,944	-	20,397 (9.1)	196,000 (87.1)	
지식경제부	160,121	1,001	16,092	1,380	_	17,472	141,648	
중소기업청	61,547	7,673	1,307	419	_	1,726	52,148	
특허청	3,438	35	1,054	145	_	1,199	2,204	

주: 괄호 안은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총지출 중 해당 항목의 비중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지식경제부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예산 11조 7,210억원 지식경제부 소관 재정은 7개 회계(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5개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무역보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 규모는 총수입 기준으로 전년 대비 9.3%(1조 16억원) 증가한 11조 7.210억원이다. 이는 석유수입부과금 증가(전년 대비 2.732억원) 등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이 전년 대비 14.9%(6.099억원) 증액되었고, 우체국 금융사업수익 증가(전년 대비 1.936억원) 등에 따라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도 전년 대비 14.1%(3.117억원) 증액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표 3-180]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 예산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란	(A)	(B)	(B-A)	(B-A)/A
일반회계	2,155	903	915	12	1.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41	116	122	6	5.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0,003	40,847	46,946	6,099	14.9
우편사업특별회계	33,590	36,720	36,992	272	0.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6,001	22,080	25,197	3,117	14.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6,151	6,528	7,038	510	7.8
합 계	128,041	107,194	117,210	10,016	9.3

주: 총수입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2012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1,665억원) 증가한 13조 5,16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각각 6.1%(2,134억원), 6.3%(931억원) 감액된 반면, 그 외 5개 회계는 전년 대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이 감액된 것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 규모 축소(각각 969억원 및 901억원), 지역전략산업육성 R&D 예산 감소(623억원) 등에 주로 기인한다.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세출예산

13조 5,164억원

[표 3-181]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세출예산

(다위· 언워 %)

					(근귀: 극견, 20)
	2010 결산	2010 경사 2011 예산 2012 예산		증	당 감
	2010 달년	(A)	(B)	(B-A)	(B-A)/A
일반회계	28,869	30,653	31,368	716	2,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3,824	14,779	13,848	-931	-6.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810	34,806	32,672	-2,134	-6.1
우편사업특별회계	28,658	31,677	32,407	730	2,3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8,532	18,206	21,401	3,195	17.5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752	2,800	2,821	21	0.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7	579	647	68	11.7
합 계	131,542	133,499	135,164	1,665	1,2

주: 총지출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2012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기금운용규모 (총지출 기준)

2조 4,957억원

지식경제부 소관 기금의 2012년 기금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4개 기금)으로 전년 대비 1.8%(443억원) 증액된 2조 4,957억원이며,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무역보험기금의 경우 전년 대비 10.4% 감액된 1조 243억원 규모이다. 기금운용규모가 증액된 것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예산 증액(전년 대비 184억원)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출 규모가 2011년 1,990억원에서 2012년에는 2,164억원으로 174억원(8.7%) 증액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무역보험기금의 경우는 신용보증 목표실적 감소 등에 따라 무역보험 사업비 규모가 전년 대비 11.6% 감액(1,218억원)되어 기금 지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표 3-182] 지식경제부 소관 기금 운용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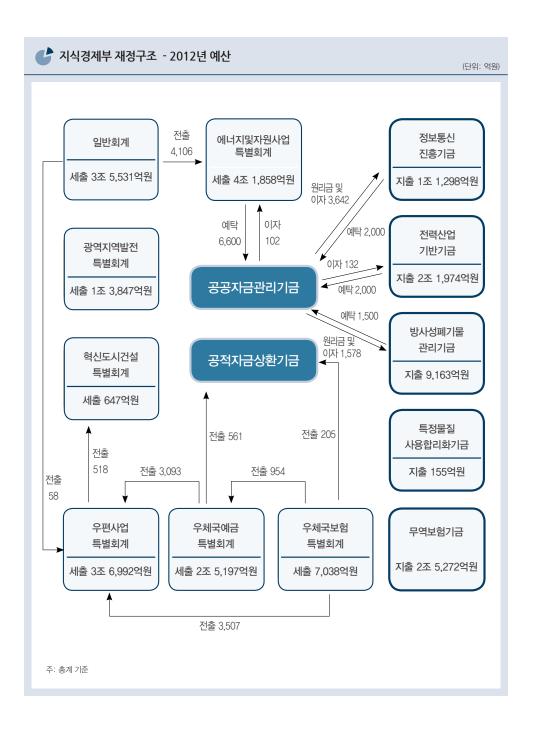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년	(A)	(B)	(B-A)	(B–A)/A
전력산업기반기금	14,720	15,393	15,856	463	3.0
정보통신진흥기금	9,130	7,083	6,890	-193	-2.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66	1,990	2,164	174	8.7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2	48	47	-1	-2.1
합 계	24,468	24,514	24,957	443	1.8
무역보험기금 (총지출에서 제외)	15,496	11,435	10,243	-1,192	-10.4

주: 총지출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2012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지식경제부 소관 재정구조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에 여유재원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이를 예탁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원리금 및 이자를 전입받고 있다. 우체국 영업망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경우 우편사업특별회계로 관련 경비를 전출하고 있으며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도 일부를 전출하고 있다.



2012년 중소기업청 소관 세입예산

5,166억원

2012년 중소기업청 소관 세출예산

1조 8,015억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소관 재정은 2개 회계(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1개 기금(중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예산은 전년 대비 3,673.7% 증가한 5,166억원이다. 세입 증액은 보증기관 출연금 회수 5,000억원(신용보증기금 3,5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500억원)이 신규로 발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다음으로 2012년 중소기업청 소관 세출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4.2%(725억원) 증가한 1조 8,015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5.4%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예산은 7.5% 증가하였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P&D)이 전년 대비 13.7%(862억원), 나들가게 1만개 육성을 위한 소규모점포 조직화사업 예산이 44.4%(110억원) 증액된 반면, ADB/IBRD 차입자금 상환예산이 33.8%(885억원), 한시적 지원사업인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이 518억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교과부로부터의 국립마이스터고 이관에 따른 관련 예산 475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표 3-183] 2012년 중소기업청 소관 세입·세출예산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B)	증 감	
		2010 달년	(A)		(B-A)	(B-A)/A
세입	일반회계	169	137	5,166	5,029	3673.7
	일반회계	12,175	12,881	13,844	963	7.5
세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540	4,409	4,171	-238	-5.4
	소 계	16,715	17,290	18,015	725	4.2

주: 세출예산은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2년 중진기금 운 용규모(총지출 기준)

4조 3.532억원

중진기금의 2012년 기금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4조 3,532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융자지출은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의 신규 편성(1,500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3.9%(1,255억원) 증가하였고, 정부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창업초기기업의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태조합출자 예산이 전년 대비 118.8%(380억원)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진흥채권 등의 미상환잔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이 7,5%(621억원) 감소하였다.

[표 3-184] 중소기업청 소관 기금운용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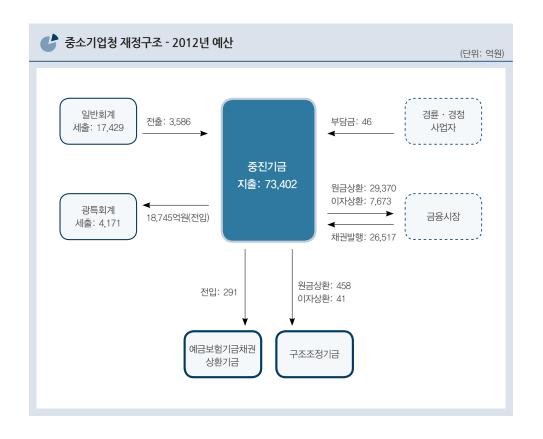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여		증	증 감	
	2010 달란	(A)	(B)	(B-A)	(B-A)/A	
중진기금	43,595	42,472	43,532	1,060	2.5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중소기업청 소관 재정구조를 보면, 중진기금의 지출대비 수입 부족분, 융자사업수행에 따른 이차보전 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동 기금으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중진기금은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허청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으로 운영된다.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정부기업특별회계 형태로 운영되며 자체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동 회계의 특성상 세입과 세출 규모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

2012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3,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7.6%(242억원) 증액되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이 전년 대비 9.0%(290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특허심사지원 등 심사·심판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4.3%(8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특허청 소관 세입 · 세출예산 3,438억원

[표 3-185] 2012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예산

(단위: 억원, %)

	2010 744	2010 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2010 달전			(B-A)	(B–A)/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810	3,196	3,438	242	7.6

주: 총지출 기준

자료: 특허청,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지식경제부 등 소관 부처의 2012년 예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11 년 11월 8일)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예비심사 결과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8,266억원이 증액되고 1,215억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7,051억원 증액 조정되었다. 지식경제부 소 관은 3,872억원이 증액되고 71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청 소관은 4,391억원이 증액되고 500 억원이 감액되었다. 특허청 소관은 2억 6,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조정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11월 7일부터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및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 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12월 31일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심사 결과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1,759억원이 증액되고 3,081억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22조 6,428억원에서 22조 5.106억원으로 0.6% 감액 조정되었다. 지식경제부 소관은 1.290억원이 증액되고 2.529억원이 감액되 었으며, 중소기업청 소관은 469억원이 증액되고 552억원이 감액되었다. 특허청 소관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예산안 조정 규모(총지출 기준)

증액: 1,290억원 감액: 2,529억원

2012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안 조정 규모(총지출 기준)

증액: 469억원 감액: 552억원

2. 심의 특징 및 내역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전체적인 특징은 지식경제위원회 예비심사 시 증액 조정된 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상당 부분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비심사 시 지식경제위원회는 R&D, 지역발전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각각 3,019억원, 1,991억원 증액 조정하였으나,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치며 증액 규모가 각각 947억원, 368억원으로 축소되었다. 기금의 경우도 지식경제위원회는 중진기금 지출 규모를 2,626억원 증액하였으나 예결위 심사에서는 오히려 정부안에서 450억원 감액 조정되었다.

[표 3-186]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u>만</u> 부처별 예산안 조정규모
----------------------	-----------------------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상임위 조정규모	예결위 조정규모	
		일반회계	+1,544	+628	
	회계	광특회계	+1,408	+274	
	외계	에특회계	+66	+45	
지식경제부	•	소계(A)	+3,019	+947	
시극장세구	기금	전력기금	-111	-26	
		정보통신진흥기금	+253	+39	
		소계(B)	+142	+13	
	합계(A+B)		+3,161	+960	
		일반회계	+1,460	+64	
	회계	광특회계	+531	+304	
중소기업청		소계(C)	+1,991	+368	
	기금	중진기금(D)	+2,626	-450	
	합계(C+D)		+4,617	-82	
특허청	회계	책특회계	0	0	

주: 1. +는 증액을, -는 감액을 의미함

^{2.} 각 조정규모는 총계 기준이며 감액조정분과 증액조정분을 합한 것으로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수치임

지식경제부 소관의 경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된 그린비즈니스 중동진출 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유전개발을 위한 한국석유공사 출자금과 해외자원개 발 융자 규모도 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성 재검토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각각 700억원과 1,000억원 감액 조정되었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예산의 경우도 각 기관의 여유자금 보유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 부 감액이 이루어졌다. 반면, 나노융합2020,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등 일부 R&D사업과 지역에너지절 약, 연구개발특구육성, 투자유치기반조성 등 지역 투자예산은 증액 조정되었다. 우편사업ㆍ우체국예금ㆍ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및 무역보험기금 등을 정부 원 안대로 의결되었다.

[표 3-187] 지식경제부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주요내역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90	150 (60)	120 (30)
일반	나노융합 2020	25	50 (25)	50 (25)
	추가연구개발특구 육성	100	100	140 (40)
	투자유치기반조성	938	943 (5)	973 (35)
광특	지역에너지절약	298	298 (0)	354 (56)
	유전개발사업출자	7,603	7,503 (-100)	6,903 (-700)
에특	그린비즈니스 중동진출 기반조성	121	7 (–114)	0 (–121)

자료: 지식경제위원회,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중소기업청의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모태조합 출자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는 중진기금의 투융 자복합금융 사업예산을 500억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반영되었다. 또 한 상임위는 장애인기업 육성사업예산을 65억원, 도심 영세기업의 입지애로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밀집 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을 320억원 증액 조정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결과 각각 27억원, 299억원만 반영되었다.

[표 3-188] 중소기업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주요내역

(단위: 억원)

회계	시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장애인기업 육성	21	86 (65)	48 (27)
광특	저소득층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	320 (320)	299 (299)
중진기금	투융자복합금융	2,000	1,500 (-500)	1,500 (-500)

주: 당초 지식경제위원회는 저소득충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칭업인프라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포함

제3절 주요 사업

1.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소관 R&D 사업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R&D 예산(이하 "지식경제 R&D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4조 7,448억원 규모로 정부 전체 R&D 예산(16조 227억원)의 29.6%를 차지한다. 지식경제 R&D 예산은 총 10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R&D 예산 4조 7,448억원

자료: 지식경제위원회,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표 3-189] 지식경제 R&D 예산 구성 및 주요 사업 목록

(단위: 억원)

01111		주요 사업				
	예산 소계	사업명	2012 예산			
		그린카등수송시스템원천기술개발	1,075			
		바이오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	851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	874			
산업원천 기술개발	14.773	신성장동력장비기술개발	275			
기술개월 (산업+IT)	14,773	글로벌전문기술개발	1,730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413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1,327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신규)	120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에특)	2,142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에특)	420			
	11,523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전력기금)	1,073			
녹색성장 기술개발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전력기금)	925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전력기금)	1,854			
		300MW급IGCC실증플랜트기술개발(전력)	230			
		LED시스템조명기술개발(신규)	55			
		부품기술개발	1,957			
부품소재 기술개발	4,191	핵심소재경쟁력강화	1,667			
		부품소재연구기반구축	39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2,861			
		지역특화산업육성	872			
광역권 기술개발	6,679	지역전략산업육성	861			
		탄소밸리구축	112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115			
		산업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8,057			
산업기술 기반구축 및	10,282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	1,095			
출연연구기관	10,202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596			
		산업기술 R&D관리기관지원	73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지경부, 전략적 R&D 투자 및 정책 방향 결정」, 2012.1.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2년 지식경제 R&D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제로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 기술개발(70억원, 2012년 신규사업), 천연물신약개발(135억원) 등 바이오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IT 분야도 전년 대비 2.1%(198억원) 증가한 9.560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4.191억원이 투입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부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간 고비용이 투자되는 소재 분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에너지분야의 경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개방형 전력망 고도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원전 안전기술 확보를 위한 '원전기술 국가로드맵(Nu-Tech 2030)' 수립 및 토종신형원전(APT+)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원전기술 자립과 수출산업화 기반을 확립할 예정이다. 그 밖에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예산의 경우 PBS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사업비 지원을확대(2011년 6.189억원 → 2012년 7.498억원)하였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2년에는 전년 대비 700억원 감액된 3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최근 무역보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기금배수²⁴⁾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중소조선사 부실에 따른 보험금 지급(최근 3년간 약 1조원 규모) 등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금배수가 급등하여 2011년말 기준으로 90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수출보험기관들의 기금배수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기금배수가 높게 유지되면 그만큼기금의 재무 안전성과 무역보험 지원 역량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총액 확충을 통한 기금배수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2012년 무역보험 기금 출연금 300억원

[표 3-190]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실적 및 전망

	2009	2010	2011	2012 전망
지원실적	165조원	187조원	192조원	207조원
유효계약액	87.6조원	90.4조원	93.5조원	111조원
기금총액	1.7조원	1.2조원	1.0조원	1.4조원
기금배수	50.7배	78.3배	90.3배	80배
당기순손익	-3,127억원	-7,493억원	-2,401억원	_

자료: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2012.2)

[표 3-191] 주요 국가 수출보험기관의 기금배수 현황(2010년)

	일본	영국	벨기에	캐나다	호주
기금배수	40.6	24.4	15.7	8.8	4.5

자료: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2011.10)

그러나 2012년에도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가 200조원에서 207조원으로 7조원 증가하고 유효계약 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출연금 예산은 30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금배수가 여전히 80배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한정된 재정 여건 하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증액을 통한 기금총액 확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금은 경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뿐 아니라 현재 6~8% 수준에 불과한 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전개발사업 출자

2008년 6월 지식경제부는 2012년까지 약 19조원의 자금(정부 출자금은 4.1조원)을 투입하여 한국 석유공사를 1일 생산량 30만 배럴 수준의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소위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3.4조원이 한국석유공사에 출자되었으며, 2012년에도 6,903억원의 출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2012년 예산이 출자되면 사실상 2008년 "석유 공사 대형화 계획"에 따른 정부 출자는 모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동 출자사업의 성과로 한국석유공사의 일일 생산량이 2007년 5만 배럴 수준에서 2011년 말에는 22만 배럴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일일 생산량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자주개발률이 2007년 4.2%에서 2011년 13.7%로 증가한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에도 자산 인수 및 증산 등을 통하여 일일 생산량 8만 배럴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는 대표적 실적지표인 자주개발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가 생산한 원유가 실제 국내에 도입되기는 어렵다는 점²⁵⁾에서 국내 원유 공급이나 유가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쿠르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투자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자산 인수 및 M&A 과정에서 차입에 따른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등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2012년 한국석유 공사 출자예산 6,903억원

²⁵⁾ 한국석유공사가 개발한 원유와 가스는 지리적 위치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국내에 도입한 물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3-192]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재무 현황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총자산	94,032	130,221	169,663	223,474
주요	부채	36,830	55,059	85,443	123,436
재무	자본	57,202	75,161	84,220	100,037
현황	매출액	10,693	17,475	18,001	25,337
	당기순이익	1,667	2,002	4,223	2,114
재무건전성 지표	부채비율	64.4	73.3	101.5	123.4
	차입금의존도	33.2	33,1	43.1	43.7
수익성 지표	매출액순이익률	15.6	11.5	23,5	8,3
THO NA	총자산순이익률	1.8	1.5	2.5	0.9

자료: 한국석유공사 감사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2011,10)에서 재인용

따라서 향후 대규모 정부 출자금을 지원받은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성과 및 계획에 대한 면 밀한 점검과 함께 당초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과 함께 발표되었던 한국석유공사의 자체 경영효율 개선 (비개발부문 조직 및 인력 감축 등) 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사업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을 건설(경북 경주)하는 사업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2년 동 사업 예산은 1,439억원이며 1단계 처분시설의 건설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1조 5,228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었다.

2012년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 건설 예산

1,439억원

[표 3-193] 중· 저준위 방폐장 1단계 건설사업 당초 추진 계획

[_0.55] 0	
사업기간	2006년 1월 ~ 2012년 12월
위 치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면적 약 210만m²)
주요시설	지상시설 – 인수저장건물, 폐기물건물, 지원건물 등 지하시설 – 건설동굴, 운영동굴, 처분동굴(사일로) 등
시설규모	10만 드럼
처분방식	동굴 처분 (지하 80~130m 사일로)
총사업비	1조 5,228억원

자료: 지식경제부 제출자료(2011, 4)

그런데 2012년 1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은 1단계 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을 2014년 6월까지로 18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사업의 공기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로 당초 2010년 6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이를 30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18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공기가 연장된 것은 각 사일로별 암반특성에 따른 설계를 검토한 결과 1,2번 사일로의 경우 공사기간이 7개월 추가로 소요되며 지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라 진입동굴 굴착공사에 5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등의 사유로 설명되고 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에 따라 방사성누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초 공기 연장이 부지 안전성 논란의 시발점을 제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기 연장이 방폐장 안정성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업 관리 및 안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공기 연장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²⁶⁾되고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이 당초계획에 비하여 사업 기간이나 투입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사업

2012년 중소기업정 **책자금 융자사업** 3조 3,330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진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에서 수행하고 있다. 2012년 정책자금 규모는 2011년 당초 계획 대비 3.9%(1,255억원) 증가한 3조 3,330억원이다. 2008년 이후 중진기금 융자사업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을 제외하고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융자규모가 5.9조원에 달하였으나, 이후 점진적 금융위기 극복추세를 감안하여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환원하였다.

[표 3-194] 중진기금 정책자금 융자사업 예·결산 현황: 2008~2012년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20	011	2012	증	감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_{결산} (A)	예산 (B)	(B–A)	(B-A)/A	
융자사업	50	245	343	32,075	33,524	33,330	1,255	3.9

주: 2011년 예산은 당초 계획 기준이며, 수정 계획으로는 3조 3,525억원임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²⁶⁾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비 2,500억원을 공사비에 투입하는 것 외에 약 3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 중진기금 융자사업은 총 7개 세부사업(창업기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지원, 신성장기반지원, 긴급경영안정지원, 사업전환지원, 소상공인지원 및 투융자복합금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투융자 복합금융사업은 직접금융 성격을 복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된 2012년 신규사업이다.²⁷⁾ 각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 및 융자조건(한도, 기간, 지원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95]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자금 지원조건

(단위: 억원)

	20 ⁻	11	2012		į t	육 자 조 건
	예산	실적	예산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 원 기 준
창업 기업지원	14,000	14,000	12,3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공자금리-0.45%p • 업력5년미만, 예비창업자
개발기술 사업화	2,580	2,580	2,58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공자금리-0.45%p ·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신성장기반	8,620	8,619	8,55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공자금리+0.05%p • 업력5년이상, 시설투자기업협동화사업
긴급 경영안정	2,400	2,400	2,500	연간 10억원 (일반은 5억원)	5년 이내	금리: 공자금리+0.35%p (재해기업은 3% 고정)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1,475	1,475	1,65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공자금리-0.45%p •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소상 공인지원	4,450	4,450	4,250	5천만원	5년 이내	· 금리: 공자금리 수준 ·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투융자 복합금융	-	-	1,500	연간 30억원 (운전 10억원)	5년 이내	・금리: 별도 기준 적용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합 계	33,525	33,524	33,330			

주: 투융지복합금융은 성장공유형 대출과 이익공유형 대출로 구분되며, 성장공유형 대출은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표면금리 1%, 만기보장 4%)를 인수하는 것이며, 이익공유형 대출은 저리(신용대출금리 – 2%p) 용자 후 영업이익 발생시 추가이자(영업이익의 3%)를 회수하는 것임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²⁷⁾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8년부터 다른 융자사업의 재원을 활용하여 성장공유형 대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익공유형 대출은 2011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2012년 창업사업화 지원 예산 987억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구기관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의 인프라 를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은 전년 대 비 25,25(199억원) 증가한 987억원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에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250억원), 창 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300억원, 신규),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151억원) 등이 있다.

[표 3-196]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년	(A)	(B)	(B-A)	(B-A)/A
창업사업화 지원	76,940	78,800	98,670	19,870	25.2
창업선도대학 육성	_	25,000	25,000	_	_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_	_	30,000	30,000	순증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_	18,000	15,050	-2,950	-16.4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49,440	22,900	16,200	-6,700	-29.3
특화형 기술창업 촉진	_	7,900	6,720	-1,180	-14.9
제조기반창업아이템상품화지원	27,500	3,000	2,600	-400	-13.3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_	_	3,100	3,100	순증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_	2,000	_	-2,000	-100.0

자료: 중소기업청

주요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011년 신규사업으로 전국 15개 대학을 선정, 대학당 평균 15억원을 지원하여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시제품 제작, 실전창업리그 등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선도대학이 지역거점별 '창업클러스터'형성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함으 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창업맞춤형시업화 지원시업은 사업 주관 기관별로 수요자를 모집하는 기존 창업지원 사업 과는 달리 창업 준비 단계에 따라 수요자가 자신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를 지원(최대 7.000만원)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다만, 이러한 수요자 선택방식은 구체적인 운영체계에 따라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쟁률, 사업별 선발방식, 지원프로그램의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 여 특정사업에 대한 편중 현상. 사업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 적이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준비 자금(최대 1억원), 공간, 1:1 멘토링, 장비 등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고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3. 특허청

특허심사지원

동 사업은 심사관의 심사업무 중 특허 선행기술조사업무와 국제특허기준 분류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 예산은 380억원으로 2011년 305억원 대비 24.7% 증액되었다.

2012년 특허심사 지원 예산 380억원

[표 3-197]	특허심사지원사업	예산 현황
-----------	----------	-------

(다의·배마워 %)

		(단위: 백만원, %)			
	2010 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2010 달전			(B-A)	(B-A)/A
특허심사지원	24,007	30,468	38,008	7,540	24.7
특허선행기술조사	20,891	26,537	34,041	7,504	28.3
특허분류	2,773	2,875	3,066	191	6.6
전통지식DB구축	343	772	901	129	16.7
열린심사제도운영	_	284	_	-284	순감

자료: 특허청 제출자료(2011,9)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89.6%)은 특허선행기술조사 용역비(340억원)가 차지하고 있다. 본 용역은 매년 정해진 단가 및 용역건수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2012년의 경우 특허처리건수 증가와 함께 국제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의 외부용역 의뢰 비율을 2011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용역 단가를 일률적으로 3% 인상하여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외부 위탁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조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용역 산출물의 검증 및 관리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역 단가의 경우에도 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절감요인을 반영하고, 3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간에 가격 요소를 포함한 유효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98]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현황

기술분야 참여연도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 · 정보통신
1996	(재)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특허정보원
2005	(주)윕스	(주)윕스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2006	-	-	(주)윕스
2008	아이피솔루션	아이피솔루션	아이피솔루션

주: 한국P보호기술연구소는 현재 전문기관 지정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특허청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36조 9,365억원으로 2011년 대비 9.3%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이다. 이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2011년 대비 9.3% 증가한 36조 6,928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6.0% 증가한 2,437억원이다.

2012년 보건복지 위원회 소관 총지출 36,9조원

[표 3-199]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 11 1=) 1-7	
	2011	2012	증 감		
	(A)	(A) (B)		(B-A)/A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37,993	369,365	31,372	9.3	
총지출 대비 비중	10.9	11.3	0.4p	_	
보건복지부	335,694 (99.3)	366,928 (99.3)	31,234	9.3	
식품의약품안전청	2,299 (0.7)	2,437 (0.7)	138	6.0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부처별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지출 36조 9,365억원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5.2%(31조 4,601억원)로 2011년 대비 3조 568억원(1.2%p)이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5.7%로 타 부처보다 높은 편이다.

^{2.} 괄호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표 3-200]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규모 및 비율

(단위: 억원, %)

	20	11	2012		증 감	
	총지출	의무지출(A)	총지출	의무지출(B)	(B–A)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37,993 (100.0)	284,033 (84.0)	369,365 (100.0)	314,601 (85.2)	30,568 (1,2%p)	
보건복지부	335,694 (100.0)	284,033 (84.6)	366,928 (100.0)	314,601 (85.7)	30,568	
식품의약품안전청	2,299 (100.0)	(0.0)	2,437 (100.0)	(0.0)	0	

주: 괄호안은 소관 위원회 및 부처별 총지출에서 해당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2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위 원회 소관 재정은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아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띠고 있으며, 동 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아서 복지수요가 증가하면 지 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

2012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ㆍ광역지역 발전·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3개의 기금(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71억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8억 원으로 총 5,879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예산 대비 12,3%(648억원) 증가한 규모 이다.

[표 3-201]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란	(A)	(B)	(B-A)	(B-A)/A
일반회계	4,219	3,884	4,371	487	12,5
에특회계	6	_	_	_	_
책 특 회계	2,314	1,347	1,508	161	12.0
합 계	6,539	5,230	5,879	648	12,3

자료: 보건복지부, 2012, 2

2012년 보건복지 위원회 세입 예산 5,879억원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조 9,745억원으로 전년 대비 7.2%(1조 4,794억원)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 이유는 보육 및 저출산부문 예산이 2011년 예산 대비 21.1% 증가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법정성격 사업의 세출예산이 자동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지출 기준 2,0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99억원) 증가하였다.

2012년 보건복지부 세출 예산 (총지출 기준)

21조 9,745억원

[표 3-20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1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글린	(A)	(B)	(B-A)	(B-A)/A
일반회계	196,798	204,951	219,745	14,794	7.2
특별회계	2,770	1,971	2,070	99	5.0
농특회계	715	672	603	-69	-10.3
광특회계	203	19	23	4	21.1
에특회계	202	_	_	_	-
책특회계	1,650	1,280	1,444	164	12.8
합 계	199,568	206,922	221,815	14,893	7,2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2. 2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지출 기준 14조 5,1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1조 6,341 억원) 증가하였다. 주된 증가 이유는 인구고령화와 제도성숙에 따라 국민연금 연금수급자가 증가하여 국민연금기금 지출규모가 전년 대비 14,0%(1조 5,303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규모 (총지출 기준)

14조 5,113억원

[표 3-203] 보건복지부 기금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국민연금기금	91,057	109,102	124,405	15,303	14.0
국민건강증진기금	17,669	17,960	18,718	758	4.2
응급의료기금	1,828	1,710	1,990	280	16.4
합 계	110,554	128,772	145,113	16,341	12,7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2, 2

보건복지부의 세출예산은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지출사업의 비중이 높아서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에서도 의무지출사업의 비중은 85.7%로, 전년 대비 10.8%(3조 568억원) 증가하였다.

[표 3-204] 2012년 보건복지부 의무지출사업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기초생활보장급여	68,616	70,133	1,517	2.2
생계 · 주거 · 교육 · 해산 · 장제급여	31,898	30,321	-1,577	-4.9
의료급여	36,718	39,812	3,094	8.4
기초노령연금	28,253	29,665	1,413	5.0
장애인연금	2,887	2,946	59	2.0
기타 의무지출 사업	184,275	211,858	27,583	15.0
합 계	284,033	314,601	30,568	1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2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사업은 2012년 15조 9,953억원으로 전년 대비 7,6%(1조 1,331억원)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지부 총지출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예산 기준으로 43.6%로 나타났다. 그러나보건복지부 총지출 36조 6,928억원 중에서 사회보험 지출액 18조 9,397억원(국민연금 12조 4,405억원,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분 6조 4,992억원)을 제외할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90.1%로 보건복지부 재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표 3-205] 2012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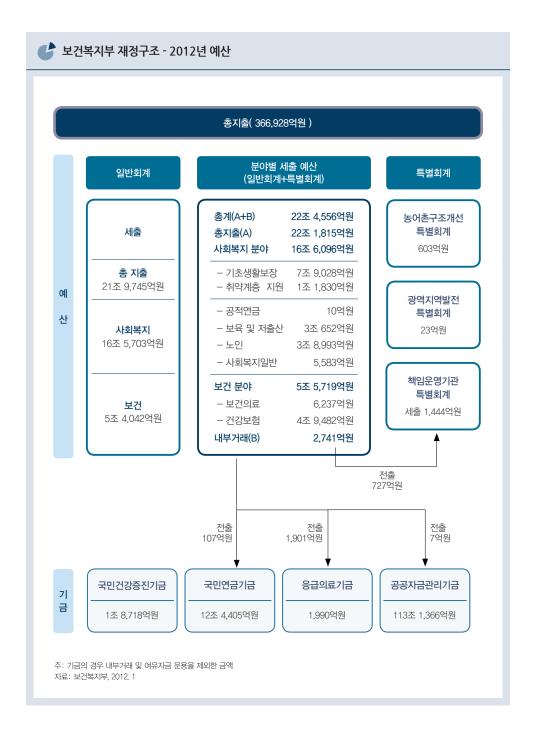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보건복지부 총지출(A)	335,694	366,928	31,234	9.3	
국민연금기금	109,102	124,405	15,303	14.0	
건강보험 국고지원분	57,102	60,113	3,011	5.3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분	4,603	4,879	275	6.0	
사회보험지출 소계(B)	170,807	189,397	18,590	10.9	
차 액(C=A-B)	164,887	177,531	12,644	7,7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D)	148,622	159,953	11,331	7.6	
보건복지부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사업 비율(D/A)	44.3	43.6	_	_	
보건복지부 총지출에서 사회보험지출을 제외한 차액 대비	90.1	90.1	_	_	

주: 기금의 경우 내부거래 및 여유지금 운용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2, 2

보건복지부 재정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로, 기금은 3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과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2개 분야(사회복지, 보건)와 8개의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공적연금, 보육및 저출산,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건강보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지출(22조 1,815억원)의 74.8%가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있고, 보건 분야 예산은 25.2%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과태료, 기타경상이전수입, 수입대체경비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85억원이다.

[표 3-206]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백만원,%)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결산 (A) (B	(B)	(B-A)	(B-A)/A	
일반회계	10,096	8,311	8,548	237	2.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1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1억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원으로 전년대비 5.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11년에 비하여 6.0%(138억원) 증가한 2,437억원 이다.

[표 3-207]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일반회계	227,889	225,070	239,139	14,069	6.3
특별회계	4,900	4,836	4,594	-242	-5.0
합 계	232,789	229,906	243,733	13,827	6.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1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은 식품안전성 제고 부문과 의약품안전성 제고 부문의 증가로 2011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방사능안전관리 사업의 신규도입과 식중독예방 및 관리 사업의 예산 증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운영비 신규 편성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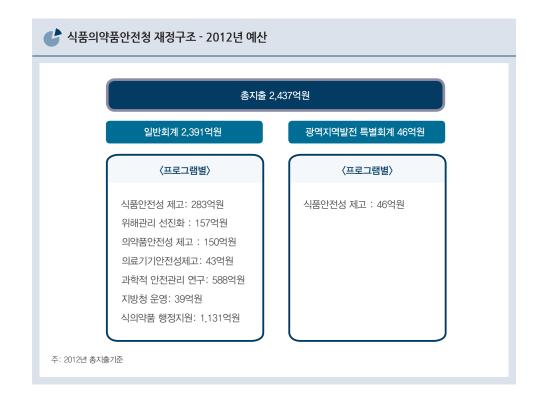
[표 3-208]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식품안전성 제고	25,890	32,906	7,013	27.1
위해관리 선진화	17,957	15,730	-2,227	-12.4
의약품안전성 제고	6,739	15,039	8,300	123,2
의료기기안전성 제고	3,813	4,309	496	13.0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57,222	58,778	1,556	2.7
지방청 운영	3,865	3896	31	0.8
식의약품 행정지원	114,420	113,075	-1,345	-1.2
합 계	229,906	243,733	13,827	6.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1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예산의 구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2년에는 일반회계에서 2,391억원을 지출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46억원을 지출한다. 각 회계간 전출 \cdot 입은 없다.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1년 11월 1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1년 11월 10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상임위 의결결과, 정부가 편성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 전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은 2조 93억원 증액되고, 9,201억원은 감액 의결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11월 7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2011년 12월 31일에 최종 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심의결과는 세입 및 기금수입은 정부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은 4,704억원 증액되고, 1,190억원이 감액되었다.

[표 3-209]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 국회심의결과 (E							(단위: 백만원)	
	회 계		상임위			예결위		
	외계	증 액	감 액	증 감	증 액	감 액	증 감	
	예산	1,904,527	-646,160	1,258,367	457,298	-13,332	443,966	
보건복지부	기금	97,278	-273,861	-176,583	9,060	-105,661	-96,601	
	소계	2,001,805	-920,021	1,081,784	466,358	-118,993	347,365	
식품의약품 안전청	예산	7,537	-54	7,483	4,010	-54	3,956	
합 계		2,009,342	-920,075	1,089,267	470,368	-119,047	351,321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2. 심의 특징 및 내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회 심의의 가장 큰 특징은 만0~2세 무상보육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3,698억원)과 2005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의 신규반영(270억원)이다.

보육료지원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과 만3-4세 보육비 지원단가 인상 등 을 위해 515억원 증액된 2조 730억원을 의결하였으나, 예결위 심사에서는 만0~2세 무상보육 도입을 위해 3,698억원이 증액된 2조 3,913억원으로 최종 의결하였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중앙부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위배되어 정부는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28 상임 위원회에서는 449억원을 의결하였고, 최종적으로는 27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 업의 2012년 예산은 노인단체지원 사업의 세사업으로 편성되어있다.

이 외에 주요 예산안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 채용 일정을 고려하여 인건비(1,800명, 370억원) 중 3개월분이 삭감되었고, 국민연금기금과 관련 하여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위한 예산 43억원이 법적근거 미비로 전액 삭감되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 지급 사업은 물가상승률 하향조정 등의 이유로 감액되었다.

[표 3-210] 보건복지부 소관 2012년 주요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38,740	28,956 (-9,784)	28,956 (-9,784)
일반회계	영유아보육료지원(0~4세보육료)	2,021,514	2,072,985 (51,471)	2,391,291 (369,777)
	노인단체지원(경로당 난방비)	_	44,925 (44,925)	26,955 (26,955)
그미여그	기금운용공사설립	4,269	_	- (-4,269)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지급	9,742,300	9,648,522 (-93,778)	9,648,522 (-93,778)
국민건강 증진기금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자체보조	5,952	16,577 (10,625)	19,407 (2,830)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²⁸⁾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2010년부터 국회심의 시 추가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²⁰¹⁰년: 보건복지가족부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우수 보육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201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다 (411억워)

²⁰¹¹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5개월, 436억원)'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교부세로 2분의 1씩 분담 하여 2011년에 한하여 지원한다.

²⁰¹²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을 2012년에 한하여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난방비 집행과 관련, 농어촌의 저소득 노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이 우선적으로 취 약지역 경로당의 양곡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270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1개 사업에서 5,400만원이 감액되고, 5개 사업에서 75억원이 증액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는 세입부분에서 기타잡수입이 1천만원 감액되었고, 지출부분에서는 1개 사업이 감액되고, 2개 사업이 증액되었다. 예결위에서 감액된 1개 사업과 증액된 2개 사업은 연구개발사업관리(P&D)가 5,400만원 감액되었고,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과 식중 독 예방 및 관리사업이 각각 10억원과 3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세 사업 모두 상임위에서 의결한 수준 또는 일부 증액으로 의결되었다.

[표 3-211]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기타잡수입(세입)	333	_	323 (-10)
연구개발사업관리(R&D)	1,786	1,732 (-54)	(1,732) (-54)
HACCP제도 활성화(시설자금지원)	6,842	9,072 (2,230)	7,842 (1,000)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집단급식소 살균 · 소독장치 설치비)	3,890	6,900 (3,010)	6,900 (3,010)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3,731	4,838 (1,107)	3,731 (–)
나트륨 저감화	1,000	1,890 (890)	1,000 (–)
천연물의약품안전관리	250	550 (300)	250 (–)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제3절 주요 사업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

2000년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급여수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

2012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155만명 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의한다. 급여의 종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총 7종류가 있는데, 이 중 정부의 예산분류에 따라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의 5종류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급여로 통칭된다.

2012년 기초생활급여 예산액은 3조 321억원으로 전년 대비 4.9%(1,577억원) 감소하였다. 월평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전년(160.5만명) 대비 5.5만명(△3.4%) 감소한 155만명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최저생계비의 130%→185% 미만)되어 6.1만명이 추가 수급하는 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소득조사 강화 등으로 인하여 11.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의료급여 예산액은 3조 9,812억원으로 전년 대비 8.4%(3,094억원) 증가하였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대부분²⁹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급여의 수급자이기도 하므로, 기초생활급여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수급자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1인당 진료비의 적정성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표 3-212]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기초생활급여	31,898	30,321	-1,577	-4.9
생계급여	24,460	23,618	-841	-3.4
주거급여	5,986	5,194	-792	-13.2
교육급여	1,299	1,356	57	4.4
해산 · 장제급여	154	152	-2	-1.3
의료급여경상보조	36,718	39,812	3,094	8.4
합 계	68,616	70,133	1,517	3.5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9]}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타법에 의한 수급자(「재해구호법」상 이재민,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도 포함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평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9년 4월 전국민 연금으로 확대되어 2011년 11월말 현재 1,976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2012년 국민연금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79조 2,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조 4,730억원) 증가하였다. 연금급여 수급자수가 282만명(2010년 말)에서 2012년 346만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급여지급 계획액은 2011년 10조 3,598억원에서 2012년 11조 8,419억원으로 14.3%(1조 4,821억원) 증가하였다.

2012년 연금급여 수급자 346만명

[표 3-213] 2012년 국민연금 운용계획

(단위: 억원, %)

		(단위: 익현, %)		
	2011 (A) 2012 (B)		증	감
	2011 (A)	2012 (b)	(B-A)	(B-A)/A
수입합계	767,577	792,307	24,730	3.2
자체수입	410,908	435,893	24,985	6.1
기여금(보험료)수입	263,149	280,109	16,960	6.4
이자 및 재산수입 등	147,759	155,784	8,025	5.4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 전입금)	107	107	0	0.0
여유자금회수	356,562	356,307	255	-0.1
지출합계	767,577	792,307	24,730	3,2
사업비	105,123	120,335	15,212	14.5
연금급여지급	103,598	118,419	14,821	14.3
경상사업비	1,526	1,916	390	25.6
기금운영비	3,979	4,069	90	2.3
여유자금 운용	658,475	667,902	9,427	1.4
[연도말 누적적립금]	3,541,714	3,800,165	258,451	7.3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기초노령연 금 수급자 및 연금액

386만명 월 94,300원

기초노령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을 근거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1단계로 70세 이상노인 인구의 60%(2008. 1), 2단계로 65세 이상의 60%(2008. 7), 3단계로 65세 이상의 70%(2009. 1)로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2년 예산상 수급인원은 386만명이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기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³⁰⁾으로, 2012년에는 노인 1인당월 94,300원이 지급된다.

2012년에는 전년과 지급대상 및 연금액 지급의 기준은 동일하나 노인인구수 및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증가에 따라 수급인원과 연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전년 대비 5.0%(1,413억원) 증가한 2조 9,66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3-214] 기초노령연금 예산현황

(단위: 억원, %)

	2011예산	2012예산 증 감		비고	
	(A)	(B)	(B-A)	(B-A)/A	01 22
기초노령연금 지급	28,252	29,665	1,413	5.0	지원대상: 379→386만명 연금액: 91,000→94,300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보육예산 (국비 및 지방비) 7.8조원

보육지원 관련 예산현황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중앙정부에서 실시되는 보육지원 관련 예산은 2012년에 총 3조 1,019억원 규모로 2011년의 2조 5,495억원에 비해 21,7%(5,524억원) 증가하였다. 여기에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³¹⁾와 유아학비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하면, 2012년 총 보육예산은 7조 8,478억원 규모로 2011년의 5조 7,440억원에 비해 큰 폭(36.6%)으로 증가하였다.

³⁰⁾ 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2028년까지 A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³¹⁾ 보육료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지원하는데, 서울은 국고보조율이 10~30%이고, 지방은 국고보조율이 40~60%이다.

[표 3-215] 보육지원 관련 예산현황

(단위: 억원, %)

	2011예산 2012예산		증	감
	(A)	(B)	(B-A)	(B–A)/A
국비	25,495	31,019	5,524	21.7
지방비	25,714	31,109	5,395	21.0
지방재정교부금	6,232	16,350	10,118	162.4
합계	57,440	78,478	21,038	36.6

자료: d-Brain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보육지원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012년 예산은 2조 3,913억원 규모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총지출 중 6.5%에 해당한다.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은 2011년에는 전 연령에 대하여 지원대상이 동일(소득하위 70%)하였으나, 2012년에는 만 3~4세만 전년과 동일(소득하위 70%)하고 만 0~2세 및 만 5세는 전소득계층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다만 만 0~2세의 경우 소요재원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지방비로 부담하나, 만 5세의 경우는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료지원 예산은 872억원 감액되고,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되어 편성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국비, 지방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여 2012년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6.4조원 규모이며, 2011년 대비 증가율은 45.5%(2.0조원)이다.

ſπ	2-216]	od O N	부육료ス	이사이	IНВ	01 71	의
1#	. 3-7 I DI	2 1 0	「アヸゖ゙゙゙゙゙゙゙゙゚゙゙゙゙゙゚゚゚゙゙゙゙゙゙゙゙゚゚゙゙゙゙゙゙゙゙゚゚゚゙゙゙゙	ᅜᄭᄯᇎ	내光	팔시	174

		2011년	2012년
		소득하위 70%	전소득계층으로 확대
	만0~2세	0세 월 39.4만원 1세 월 34.7만원 2세 월 28.6만원	0세 월 39.4만원 1세 월 34.7만원 2세 월 28.6만원
지원내용		소득하위 70%	전년 동
시년네	만3~4세	3세 월 19.7만원 4세 월 17.7만원	3세 월 19.7만원 4세 월 17.7만원
	만5세	소득하위 70%	누리과정 도입 (전소득계층으로 확대)
		월 17.7만원	월 20만원
	국비	1,9	2,4
	지방비	2,0	2,4
재원 (조원)	교육재정	0.6 - 만3~4세 0.4조 - 만5세 0.2조	1.6 - 만3~4세 0.5조 - 만5세 1.1조
	소 계	4.4	6.4

주: 지원단가는 인건비 지원시설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12년 건강보험 지출규모 및 국고 지원액

41조 1,543억원 5조 4,065억원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발생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부담을 사회적 연대책임 하에 분산시켜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장치이다. 1963년 제도도입 이래 현재 약 4,90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착된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의 2012년 지출규모는 2011년 대비 10.1% 증가한 41조 1,543억원으로 예상되며, 정부지원 액은 5조 4,065억원이다. 동 재정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며, 당해년 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³²⁾

³²⁾ 정부지원에 대한 동 규정들은 2011년까지 지원하는 한시규정이었으나, 2011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법」 전면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표 3-217] 건강보험 재정수지

(단위: 억원, %)

	2010 7411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수입(A)	286,991	329,413	355,706	26,293	8.0%
지출(B)	348,599	373,766	411,543	37,777	10.1%
당기수지(A-B)	-61,608	-44,353	-55,837	-11,484	25.9%
정부지원(C)	48,614	50,361	54,065	3,704	7.4%
일반회계	37,983	40,794	43,434	2,640	6.5%
건강증진기금	10,631	9,567	10,631	1,064	11.1%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A-B+C)	-12,994	6,008	-1,772	-7,780	-129.5%
누적재정수지	9,592	15,600	13,828	-1,762	-11.3%

자료: 보건복지부, 2012, 1

건강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8종의 사회보험³³⁾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재정지원액도 많지만, 수입과 지출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회계로 운용되고 있다. 국회로서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조달과 지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행 재정제도에서는 국회가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 · 결산 심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타 사회보험재정이 기금으로 운용되면서,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의 예 · 결산 심의 제약은 5조원의 국고지원액 심의 · 의결에도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은 매년 원안 의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2008년 7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2012년 지출규모는 2011년 대비 26%(7,197억원) 증가한 3조 4,911억원으로 예상되며, 국고지원금은 4,152억원이다. 동 재정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두며, 당해년 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³³⁾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상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다.

[표 3-21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0 경사 2011 예산 2		증 감	
	2010 열선	(A)	(B)	(B-A)	(B-A)/A
수입(A)	27,720	31,732	34,911	3,179	10.0
보험료	17,509	20,806	22,772	1,966	9.4
정부지원금 (국고+지방비)	9,978	10,596	11,777	1,181	11,1
국고지원금	3,323	3,883	4,152	269	6.9
의료급여부담금	6,655	6,713	7,625	912	13.6
(국가)	208	296	306	10	3.4
(지자체)	6,447	6,417	7,319	902	14.1
기타	234	330	362	32	9.7
지출(B)	25,546	27,714	34,911	7,197	26.0
당기수지(A-B)	2,174	4,018	0	-4,018	-100.0
누적재정수지	5,407	9,425	9,425	0	0.0

자료: 보건복지부, 2012, 1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2012년 예산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사회 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세사업으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사업(272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 다. 동 사업은 복지재정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미흡에 따른 부정·중복 수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수혜자인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가 낮아진다는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신규로 편성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행정기관 등 별도의 전달체계를 가지지 않고, 시· 군 · 구, 읍 · 면 · 동의 지자체 조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선 복지창구인 읍 · 면 · 동 복지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시례관리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2 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3.340명 순증하려는 계획 하에, 2012년에는 1.800명의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서울 50%, 지방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표 3-219] 2012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2639-301)	1,540	28,956	27,416	1,780.3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_	27,216	27,216	순증
사례관리사업비	1,000	1,200	200	20.0
교육훈련비	400	400	0	0
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및 여비 등	140	140	0	0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예산서」, 2012, 1

정부는 2012년 1,800명에 대한 인건비 272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522억원의 국고보조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 계획에 따라 채용된 인력에 대한 2015년 이후의 국고지원 등 소요재원 마련방안은 현재 제시되지 않고 있다.

[표 3-220] 사회복지직 순증인력 국고지원 규모

(단위: 명,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인력	1,800	1,000	540	3,340
국고지원규모	272(9개월분)	570	680	1,52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1, 10)를 토대로 2012년 예산안 국회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식품의약품안전청

R&D 예산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R&D 사업은 597억원으로 식약청 총지출 규모 2,437억원의 24.5%에 해당한다. 현재 식약청의 R&D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총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내부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국립독성과학원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개편되었고, 연구전담기관으로서 식의약안전관리 정책개발 등 국정현안 및 주요정책과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개편당시 기존의 3부 18과 137명에서 3부 29과 246명(개편당시 231명)으로 조직과 인력을 크게 확대되었다.

[표 3-221] 최근 3년간 식약청 R&D 예산 현황: 2010~2012년

(단위: 백만원, %)

	2010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
식품등 안전관리	17,510	18,551	18,500
의약품등 안전관리	15,516	18,331	16,811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3,780	3,505	3,673
안전성관리 기반연구	10,300	10,010	11,880
유해물질 안전관리 과학화	4,945	4,945	5,182
안전기술 선진화	-	_	1,000
정책기반연구	756	1,056	956
연구개발사업관리	1,500	1,880	1,732
합 계(A)	54,307	58,278	59,734
식약청 총지출(B)	244,002	229,906	243,733
R&D 비중(A/B)	22,3	25.3	24.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2010~12년 R&D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내부연구 는 30% 내외에 불과하고, 약 70%는 외부에 위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0년 및 2011 년 집행실적을 보면, 자체연구비를 외부연구 용역비로 전용하여 실제 자체연구 비중은 18%내외로 계 획보다 더욱 저조하다.34)

[표 3-222] 최근 3년간 R&D 예산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10			2011		2012(계획)		
	자체연구	외부용역	소계	시험 연구비 (210)	연구 개발비 (260)	소계	시험 연구비 (210)	연구 개발비 (260)	소계
예산액	19,665 (37.2)	33,142 (62.8)	52,807 (100.0)	16,470 (29.2)	39,928 (70.8)	56,398 (100.0)	17,857 (30.8)	40,145 (69.2)	58,002 (100.0)
집행액	9,258 (18.6)	40,451 (81.4)	49,709 (100.0)	9,795 (17.4)	46,577 (82.6)	56,372 (100.0)	_	_	_

주: 1. 시험연구비는 자체연구수행을 위한 예산이고, 연구개발비는 외부에 위탁하기 위한 예산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1

^{2, 2011}년 집행액은 발주액 기준임

^{3.} R&D 관리 비용인 연구개발사업관리 예산은 제외

³⁴⁾ 연구용역비 전용과 관련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개발사업비 대규모 전용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 전용사유, 집행의 투명성 등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국회 상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19조 2,011억원으로 2011년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이다. 이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가 전년 대비 4,3% 증가한 5조 7,787억원, 고용노동부가 전년대비 3,9% 증가한 13조 1,132억원, 그리고 기상청이 전년대비 7,0% 증가한 3,092억원이다.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소관 총지출 규모19조 2,011억원

[표 3-223]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워 %)

				(271. 72, 70)
	2011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		감
	(A) (B)	(B)	(B-A)	(B-A)/A
환경노동위원회	184,469	192,011	7,542	4.1
(총지출 대비 비중)	(6.0)	(5.9)	(-0.1)	(-)
환경부	55,399	57,787	2.200	4.2
	(30.0)	(30.1)	2,388	4.3
고용노동부	126,180	131,132		
	(68.4)	(68.3)	4,952	3.9
기상청	2,889	3,092	202	7.0
	(1.6)	(1.6)	203	7.0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총지출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부처별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 1

^{2.} 괄호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총지출 19조 1.972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6%, 57.4%이다. 부처별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비교하면, 환경부와 기상청은 총지출의 96.5%와 69.6%를 비경직성 재량지출이 차지하고, 의무지출은 각각 총지출의 0.1%와 0.7%에 불과하다. 환경부 의 경우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정비 등 하수도사업(1조 8,265억원)이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총지출의 62.4%를 의무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구직급여(3조 2,924 억원), 산재보험급여(3조 8,915억원) 및 모성보호육아지원(6,122억원)이 대표적인 의무지출이다.

[표 3-224]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의무	재량지출(A-B)					
	송시술 지출 (A)			비경직성				
	, ,	(B)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환경노동위원회	191,972 (100.0)	81,848 (42.6)	4,328 (2.3)	788 (0.4)	595 (0.3)	5,711 (3.0)	104,413 (54.4)	
환경부	57,748 (100.0)	53 (0.1)	1,040 (1.8)	328 (0.6)	595 (1.0)	1,963 (3.4)	55,732 (96.5)	
고용노동부	131,132 (100,0)	81,772 (62.4)	2,542 (1.9)	290 (0.2)	_	2,832 (2.2)	46,528 (35.5)	
기상청	3,092 (100,0)	23 (0.7)	746 (24.1)	170 (5.5)	_	916 (29.6)	2,153 (69.6)	

주: 괄호안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2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환경, 고용노동, 기상 등 상이한 관리대상을 재정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 및 청은 그 관리대상의 다양성 만큼 상이한 재정운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여타 부처와 다르 게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위주로 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 는데 2012년에는 환경부 세출예산의 85.9%가 동 회계를 통하여 운용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기 금에 비하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 세출예산이 재정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비중이 고용노동부 총지출의 12,7%에 불과하다.

환경부

2012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4개의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5개의 기금(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일반회계를 편성하지 않고 1994년에 제정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근거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회계를 위주로 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 회계의 세입은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자체세입과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2012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세입 1조 4,816억원과 전입금 2조 8,823억원을 합하여 2011년 4조 2,715억원 보다 924억원 증가한 4조 3,639억원이다.

_______ [표 3-225] 환경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글랜	(A)	(B)	(B-A)	(B-A)/A
환경개선특별회계	39,630	42,715	43,639	924	2.2
자체세입	13,167	14,115	14,816	701	5.0
전입금	26,463	28,600	28,823	223	0.8

자료: 환경부, 2012, 2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는 전년도 4조 7,778억원 대비 4.4% 증가한 4조 9,897억원인 데,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환경부 전체 세출예산의 85.9%를 차지함으로써 환경관리사업이 환경개선특별회계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26] 환경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0 경사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환경개선특별회계	39,289	41,881	42,857	976	4.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51	909	1,035	126	13.9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5,965	4,908	4,777	-131	-2.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_	80	1,228	1,148	1,435
합 계	46,405	47,778	49,897	2,119	4.4

자료: 환경부, 2012, 2

2012년 환경부 예산 규모

세입(환특) 4조 3,639억원 세출 4조 9,897억원

2012년 환경부 기금규모 8,309억원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의 운용규모는 8,309억원으로 전년 8,123억원 대비 2,3% 증가하였는바, 주된 증가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사업(12억원 증액),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사업(277억원 증액), 오염 총량관리사업(14억원 증액) 등에서의 사업비 증가에 있다.

[표 3-227] 환경부 소관 기금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출전 (A)		(B)	(B-A)	(B-A)/A
한강수계관리기금	4,132	4,279	4,346	67	1.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98	2,018	2,071	53	2.6
금강수계관리기금	1,017	954	974	20	2.1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기금	705	733	773	40	5.5
석면피해구제기금	_	139	145	6	4.3
합 계	7,852	8,123	8,309	186	2,3

자료: 환경부, 2012, 2

환경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상하수도 · 수질 부문의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2012년 환경부 소관 전체 세출예산 사업비의 64.7%에 해당하는 3조 1,330억원이 상하수도 · 수질 부문에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사업은 2012년에 1조 8,265억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신규사업인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상 환사업은 179억원 규모이며, 구제역 매몰지 인근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채무부담의 상환에 집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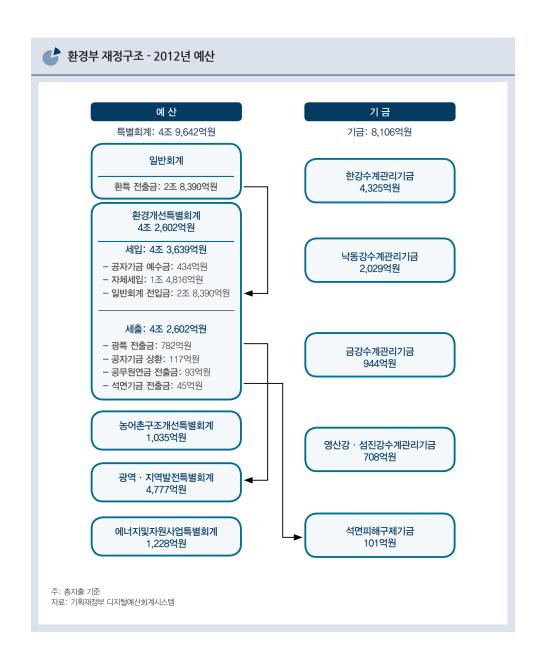
[표 3-228] 2012년 하수도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증 감		
	(A)	(B)	(B-A)	(B-A)/A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	253,352	-	-253,352	순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889	655	-234	-26.6		
분뇨처리시설확충	12,111	14,625	2,541	20.8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1,121	52,440	21,319	68.5		
하수관거정비	528,440	635,291	106,851	20.2		
하수관거융자원리금상환	13,362	13,027	-335	-3.0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지급	130,559	205,076	74,517	57.0		
하수처리장설치	748,649	549,547	-199,102	-31.2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112,049	100,506	-11,543	-10.0		
하수도연구관리	1,000	1,023	23	2.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48,599	156,605	8,006	5.4		
하수도시설확충및관리(광특)	2,373	2,230	-143	-6.0		
면단위하수처리장확충(농특)	82,537	95,482	12,945	15.7		
합 계	2,065,041	1,826,507	238,534	11.6		

자료: 환경부, 2012, 2

2012년 환경부 재정구조를 보면, 세출예산의 85.9%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입예산의 66%를 전입금에 의존하는 등 자체세입 구조가 견실하지 못하여, 특별회계로서 독립 성이 취약하며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2012년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은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및 4개의 특별회계)과 5개 기금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며,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의 특징은 기금 비중이 높고 일반회계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총지출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9%, 2012년 12.2%이다. 다만, 2011년 고용노동부 소관예산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이 28.0%로 높았으며, 350 이에 따라 일반회계 비중이 2.3% 모든 높아졌다.

[표 3-229] 고용노동부 재정운용 구조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금액	비중	
총지출	126,180	100.0	131,132	100.0	
일반회계	12,500	9.9	16,003	12,2	
특별회계	656	0.5	667	0.5	
기금	113,024	89.6	114,462	87.3	

자료: 고용노동부, 「2012회계연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2012년 총 412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예산 대비 215.8% 증가한 규모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2억원(과태료수입 108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가산금 303억원)이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0만원이다. 세입예산의 증가는 대부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가산금 증가에 기인하는데,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가산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60억원(61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추경편성 등으로 보조금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되고 2010년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정산실시로 확대된 반환금 증가 추이가 반영된 것이다.

[표 3-230]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백만원,%)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일반회계	13,044	41,231	28,187	216.1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5	15	0	0	
합 계	13,059	41,246	28,187	215.8	

자료: 고용노동부, 「2012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³⁵⁾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사업 중 저소득층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2,654억원)이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143,3%(2011년 574억원→2012년 1,396억원, 증가율 143,3%)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12년 고용노동부 예산 규모

세입 412억원 세출 1조 6,670억원 2012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지출 1조 6,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7%(3,514억원)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신규로 도입되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28.0%, 3,503억원)을 보였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증가는 제주자치도 자율편성항목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종합상담센터의 혁신도시(울산) 이전 건립비용의 연차별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38.0%(48억원) 증가하였다. 반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진폐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 및 광산산업 사양화에 따른 신규장해판정자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3.3%(72억원) 감소하였다.

[표 3-231]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일반회계	12,500	16,003	3,503	28.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	9	0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	470	-72	-13.3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69	105	36	52,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5	83	48	138.0	
합 계	13,156	16,670	3,514	26.7	

자료: 고용노동부, 「2012 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2년 고용노동부 기금 총지출

11조 4,462억원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지출 11조 4,462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다.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기금이 각각 1.0%, 2.0%, 4.0% 증가하였으며,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이 각각 4.0%, 6.7%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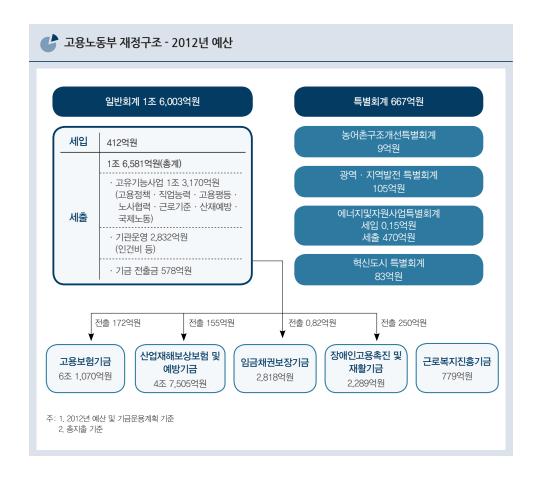
[표 3-232]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총괄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고용보험기금	60,462	61,070	608	1.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6,590	47,505	915	2.0
임금채권보장기금	2,936	2,818	-118	-4.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201	2,289	88	4.0
근로복지진흥기금	835	779	-56	-6.7
합계	113,024	114,462	1,438	1.3

자료: 고용노동부, 「2012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고용노동부 재정흐름의 특징은 내부거래가 비교적 단순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 578억 원뿐이라는 점이다. 578억원 중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은 172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 금으로의 전출금은 155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으로의 전출금은 250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으로의 전출금은 8,200만원이다.



기상청

2012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21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2011년 예산 대비 1.6%(3.400만원) 감소한 규모이다.

[표 3-233] 기상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백만원,%) 증 감 2011 예산 2012 예산 2010 결산 (B) (B-A) (B-A)/A 일반회계 1,857 2,153 2,119 -34-1.6

자료: 기상청, 2012, 2

2012년 기상청 예산 규모

세입 22억원 세출 3,092억원 2012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2년 일반회계는 2011년(2,782억원) 대비 5.5% 증가한 2,935억원이고, 2012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2011년(106억원) 대비 47.6% 증가한 157억원이다.

[표 3-234] 기상청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열선	(A)	(B)	(B-A)	(B-A)/A
일반회계	2,330	2,782	2,935	153	5.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	106	157	51	47.6
합 계	2,350	2,889	3,092	203	7.0

자료: 기상청, 2012, 2

분야·부문별 현황을 보면, 기상청 세출예산은 모든 예산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일반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3-235] 기상청 세출예산 분야·부문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부문	회계 2010 결	회계 2010 결산 2011 예산 기	2012 예산 (B)	증 감		
포애	군아 구군 의계 2010 <u>글</u> 전	2010 달년	(A)		(B-A)	(B-A)/A	
	과학기술	일반회계	232,971	278,245	293,551	15,306	5.5
과학기술	파력기술 일반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2,004	10,631	15,688	5,057	47.6
	합 계		234,975	288,876	309,239	20,363	7.0

자료: 기상청, 2012, 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1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2012년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예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4,994억원 증액, 62억원 감액되어 총 4,933억원 순증된 것으로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130억원 감액, 1,412억원 증액되어 총 1,282억원 순증된 것으로 의결되었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를 보면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환경부 4,933억원, 고용노동부 1,282억원, 기상청 548억원이 증액 의결되었으나, 국회 최종 심의결과 환경부는 1,618억원 감액된 반면, 고용노동부는 3,109억원, 기상청은 40억원이 증액 조정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내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먼저 환경부 세출예산의 경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규모는 정부안 5조 1,516억원 대비 1,618억원 감소한 49,897억원이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사업에서 2,66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38억원, 그리고 폐기물자원화사업(민자 포함)에서 15억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증액내역을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서 230억원 그리고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에서 124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부 소관 국회 조정 내역

세출예산 1,618억원 감액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 (A)	예결위(B) (B-A)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2,844	179 (-2,665)
ālF	폐기물자원화사업(민자 포함)	336	321 (-15)
환특	하수처리장 확충	4,156	4,386 (230)
	공단폐수처리시설	3,449	3,573 (124)
에특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610	573 (–38)

자료: 환경부, 2012, 2

고용노동부 소관 국회 조정 내역

총지출 3,342억원 증액

고용노동부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130억원 감액, 1,412억원 증액되어 총 1,282억원 증액된 반면, 최종 심의결과에서는 204억원 감액, 3,456억원 증액되어 총 3,342억원이 증액되었다.

[표 3-237] 고용노동부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결과 총괄

(단위: 억원)

	Ą	상임위 예비심시	ŀ	C	예결위 종합심/	4
	증액	감액	소계	증액	감액	소계
일반회계	1,182	-93	1,089	2,996	-73	2,923
기금	230	-37	193	550	-131	419
고용보험기금	188	-45	143	550	-131	41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3	_	33	_	_	_
임금채권보장기금	-	_	_	_	_	_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6	_	6	_	_	_
근로자복지진흥기금	5	_	5	_	_	_
합 계	1,412	-130	1,282	3,456	-204	3,342

주: 1.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기준으로 작성. 다만, 기금전출금 증감액은 포함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일자리 지원 사업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의 위탁사업비 및 일경험지원프로그램 54억원 감액,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취업지원금 39억원 감액,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16억원 감액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최종 심의결과에서 3,45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1,984억원 증액되었으며, 취업활동수당 및 훈련비 지원을 고용보험 수급 자격에 미달하는 청·장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등 5개 사업³⁶⁾이 1,475억원 증액된 것에 기인한다.

^{2.} 기금의 경우 사업비 증감에 따른 여유지금 증감액 및 공공지금관리기금과 각 기금간 전출입 규모를 제외한 규모

자료: 1. 환경노동위원회,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 1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 12

³⁶⁾ 일반회계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594억원 증액),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281억원 증액), 고용센터인력지원(74억원 증액), 직업안정기관운영(21억원 증액),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505억원 증액)이 포함됨

[표 3-238] 고용노동부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억원)

호	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위탁사업비, 일경험지원프로그램)	802	768 (-35)	748 (-54)	
	일반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539	1,500 (-39)	1,500 (-39)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131	112 (-19)	112 (-19)	
감액		글로벌취업지원	193	_	178 (–15)	
6-1		국가기간 · 전략직종훈련	1,809	1,780 (-29)	1,780 (-29)	
	고용 보험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84	67 (-16)	67 (-16)	
	기금	고용촉진지원금	529		479 (-50)	
		임금피크제지원금	139	_	103 (-36)	
		고용센터인력지원	141	146 (5)	215 (74)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지원	28	29 (1)	38 (10)
		노사정위원회운영	27	30 (3)	29 (2)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4	15 (1)	-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45	56 (11)	-	
증액	일반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모성보호지원)	150	1,200 (1,050)	_	
54	<u> </u>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	20	130 (110)	-	
		직업안정기관운영	168	_	189 (21)	
		취업성공패키지지원(참여자수당)	802	_	1,450 (648)	
		실업자능력개발지원	754	_	1,035 (28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670	_	2,654 (1,984)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602	_	627 (25)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264	364 (100)	309 (45)
	고용유지지원금	290	360 (70)	_
고용보험 기금	숙련기술장려사업	151	153 (2)	_
	직장보육시설지원	458	473 (15)	_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607	_	3,112 (505)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예방	업종별 재해 예방	351	362 (11)	_
기금	산재예방시설건립	382	404 (22)	_
	표준사업장설립지원	103	108 (5)	_
장애인고용 촉진및 직업재활기금	직업능력개발원운영	98.2	98.4 (0.2)	_
	직업능력개발지원	29.2	29.8 (0.6)	_
근로복지진흥 기금	임대아파트관리운영	19	24 (5)	_

자료: 1. 환경노동위원회,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 1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 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사회보험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안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분을 각각 1/3씩 지원하는 것으로 총 67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국회 심의에서 지원대상 · 수준이 정부안 보다 확대되어 총 1,984억원이 증액된 2,65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지원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확대(수혜인원 고용보험 최대 142만명→212만명)되었으며, 지원수준이 최저임금(2012년월 보수 104만원수준)이하의 근로자 및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2씩 지원(고용 · 국민 보험료월 8,753원 감소)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표 3-23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심의 결과

	정부안	국회 확정
지원대상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2012년 125만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주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지원수준	최저임금(2012)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의 1/3씩 는 근로자 및 시 하는 것으로 확대	
(최저임금 104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부담)	고용 · 국민 월 35,013원 건강 월 30,160원	고용 · 국민 월 26,260원 (8,753원 감소) 건강 월 30,160원
본사업 추진시기	2012년 10월	2012년 7월
시범사업	광역 1, 기초 1	기초 16개로 확대
수혜인원 (예산상 지원인원)	고용보험 최대 142만명(71만명) 국민연금 최대 102만명(59만명)	고용보험 최대 212만명(131만명) 국민연금 최대 171만명(106만명)
소요 예산액	670억원	2,65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고용보험 수급 자격에 미달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활동수당 및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은 정부안에서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신규로 도입되었다. 국회 예결위에서 '취업활동수당'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당초 논의된 내용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미달하는 청·장년층으로 대상으로 월 30~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4개월간 지원하고 4,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심의에서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청·장년층을 확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기상청의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을 548억원 증액하였으나,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40억원 증액하는 것에 머물렀다.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R&D)사업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상임위에서 70억원 규모로 추가되었으며 예결위에서 3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표 3-240] 기상청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 (A)	예결위(B) (B-A)
OIHL	차세대 도시 · 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R&D)	_	3,000 (3,000)
일반	기후변화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R&D) (탄소추적시스템 구축)	2,611	3,611 (1,000)
	합계	2,611	6,611 (4,000)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 12

기상청 소관 국회 조정 내역

세출예산 40억원 증액

제3절 주요 사업

1.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위주의 재정운용구조 환경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재정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대부분의 재정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2012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조 2,857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41] 환경부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환경개선특별회계	41,881	42,857	976	2,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9	1,035	126	13.9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4,908	4,777	-131	-2.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0	1,228	1,148	1,435	
합계	47,778	49,897	2,119	4.4	

자료: 환경부, 「2012년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2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세입과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2012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체세입예산 4조 3,639억원 중 자체세입은 1조 4,816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4,0%를 차지하고, 전입금은 2조 8,82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2조 8,38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5,1%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특정한 지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표 3-242]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자체세입	14,115	14,816	701	5.0
환경개선부담금	6,539	6,824	285	4.4
배출부과금	120	128	8	6.7
재활용부괴금	44	51	7	15.9
폐기물부담금	867	900	33	3.8
수질개선부담금	215	218	3	1.4
생태계보전협력금	1,576	1,991	415	26.3
융자원리금	3,875	3,791	-84	-2.2
수입대체경비	7	9	2	28.6
기타	872	904	32	3.7
전입금	28,600	28,823	223	0.8
일반회계 전입금	28,166	28,389	223	0.8
공자기금 예수금	434	434	_	0.0
합 계	42,715	43,639	924	2,2

자료: 환경부, 「2012년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2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세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의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에 8,452억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49.4%에 불과하다. 2007~2010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도 2007년 50.6%, 2008년 50.5%, 2009년 50.0%, 2010년 49.4%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43] 환경개선특별회계 부담금 수납 실적 추이

(단위: 억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 손 액
2007	8,021	15,374	7,779	50.6	7,481	114
2008	8,501	15,748	7,948	50.5	7,696	104
2009	8,959	16,457	8,228	50.0	8,046	183
2010	9,031	17,122	8,452	49.4	8,443	227

자료: 환경부, 2011, 5

한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15%로 이루어지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13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 조달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의 참여율 저조 2010년부터 시작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개별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사업을 권역별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9개 권역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과정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로써 2010~2014년간 한시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수도관 정비비용의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다. 2012년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3,000만원(3.5%) 감소한 307억 8,400만원이다.

[표 3-244]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35,293	31,914	30,784	-1,130	-3.5

자료: 환경부, 2012, 2

2010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지자체 추진현황을 보면, 9개 권역 46개 대상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만이 동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참여한 20개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보면, 국비·지방비 예산 855억원 중 536억원만을 집행하여 62.7%의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45] 2010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		결산			지하근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집행률
35,293	50,179	85,472	22,136	31,472	53,608	62.7

자료: 환경부, 2011. 6

이러한 참여율 저조와 집행실적 부진의 원인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30% 이하, 수돗물 유수율 70% 미만, 그리고 수도요금에 의한 원가보전율 90% 이하의 9개 권역 46개 지자체 중, 2010~2014년간 지방상수도 통합과정에 참여하여 "통합실시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수도관 개선비용의일부(10~50% 처등보조)를 지원한다는 지자체 재정지원조건에 기인하고 있다. "통합실시협약"에서는지자체, 환경부, 통합상수도 위탁관리기관 간에 통합상수도 운영방식 등을 정하게 되는데, 지자체 입장

에서는 상수도사업의 이양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지방상수도 통합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합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국고지원을 받은 지자체의 경우에도 국비지원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교부된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

2004년부터 추진된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은 1,059억 1,300만원으로 전년(1,305억 6,900만원) 대비 246억 5,600만원(23,3%)이 감소하였다.

이 중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은 주택가 등에서 운행이 많은 이륜차(스쿠터)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전기이륜차의 성능부족, A/S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환경부는 2009~2011년 연구사업을 통해 1회 충전주행거리(10~30km→40~60km) 개선 및 내구성(1년→3년) 향상, 지역 A/S센터 구축 등 그 동안의 문제를 개선하여, 2012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순찰, 주차관리 등의 용도로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1년 현재 민간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사업은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하여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2001~2005년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기오염 배출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08~2012년간 지역 별 배출허용총량을 결정하고, 동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부 과금을 감면하거나 연료의 황 함유기준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2008~2010년간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현황을 보면, 실제 배출량 대비 배출허용총량이 지나치게 많아 사업장의 대기오염 저감노력 유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고용노동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2012년 신규 사업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사회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 · 고용보험 보험료 신규 지원 2,654억원 동 사업은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2012년 월 보수 약 125만원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즉, 최저임금(2012년 월 보수 104만원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이상~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2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도입으로 기존에 노·사가 1/2씩 부담하던 보험료를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노·사·정이 각각 1/4, 1/4, 1/2씩 부담하며 최저임금 이상~최저임금 120% 이하인 경우 노·사·정이 각각 1/3씩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2012년 예산은 2,654억원 규모이며, 2012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실시 후 하반기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세부 내용은 사회보험료 지원액 2,654억원(고용보험 379억원, 국민연금 2,075억원), 사회보험료 지원업무 운영비 193억원, 연구비 6억원이다.

[표 3-246] 2012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	2,654	2,654	순증
사회보험료 지원액	_	2,455	2,455	순증
고용보험		379	379	순증
국민연금		2,075	2,075	순증
사회보험료 지원업무 운영비	_	193	193	순증
연구개발비	_	6	6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2012,2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험가입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를 최저임금(월 평균 보수 104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는 월간 26,260원, 사업주는 월간 27,560원(근로자 1인 고용)~248,040원(근로자 9인 고용)을 추가 부담한다. 또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전환되면 근로자(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월간 30,160만원, 사업주는 월간 30,160원(근로자 1인 고용)~271,440원(근로자 9인 고용)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표 3-247] 근로자 및 사업주 1인당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액(월간)

(단위: 원)

	최저임	최저임금(월 평균 보수 104만원)			최저임금의 120%(월 평균 보수 125만원)		
	고용 · 국민 보험료	건강 보험료	합계	고용 · 국민 보험료	건강 보험료	합계	
근로자부담	26,260	30,160	56,420	42,083	36,250	78,333	
(정부부담)	26,260	0	26,260	21,041	0	21,041	
사업주부담							
근로자 1인	27,560	30,160	57,720	44,166	36,250	80,416	
(정부부담)	27,560	0	27,560	22,083	0	22,083	
근로자 9인	248,040	271,440	519,480	397,494	326,250	723,744	
(정부부담)	248,040	0	248,040	198,747	0	198,747	

자료: 고용노동부(2012,3)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정부는 국민연금, 3개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8개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각각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통하여 충당되고 있다.

고용보험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 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급여사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실업자 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포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 영업자의 경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2011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151만개소이며, 피보험자수는 1,068만명이다. 보험료는 2개의 사업이 분리되어 부과되며, 실업급여의 경우임금총액의 1.1%(근로자 0.55%, 사용자 0.55%)가 적용되고 있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기준 사업장 규모 에 따라 0.25~0.85%(사용자 전액부담)가 적용되고 있다.

산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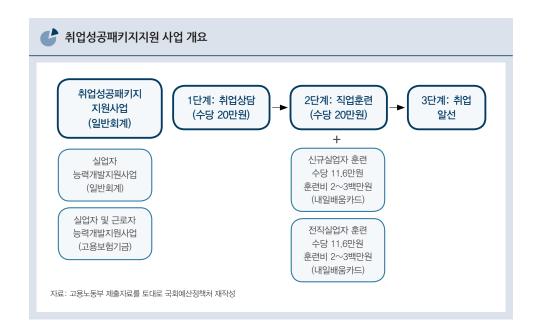
19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 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를 지급한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1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수는 174만개소이며 근로자수는 1,436만명이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며, 2012년 평균 보험료율은 17.7%(전문기술서비스업 0.6%~석탄광업 35.4%)이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2009년부터 개시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청년층(15~29세 이하), 준고령자(50~64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상담을 거쳐 훈련과정 이수가 결정되면, 취직 경험이 없는 신규실업자의 경우는 일반회계의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사업'에서, 전직실업자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사업'에서 내일배움카드가 지원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은 상담 및 훈련 단계에서 평균 4개월 간 생계유지수당을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2개의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교통비·식비 월 11.6만원(3개월)과 훈련비(일반 실업자연 2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200백만원)를 지원한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참여자가 훈련 과정에 참여시수당 31.6만원과 훈련비 200백만원이 지원된다.



2012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은 전년 대비 584억원(101.7%) 증가하였으며,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은 전년 대비 327억원(46.1%) 증가하였고, 실업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기금)은 전년 대비 731억원(30.7%)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안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전년 5만명에서 7만명으로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청·장년층 15.6만명(청년층 5.1만명, 장년층 10.5만명)³⁷⁾을 대상자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 확대 12만명

[표 3-24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및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

(단위: 억원, %)

	2011	2011 2012		감
	(A)	(B)	(B–A)	(B-A)/A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회계)	569	1,396	827	145.3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708	1,035	327	46.1
실업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기금)	2,380	3,111	731	30.7
합 계	4,236	5,542	1,306	31.0

자료: 고용노동부, 2012.2

³⁷⁾ 고용노동부는 '2012.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지원이 확대된 청·장년층에 대한 구체적인 시업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참여대상자를 보면, 청년(만 15~29세) 미취업자의 경우 고졸 비진학 미취업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졸이상 미취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년층의 경우 만 40~64세로서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치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가 대상이 된다. 지원수준을 보면, 취업상담(1단계)에서는 최대 1개월 간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직업훈련(2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 간 월 31.6만원(취업활동수당 29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의 수당과 내일배움카드(2백만원)가 지원된다.

2012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50인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사업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안 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임의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1년 7월 21일 고용보험법 개정(2012년 1월 시행)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적용확대의 주요 내용은 5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확대되었으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에도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사업의 보험료율은 2.0%가 적용되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0.25%가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 사업을 일반 근로자 사업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에 자영업자 실업급여사업을 추가하여 4개의 사업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변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사업 지원 등 총 74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세부사업은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36억원),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3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6억원) 등이다.

[표 3-249]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		2011 예산	2012 예산안
일반회계	고용보험사업지원	_	2,000
	직업능력개발지원	-	3,631
	전직지원사업	-	275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	_	226
	고용보험지원	_	645
	고용보험전산망관리(정보화)	_	621
합 계		_	7,398

자료: 고용노동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2012, 1

일자리 확충 예산사업

2012년 일자리 분야 예산 규모는 2011년 대비 10.8%(1조 223억원) 증가한 10조 4,947억원이다.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제외한 적극적 일자리는 2011년 보다 15.0%(8,317억원) 증가한 6조 3,681억원 규모이다.³⁸⁾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이 2012년 6.2%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적극적 일자리 정책 중 직접 일자리 창출이 차지하는 비중(37.9%)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2012년 상담 및 알선 단계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은 각각 15.3%, 7.1%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각각 6.9%, 19.3%)은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³⁹

2012년 일자리 확충 예산

10조 4,947억원

[표 3-250] 2012년 일자리 대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직접 일자리창출 (지원인원)	23,651 (54.1만명)	25,127 (56.4만명)	1,476 —	6.2
직업능력개발훈련	11,465	12,278	813	7.1
고용서비스	3,792	4,371	579	15.3
창업지원	1,941	4,354	2,413	124,3
고용장려금	9,369	11,537	2,168	23.1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39,360	38,612	-748	-1.9
(구직급여)	(33,772)	(32,924)	(-848)	(-2.5)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_	2,654	2,654	순증
합계	94,724	104,947	10,223	10.8
(적극적 일자리)	(55,364)	(63,681)	(8,317)	(15.0)

주: 1. 합계는 4대 핵심일자리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2012, 2

^{2,} 적극적 일자리는 합계에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제외한 것임

³⁸⁾ 소극적 일자리 예산은 구직급여 등 실직자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적극적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 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등을 말한다.

³⁹⁾ OECD 국가들의 일자리 예산(2008년 기준)은 고용서비스(44,4%)와 교육훈련(25,0%)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10,7%)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국토해양 위원회 소관 총지출 42조 9,690억원 2012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총지출 기준 재정규모는 42조 9,690억원으로 2011년 대비 0.6% 감소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이다. 이를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각 부처별로 보면, 국토해양부가 2011년 대비 0.6% 감소한 41조 1,187억원, 해양경찰청이 1조 484억원(0.5% 감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8,019억원(2.0% 증가)이다.

[표 3-251] 2012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ı			
	2011 예산 2012 예산 (A) (B)		증	감
			(B-A)	(B-A)/A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32,242	429,690	-2,552	-0.6
(총지출 대비 비중)	14.0	13.2	-0.8%p	
국토해양부	413,849 (95.8)	411,187 (95.7)	-2,662	-0.6
해양경찰청	10,534 (2.4)	10,484 (2.4)	-50	-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859 (1.8)	8,019 (1.9)	160	2,0

주: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부처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2,} 정부 전체 총지출은 2011년 309조 567억원, 2012년 325조 4,106억원임

^{3.} 괄호안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총지출 42조 9,690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 94.6%이고, 의무지출은 국토해양부 소관 총지출에만 편성되어 있다. 의무지출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하천편입토지보상 150억원 및 UN ESCAP분담금 1,300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건 강보험부담금 1억 2,300만원,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상환 2조 1,993억원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097억원 등 5개 사업 2조 3,282억원이다. 재량지출의 경우 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11.4%이고, 비 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83.2%이다.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의무지출 비중 5.4% 재량지출 비중 94.6%

[표 3-252]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지출 의무			재량지출(A-B)				
	합계	지출			비경직성			
	(A)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국토해양 위원회 소관	429,690 (100.0)	23,282 (5.4)	8,479	945	39,517	48,941 (11.4)	357,467 (83.2)	
국토해양부	411,187	23,282	3,667	546	39,517	43,730	344,175	
해양경찰청	10,484	0	4,716	363	0	5,079	5,405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8,019	0	96	36	0	132	7,887	

주: 괄호안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경작성 재량지출 및 비경작성 재량지출의 비중임 자료: 부처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정부는 2012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재정의 특징을 크게 새로운 국토창조, 녹색교통위주의 SOC 투자효율화, 주거 및 교통복지 등의 지원강화, 국토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 등으로 발표한바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4대강 사업 완공, 철도투자 확대, 신규도로 건설 억제 및 시급한 교통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확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2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

전년 대비 0.2% 증가 한 16조 4,714억원

국토해양부

2012년 국토해양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와 1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1,215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15조 101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3,903억원 등 총 16조 4,714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있으며이는 2011년 예산 대비 0.2%(361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표 3-253] 국토해양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전	(A)	(B)	(B-A)	(B-A)/A
일반회계	1,118	845	1,215	370	43.8
교특회계	140,331	144,899	150,101	5,202	3.6
광특회계	3,510	4,333	3,903	-430	-9.9
혁특회계	3,622	13,664	8,986	-4,678	-34.2
책 특 회계	940	613	509	-104	-16.9
합 계	149,521	164,353	164,714	361	0.2

자료: 국토해양부

2012년 국토해양부 세출예산 (총지출 기준)

전년 대비 5.1% 감소 한 22조 3,632억원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22조 3,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1조 2,088억원) 감소하였는바, 교통 시설특별회계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표 3-254] 국토해양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0 경사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달년	(A)	(B)	(B-A)	(B-A)/A
일반회계	77,381	80,704	58,067	-22,637	-28.0
교특회계	118,787	118,417	130,719	12,302	10.4
에특회계	250	342	391	49	14.5
광특회계	35,553	33,968	32,433	-1,535	-4.5
혁특회계	1,995	1,834	1,642	-192	-10.5
책특회계	529	456	380	-76	-16.6
합 계	234,495	235,720	223,632	-12,088	-5.1

주: 총지출 기준임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소관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8조 7,55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고, 이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과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표 3-255] 국토해양부 소관 기금 총괄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1 계획	2012 계획	증 감	
	2010 달란	(A)	(B)	(B-A)	(B-A)/A
국민주택기금	146,808	178,129	187,555	9,426	5.3

주: 총지출 기준임 자료: 국토해양부

2012년 국토해양부 세출예산의 특징은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해 대량수송수단인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14.7%가 증가하였고, 4대강 사업이 2012년에 완료됨에 따라 그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수자원 부문은 전년 대비 42.2%가 감소하였다.

[표 3-256] 2012년 국토해양부 분야·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원위: 익편, 76)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교통 및 물류 분야	162,919	171,449	8,530	5.2			
도로 부문	72,033	75,675	3,642	5.1			
철도 부문	44,338	50,876	6,538	14.7			
도시철도 부문	9,717	10,265	548	5.6			
해운 · 항만 부문	16,333	16,358	25	0.2			
항공 · 공항 부문	679	698	19	2.8			
물류 등 기타 부문	19,819	17,577	-2,242	-11.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8,567	48,151	-20,416	-29.8			
수자원 부문	50,182	29,020	-21,162	-42.2			
지역 및 도시 부문	8,574	8,827	253	3.0			
산업단지 부문	9,811	10,304	493	5.0			
사회복지 분야	2,407	2,508	101	4,2			
주택 부문	2,407	2,508	101	4.2			
환경 분야	1,827	1,524	-303	-16.6			
해양환경 부문	1,827	1,524	-303	-16.6			
합 계	235,720	223,632	-12,088	-5.1			

주: 총지출 기준임 자료: 국토해양부 2012년 국민주택 기금운용계획 (총지출기준)

전년 대비 5.3% 증가한 18조 7,555억원

🚅 국토해양부 재정구조 - 2012년 예산 총 지 출: 41조 1,187억원 - 예 산 총지출: 22조 3,632억원 - 기 금 총지출: 18조 7.555억원 (단위: 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반환 4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총지출: 1,642억원 전출 1,270 국민주택기금 일반회계 전출 558 전출 4,881 총지출: 5조8,067억원 총지출: 18조 7,555억원 원금상환 1,867 이자상환 438 〈국민주택채권〉 채권발행: 9조 원금상환: 13조 4,846억원 이자상환: 2조 1,993억원 공적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원금상환 668 원금상환 373 이자상환 105 이자상환 128 원금상환 187 예탁금 2,216 이자상환 28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 143,0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수산식품부) 총지출: 13조 719억원 전출 112 전출 16,65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총지출: 380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산발전기금 총지출: 3조 2,433억원 총지출: 391억원 총지출: 164억원 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산발전기금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용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총지출에서 제외함 자료: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2012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156억원(1.5%) 증액된 1조 114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207억원(35.0%) 감액된 3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총 50억원(0.5%)이 감액된 1조 484억원이다.

2012년 해양경찰청 세출예산

전년 대비 0.5% 감소 한 1조 484억원

[표 3-257]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단위: 억원, %)

	2010 결산	2010 경사 2011 예산	2012 예산 (B)	증 감	
	2010 글산	(A)		(B-A)	(B-A)/A
일반회계	8,690	9,958	10,114	156	1.5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489	577	370	-207	-35.0
합 계	9,179	10,534	10,484	-50	-0.5

주: 총지출 기준임 자료: 해양경찰청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이 대형·중형 및 순찰정신규건조로 전년 대비 36.2% 증액된 1,495억원이고, 통신장비관리사업이 함정보안장비의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45,3% 증액된 109억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은 총지출을 기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2011년(7,850억원) 대비 2,2% 증가한 8,019억원이다.

[표 3-25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 총괄

	2010 결산	2010 경사 2011 예산		증 감	
	2010 글전	(A)	(B)	(B-A)	(B-A)/A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	3,664	7,850	8,019	169	2.2

주: 총지출 기준임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등 계속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7,88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행정도시-조치원 연결도로 등 5개 사업, 65억원이 편성되었다.

2012년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 세출 예산

전년 대비 2.2% 증가 한 8,019억원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심의 결과 국토 해양위 소관 총지출

정부안에서 4,796억원 증액된 42조 9,690억 원으로 확정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11년 10월 26일에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3개 부처의 2012년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에 회부하였고, 2011년 10월 27일부터 4차례 소위심사를 거쳐 2011년 11월 8일 수정의결하였다.

예비심사 및 의결과정에서 4대강 관련 사업과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등 쟁 점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해 3조 8,919원을 증액하고 4,391억원을 감액하여, 순증규모는 3조 4,528억원이었 다. 해양경찰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155억원을 증액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억원을 감액하고 649억원을 증액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2011년 12월 31일 의결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총지출을 정부안 42조 4.894 억원에서 4,796억원 증가한 42조 9,690억원으로 의결하였다.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12월 31일 제304회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국토해양부 소관 국회조정 내역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 4.655억원

국토해양부 총지출은 정부안 40조 6.532억원에서 4.655억원이 증가한 41조 1.187억원으로 확정되 었으며, 예산의 경우 정부안 21조 8.977억원에서 4.655억원이 증가한 22조 3.632억원으로, 기금의 경 우 정부안 18조 7,555억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경우 경인아라 뱃길사업에서 100억원, 인천공항 매각대금인 기타유가증권매각대 4.314억원 등의 감액이 있었고, 호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300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기금의 경우 증감액 조정이 없었다.

[표 3-259] 국토해양부 소관 2012년 예산안 주요사업 심의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정부안 (A)	예결위 (B)	증감 (B-A)
	글로벌인프라펀드	70	60	-10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25	_	-25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0	900	-100
일반	한탄강홍수조절지댐건설	1,423	1,323	-100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650	850	200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5	65	50
	해양정책 및 문회육성	141	237	96
	기타유가증권매각대	4,314	_	-4,314
¬=	공항철도연계시설확충	1,290	930	360
교특	호남고속철도 건설	7,500	7,800	300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360	450	90
	대구테크노산단진입도로	331	531	200
광특	화명동-양산 광역도로	120	150	3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_	50	50
혁특	혁신도시 이전청사 녹색 시범사업	105	70	35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해양경찰청 총지출은 정부안 1조 366억원에서 118억원 증액된 1조 4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예결 위 심의에서는 EEZ 침범 중국어선의 감시 · 단속업무를 위한 대형함정 건조에 42억원, 안전한 진압작 전을 위한 진압 · 안전장비 교체 등 통신장비구입및유지에 24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국고채무부담행위 113억원이 대형함정건조사업을 위해 반영되었다.

해양경찰청 소관 국회조정 내역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 118억원

[표 3-260] 해양경찰청 소	l 2012년 예산안	심의 내역
-------------------	-------------	-------

(단위: 억원)

	사업명	정부안 (A)	예결위 (B)	증감 (B-A)
	대형함정건조	45,878	50,078	4,200
OIHL	무기구입유지	1,568	4,768	3,200
일반	통신장비구입및유지	8,993	11,416	2,423
	해상경비지원	1,706	2,406	700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소관 국회조정 내역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 23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지출의 경우 정부안 7,996억원에서 23억원 증가한 8,01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사업은 공동주택건설사업 지연에 따라 사업착공을 2013년에 하도록 한 결과 10억원이 감액되었고, 오송 청주시 연결도로 및 아트센터건립 사업은 관련 민원해결 및 사업필요성을 인정받아 신규증액 되었다.

[표 3-26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정부안 (A)	예결위 (B)	증감 (B-A)
	1-3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1,441	441	-1,000
행특	오송-청주시 연결도로	_	2,000	2,000
	아트센터건립	_	1,300	1,300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제3절 주요 사업

1. 국토해양부

SOC 재정규모

2012년 SOC 재정 규모

전년 대비 5.5% 감소 한 23조 926억워 SOC 분야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 부처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SOC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5.5% 감소한 23조 926억원이다. 부문별 재정규모 및 SOC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도로, 철도가 각각 3.1% 및 3.9% 로 크게 증가하였고, 도시철도, 해운 · 항만, 지역및 도시및 산업단지 이상 4개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재정규모및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물류 등 기타및 수자원은 전년대비 재정 규모및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수자원의 경우 특히 4대강 사업의 완공에 따라 전년대비 8.0% 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262] SOC 부문별 재정규모

(단위: 억원, %p)

	20)11	2	012	비중변화
	예산액	비중(A)	예산액	비중(B)	(B–A)
도로	74,487	30.5	77,614	33.6	3.1
철도	44,338	18.1	50,876	22.0	3.9
도시철도	9,718	4.0	10,265	4.4	0.5
해운·항만	16,333	6.7	16,358	7.1	0.4
항공 · 공항	679	0.3	698	0.3	0
물류 등 기타	22,434	9.2	18,945	8.2	-1.0
수자원	50,182	20.5	29,020	12.6	-8.0
지역 및 도시	16,424	6.7	16,845	7.3	0.6
산업단지	9,811	4.0	10,304	4.5	0.4
합 계	244,406	100.0	230,926	100.0	0

주: 총지출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2 나라살림」, 2012

일반국도 건설사업

국도건설 프로그램의 예산은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지역간선 국도1차~7차, 물류간선국도1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예산규모는 총 3조 7,970억원으로 2011년 3조 9,575억원 비해 1,605억원이 감소되었다. 도로건설 사업부문은 당초 투자효율화를 위해 완공—집중투자—속도조절 사업으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아라—회천 국도건설 1건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2012년 국도건설 사업예산

전년 대비 4.1% 감소 한 3조 7,970억원

[표 3-263] 2012년 국도건설사업 예산 내역

(단위: 억원)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국도건설	39,575	37,970	-1,605	-4.1
일반국도	8,404	9,374	970	11.5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3,481	2,524	-957	-27.5
지역간선국도1차	1,028	480	-548	-53.3
지역간선국도2차	3,607	1,822	-1,785	-49.5
지역간선국도3차	4,848	3,747	-1,101	-22,7
지역간선국도4차	4,053	3,935	-118	-2.9
지역간선국도5차	6,300	5,953	-347	-5.5
물류간선국도1차	5,355	4,597	-758	-14.2
지역간선국도6차	1,717	1,966	249	14.5
지역간선국도7차	_	2,769	2,769	순증
제주구국도건설	782	803	21	2.7

자료: 국토해양부, 「2012년 예산서」, 2012

그러나 국회 심사결과 도계-진천 4차로 확장 등 총 7개 조사 · 설계사업 및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도로인 막동-나전 국도 건설 등 총 12개의 건설사업이 신규로 추가 반영되었다. 이에 국도의 경우 129.8km가 올해 착공될 계획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구간은 연초에 발주공고 등을 거쳐 상반기에 착 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당초 정부 계획보다 국도사업의 사업 수가 늘어났음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의 초기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완공, 집중투자, 속도조절사업에 대한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교통혼잡구간을 조 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일반철도 건설사업

일반철도 건설사업은 철도 신선 건설 및 기존 철도의 개량(복선화 및 전철화)을 통하여 국기물류체계 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예산은 1조 8,348억원으로 2011년 예산 1조 5,845억원에 비해 15.8%가 증가하였다.

2012년 일반철도 건설사업 예산

전년 대비 15.8% 증가 한 1조 8.348억원

[표 3-264] 2012년 일반철도 건설사업 예산 내역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일반철도 건설지원	14,628	17,363	2,735	18.7	
일반철도 조사설계	1,217	985	-232	-19.1	
합 계	15,845	18,348	2,503	15.8	

자료: 국토해양부, 「2012년 예산서」, 2012

이 중 원주~강릉 철도건설(1997~2018년, 총사업비 3조 9.411억원)은 2012년에 1,800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2017년까지 완공될 필요가 있는 만큼 내년 초 10개 공구에 대해 예정대로 보상 및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울산 간 65.7km구간을 복선전철화하는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2012년 예산 1,240억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12월 30일 광역철도 폐지 고시에 따라 일반철도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제방·준설·환경정비·하천부지의 활용 등 하천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통해 홍수·가뭄·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약 22.2조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12년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은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3,205억원, 수자원공사지원 사업 3,558억원 등 총 6,763억원이 편성되었고, 국가재정과는 별도로 한국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으로 1조 6,34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012년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 6.763억원

2012년 한국수자원 공사 4대강 사업비 1조 6,343억원

[표 3-265] 국토해양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4대강 사업 연도별 예결산 현황: 2009~2012년

(단위: 억원)

Halin Holin		2009		2010		2011		2012
부처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국가하천정비(4대강)(A)	8,320	8,161	32,200	28,747	30,800	25,669	3,205
국토 해양부	수자원공사지원(B)	-	_	700	700	2,550	2,550	3,558
-101	소 계(A+B)	8,320	8,161	32,900	29,447	33,350	28,219	6,763
한국수자	원공사(C)	1,175	1,175	30,749	30,749	31,513	31,513	16,343
합 계(A-	+B+C)	18,785	18,497	80,684	76,237	64,863	59,732	23,106

자료: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12. 1

4대강 사업은 2011년 12월말 현재 90.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국가시행 부분은 88.9%, 한국수자원공사시행 부분은 9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은 2012년 6월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표 3-266] 4대강 사업 공정현황(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국가시행	한국수자원공사시행	전 체
한 강	86.7	99.1	94.1
낙동강	86.3	87.8	87.2
금 강	98.6	98.0	98.3
영산강	98.7	93.6	94.7
섬진강	76,5	-	76.5
합 계	88.9	91.5	90.4

자료: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사업

2012년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사업 기금운용계획 전년 대비 5.8% 증가 한 10조 535억원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국민주택기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0조 53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3-267] 보금자리주택 사업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2010	2011	2012	증	감	
	사업명	2010 계획액	2011 계획액(A)	2012 계획액(B)	증감액 (B-A)	증감률 (B - A)/A	비고
	국민임대출자	10,724	8,934	4,657	-4,277	-47.9	74. 서
국민	국민임대(융자)	26,229	23,681	9,605	-14,076	-59.4	건설
임대	매입임대자본이전	2,331	2,537	2,763	226	8.9	기존주택매입
	소 계	39,284	35,152	17,025	-18,127	-51.6	
영구 임대	영구임대출자	3,119	5,297	5,213	-84	-1.6	건설
	공공임대(융자)	24,097	11,821	29,730	17,909	150.5	건설
공공 임대	매입임대지원(융자)	700	700	700	_	_	미분양주택매입
	소 계	24,797	12,521	30,430	17,909	143.0	
분양	분양주택지원(융자)	22,739	42,064	47,868	5,804	13.8	건설
합계		89,939	95,034	100,535	5,501	5.8	

자료: 국토해양부, 「2012회계연도 예산 개요」, 2012.1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150만호의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을 건설하여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 따라 소득 10분위 중 1~5분위 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국민임대주택 40만호, 10년 공공임대주택(지분형임대주택 포함) 20만호, 전세임대주택 10만호, 공공분양주택 7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10~2012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세부사업간 물량 및 사업비의 비중을 살펴보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분양주택에 대한 공급 비중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3-268]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세부사업간 물량 및 사업비 비중변화

(단위: 호, 억원, %)

		20	09			2010				2011			
	계획		계획액		계획		계획액		계획		 - 계획액		
	물량	비중	계속곡	비중	물량	비중	계속곡	비중	물량	비중	계획곡	비중	
국민 임대	60,000	31.6	39,284	43.7	55,000	26.2	35,152	36.1	40,000	26.7	17,025	16.9	
영구 임대	12,500	6.6	3,119	3.5	15,000	7.2	5,297	5.4	10,000	6.6	5,213	5.2	
공공 임대	32,500	17.1	24,797	27.6	40,000	19.0	14,885	15.3	30,000	20.0	30,430	30.3	
분양 주택	85,000	44.7	22,739	25.3	100,000	47.6	42,064	43,2	70,000	46.7	47,868	47.6	
합 계	190,000	100.0	89,939	100.0	210,000	100.0	97,398	100.0	150,000	100.0	100,535	100.0	

자료: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2. 해양경찰청

대형함정건조

대형함정 건조사업은 해역 확대에 따라 대형 경비함정이 필요하게 되어 1,000톤 이상 함정 33척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대형 경비함정을 건조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458억 7,800만원 중 재정사업으로 142억원이, 선박펀드 상환금으로 316억 7,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그 중 신규사업은 대형공기부양정 1척(2012년 20억원)이었다.

대형함정 건조사업

2012년 예산 501억원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113억원

[표 3-269] 대형함정 건조사업 2012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011	2011 에샤	20	12	증감	
	2010 예산	2011 예산	정부안(A)	수정안(B)	(B-A)	(B-A)/A
대형함정건조	112,952	76,084	45,878	50,078	4,200	9.2

자료: 해양경찰청

그러나 중국어선 단속 중 해경대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양경찰의 불법 조업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EEZ 침범 중국 어선을 1시간 이내 감시 · 단속하기 위한 중국어선의 추가 배치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대형함정건조 예산이 42억원 증액(2012년 501억원)되었으며,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국고채무부담행위 수정안으로 113억원이 추가로 의결되었다. 이에 2012년에 신규 함정(5천톤 1척, 3천톤 2척, 고속단정 6척) 건조 대수가 증가되었다.

[표 3-270] 국고채무부담행위 수정안

(단위: 백만원)

하게 미 시간	사업명	금액				
회계 및 소관	VIES	정부안	수정안	증감		
해양경찰청(일반)	대형함정건조사업	_	11,300	11,300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건설 사업

2005~2030년간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

세종시 건설 사업

세종시 건설 사업은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기능을 유치하는 50만명 규모의 자족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2030년까지 정부 부담분 8.5조원⁴⁰⁾ 외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 지주택공사가 용지보상비(5.01조원),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비용(8.99조원) 등 14.0조원 등 총 2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4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1조(국가예산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 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 5천억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세종시 건설 사업은 2004년 1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판결을 받았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2009년 11월 이후 「세종시 발전방안」이 마련되어 건설계획에 대한 수정논의가 있었으나 2010년 6월 29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폐기됨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다.

[표 3-271] 연도별 세종시 건설 사업 예산 현황: 2006~2012년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종시 건설사업	453	795	3,260	5,761	6,943	7,850	8,019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2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동 법이 시행되는 2012년 7월 1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하여 취득하는 시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들은 세종자치시로 양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제도적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기관 이전 및 세종시 출범 지원, 서민복지 확대, 도시정착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절 재정 현황

정보위원회 소관 재정 규모 4,690억원 2012년 정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4,690억원으로 2011년 대비 274억원(-5.5%) 감소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이다. 정보위원회 소관 부처로 국가정보원이 있으며 정보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만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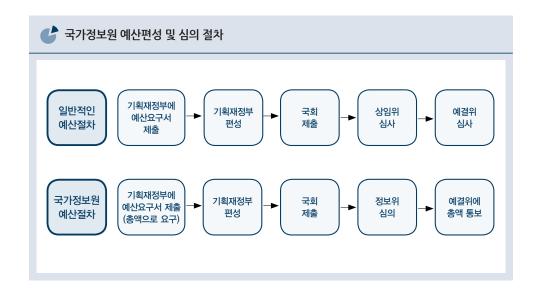
[표 3-272] 2012년 정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2011 2012		증	감				
	(A)	(B)	(B-A)	(B-A)/A				
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4,964	4,690	-274	-5.5				
총지출 대비 비중	0.2	0.1	-0.1%p	_				

주: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국가정보원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법」에 따라 총액만 공개하고 그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특수활동비 단일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에 대한 편성 및 국회 심의절차 역시 일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심의절차와 상이하다.

「국가정보원법」⁴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기획재정부에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 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인 예산 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 가정보원 소관 예산의 경우「국회법」제84조⁴⁵⁾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심사를 종 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그 총액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44) 「}국가정보원법」제12조(예산회계)②국정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5) 「}국회법」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④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 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는 2011년 12월 27일 제2차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뒤 예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차례의 예산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정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2012회계연도 정보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1년 12월 31일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표 3-273] 국회정보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경과

일시	예산안 심의 경과
2011. 12. 27	제2차 전체회의(예산안 상정, 대체토론, 소위회부)
2011. 12. 28	제1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예산안 심의)
2011. 12. 29	제2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예산안 심의)
2011. 12. 30	제3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예산안 심의)
2011. 12. 31	제4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예산안 심의 · 의결)
2011. 12. 31	제3차 전체회의(소위심사보고, 의결)

국회정보위원회는 2012년 예산안 심의에서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 중 5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다. 2007년 이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과 2012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3-274] =	[표 3-274] 국회정보위원회 예산안 심의결과 내역 (단위: 백만원, %)						
	정부안 (A)	국회확정 (B)	변경금액 (A-B)	변경비율 (A - B)/A			
2007	449,892	449,892	0	0.0			
2008	476,617	476,617	0	0.0			
2009	485,984	485,984	0	0,0			
2010	485,696	483,672	-2,024	-0.4			
2011	496,399	496,399	0	0,0			
2012	474,217	468,997	-5,220	-1.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2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4,127억원으로 2011년 대비 3,2% 감소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3%이다.

2012년 여성가족 위원회 소관 총지출 4,127억원

[표 3-275] 2012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억워 %)

			-	(2H: 42, %)
	2011	2012	증	召
	(A)	(B)	(B-A)	(B-A)/A
여성가족부	4,265	4,127	-138	-3,21
총지출 대비 비중	0.14	0.13	-0.03	_

주: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총지출 4,127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2%, 99.8%이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한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94.4%이다.

[표 3-276] 여	성가 족 위원회	소관 의무지	출과 재량지	출 내역 및 비	율		(단위: 억원, %)
		의무			재량지출(A−B)		
	총지출 (A)	지출		경직성 기	대량지출		비경직성
		(B)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재량지출
여성가족부	4,127 (100.0)	9 (0.2)	138 (3.3)	83 (2.1)	_	221 (5.4)	3,897 (94.4)

주: 여성가족부의 의무지출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사업 1개임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는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 2개의 기금(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성된다.

2012년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억으로 2011년 세입예산에 비하여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이다. 2012년 세입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등의 집행실적 부진으로 정산잔액 반납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3-277]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억원, %)

	2010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예전	(A) (B)		(B-A)	(B-A)/A
일반회계	8	27	49	22	81.5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세출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38억원 감소한 4,127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를 포함한 예산이 2,466억원이고, 여성발전기금(1,041억원)·청소년육성기금(620억원)과 여성가 족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 기금 사업까지 더하면 2012년 여성가족부 지출규모는 4,493억원이 된다.

일반회계 운용규모가 2011년 대비 12.6% 증가한 것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87억원), 한국청소년상담원(65억원) 운영지원 예산이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이관·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여성발전기금이 259억원 감소한 것은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고교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표 3-278] 2012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2010 예산	(A)	(B)	(B-A)	(B-A)/A
예 산(a)	2,022	2,191	2,466	275	12.6
-일반회계	1,651	1,697	2,051	354	20.9
-특별회계	371	494	415	-79	-16.0
기 금(b)	1,067	2,074	1,661	-413	-19.9
-여성발전기금	127	1,300	1,041	-259	-19.9
-청소년육성기금	940	774	620	-154	-19.9
총지출 (a+b)	3,089	4,265	4,127	-138	-3.2
복권기금 (c)	970	_	_	_	
범죄피해자보호기금 (d)	_	360	366	6	1.7
합계 (a+b+c+d)	4,059	4,625	4,493	-132	-2.9

주: 1. 총지출 기준(기금의 내부거래 및 여유지금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최근 여성가족부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회계 및 기금 간 사업이관을 들 수 있다. 2011년 복권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의 9개 사업과 일반회계 · 여성발전기금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의 3개 사업이 이관된 후, 2012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2개 사업 252억원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다. 2011년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의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던 한부모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사업이여성가족부소관의 여성발전기금으로 이관되어 1,224억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추진하던 성폭력 · 아동폭력 관련 사업들이 법무부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274억원이 감소하였다.

^{2.}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각각 기획재정부, 법무부 소관의 기금이나,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표 3-279] 여성가족부 주요 이관사	[# 3-	2791	여성기	조부	주요	이과사	언
------------------------	-------	------	-----	----	----	-----	---

(단위: 억원)

사업명	2010 예산 (A)	2011예산 (B)	2012 예산 (C)
[이관사업: 복권기금→여성발전기금] ¹⁾	_	-	_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2012년 365억원 시ㆍ도 교육청 이양)	_	655	332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지원(2012년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사업(518억원)으로 통ㆍ폐합)	_	337	_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2012년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사업(518억원)으로 통ㆍ폐합)	_	128	_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_	48	49
글로벌다문화센터건립(2011년 사업 종료)	_	18	_
다문화가족지원(2012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사업 (〈41억원〉으로 통ㆍ폐합)	_	15	_
결혼이민자현지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관리(2012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사업(〈41억원〉으로 통·폐합)	-	10	-
이주가정자녀대상 한국어방문학습교재개발	_	7	2
학교다문화교육역량강화	_	6	6
소 계	_	1,224	389
[이관사업: 일반회계/여성발전기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²⁾	_	_	_
가정폭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47	_	_
가정폭력 · 성폭력보호시스템 구축	112	_	_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5	_	_
소 계	274	_	_
[이관사업: 청소년육성기금 → 일반회계] ³⁾	_	_	_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_	_	187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_	_	65
소 계	_	_	252

주: 1, 2011년부터 복권기금(기획재정부)에서 여성발전기금(여성가족부)으로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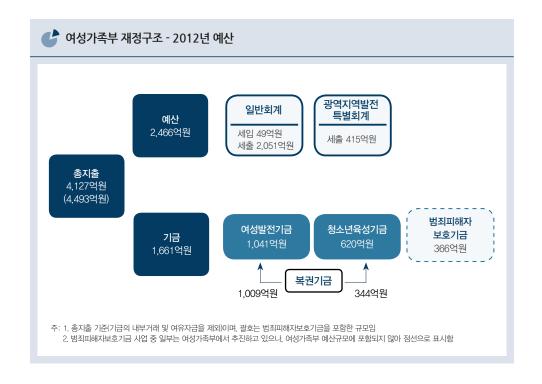
여성가족부 재정 구조 및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의 재정지출은 4,12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051억원, 특별회계 415억원, 여성발전기금 1,041억원, 청소년육성기금이 620억 원이다. 여성가족부의 재정지출에 포함되지 않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범죄 피해자보호기금 사업 366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사업규모는 4,493억원이 된다.

^{2, 2011}년부터 일반회계/여성발전기금(여성가족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으로 이관

^{3, 2012}년부터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자료: 1. 여성가족부,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2.}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3차에 걸쳐⁴¹⁾ 2012년 여성가족부 예산만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다. 14개 사업을 증액하였고(252억원), 8개 사업을 감액하여(13억원) 전체적으로 정부원안 대비 23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11월 7일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였다.

[표 3-280] 여성가족위원회 심의 내역

(단위: 억원)

	증 액	감 액	소 계
일반회계	220	13	207
특별회계	32	_	32
여성발전기금	-	-	_
청소년육성기금	-	0	_
합 계	252	13	239

주: 1,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기준으로 작성, 다만, 기금전출금 증감액은 포함

2010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은 증액 50억원, 감액 12억원으로 총 38억원이 증액되었다.

[표 3-28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내역

(단위: 억원)

	증 액	감 액	소 계
일반회계	50	12	38
특별회계	-	_	_
여성발전기금	-	_	_
청소년육성기금	_	_	_
합 계	50	12	38

주: 1.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기준으로 작성. 다만, 기금전출금 증감액은 포함

2. 심의 특징 및 내역

심의 경과

2012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 특징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액의견이 최종 심의결과에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최종 심의에서 감액된 8개 사업 모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감액·의결한 사업이며, 감액 규모도 거의 조정·변동 없이 반영되었다. 반면에 증액사업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14개 사업을 증액하였으나 최종적으로 6개 사업만 증액되었으며, 증액규모 또한 239억원에서 38억원으로 축소되었다. '경북여성일자리창출센터건립지원'사

^{2.} 지출계획안의 경우 '사업비 증감에 따른 여유자금 증감액'및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각 기금간 전출입 규모'제외

자료: 여성가족위원회, 「2012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2,} 지출계획안의 경우 '사업비 증감에 따른 여유자금 증감액'및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각 기금간 전출입 규모'제외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업 등 3개 사업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지역의 여성인력 양성 및 취업 \cdot 창업 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 수행 등을 위하여 신규로 반영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표 3-282]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특징 및 내역(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상임위(B)	(단위: 백만원) 예결위(C)
사업명	정부안(A)	(B-A)	(C-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4,774	4,699	4,699
		(–75) 93	(–75) 93
사이버상담	112	(-19)	(-19)
사이버멘토링운영	136	95 (-41)	95 (-4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5,723	5,155 (-568)	5,155 (-568)
저소득층한부모가족대출지원	607	547 (-60)	547 (-60)
가족역량강화지원	3,669	3,544 (-125)	3,544 (-125)
가족사업관리및연구	679	629 (-50)	629 (–50)
		(- 50) 426	526
아동 ·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활성화	827	(-401)	(-30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16,732	20,417 (3,685)	14,732 (2,000)
아이돌보미지원사업	42,294	46,288 (3,994)	41,124 (1,170)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1,298	5,092 (3,794)	598 (700)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413	1,073 (660)	213 (200)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할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1,382	1,882 (500)	1,882 (500)
스카우트연맹연찬회비지원	190	290 (100)	290 (100)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5,471	16,251 (780)	15,471 (–)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6,513	8,313 (1,800)	6,513 (–)
여성사전시관	464	664 (200)	464 (–)
청소년시설안전지원	265	349 (84)	265 (–)
경북여성일자리창출센터 건립지원		3,000	, ,
경북여성일자리창출센터 건립지원		3,000	
경기다문화탈북여성지원센터 설치		400	

주: 감액사업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증액사업은 주요사업만 작성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여성가족위원회, 「2012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제3절 주요 사업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2012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259억원 감소한 1,041억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54억원 감소한 620억원이다. 여성발전기금은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예산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한국청소년할동진흥원과 한국 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예산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축소되었다.

[표 3-283] 2012년 여성가족부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여성발전기금	130	1,041	-259	-19.9
청소년육성기금	774	620	-154	-19.9
합 계	2,074	1,661	-413	-19.9

주: 총지출 기준(기금의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 재원확보의 안정성 등의 문제로 「기금존치평가보고서⁴²⁾」에서 조건부 존치 평가를 받았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정부 및 민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정부출연금이 2006년부터 중단되면서 복권기금에 대부분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1,055억원 중 99.6%에 해당하는 1,009억원이 복권기금 전입금 수입이다.

[표 3-284] 여성발전기금 조성 추이

(단위: 억원)

			수입(A)				지출(B)		순	조성액
	정부출연금 일반회계	복권기금 전입금	민간 출연금	이자 등	소계	사업비	관리비 및 기타	소계	조성액 (A-B)	누계
2004	80	76	2	28	186	107	1	108	78	545
2005	60	111	2	34	207	201	2	203	4	549
2006	_	125	7	47	179	263	1	264	-85	464
2007	_	121		58	179	341	1	342	-164	300
2008	_	41	2	45	88	181	20	201	-113	187
2009	_	54	2	22	78	130	0.6	131	-53	134
2010	_	63	-	1	64	129	0.6	130	-66	68
2011	_	1,267	0.5	6	1,274	1,303	0.5	1,304	-30	38
2012	_	1,009	0.5	46	1,056	1,055	0.1	1,056	0	38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에도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륜·경정 수입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정부출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금의 지원중단, 경륜사업 수입 법정출연금의 감소 등으로 2005년 이래 순조성액(조성액-사용액)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3-285]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추이

(단위: 억원)

	:	조 성 액 (A))			사용역	택 (B)		순	고 서이비
	경륜사업수익법정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수입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기금 전출	계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2004	408	_	147	555	407	0.7		408	147	3,307
2005	246	-	197	443	487	0.6		488	-45	3,262
2006	143		169	312	689	0.5		690	-378	2,885
2007	28	7	176	211	748	0.6		749	-538	2,349
2008	175	3	81	259	751	0.4		751	-492	1,856
2009	157	9	110	276	611	2	0.2	613	-337	1,519
2010	225	30	59	314	714	0.5	2	717	-403	1,116
2011	193	43	48	284	720	0.5	3	723	-439	677
2012	208	344	31	583	564	0.7	0.3	565	18	695

주: 2009년~2012년 사업비는 시설비(건설중인 자산에 들어간 비용)는 제외한 금액임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시설보육 위주의 보육정책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보완·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수요에 대응한 '시간제돌봄서비스'와 가정내 양육을 선호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신청하면 가정으로 돌보미를 파견해준다. 2012년 예산은 전년대비 32억원 증가한 434억원으로, 시간제돌봄서비스가 20억원(7.1%) 증액되었고,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 12억원(20.0%) 증액되었다. 증액된 32억원은 돌봄서비스 유형의 추가와 본인부담금의 경감에 따라 증액된 것이다.

[표 3-286] 2012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아이돌보미지원사업관리	5	5			
시간제돌봄서비스	281	301	20	7.1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60	72	12	20.0	
사업시행기관관리	56	56			
합 계	402	434	32	8.0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부가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각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단가에 차이가 있다. 소득하위 40~70% 가정의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 40만원~70만원이고, 보육료지원은 0세아 기준 75만 5,000원으로 최대 35만 5,000원의 차이가 있다.

[표 3-287]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와 영유아보육료지원의 소득분위별 지원단가 비교

(단위: 만원)

	영아종일제 (여성가족부, 2		영유아보육료지 (보건복지부, 2	
	정부지원	부모부담	정부지원	부모부담
소득하위 40%이하	70	30	75.5	
소득하위 40~50%	60	40	75.5	
소득하위 50~60%	50	50	75.5	
소득하위 60%초과	40	60	75.5	

- 주: 1. 보육료지원은 인건비 미지원시설 이용 시 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함
 - 2. 영유아보육료 지원기준
 - · 만 0세~만 2세: 소득수준 무관
 - · 만 3세~만 4세: 소득하위 70%(2013년 누리과정에 포함)
 - ・ 만 5세(누리과정): 소득수준 무관
- 자료: 1. 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1. 10
 - 2,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1. 10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도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와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보건복지부)은 소득분위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시간제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기준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중심의 지원일 때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보육사업이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가구 평균소득 보다 는 소득분위 개념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또한 보육관련 사업에 통일된 기준을 사용한다면 대상자 관리 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수요자 관점에서도 혼란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은 2010년까지는 복권기금 사업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12년 예산은 전년대비 322억원(49.2%) 감소한 332억원이며,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해 양육비(월 5만원), 추가양육비(월 5만원), 생활보조금(월 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지급요건에 따라 지원한다.

r	т.	_	2001	20	1214 =	1407	コスコロコ	OFO III	= 7101	HAMAI	ALL L	-1-1
Ŀ	世	3.	-2881	ZU	12년 9	「テエノ	r 스 사너	상축미	등 지원	사입의	МŲ	여왕

(단위: 억원, %)

				(= 11: 1=; ,0)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A)	(B-A)/A	
아동양육비	289	299	10	3.46	
교육비(중고생 수업료 · 입학금 등)	365	_	-365	순감	
아동교육지원비(중고생 학용품비)	-	28	28	-순증	
생활보조금	-	2	2	-순증	
추가양육비 등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자 및 조손가구)	-	3	3	-순증	
합계	654	332	-322	-49.2	

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비 이관.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011년에 지급된 중고생 수업료 · 입학금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되었고 기존의 아동양육비 외에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추가양육비가 추가로 계상되었다. 이 중 2005년 이후 7년째 동결되어 국정감사 및예산안 심사 등에서 지원단가 상향을 지적 받아온 아동양육비는 2012년에도 월 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양육비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적경비로 안정적 재원확보가 중요하나, 동 사업의 재원인 여성발전기금이 2010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안정성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2009년 국회 여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폭력 ·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 · 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은 가정폭력 · 성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과 가정폭력방지 홍보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하여 가정폭력 ·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는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에서 법원의 수강명령을 받아 보호관찰소에 이송된 자, 교도소에 수감된 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는 동 사업 예산의 67%인 19억 4,200만원이 가해자 교정·치료예산이었으나, 2012년에는 교정·치료 지도자 양성, 가정폭력예방 홍보 강화를 위하여 예산 세부항목을 다양화시켰다. 향후 가정 폭력·성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동 사업 예산의 증·감액 결정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ΙŦ	1086-2 1	2012년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예산 현홍	ŀ
14	L J Z () I	えいえご くしゅう うっき グラ らかか は がい とう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A) (B)		(B-A)/A
가해자 교정치료	2,857	1,942	-915	-32.0
프로그램개발비 등	45	960	915	2,033.3
합 계	2,902	2,902	0	0.0

자료: 1.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2. 여성가족위원회, 「2012년 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간의 연계망 구축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상당·구조·보호·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가정·학교 등으로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역량개발 및 안정적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3-290] 2012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1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		감		
	(A)	(B)	(B-A)	(B-A)/A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8,171	9,220	1,049	12,8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5,049	5,731	682	13.5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년지원	1,297	1,397	100	7.7		
청소년 특별지원 등	2,488	2,406	-82	-3.3		
합 계	17,005	18,754	1,749	10.3		

자료: 1. 여성가족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2012년 예산은 18억 7,5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17억 4,900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의 99%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10억 4,900만원)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6억 8,200만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두 세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년지원 예산의 경우 2011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최근 다문화 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⁴³⁾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법적근거 를 바탕으로 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2,} 여성가족위원회, 「2012년 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11

부록

재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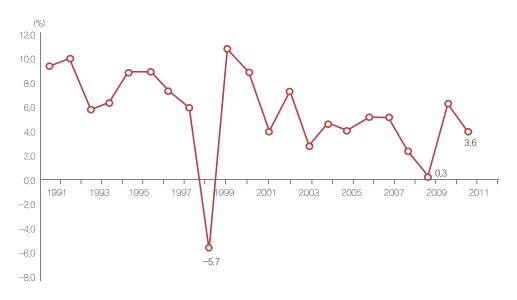
- 1. 주요 경제지표
- 2. 주요 재정지표
- 3. 분야별 주요 통계

1. 주요 경제지표

[표 1-1] 경제규모와 국민총소득 추이 : 1971~2010년

	경상 국내총	통생산(GDP)	경상 국민	총소득(GNI)	1인당 국민	총소득(GNI)	경상 성장률		
	(조원)	(10억달러)	(조원)	(10억달러)	(만원)	(달러)	(%)	(%)	(%)
1971	3.4	9.5	3.5	9.6	10	291	23.8	10.4	12,1
1980	39.1	64.3	38.5	63.3	101	1,660	22.0	-1.9	24.4
1985	85.7	98.4	83.7	96.1	205	2,355	12.0	7.5	4.2
1990	191.4	270.3	191.3	270.2	446	6,303	20.7	9.3	10.4
1995	409.7	531.3	408.0	529.2	905	11,735	17.1	8.9	7.5
2000	603,2	533.5	600.2	530.8	1,277	11,292	9.9	8.8	1.0
2001	651.4	504.6	649.9	503.5	1,372	10,631	8.0	4.0	3.9
2002	720.5	575.9	721.0	576.2	1,514	12,100	10.6	7.2	3.2
2003	767.1	643.6	767.8	644.2	1,604	13,460	6.5	2.8	3.6
2004	826.9	722.4	829.3	724.5	1,726	15,082	7.8	4.6	3.0
2005	865.2	844.7	864.4	843.9	1,796	17,531	4.6	4.0	0.7
2006	908.7	951.1	910.1	952.5	1,884	19,722	5.0	5.2	-0.1
2007	975.0	1049.3	976.8	1,051.2	2,016	21,695	7.3	5.1	2.1
2008	1,026.5	930.9	1,034.1	937.9	2,128	19,296	5.3	2.3	2.9
2009	1,065.0	834.4	1,069.8	838.1	2,195	17,193	3.8	0.3	3.4
2010	1,172.8	1,014.3	1,173.1	1,014.6	2,400	20,759	10.1	6.2	3.7

[그림 1-1]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 1990~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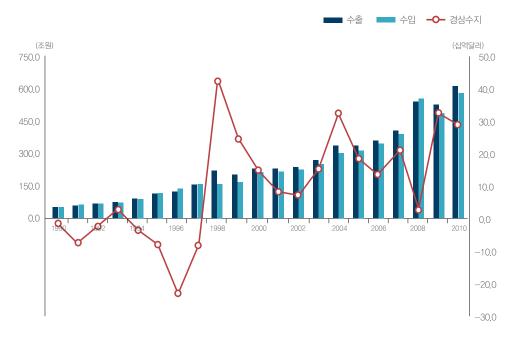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물가상승률 추이: 1990~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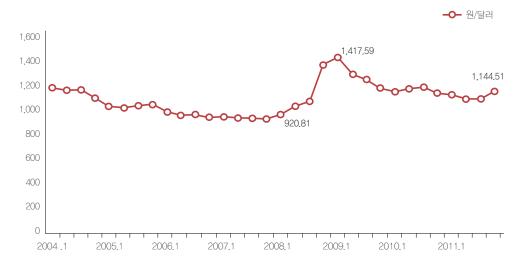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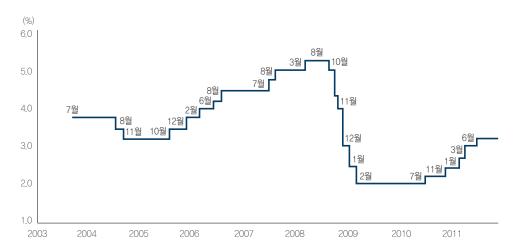


주: 경상수지는 오른쪽 축에 해당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4] 환율 추이: 2004.1/4~ 2011.4/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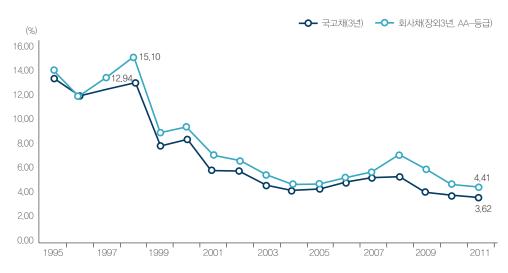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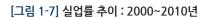
[그림 1-5] 기준금리 추이: 2003~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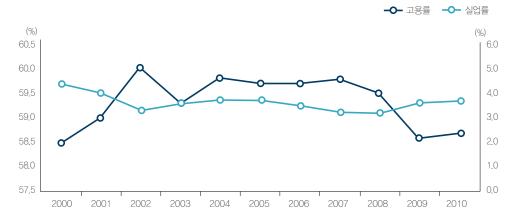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1-6]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추이: 1995~2011년







주: 실업률은 오른쪽 축에 해당 자료: 한국은행

[丑 1-	2] 연령별 인구	통계표							(단위: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20	2030
	0~14세	13,709	12,951	10,974	9,911	7,975	7,771	6,788	6,575
인 구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5,983	36,353	36,563	32,893
수 수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5,452	5,656	8,084	12,691
	계	32,240	38,124	42,870	47,008	49,410	49,780	51,435	52,159
	0~14세	42.5	34.0	25.6	21.1	16.1	15.6	13,2	12.6
구 성	15~64세	54.4	62.2	69.3	71.7	72.8	73.0	71.1	63.1
비 '0	65세 이상	3.1	3.8	5.1	7,2	11.0	11.4	15.7	2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통계포털

2. 주요 재정지표

가. 조세와 재정 규모

ETT 3 41		- 01 .	2000	204014
1世 2-1	 조세부담률	수이:	2000~	·2010년

(단위: 조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세총액	113.5	122,5	135,5	147.8	152.0	163.4	179.3	205.0	212,8	209.7	219.6
국세	92.9	95.8	104.0	114.7	117.8	127.5	138.0	161.5	167.3	164.5	170,5
지방세	20.6	26.7	31.5	33.1	34,2	36.0	41.3	43.5	45,5	45.2	49,2
명목GDP	603,2	651.4	720,5	767.1	826,9	865,2	908.7	975.0	1,026.5	1,065,0	1,172,8
조세부담률	18.8	18.8	18.8	19.3	18.4	18.9	19.7	21.0	20.7	19.7	19.3

자료: 한국은행

[표 2-2]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추이: 2008~2012년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총수입	274.2	279.8	290.8	314.4	343.5	7.7
(전년대비)	(9.4)	(2.0)	(3.6)	(8.1)	(9.3)	
• 예산 수입	186.9	185.7	194.8	212.1	234.0	8.6
- 국세수입	165.6	164.0	170.5	187.6	205.8	9.1
- 세외수입	21.3	21.7	24.3	24,5	28.2	4.6
• 기금 수입	87.3	94.1	96.0	102,2	109.5	5.8
총지출	262.8	301.8	292.8	309.1	325.4	4.8
(전년대비)	(10.2)	(14.8)	(-1.9)	(5.6)	(5.3)	
• 예산 지출	187.2	210.3	205.3	216.3	228.1	4.4
· 기금 지출	75.5	91.5	87.5	92.8	97.4	5.6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년도

[표 2-3]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 2006~2012년

(단위: 조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R&D	8.9	9.8	11,1	12.7	13.7	14.9	16.0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2.4	12.6	14.7	20.8	15.1	15.2	15.1
SOC	18.4	18.4	20.5	25.5	25.1	24.4	23.1
농림수산식품	15.1	15.9	16.8	17.4	17.3	17.6	18.1
보건·복지·노동	56	61.4	68.8	80.4	81.2	86.4	92.6
교육	28.8	30.7	36.1	39.2	38.3	41.2	45.5
문화ㆍ체육ㆍ관광	2.9	2.9	3.3	3.6	3.9	4.2	4.6
환 경	3.8	4	4.5	5.7	5.4	5.8	6.0
국방	22.5	24.5	26.6	29	29.6	31.4	33.0
외교·통일	2.6	2.4	2.8	3	3.3	3.7	3.9
공공질서 · 안전	11	10.9	11.7	12.4	12.9	13.7	14.5
일반공공행정	39.2	42.3	45.9	51.6	48.7	52.4	55.1
총지출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325.4

주 : 1, 총지출(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총계에서 계정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 기준

2. R&D는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R&D 지출을 합계한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표 2-4]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및 처리내역

(단위: 억원)

					(27. 37.				
연도	일반회계	처리내역							
건도	세계잉여금	지방교부금정산	채무상환	추경재원	세입이입				
2005	12,367	_	3,818	8,549	-				
2006	13,730	13,728	-	_	-				
2007	153,428	54,133	50,640	45,685	2,970				
2008	45,763	2,947	21,836	20,979	-				
2009	36,087	7,864	14,394	_	13,829				
2010	59,514	15,817	22,285	_	21,412				
2011	51,285								

주: 2011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기획재정부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보고」(2012.2)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의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서」(2011.5)와 기획재정부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보고」(2012.2)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5]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 2000년 이후

(단위: 억원)

	-, , ,	00.		_	J 11 1 -		• •	(단위: 억원)
		제출일	의결일	정부안 (A)	추경규모 국회확정 (B)	B–A	편성내역	추경재원	
2000	1차	6.29	10.13	-	3,818	8,549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청소년 실업대책 지원(11,478) 지방교부금 정산(11,145)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7,623 15,000
2001	1차	6.22	9.3	13,728	-	-	 지역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확대(7,354) 의료보호환자진료비 체불액지원(4,500) 재해복구예비비 증액(2,778) 청소년실업대책지원(400) 지방교부금 정산(35,523) 	• 세계잉여금 • 한은잉여금	40,555 10,000
	2차	10.23	11.5	54,133	50,640	45,685	• SOC 등 건설투자(6,603) • 수출 • 중소기업 지원(3,200) • 쌀값안정지원(2,800) • 기타 테러사태 관련 지원 등(3,837)	• 이자불용예상액	16,440
2002	1차	9.10	9.13	2,947	21,836	20,979	・ 태풍 루사 등 재해복구 지원(36,050) ・ 지방교부금 정산(5,381)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이자불용예상액 한국통신매각대 초과수납분	5,381 19,121 3,900 13,029
2003	1차	6.5	7.15	41,775	44,775	3,000	건설투자(15,874) 서민 · 중산층지원(6,621) 수출 · 중소기업지원(6,801) 농업기반시설투자 등(3,857)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등 기타(3,256) 지방교부금 정산(8,348)	세계잉여금한은잉여금국세수입국채발행이차보전예산	17,331 9,007 13,317 2,120 3,000
	2차	10.2	10.24	30,000	30,000	_	• 태풍 매미 등 재해복구지원(30,000)	• 국채발행	30,000
2004	1차	7.3	7.15	18,283 (24,512)	18,283 (24,512)	-	서민생활안정(5,627) 중소기업지원(7,150) 국채발행이자 등 기타 (1,597) 지방교부금 정산(3,909)	세계잉여금 국채발행 한은잉여금 통특잉여금	11,262 13,250 -5,229 -1,000
2005	1차	9,30	11,16	9,146 (51,555)	6,146 (48,555)	-3,000	• 기초생활보장지원(2,588) • 종부세 지방교부금(6,513) • 일시차입금이자(2,455) • 기타 군병영시설 개선등(3,190) • 국채이자(-2,200) • 예비비(-6,400)	세계잉여금 통특잉여금 국채발행 제일은행매각대 석유수입부과금 종합부동산세 국세수입	1,726 430 38,000 1,009 390 7,000 -42,409
2006	1차	8.18	8.29	21,549	21,549	-	 태풍 에위니아 등 재해복구지원(20,600) 지방교부금 정산(949)	세계잉여금 국채발행	8,549 13,000
2007	추경없음	_	_	_	_	_	10-11-02(0.0)	1 112 0	
2008	1차	6,20	9.18	48,654	42,677	-5,977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21,882) 에너지절감 및 해외자원확보(9,634) 농어민 · 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4,510) 지방교부금 정산(1,160) 및 기타 의무적지 출소요(5,491)	• 세계잉여금	42,677
2009	1차	3,30	4,29	177,299 (289,033)	172,188 (283,922)	-5,111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32,141)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4,998) 중소ㆍ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4,825) 지역경제 활성화(35,829)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24,394)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기금차입금 국채발행 세입결손 (국세수입)	2.1조원 4.8조원 1.5조원 19.9조원 -11.2조원 (-11.4조원)
2010	추경없음	_	_	_	_	_			
2011	추경없음	-	_	_		_	<u> </u>		

주: 1. 추경규모는 본예산보다 증가된 지출규모임

^{2.} 추경규모는 세출예산 순계 기준이나, 2009년 추경규모는 당시 추가경정예산인과 함께 제출된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포함한 것으로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

^{3. 2004 · 2005} 및 2009년의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락에 따라 세입감액 경쟁(세입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결손보전을 포함한 추경규모는 괄호 안에 표기

이러한 결손보전을 포함한 주경규모는 괄호 안에 표기 자료: 각 연도 추가경정예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표 2-6] 수정예산안 규모 및 수정 내역

(단위: 억원)

	제출	출일		예산안 규모		
	당초 예산안	수정 예산안	당초 (A)	수정 (B)	수정규모 (B-A)	수정내역
1969	' 69.9.1	' 69.11.19	6,553	6,603	50	지방재정보전(28.9) 재해대책비(5.9) 국회의사당 신축비(6.5) 의무교육 부족시설 확충(5.8) 국세청 정원 증가 등 기타(2.9)
1980	'80.10.2	'80.11.12	94,079	97,292	3,213	・ 농업재해대책비(1,425) ・ 중화학공업지원(1,000) ・ 토지개발공사 출자(550) ・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24) ・ 전투경찰 증원 등 기타(262)
2008	' 08.10.2	'08.11.7	273.8조원	283,8조원	10.0조원	・ 지방경제활성화(4.6조원) ・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3.4조원) ・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1.0조원) ・ 청년 등 실업대책(0.3조원) ・ 지방재정 지원 확대(1.1조원) ・ 유가・환율 조정 등(-0.4조원)

주: 1, 1970년 및 1981년 예산안은 세출예산 순계 기준이며, 2009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임

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표 2-7] 중앙정부 재정수지 추이: 2007~2012년

(단위: 조원, %)

	2007 결산	2008 결산	2009 결산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
통합재정수지(A)	33.8	11.9	-17.6	16.7	5.3	18.1
(GDP 대비)	(3.5)	(1.2)	(-1.7)	(1.4)	(0.4)	(1.4)
사회보장성기금 흑자(B)	30.2	27.5	25,6	29.7	30,3	32.4
관리대상수지(A-B+C)	3.6	-15.6	-43.2	-13.0	-25.0	-14.3
(GDP 대비)	(0.4)	(-1.5)	(-4.1)	(-1.1)	(-2.0)	(-1.1)

주: 1,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4개 기금 2, 2007~2010년까지는 결산기준이며, 2011년과 2012년 예산기준임

^{2.} 이 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서 1980년 10월 30일 한국중공업 정상가동 지원, 한국은행 장기차입금으로 인한 세입증액 등을 위하여 198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1,000억원)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제출된 사례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의 「200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2010.11)와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2012.2)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8] 국가채무 추이 : 2008~2012년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전망	예산	증가율
국가채무	309.0	359.6	392.2	435.5	422.7	445.9	9.6
(GDP 대비)	(30.2)	(33.8)	(33.5)	(35.1)	(33.3)	(33.3)	_
· 적자성 채무	132,6	168.7	193.3	220.0	208.7	221.0	13.6
- 일반회계 적자국채	63.0	97.0	119.7	146.7	136.3	149.2	24.1
– 공적자금 국채전환	49.2	49.5	47.0	47.0	45.7	45.7	-1.8
– 기타	20.4	22,2	26.6	26.3	26.7	26.1	6.4
· 금융 성 채무	176.4	190.9	199.0	215.5	214.0	225.0	6.3
– 외평기금·채권	94.0	104.9	120.6	138.4	137.7	155.7	13.4
– 국민주택기금·채권	45.2	48.5	49.3	48.2	48.6	48.5	1.8
– 기타	37.2	37.5	29.1	28.9	27.7	20.7	-13.6

주: 2008~2010년은 결산 기준, 2011년 전망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2010.10) 기준이며,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2011년 전망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대한민국정부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2011.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표 2-9] 국가채무 이자비용 추	≟0 :2005~	2010년

(단위: 조원, %)

						(E∏- ≠E;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채무이자	9.9	11.4	13.0	13.4	14.4	17.1	
국채이자	9.5	11.1	12.5	13.0	14.2	17.0	
(국채잔액대비, %)	(4.1)	(4.2)	(4.5)	(4.5)	(4.2)	(4.6)	
– 국고채권	6.9	8.8	10.3	11.5	12.9	15.1	
– 외평채권 (원화표시)	1.2	0.7	0.4	0.1	_	_	
- 외평채권 (외화표시)	0.4	0.4	0.4	0.4	0.3	0.4	
- 국민주택채권	1.0	1.1	1.3	1,1	1.0	1.5	
차입금이자	0.5	0.4	0.5	0.3	0.2	0.1	
(차입금 잔액대비, %)	(6.6)	(6.3)	(8.8)	(5.7)	(3.7)	(2.9)	
- 국내차입금	0,2	0.1	0.3	0.1	0.1	0.03	
- 해외차입금	0.3	0.3	0,2	0.2	0.1	0.07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1,10 [표 2-10] 국가보증채무 추이: 2006~2011년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전망)
보증채무 합계 (GDP 대비)	36.5 (4.0)	33.1 (3.4)	28.1 (2.7)	29.8 (2.8)	34.8 (3.0)	36.5 (2.9)
예보채상환기금채권	34.0	30.6	28.0	27.3	26.7	24.0
구조조정기금채권	_	_	_	0.8	4.0	5.9
한국장학재단채권	_	_	_	_	2.5	5.3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_	_	_	1.5	1.5	1.2
수리자금	0.2	0.2	0.2	0.1	0.1	0.1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3	2.3	_	_	_	_
일본수출입은행 차관	0.1	0.03	_	_	_	_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1.10

[표 2-11] 민간투자사업 집행규모: 2007~2010년

(단위: 조원)

	2007	2008	2009	2010
민자사업 집행규모	6.0	7.7	7.1	5.7
수익형(BTO)	3.0	3.5	3.5	2.4
임대형(BTL)	3.0	4.2	3.6	3.3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17.0%	18.4%	15.4%	16.3%

자료: 1, 2011~2015 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2, 기획재정부, 「2010 한국의 재정」

👉 현행 국가채무의 포괄범위

국가채무

일 반 별 회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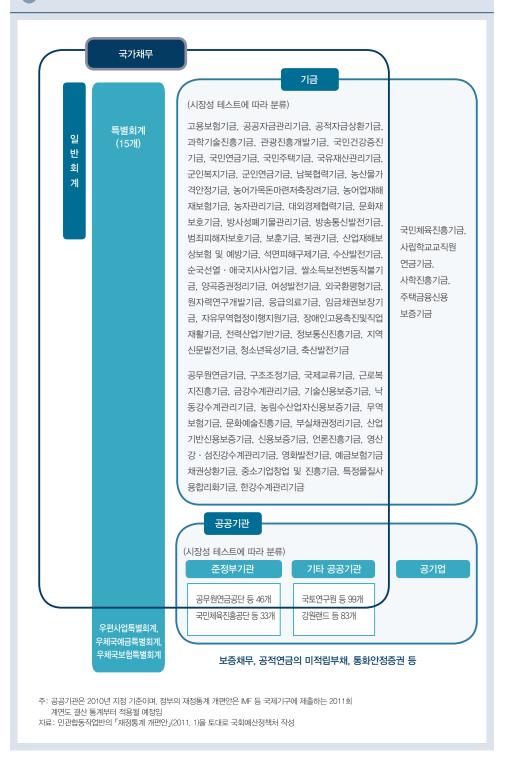
지방정부 순채무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주 택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 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보훈기금, 복권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 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 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구조조정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낙동강수 계관리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부실채 권정리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 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 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특정 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11.10

🚅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른 국가채무 포괄범위



다. 예산안 국회수정 현황

[표 2-12	표 2-1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국회수정 추이 : 1982~2012년										
회계 연도	정부제출 예산안 (A)	수전 증액 (B)	성액 감액 (C)	국회 의결액	순 수정액 (D=B-C)	총 수정액 (E=B+C)	순수 정률 (D/A)	<u>총</u> 수정률 (E/A)			
1982	95,956	1,044	1,218	95,781	-174	2,262	-0.2	2.4			
1983	105,170	332	1,335	104,167	-1,003	1,667	-1.0	1.6			
1984	109,667	391	391	109,667	0	782	_	0.7			
1985	122,751	306	306	122,751	0	612	_	0.5			
1986	138,153	524	673	138,005	-149	1,197	-0.1	0.9			
1987	155,815	568	787	155,596	-219	1,355	-0.1	0.9			
1988	175,419	599	1,374	174,644	-775	1,973	-0.4	1.1			
1989	193,712	3,074	4,502	192,284	-1,428	7,576	-0.7	3.9			
1990	230,254	2,308	5,668	226,894	-3,360	7,976	-1.5	3.5			
1991	271,825	1,426	3,453	269,797	-2,027	4,879	-0.7	1.8			
1992	335,050	-	3,050	332,000	-3,050	3,050	-0.9	0.9			
1993	380,500	2,007	2,007	380,500	0	4,014	_	1.1			
1994	432,500	4,001	4,001	432,500	0	8,002	_	1.9			
1995	501,411	2,041	3,573	499,879	-1,532	5,614	-0.3	1.1			
1996	500,031	1,507	1,917	579,621	-410	3,424	-0.1	0.7			
1997	677,800	3,070	5,084	675,786	-2,014	8,154	-0.3	1.2			
1998	703,603	2,950	3,918	702,636	-969	6,868	-0.1	1.0			
1999	805,700	8,397	12,719	801,378	-4,322	21,116	-0.5	2.6			
2000	867,364	5,006	7,630	864,740	-2,624	12,636	-0.3	1.5			
2001	949,300	200	8,254	941,246	-8,054	8,454	-0.8	0.9			
2002	1,064,800	10,087	16,121	1,058,767	-6,034	26,208	-0.6	2.5			
2003	1,116,580	6,178	7,927	1,114,831	-1,749	14,105	-0.2	1.3			
2004	1,175,429	16,770	8,639	1,183,560	8,131	25,409	0.7	2.2			
2005	1,315,110	39,804	11,210	1,343,704	28,594	51,014	2.2	3.9			
2006	1,457,029	6,494	15,447	1,448,076	-8,953	21,941	-0.6	1.5			
2007	1,579,874	12,245	26,941	1,565,177	-14,696	39,186	-0.9	2.5			
2008	1,761,108	13,575	24,831	1,749,852	-11,256	38,406	-0.6	2.2			
2009	1,969,937	34,401	35,625	1,968,713	-1,224	70,026	-0.1	3.6			

자료: 각연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1,655

20,016

19,158

26,635

31,984

20,862

2,012,835

2,099,303

2,231,384

5,020

-11,968

-1,477

58,290

52,000

40,020

0.3

-0.6

-0.1

2.9

2.5

1.8

2010

2011

2012

2,007,815

2,111,271

2,232,861

라. OECD 국가 재정통계

[표 2-13] GDF	대비 일빈	정부 총지	출 추이 :	1995~20)11년				(단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20.4	22.4	26.6	27.7	28.7	30.4	33.1	30.9	30.9
미국	37.1	33.9	36.2	36.1	36.9	39.1	42.7	42.5	41.9
영국	44.1	36.6	44	44.2	43.9	47.9	51.1	50.6	49.8
프랑스	54.4	51.6	53.4	52.9	52.6	53.3	56.7	56.7	56.2
독 일	54.8	45.1	46.9	45.3	43.5	44.1	48.1	48.0	45.5
일 본	36.0	39.0	38.4	36.2	35.9	37.2	42.0	40.4	42.5
스웨덴	64.9	58.1	53.9	52.7	51.0	51.7	55.0	52.9	51.8
노르웨이	50.9	42.3	42.3	40.5	41.1	40.7	47.3	46.1	43.8
핀란드	61.4	48.3	50.2	49.3	47.5	49.4	55.9	55.3	53.2
덴마크	59.3	53.7	52.8	51.6	50.8	51.9	58.4	58.5	59.3
OECD 평균	42.7	38.9	40.4	39.7	39.8	41.5	45.2	44.6	44.0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0, 2011.12, 'General Government Total Outlays'

[亜 2-14] GDP	[표 2-14]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추이 : 1995~2011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3.5	5.4	3.4	3.9	4.7	3.0	-1.1	0.0	0.8	
미국	-3.3	1.5	-3.3	-2.2	-2.9	-6.6	-11.6	-10.7	-10.0	
영 국	-5.8	3.7	-3.3	-2.7	-2.8	-5.0	-11.0	-10.4	-9.4	
프랑스	-5.5	-1.5	-3	-2.4	-2.7	-3.3	-7.6	-7.1	-5.7	
독 일	-9.7	1.3	-3.3	-1.7	0.2	-0.1	-3.2	-4.3	-1.2	
일 본	-4.7	-7.6	-6.7	-1.6	-2.4	-2.2	-8.7	-7.8	-8.9	
스웨덴	-7.3	3.6	1.9	2.2	3.6	2.2	-0.9	-0.1	0.1	
노르웨이	3.2	15.4	15.1	18.4	17.5	19.1	10.7	10.6	12.5	
핀란드	-6.2	6.8	2.5	4.0	5.3	4.2	-2.7	-2.8	-2.0	
덴마크	-2.9	2.2	5.0	5.0	4.8	3.3	-2.8	-2.8	-3.7	
OECD 평균	-4.8	0.1	-2.7	-1.2	-1.3	-3.4	-8.3	-7.7	-6.6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0, 2011,12,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s'

ı	TT 3 4 F I	CDD FIIUI	OTHER	71174 H 511	5 AL .	1005 201113
	I# Z⁻IOI	요요요 네비	일반성구	세성구세	수이.	1995~2011년

(단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_	_	24.6	28.5	28.7	30.4	33.5	34.6	35.5
미국	70.7	54.5	61.4	60.9	62.1	71.4	85.0	94.2	97.6
영국	51.6	45.1	46.4	46.0	47.2	57.4	72.4	82.2	90.0
프랑스	62.7	65.6	75.7	71.2	73.0	79.3	90.8	95.2	98.6
독 일	55.7	60.4	71.2	69.8	65.6	69.7	77.4	87.1	86.9
일 본	86.2	135.4	175.3	172.1	167.0	174.1	194.1	200.0	211.7
스웨덴	81.1	64.3	59.9	53.9	49.3	49.6	52.0	49.1	46.2
노르웨이	40.9	34.2	49.1	59.4	57.4	55.0	49.1	49.7	56.5
핀란드	65.3	52.5	48.4	45.6	41.4	40.4	51.6	57.6	61.2
덴마크	81.7	60.4	45.9	41.2	34.3	42.6	52.4	55.6	56.1
OECD 평균	72.3	69.8	76.3	74.6	73.3	79.7	91.4	97.9	101.6

주: 부채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와 처리법이 국가마다 달라 국가간 비교가 어려울 수 있음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0, 2011.12,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Ì	ΙŦ	2-16	고미부단류	및 조세부담률	로 츠이 : 198년	5~2010년
	ш	2 10	カデーログ	ᇂᅩ께ㅜᇊᇎ	5	ידטוטביי

(단위: %)

		~ " "	UE '	,	_0.0_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16.1	19.5	20.0	22.6	24.0	25.0	26.5	26.5	25.5	25.1
	(15.8)	(17.5)	(17.6)	(18.8)	(18.9)	(19.7)	(21)	(20.7)	(19.7)	(19.3)
미국	25.6	27.4	27.8	29.5	27.1	27.9	27.9	26.3	24.1	24.8
	(19.1)	(20.5)	(20.9)	(22.6)	(20.5)	(21.3)	(21.4)	(19.8)	(17.6)	(18.3)
영국	37.0	35.5	34.0	36.3	35.7	36.4	36.0	35.7	34.3	35.0
	(30.4)	(29.5)	(28)	(30.2)	(29)	(29.7)	(29.4)	(28.9)	(27.6)	(28.4)
프랑스	42.8	42.0	42.9	44.4	44.1	44.4	43.7	43.5	42.4	42.9
	(24.3)	(23.5)	(24.4)	(28.4)	(27.8)	(28)	(27.5)	(27.3)	(25.7)	(26.3)
독 일	36.1	34.8	37.2	37.5	35.0	35.6	36.0	36.4	37.3	36.3
	(22.9)	(21.8)	(22.7)	(22.8)	(21)	(21.9)	(22.8)	(23.1)	(22.9)	(22.1)
일 본	27.1	29.0	26.8	27.0	27.4	28.0	28.3	28.3	26.9	
	(18.9)	(21.3)	(17.8)	(17.5)	(17.3)	(17.7)	(18)	(17.4)	(15.9)	(15.9)
스웨덴	47.4	52.3	47.5	51.4	48.9	48.3	47.4	46.4	46.7	45.8
	(35.6)	(38)	(34.4)	(37.9)	(35.8)	(36)	(35)	(34.9)	(35.3)	(34.3)
노르웨이	42.6	41.0	40.9	42.6	43.5	43.9	43.6	42.9	42.9	42.8
	(33.8)	(30.2)	(31.3)	(33.7)	(34.6)	(35.2)	(34.5)	(33.9)	(32.8)	(33.1)
핀란드	39.8	43.7	45.7	47.2	43.9	43.8	43.0	42.9	42.6	42.1
	(31.1)	(32.5)	(31.6)	(35.3)	(31.9)	(31.6)	(31.1)	(30.9)	(29.9)	(29.6)
덴마크	46.1	46.5	48.8	49.4	50.8	49.6	48.9	48.1	48.1	48.2
	(44.8)	(45.6)	(47.7)	(47.6)	(49.7)	(48.6)	(47.9)	(47.1)	(47.1)	(47.2)
OECD 평균	32.5 (24.9)	33.1 (25.5)	34.6 (25.5)	35.3 (26.4)	35.0 (26.1)	35.1 (26.3)	35.2 (26.4)	34.6 (25.7)	33.8 (24.6)	

주: 1. 국민부담률은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3. 괄호안은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3

^{2,} 조세부담률은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3. 분야별 주요 통계

가. R&D

[표 3-1]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2010년

(단위: 억원, %)

	기초	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식경제부	5,765	16.0	8,066	22.3	22,262	61.7	36,094	100.0
교육과학기술부	17,290	65.7	5,235	19.9	3,776	14.4	26,301	100.0
방위사업청	337	2.3	3,852	26.3	10,434	71.4	14,623	100.0
국토해양부	897	16.4	1,258	23.0	3,306	60.5	5,461	100.0
중소기업청	1	0.0	10	0.2	5,358	99.8	5,368	100.0
농촌진흥청	1,085	42.8	816	32.2	631	24.9	2,532	100.0
기타	3,255	36.4	2,754	30.8	2,939	32.8	8,949	100.0
합계	28,631	28.8	21,992	22.1	48,706	49.0	99,328	100.0

주: 연구개발단계에서 기타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보고서」, 2011. 10

[丑 3-2]	국가연구가	박사언 성	과 추이 :	: 2008~2010년
144 2 4				

(단위: 건,%)

		2008	2009	2010	증	감	연평균
		2006	(A)	(B)	(B-A)	(B-A)/A	증기율
SCI논문	게재수	22,528	24,174	23,916	-258	-1.1	3,0
7.11E-1	출원건수	14,134	14,905	17,969	3,064	20.6	12,8
국내특허	등록건수	6,197	4,599	4,641	42	0.9	-13,5
해외특허	출원건수	2,208	1,702	2,383	681	40.0	3,9
에커륵이	등록건수	0577	675	505	-170	-25.2	-6.4
기술료	징수건수	7,275	5,936	5,301	-635	-10.7	-14.6
사업화	사업화건수	6,960	8,262	9,521	1,259	15.2	17,0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2011. 11

[표 3-3] 주요국의 정부 R&D 예산 현황

(단위: 구매력평가기준 백만달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R&D예산	165,317	31,073	25,858	17,011	15,146	13,210	12,557	12,229
순위	1	2	3	4	5	6	7	8

주: 2009년 기준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2011. 8

[표 3-4]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

(단위: %)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GDP 대비 R&D예산 비중	1.18	1.13	1.06	1.00	0.87	0.78	0.75	0.70
순위	1	2	3	4	8	15	17	18

주: 29개국의 2009년 자료를 분석한 자료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2011. 8

[표 3-5] 한국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IMD): 2005~2011년

(단위: 평가국 중 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과학인프라	13	10	7	5	3	4	5
기술인프라	2	6	6	14	14	18	14

주: 국제경영개발원(MD)은 58개국(OECD 회원국 30개국, 신흥경제국 27개국)의 경쟁력을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과학ㆍ기술 인프라 순위는 발전인프라 부문 내에 포함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MD 2011 세계 경쟁력 연감 분석」, 2011. 6

나.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 3-6] 사언·중소	LEFIIIV POIC	ㅂ아 계정그ㅁ	. 2006-	つん1つしま
1# 3-b) ^[Y! -x -1	・ノリヤ!・いけいスト	군아 세상규모	. /UUh~	ハリノラ

(단위: 조원,%)

	1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재정 규모 (A)	12.4	12,6	14.7	20.8	15.1	15.2	15.1
산업진흥 · 고도화	3.5	3.6	3.6	5.7	5.1	5.4	5.4
무역 및 투자유치	0.4	0.4	0.4	0.9	0.5	0.4	0.4
에너지 및 자원개발	3.8	4.3	6.5	4.7	5.3	5.0	4.9
산업금융	4.0	3.5	3.2	8.4	3.1	2.9	2.9
기타	0.7	0.8	1.0	1.2	1.1	1.3	1.5
정부 총지출 (B)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325.4
정부 총지출 대비 재정 비중(A/B)	5.5	5.3	5.6	6.9	5.2	4.9	4.6

주: 부문별 합계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전체 재정 규모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그림 3-1]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물량과 자주개발률 추이: 2003~2011년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2012.2

[표 3-7] 최근 5년간 최대전력 발생 추이

(단위: MW, %)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전력	발생일자	공급 예비력	예비율
20	007	67,196	66,778	62,285	8.21.	4,493	7.2
20	800	70,353	68,519	62,794	7.15.	5,725	9.1
20	2009		72,071	66,797	12,18.	5,274	7.9
20	010	76,078	75,747	71,308	12.15.	4,439	6.2
2011	연간	76,131	77,179	73,137	1.17.	4,042	5.5
2011	9.15	78,813	70,622	67,281	9.15.	3,341	5.0

주: 각 연도 최대전력 발생 시점 기준이며, 2011년 9월 15일은 전국적 정전사태 발생일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 속보」 각 월호

[표 3-8]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

(단위: MW, %)

		대수	설비용량	점유율
	석탄	64	25,128	31.7
	LNG	164	21,740	27.4
	원자력	21	18,716	23.6
	유류	205	5,481	6.9
	양수	16	4,700	5.9
	일반수력	43	1,592	2.0
	소수력	174	125	0.2
신	태양광	2,512	555	0.7
재	풍력	244	407	0.5
생	기타	92	898	1,1
	소계	3,022	1,985	2.5
	합 계	3,535	79,342	

주: 2011년 12월 15일 기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표 3-9]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
	(

	수	<u>\$</u> \$	수입		- 점 유 율	
		증가율		증가율	оте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2008년	422,007	13.6	435,275	22,0	-13,267	
2009년	363,534	-13.9	323,085	-25.8	40,449	
2010년	466,384	28.3	425,212	31.6	41,172	
1/4분기	101,084	35.8	98,156	37.4	2,928	
2/4분기	120,238	33.1	105,631	42.8	14,607	
3/4분기	116,315	22.7	105,698	24.6	10,617	
4/4분기	128,747	23.8	115,727	24.6	13,019	
2011년	556,514	19.3	524,375	23.3	32,139	
1/4분기	130,981	29.6	123,905	26.2	7,076	
2/4분기	142,690	18.7	134,288	27.1	8,402	
3/4분기	141,228	21.4	134,924	27.6	6,304	
4/4분기	141,615	10.0	131,258	13.4	10,357	
2012년 1월	41,537	-6.6	43,494	3.6	-1,957	

주: 통관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2년 1월 수출입 동향」, 2012.2.

7104	HE HO		2	009	2010			단위: 맥만원) 011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명 	과제 수	지원예산	과제 수	지원예산	과제 수	지원예산
충청	의약바이오	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사업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 67	41,600	108	59,720	115	64,378
	ኩ Π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사업						
	신재생에너지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67,662
	친환경 부품소재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 구축사업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 · 소재 육성 사업 고효율 · 저공해 ·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	- 66	45,700	78	67,500	81	
동남	수송기계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 70		76	55,340 52,320		
0.1	융합부품소재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 						
대경	IT융복합	IT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시업 IT융합 실용로봇 글로벌 경쟁력 강화시업	. 47		68			
	그린에너지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수소 · 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07,200		02,020	,,,	
강원	의료융합	Bio-Medical 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허브	- 40	16,700	46	18,710	45	18,616
	의료관광	동북아 의료관광거점 구축 사업						
제주	물산업 관광레저	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 기반구축 리조트 기반형 MICE 산업	- 20	14,100	20	17,710	15	18,016
	 	선진화 전략 합 계	310	195,000	396	271,300	404	281,030
		□ ' 'I	010	100,000	330	27 1,000		_01,000

자료: 지식경제부 제출자료(2012.2)

[표 3-11]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 1994~2009년

(단위: 개, 명, %)

	전체	전체(A)		' 업(B)	중소기업	비중(B/A)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4	2,382,571	10,217,910	2,365,318	7,677,089	99.3	75.1
1995	2,622,259	11,098,018	2,601,753	8,263,684	99.2	74.5
1996	2,648,261	11,270,466	2,629,049	8,412,554	99.3	74.6
1997	2,689,557	10,796,804	2,670,625	8,272,648	99.3	76.6
1998	2,622,356	9,878,045	2,605,224	7,672,392	99.3	77.7
1999	2,758,627	10,425,398	2,739,783	8,283,269	99.3	79.5
2000	2,729,957	10,768,597	2,707,805	8,680,694	99.2	80.6
2001	2,658,860	10,876,418	2,649,691	9,176,237	99.7	84.4
2002	2,861,830	11,737,640	2,856,913	10,154,095	99.8	86.5
2003	2,939,661	11,870,358	2,934,897	10,308,574	99.8	86.8
2004	2,927,436	11,824,074	2,922,533	10,210,629	99.8	86.4
2005	2,867,749	11,902,400	2,863,583	10,449,182	99.9	87.8
2006	2,940,345	12,234,160	2,936,114	10,677,789	99.9	87.3
2007	3,049,345	12,818,280	3,046,839	11,343,707	99.9	88.5
2008	3,046,958	13,070,424	3,044,169	11,467,713	99.9	87.7
2009	3,069,400	13,398,497	3,066,484	11,751,022	99.9	87.7

주: 1, 2010년 기준 자료는 2012년 4월말 산출 예정

^{2, 2000~2006}년 기준 자료는 조사기준시점(12.31)과 조사시점(익년 3~4월경) 사이에 폐업된 사업체는 제외하였으며, 2007~2009년 기준 자료는 조사 기준시점과 조사시점 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연도마다 조사기준이 다름에 유익, 통계청의 조사기준변경으로 2007년 수치는 이전 발표내용과 다름) 자료: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에서 재편ㆍ가공

[표 3-12]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자금 지원 실적 현황 : 2005~2011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창업기업 지원자금	388.3	561,0	620.0	740.0	1,150.0	1,180.0	1,400.0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92.4	84.9	100.0	120.0	288.0	158.0	258.0					
신성장 기반지금	1,792.4	1,313.1	1,271.0	1,083.1	1,621.0	1,251.0	861,949					
긴급경영 안정지금	419.0	434.3	380.4	576,800	1,596.1	352.9	289.1					
사업전환 지원자금	_	_	109.0	115.0	147.5	147.5	147.5					
자산유동화	76.0	20.1	34.4	28.1	40.0	20.0	-					
소상공인지원	464.2	439.6	328,5	265.7	1,099.9	300.0	445.0					
 합계	3,232.3	2,852.9	2,843.2	2,928.7	5,951.5	3,418.4	3,401.5					

주: 1. 2009년에는 한시적으로 지방중기기술사업화 자금, 지방중기경쟁력강화자금, 농공자금 사업이 신설되었으나, 2010년부터 지방중기기술사업화 자금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지방중기경쟁력강화자금과 농공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통합되었음. 2009년 자금 대여 실적은 통합 이후 기준으로 작성함 2, 자산유동화 사업은 2011년부터 폐지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 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특허	104,612	106,136	118,652	140,115	160,921	166,189	172,469	170,632	163,523	170,101
실용신안	40,804	39,193	40,825	37,753	37,175	32,908	21,804	17,405	17,144	13,661

(단위: 건)

61 디자인 36,867 37,587 37,607 41,184 45,222 51,039 54,362 56,750 57,903 57,187 상표 107,137 107,876 108,917 108,464 115,889 122,384 132,288 127,910 126,420 121,125 계 289,420 290,792 306,001 327,516 359,207 372,520 380,923 372,697 364,990 362,074

[표 3-13]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2001~2010년

자료: 통계청(www.kipo.go.kr)

주: 복수 디자인, 다류 상표출원의 경우 각각 1건으로 집계

다. SOC

[표 3-14] SOC 분야 지	내정규모 : 20	06~2012년	<u> </u>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SOC 재정투자(A)	18.4	18.4	20.5	25.4	25.1	24.4	23.1
도로	7.2	7.5	8.1	9.6	8.0	7.4	7.8
철도	3.8	3.5	3.9	4.8	4.2	4.4	5.1
도시철도	1.3	1.3	1.4	1.6	1,1	1.0	1.0
해운·항만	1.9	2.1	2.0	2.1	1.9	1.6	1.6
항공 · 공항	0.4	0.3	0.2	0.1	0.1	0.1	0.1
물류등 기타	0.7	1,1	1.5	2.2	2.2	2.2	1.9
수자원	2.2	1.6	1.6	2,8	5.1	5.0	2.9
지역 및 도시	0.5	0.6	1.0	1.4	1.6	1.6	1.7
산업단지	0.4	0.4	0.7	0.9	0.9	1.0	1.0
정부 총지출(B)	224.1	238.4	262,8	301.8	292.8	309.6	325.4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A/B)	8.2	7.7	7.8	8.4	8.6	7.9	7.1

주: 2006년, 2009년은 추경을 포함한 수치

자료: 국토해양부

[표 3-1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현황 : 2005~2011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BTL 한도액	6.2(128개)	8.3(142개)	9.9(88개)	5.0(65개)	6.5(56개)	3.5(39개)	1.2(26개)				
고 시	3.7(84개)	7.3(127개)	5.5(76개)	2.9(60개)	5.2(45개)	2.5(31개)	_				
협약체결	3.6(81개)	7.1(125개)	5.8(76개)	3,0(56개)	2.3(37개)	0.4(2개)	_				

주: 1, 2005년 BTL사업 도입후 2010년 12월말 기준 국방부의 군숙소,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환경부의 하수관거, 국토해양부의 철도시설, 지자체의 초중등학교, 시설사업 등이 포함된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2, 2010}년 12월말 기준 3. 괄호는 사업 수

[표 3-16] GDP 대비 전국 교통 혼잡비용 추이 : 1999~2008년

(단위: 조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지역간	7.6	8.3	8.8	9.2	9.1	9.1	9.1	9.2	9.4	9.6
도시	9.5	11.1	12.3	13.0	13.7	14.0	14.4	15.4	16.5	17.0
계(A)	17.1	19.4	21.1	22.1	22.8	23.1	23.5	24.6	25.9	26.6
GDP(B)	549.0	603.2	651.4	720.5	767.5	826.9	865.5	908.7	975.0	1,026.5
GDP대비 비중 (A/B,%)	3,12	3,22	3.24	3.07	2.97	2,80	2.74	2,71	2,65	2,95

자료: 국토해양부

[표 3-17]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2002~2010년

(단위: 천TEU,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7,356	8,182	9,025	9,412	10,123	11,254	11,605	10,369	12,299
(증가율)	(11.6)	(11.2)	(10.3)	(4.3)	(7.6)	(11.2)	(3.1)	(-10.7)	(18.6)
환 적	4,205	4,598	5,158	5,532	5,673	6,155	6,186	5,719	6,630
(증가율)	(35.2)	(9.4)	(12.2)	(7.2)	(2.6)	(8.5)	(0.5)	(-7.5)	(15.9)
연안화물	330	404	340	273	168	135	135	253	378
	(14.2)	(22.4)	(-15.7)	(-19.7)	(-38.5)	(-19.6)	(0)	(87.4)	(49.1)
전 체	11,890	13,186	14,523	15,216	15,965	17,544	17,927	16,341	19,307
(증가율)	(19.0)	(10.9)	(10.1)	(4.8)	(4.9)	(9.9)	(2.2)	(-8.8)	(18.1)

자료: 국토해양부

[표 3-18] 수자원 부문 재정규모: 2005~2012년

(단위: 억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댐건설 및 치수능력증대	2,005	2,042	2,406	3,253	3,848	4,579	3,246	3,656
용수공급 및 개발	4,511	2,010	1,214	778	725	257	188	429
수자원정책	121	96	87	109	133	176	181	5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11,801	18,278	12,503	11,867	24,235	46,064	46,567	24,749
합 계	18,438	22,426	16,210	16,007	28,941	51,076	50,182	29,020

주: 2009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액수 자료: 국토해양부,「예산안 개요」, 각 년도

[표 3-19] 우리나라 주요수계별 하천정비 현황

[# 3-19] 주	리나라 주요수	-게열 야선성	미 연왕				(단위: km, %)
				하천개수			
	요(要) 개수	완전 개수	완전 개수율	불완전 개수	불완전 개수율	미(未) 개수	미(未) 개수율
한강	6,812	4,602	67.6	995	14.6	1,215	17.8
낙동강	6,559	3,858	58.8	1,175	17.9	1,527	23.3
금강	4,401	2,682	60.9	938.1	21.3	781	17.7
섬진강	1,843	926	50.3	411	22.3	505	27.4
영산강	1,790	1,232	68.8	240	13.4	318	17.8
안성천	1,012	739	73.0	160	15.8	113	11.2
삽교천	736	523	71.0	119.8	16.3	94	12.7
만경강	817	349	42.7	270	33.1	197	24.2
형산강	334	247	73.8	45.2	13.5	42	12.7
동진강	570	399	70.1	89	15.6	82	14.4
태화강	376	208	55.2	66	17.5	102	27.3
탐진강	215	157	73.4	20	9.5	37	17.1
양양남대천	69	61	88.5	_	_	8	11.5
삼척오십천	33	23	69.4	_	_	10	30.6
영덕오십천	68	48	71.6	1	1.4	18	27.0
서낙동강	193	102	53.1	15	7.9	75	39.0
강릉남대천	74	61	83.0	13	17.1	_	_
기타	4,653	2,695	57.9	943	20.3	1,014	21.8
합계	30,553	18,913	61.9	5,501	18.0	6,139	20.1

주: 개수(改修)란 제방을 신규축조(완전개수)하거나 보강(불완전개수)하는 것을 말함 자료: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한국하천일람(200912.31 기준)」, 2010.12

[표 3-20] 시·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단위: 천명, 천㎡/일, %)

[표 3-20] 시 · 포털 경	TT 포함인성			(단위: 천명, 천㎡/일, %)
구분	총인구(천명)	급수인구(천명)	보급률(%)	시설용량(천㎡/일)
서울특별시	10,575	10,575	100.0	4,550
부산광역시	3,600	3,600	100.0	2,443(2,643)
대구광역시	2,532	2,532	100.0	1,440(1,640)
인천광역시	2,808	2,808	100.0	1,999
광주광역시	1,468	1,461	99.6	780
대전광역시	1,519	1,516	99.8	1,260
울산광역시	1,142	1,132	99.1	550
경기도	12,072	11,721	97.1	3,118(3,144)
강원도	1,544	1,455	94.3	783(791)
충청북도	1,574	1,517	96.4	349
충청남도	2,118	1,836	86.7	190
전라북도	1,889	1,831	96.9	231(361)
전라남도	1,940	1,748	90.1	659
경상북도	2,727	2,644	97.0	964(1,104)
경상남도	3,348	3,311	98.9	1,308
제주도	577	577	100.0	511
한국수자원공사	_	_	_	7,772(9,096)
전국	51,435	50,264	97.7	28,908(30,936)

주: 급수인구, 급수보급률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사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수치이며, 시설용량에서 ()안의 수치는 공업용 정수시설용량을 포함한 시설용량 자료: 환경부, 「2010 상수도통계」, 2011

라. 농림 · 수산 · 식품

[표 3-21] 농림수산식품	등분야 재정·	규모 : 2006	~2012년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 · 농촌	127,192	128,580	127,450	131,108	136,684	139,988	142,455
수산· 어촌	17,772	18,284	15,107	15,912	14,045	13,052	13,543
임업·산촌	10,157	12,234	13,322	15,602	16,354	16,953	18,443
식품업	-	_	3,757	4,739	5,488	6,361	6,881
농림수산식품분야 합계(A)	155,121	159,098	159,636	167,361	172,571	176,354	181,322
정부 총지출(조원, B)	224.1	238.4	257.2	284.5	292.8	309.1	325.4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A/B)	6.9	6.7	6.2	5.9	5.9	5.7	5.6

주: 식품업 부문은 2008년부터 분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2

[표 3-22] 농림어업 현황 : 2000~2010년

	2000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농가수(천호)	1,383	1,264	1,245	1,231	1,212	1,195	1,177
총가구 중 비중(%)	9.7	8.3	7.8	7.5	7.3	7.1	6.8
농가당 가구원수(명)	2.9	2,8	2.7	2,76	2.6	2.6	2,6
농가인구(천명)	4,031	3,530	3,304	3,274	3,187	3,117	3,063
총인구 중 비중(%)	8.6	7.4	6.8	6.8	6.6	6.4	6.3
65세 이상 비중(%)	21.7	27.8	30.8	32.1	33,3	34.2	31.8
국내총생산 (10억원, 명목)	603,236	767,114	908,744	975,013	1,026,452	1,063,037	1,172,803
농림어업 국내총생산	24,939	25,307	25,751	25,209	24,686	26,615	27,019
비중 (%)	4.6	3.7	3.2	2.9	2.7	2.8	2.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2

[표 3-23] 경지면적 추이 : 1970~2010년

	국토면적	경지면적	덕(천ha)	늗	동가호당경지면적(a)		
	(천ha)		증감률(%)		논	밭	
1970	9,848	2,298	-0.6	92.5	51.3	41.2	
1975	9,848	2,240	0.1	94.1	53.6	40.5	
1980	9,899	2,196	-0.5	101.8	60.6	41.2	
1985	9,912	2,144	-0.4	111.3	68.8	42.5	
1990	9,926	2,109	-0.8	119.4	76.1	43.3	
1995	9,927	1,985	-2.3	132,3	80.4	51.9	
1998	9,941	1,910	-0.7	135,2	81.9	53.3	
1999	9,943	1,899	-0.6	137.4	83.4	54.0	
2000	9,946	1,889	-0.5	136.5	83.0	53.5	
2005	9,965	1,824	-0.6	143.3	86.8	56.5	
2010	10,003	1,517	-1.2	145.7	83.6	62,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2

[표 3-24] 농가소득 구조	<u>፡</u> : 1990~2010	년			(단위: 천원, %)
	1990	2000	2005	2009	2010
농가소득	11,026	23,072	30,502	30,814	32,121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업소득	6,264	10,897	11,815	9,698	10,098
	(56.8)	(47.2)	(38.7)	(31.5)	(31.4)
농외소득	2,841	7,432	9,884	12,128	12,946
	(25.8)	(32,2)	(32.4)	(39.4)	(40.3)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1,921	4,743	8,803	8,988	9,077
	(17.4)	(20.6)	(28.9)	(29.1)	(28.3)

주: 괄호안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2

[표 3-25] 농가 1호당 부문별 농업총수입: 197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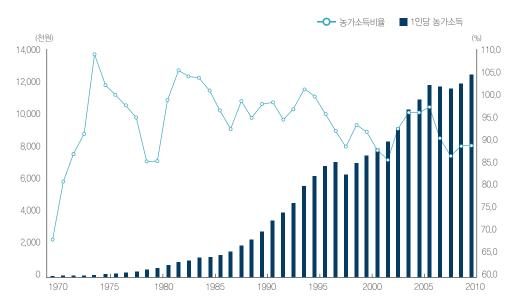
(단위: 천원,%)

		_	_		(근귀· 신견, 70)
	1970	1980	1990	2000	2010
농업총수입	248	2,342	9,078	19,514	27,221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작물수입	220	2,019	7,470	16,942	20,318
	(88.7)	(86.2)	(82.3)	(86.8)	(74.6)
미곡	138	1,140	4,380	7,758	5,368
	(55.6)	(48.7)	(48.2)	(39.8)	(19.7)
채소	21	379	1,448	4,765	7,251
	(8.5)	(16.2)	(16.0)	(24.4)	(26.6)
과수	5	121	712	2,443	4,164
	(2.0)	(5.2)	(7.8)	(12.5)	(15.3)
축산수입	28	323	1,608	2,571	5,892
	(11.3)	(13.8)	(17.7)	(13.2)	(21.6)
농업잡수입	_	-	-	-	1,011 (3.7)

주: 괄호안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2

[그림 3-2] 1인당 농가소득 및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추이: 1970~2010년



자료: 통계청의 근로자가구소득과 농가소득 자료를 각각의 가구원으로 나누어 구한 후 소득비율을 계산

[표 3-26] 국가별 주요 식품 자급률

[# 3-26] 국	가열 주요 식	둠 사급률					(단위: %)
	연도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대한민국	2009	30,2	92.6	89.5	77.5	70.5	83.0
일본	2005	30,7	63.4	43.9	54.9	76.4	60.8
미국	2005	129.4	91.8	68.6	113.0	103.0	68.5
영국	2005	100.0	31,2	4.1	74.7	87.9	73.2
캐나다	2005	143.5	62,3	16.7	170.1	96.7	139.8
덴마크	2005	99.9	29.0	7.7	324.3	202.4	127.0
프랑스	2005	190,6	80.3	85.6	123.4	123.7	43.8
독일	2005	116.4	27.6	22.0	103.2	130.1	28.3
이탈리아	2005	82,2	115.7	131.1	81.1	71.8	33.5
스페인	2005	51.4	158.9	183/3	101.5	83.1	59.4
스웨덴	2005	114.7	28.3	2.5	103.3	99.2	79.5
스위스	2005	205.6	35,2	40.5	40.5	104.4	2.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2

마. 보건 · 복지 · 노동

[표 3-27] 복지재정규모: 2006~2012년

[표 3~27] 국시시	101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비고
[분야별]									
사회복지	505,153	560,997	629,134	734,196	739,162	788,926	847,716	8.8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부문
보 건	55,108	52,892	59,042	69,955	73,304	75,000	78,589	8.1	보건의료 등 3개 부문
[부문별]									
기초생활보장	53,438	65,831	72,716	79,803	72,937	75,240	79,100	6.7	기초생활급여 등
취약계층지원	7,175	9,108	9,217	24,055	15,212	13,427	13,946	11.7	아동청소년발달 지원서비스 등
공적연금	172,025	189,955	214,285	238,197	259,856	281,833	312,678	10.5	4대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9,426	12,135	16,690	19,567	23,694	28,759	33,847	23.7	영유아보육, 여성정책 등
노인청소년	5,729	7,532	22,058	32,836	36,630	38,759	40,510	38.5	기초노령연금 등
노동	93,186	104,294	104,936	146,846	122,935	126,180	131,242	5.9	고용안정, 직업훈 련,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보훈	26,985	29,752	31,291	33,597	36,094	38,737	40,541	7.0	보훈연금 등
주 택	135,459	139,664	154,145	152,883	167,162	180,536	190,062	5.8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복지일반	1,730	2,726	3,797	6,412	4,642	5,455	5,789	22.3	사회통합관리망 구축및운영 등
보건의료	10,605	9,888	11,718	15,835	17,037	15,599	16,039	7.1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보건산업 육성 등
건강보험지원	42,962	41,350	45,539	52,040	53,827	57,102	60,113	5.8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공 · 교 국가 부담금보험료 등
식의약품 관리	1,541	1,654	1,785	2,080	2,440	2,299	2,437	7.9	
복지재정 합계(A)	560,261	613,889	688,176	804,151	812,466	863,929	926,305	8,7	
정부 총지출 (조원, B)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325.4	6.4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재정 비중 (A/B)	25.0	25.8	26,2	26.6	27.7	28.0	28.5	_	

주: 2008년과 2009년은 추경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2, 2

[표 3-28] 2012년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전년대비	
	걔금	연금기금	기금	기금	합계	증가액	증가율
[조 달]	792,307	162,007	92,912	27,077	1,074,303	47,375	4.6
자체수입	435,893	65,079	43,962	183	545,117	38,143	7.5
기여금(보험료)수입	280,109	35,615	19,080	-	334,804	23,984	7.7
이자 및 재산수입 등1)	155,784	29,464	24,882	183	210,314	14,160	7.2
경상이전수입	_	1,420	536	4,838	6,794	325	5.0
정부내부수입	107	68,067	4,940	21,892	95,006	7,906	9.1
국가부담금 ²⁾	_	54,336	_	9,164	63,502	7,876	14.2
보전금	-	12,945	_	12,500	25,445	1,322	5.5
전입금 ³⁾	107	662	4,940	-	5,712	-934	-14.1
공공자금예탁 원리금 및 이자	-	124	-	228	352	-353	-50.1
여유자금회수	356,307	27,441	43,474	164	427,386	1,001	0.2
[운 용]	792,307	162,007	92,912	27,077	1,074,303	47,375	4.6
사업비	120,335	125,824	35,798	25,066	307,023	30,082	10.9
급여지출	118,419	104,347	18,919	25,066	266,751	29,692	12.5
경상지출 ⁴⁾	1,217	208	_	-	1,430	-562	-28.2
융자지출 ⁵⁾	300	12,013	16,663	-	28,982	766	2.7
자본지출 ⁶⁾	399	9,256	216	-	9,878	204	2.1
기금운영비	4,069	905	774	5	5,753	163	2.9
여유지금 운용	667,902	35,278	56,340	2,006	761,526	17,129	2.3
[연도말 누적적립금]	3,800,165	66,323	142,349	5,680	4,014,517	289,585	7.8

주: 1)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융자원금 회수 및 민간차입금을 포함

²⁾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지자체부담금을 포함 3)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대여장학금 수탁금 및 운영부담금을 포함,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국가부담금, 국고학자금대여사업비 포함

에 국민연급가급의 경우 복지타(운운영비, 기급운용본부운영비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급가급의 경우 차입급이자상환, 공자기급예탁급을 포함하고, 군인연급가급의 경우 공자기금 예탁이 포함

⁵⁾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대부사업운영이 포함되고,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생활지금대여, 학자금대여가 포함

⁶⁾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공단 회관신축 및 매입, 본부지방이전, 정보화사업, 기타사업비가 포함되고,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주택사업운영, 시설사업운영, 통합전략시스템이 포함

[표 3-29]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 2005~2011년

(단위: 천명,%)

	전체가입자수	가입	종별 가입자수(구선	성비)	수급자수	人그ㄹ
	(증감률)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증감률)	수급률
2005	17,124 (0.3)	7,950 (46.4)	9,124 (53.3)	50 (0.3)	1,767 (14.6)	10,3
2006	17,740 (3.6)	8,605 (48.5)	9,086 (51.2)	49 (0.3)	1,996 (13.0)	11.3
2007	18,267 (3.0)	9,149 (50.1)	9,063 (49.6)	54 (0.3)	2,257 (13.1)	12.4
2008	18,335 (0.4)	9,493 (51.8)	8,781 (47.9)	60 (0.3)	2,534 (12.3)	13.8
2009	18,624 (1.6)	9,867 (53.0)	8,680 (46.6)	77 (0.4)	2,787 (10.0)	15.0
2010	19,229 (3.2)	10,415 (54.2)	8,674 (45.1)	140 (0.7)	2,992 (7.4)	15.6
2011	19,886 (3.4)	10,977 (55.2)	8,675 (43.6)	234 (1.2)	3,015 (0.8)	15.2

자료: 보건복지부, 2012, 3

[표 3-30]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보전금: 2005~2012년

(단위: 억원)

		국고 지원				(2H: 4B)	
		7416			국고 보전금		충나게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소 계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소 계	합계
2005	36,948	_	36,948	6,096	8,564	14,660	51,608
2006	38,362	_	38,362	6,477	8,755	15,232	53,594
2007	36,718	_	36,718	9,892	9,536	19,428	56,146
2008	40,562	1,270	41,832	14,294	9,492	23,786	65,618
2009	46,828	2,543	49,371	19,028	9,409	28,437	77,808
2010	48,614	3,531	52,145	13,071	10,566	23,637	75,782
2011	50,361	4,179	54,540	13,577	12,266	25,843	80,383
2012	54,056	4,458	58,514	14,588	12,500	27,088	85,602
합 계	315,501	15,981	368,430	97,023	81,088	178,111	546,541

주: 1) 2005~2011년은 결산 기준, 2012년은 예산 기준

²⁾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기입자 지원사업 예산(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약 20%) 3) 요양보험료 수입액 20% 지원(운영지원)과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2012. 2

[표 3-31] 연도별 최저생계비 : 2000~2012년

(단위: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6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12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고시」, 각 년도

[표 3-3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04~2012년

(단위: 천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수급자수 (증감률)	1,424 (3.6)	1,513 (6.3)	1,535 (1.4)	1,550 (1.0)	1,530 (-1.3)	1,569 (2.5)	1,550 (-1.2)	1,469 (-5.2)	1,460 (-0.6)
 일반수급자	1,338	1,426	1,450	1,463	1,444	1,483	1,458	1,380	1,371
시설수급자	86	88	85	87	86	86	92	89	89

주: 2005~2011년은 연도말 기준, 2012년은 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2. 1

[표 3-33] 국민의료비 지출추이 : 2004~2010년

(단위: 십억원)

		국민의	료비		구성	침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GDP대비(%)	공공부문(%)	민간부문(%)
2004	22,833	20,586	43,419	5.3	52.6	47.4
2005	25,935	23,079	49,014	5.7	52.9	47.1
2006	30,397	24,557	54,955	6.0	55.3	44.7
2007	34,297	27,148	61,445	6.3	55.8	44.2
2008	37,084	29,200	66,284	6.5	55.9	44.1
2009	42,886	30,828	73,714	6.9	58.2	41.8
2010	47,938	33,356	81,294	6.9	59.0	41.0

주: 2010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2011, 12

[표 3-34] 등록장애인 현황: 2005~2011년

(단위: 천명, %)

			국민	의료비					구성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기타	계 (증감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기타
2005	965	190	176	128	331	1,789 (11.1)	53.9	10.6	9.8	7.1	18.5
2006	1,049	197	205	138	379	1,967 (9.9)	53,3	10.0	10.4	7.0	19.2
2007	1,114	217	218	143	413	2,105 (7.0)	52.9	10.3	10.4	6.8	19.6
2008	1,191	228	239	147	442	2,247 (6.7)	53.0	10.2	10.6	6.5	19.7
2009	1,293	241	262	155	478	2,430 (8.1)	53,2	9.9	10.8	6.4	19.7
2010	1,338	249	278	161	491	2,517 (4,0)	53.2	9.9	11.0	6.4	19.5
2011	1,333	251	278	167	490	2,519 (0.1)	52.9	10.0	11.0	6.6	19.5

주: "기타" 는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cdot 요루, 간질에 대한 장애인

자료: 보건복지부, 2012, 3

자료: 보건복지부, 2012, 3

아동수

(100.0)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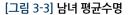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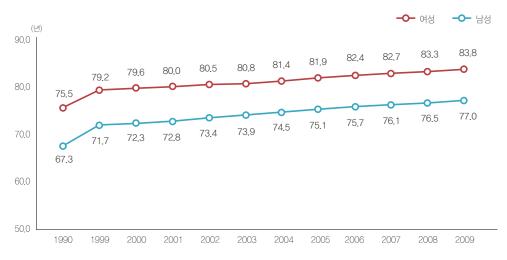
(56.2)

(0.2)

(22.8)

(1.8)





[표 3-36] 남녀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2000~2011년

(단위: 천명, %)

	여성		남	성	남녀차이	전체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2000	9,101	48.8	13,034	74.4	25.6	22,134	61.2
2004	9,690	49.9	13,727	75.0	25.1	23,417	62.1
2005	9,860	50.1	13,883	74.6	24.5	23,743	62,0
2006	10,001	50.3	13,978	74.1	23.8	23,978	61.9
2007	10,092	50.2	14,124	74.0	23.8	24,216	61.8
2008	10,139	50.0	14,208	73.5	23.5	24,347	61.5
2009	10,076	49.2	14,319	73.1	23.9	24,394	60.8
2010	10,256	49.4	14,492	73.0	24.0	24,748	61.0
2011	10,416	49.7	14,683	73.1	23.4	25,099	61.1

주: 2000년 이후 실업자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각년도)

[표 3-37]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만명, %)

[•						(단위: 반명, %)
	2010			2012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12월	1월
15세이상인구(A)	4,059	4,105	4,084	4,087	4,091	4,127	4,132
경제활동인구(B)	2,475	2,509	2,411	2,443	2,491	2,488	2,458
취업자수(C)	2,384	2,424	2,320	2,333	2,384	2,412	2,373
고용률(C/A)	58.7	59.1	56.8	57.1	58.3	58.5	57.4
남성고용률	70.1	70.5	68.4	68.9	70.0	70.2	69.1
여성고용률	47.8	48.1	45.6	45.8	47.0	47.2	46.3
실업자수(D)	92	85	92	109	107	75	85
실업률(D/B)	3.7	3.4	3.8	4.5	4.3	3.0	3.5
청년(15~29세)실업률	8.0	7.6	8.5	8.5	9.5	7.7	8.0
비경제활동인구	1,584	1,595	1,673	1,644	1,599	1,639	1,673
취업준비	63	57	57	59	61	50	51
쉬었음	142	160	187	180	153	179	201
구직단념자	22	21	24	20	22	19	20

주: 15세 이상 인구: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자료: 통계청

[표 3-38]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추이 : 2007~2011년

(단위: 천명)

	취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2007	23,433	10,920	12,529
2008	23,577	11,338	13,489
2009	23,506	11,784	13,884
2010	23,829	12,232	14,199
2011	24,244	13,044	14,362

자료: 고용노동부

[그림 3-4]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2010.11월~2011.12월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각 월호

[표 3-39] 고용형태: 2007~2011년

'단위: 천명 %

[# 2_23] T-9	영네 : 2007~2	UTTE				(단위: 천명, %)
	017777	T-1-1-1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ઇπ⁴	미성규식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2007	15,882	10,180	5,703	3,546	1,201	2,208
	(100.0)	(64.1)	(35.9)	(22.3)	(7.6)	(13,9)
2008	16,104	10,658	5,445	3,228	1,229	2,137
	(100.0)	(66.2)	(33.8)	(20.4)	(7.6)	(13,3)
2009	16,479	10,725	5,754	3,507	1,426	2,283
	(100.0)	(65.1)	(34.9)	(21.3)	(8.7)	(13,9)
2010	17,048	11,362	5,685	3,281	1,620	2,289
	(100.0)	(66.7)	(33.3)	(19.2)	(9.5)	(13.4)
2011	17,510	11,515	5,995	3,442	1,702	2,427
	(100.0)	(65.8)	(34.2)	(19.7)	(9.7)	(13.9)

주: 1. 비정규직 합계는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 ()}는 임금근로자 중 비중

^{3.} 비전형 근로에는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 가정내 근로, 일일 단기근로가 포함

^{4.}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 기준 비정규직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나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취약근로재(2011, 8월 2,864천명)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8,859천명(50,6%)으로 산정

[표 3-40] 최저임금 현황: 2008~2012년

(단위: 원, %, 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시간급: 3,770	시간급: 4,000	시간급: 4,110	시간급: 4,320	시간급: 4,580
최저 임금액	일급: 30,160	일급: 32,000	일급: 32,880	일급: 34,560	일급: 36,640
	(월: 852,020)	(월: 904,000)	(월: 928,860)	(월: 976,320)	(월: 1,035,080)
인상률	8.3	6.1	2.75	5.1	6.0
적용근로자수	15,351	15,882	16,103	16,479	_
수혜근로자수	2,124	2,085	2,556	2,336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	1,747	2,104	1,958	1,899	_

[표 3-41] 성폭력 발생 현황 : 2007~2011년

(단위: 억원, %)

			71710101	조치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범죄자수)	구속	불구속		
2007	15,325	13,940	16,500	2,927	13,573		
2008	17,178	15,627	17,824	3,157	14,667		
2009	18,351	17,027	18,810	2,811	15,999		
2010	20,375	18,065	19,712	2,973	16,739		
2011 (증기율)	21,848 (7,23)	18,469 (2.24)	20,159 (2.27)	2,612 (-12,14)	17,547 (4.83)		

자료: 여성가족부, 2012, 2

주: 1, 일급은 8시간 기준, 월급은 226시간(28일 기준) 2. 수혜근로자는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수 자료: 통계청의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작성

[표 3-4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부처별 예산 현황 : 2008~2012년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여성가족부	241	296	419	576	647
법무부	15	37	47	52	72
교육과학기술부	39	65	62	108	108
고용노동부	_	0.5	4.7	4	_
행정안전부	5	24	8	14	11
문화체육관광부	26	40	56	57	49
농림수산식품부	_	4	12	15	15
방송통신위원회	_	6	20	24	24
보건복지부	_	-	_	116	96
합 계	326	473	629	966	1,022

자료: 각 부처, 2012, 2

[표 3-43] 주택 부문 재정규모: 2002~2012년

(단위: 억원, %)

				_						(근-	H. 익편, 76)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회계 및 광특회계]	8,095	8,506	10,811	11,724	11,440	2,014	1,905	3,866	1,800	2,407	2,508
[국민주택기금]	110,335	104,332	99,974	123,811	156,937	147,278	149,856	164,249	168,824	178,129	187,555
임대주택건설	44,405	36,578	36,348	37,658	44,499	62,303	57,402	67,203	66,728	52,549	52,266
분양주택건설	9,812	9,370	14,497	16,500	17,000	11,000	10,500	14,400	22,739	42,064	47,868
준주택지원(융자)	-	-	-	_	-	-	-	-	-	300	300
수요자융자	28,844	38,085	31,817	52,600	75,800	55,050	64,252	66,136	57,677	57,700	62,200
주택개량사업	1,652	2,715	1,430	1,580	1,430	1,360	1,180	1,334	100	50	50
기타사업	7,050	6,829	2,171	1,480	1,550	1,190	1,529	15,176	4,659	3,074	1,137
이자상환	17,150	8,651	11,672	11,888	14,419	14,649	13,000	12,528	16,915	22,390	21,993
기금운영비	1,422	2,104	2,039	2,105	2,239	1,725	1,993	1,568	5	3	5
수탁은행관리	-	-	-	-	-	-	-	-	-	-	1,738
합계	118,430	112,838	110,785	135,535	168,377	149,292	151,761	168,115	170,624	180,536	190,062

주: 2009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액수

자료: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바. 교육

[표 3-44] 교육분야 재정규모 추이 : 2008~2012년

(단위: 억원, %)

							(211. 72, 70)
	2008	2009	2010	2011	201	2	연평균 증가율
교육분야	360,748	382,448	382,557	409,490	454,911	(100.0)	6.0
유아 및 초 · 중등 교육	310,328	329,681	325,467	354,847	385,549	(84.8)	5.6
고등교육	44,311	46,371	50,440	46,899	62,207	(13.7)	8.9
평생 · 직업교육	4,464	5,101	5,378	6,490	5,948	(1.3)	7.4
교육일반	1,645	1,295	1,272	1,254	1,206	(0.3)	-7.5
정부 총지출 (조원, B)	262.8	301.8	292.8	309.1	325.4		5.5
정부 총지출 대비교육분야 비중(A/B)	13.7	12,7	13.1	13,2	14.0		

주: 부문별 재정에서 괄호 안은 교육분야 재정에서 부문별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1

[표 3-45] 학교 수: 200	0~2011년
--------------------	---------

(단위: 개)

						(= 11 1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유치원	8,494	8,294	8,344	8,373	8,388	8,424
초등학교	5,267	5,756	5,813	5,829	5,854	5,882
중학교	2,731	3,032	3,077	3,106	3,130	3,153
고등학교	1,957	2,159	2,190	2,225	2,253	2,282
방 송통 신고등학교	40	39	40	40	40	40
기타학교	41	33	33	33	35	38
특수학교	129	144	149	150	150	155

자료: 2011년 간추린 교육통계, 2011. 12

ſ₩	3-46	하새	스	. 20	nn.	~201	1년
1 11	. ว -401	91.71	_	. / 🗆	ハハバ	~ノロロ	1 -

(단위: 명)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유치원	545,263	541,550	537,822	537,361	538,587	564,834
초등학교	4,019,991	3,829,998	3,672,207	3,474,395	3,299,094	3,132,477
중학교	1,860,539	2,063,159	2,038,611	2,006,972	1,974,798	1,910,572
고등학교	2,071,468	1,841,374	1,906,978	1,965,792	1,962,356	1,943,798
방송통신고등학교	13,998	14,285	14,255	15,040	15,219	15,072
기타학교	25,551	11,404	9,406	9,391	9,509	10,296
특수학교	23,605	23,147	23,419	23,720	23,858	24,617

자료: 2011년 간추린 교육통계, 2011. 12

[표 3-47] 교원 수: 2000~2011년

(단위: 명)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유치원	28,012	33,504	34,601	35,415	36,461	38,662
초등학교	140,000	167,182	172,190	175,068	176,754	180,623
중학교	92,589	107,986	108,700	109,075	108,781	110,658
고등학교	104,351	120,211	122,906	125,074	126,423	131,083
기타학교	1,204	632	618	657	676	735
특수학교	4,555	6,256	6,637	6,793	6,857	7,407

자료: 2011년 간추린 교육통계, 2011. 12

[표 3-48]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순수업시간 국제비교

(단위: 명, 시간)

		_								(12	ਜ਼· 궁, 시신 <i>)</i>
		20	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OECD 평균								
	초등	28.0	16.7	26.7	16.2	25.6	16.0	24.1	16.4	22,5	16.0
교사1인당 학생 수	전기 중등	20.8	13.7	20,8	13.3	20.5	13,2	20.2	13.7	19.9	13.5
	후기 중등	16.0	13,0	15.9	12.6	16,2	12,5	16.5	13,5	16.7	13.5
학급당	초등	32.6	21.5	31,6	21.5	31.0	21,4	30.0	21.6	28.6	21.4
학생수	전기 중등	35.7	24.1	35.8	24.0	35.6	23.9	35.3	23.9	35.1	23.7
	초등	810	803	802	812	755	798	840	786	836	779
순 수업 시간 수	전기 중등	570	707	548	717	545	709	616	703	618	701
	후기 중등	553	664	552	667	480	653	604	661	605	656

주: 전기 중등은 중학교, 후기 중등은 고등학교에 해당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표 3-49] GDP 대비 교육비 비율: 2004~2008년

(단위: 명, 시간)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OECD 평균								
	정부부담	4.4	5.0	4.3	5.0	4.5	4.9	4.2	4.8	4.7	5.0
난계	민간부담	2.8	0.7	2.9	0.8	2.9	0.8	2.8	0.9	2.8	0.9
	계	7.2	5.7	7.2	5.8	7.3	5.8	7.0	5.7	7.6	5.9
초중등	정부부담	3.5	3.6	3.4	3.5	3.4	3.4	3.1	3.3	3.4	3.5
교육	민간부담	0.9	0.3	0.9	0.3	0.9	0.3	0.8	0.3	0.8	0.3
단계	계	4.4	3.8	4.3	3.8	4.3	3.8	4.0	3.6	4.2	3.7
고등 교육	정부부담	0.5	1.0	0.6	1.1	0.6	1.0	0.6	1.0	0.6	1.0
	민간부담	1.8	0.4	1.9	0.4	1.9	0.5	1.9	0.5	1.9	0.5
단계	계	2.3	1.4	2,5	1.5	2.5	1.5	2.4	1.5	2.6	1.5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표 3-50] IMD 교육경쟁력 순위: 2008~2011년

(단위: 순위)

	2008	2009	2010	2011
한국	35	36	35	29
덴마크	1	1	3	1
아이슬란드	_	_	1	2
핀란드	8	2	2	3
스웨덴	3	3	5	4
미국	12	19	21	18
영국	20	15	19	17
일본	22	26	29	34
독일	21	18	20	16
중국	42	49	46	43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표 3-51]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유형 : 2008년

(단위: %)

			민간부분에 다	한 정부보조금			
	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한 재정지원	기타 민간단체에		GDP대비 민간부분에 대한	
	직접지출	장학금/기타 가계지원	학자금 대출	대한 이전지출	소 계	정부보조금	
한 국	85.2	6.0	5.4	3.3	14.8	0.10	
OECD 평균	79.0	11.4	8.9	1.8	21.0	0.28	

주: 기타 민간이전 비용은 정부출연 교육연구기관 사업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보조금 등이 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9

[표 3-52]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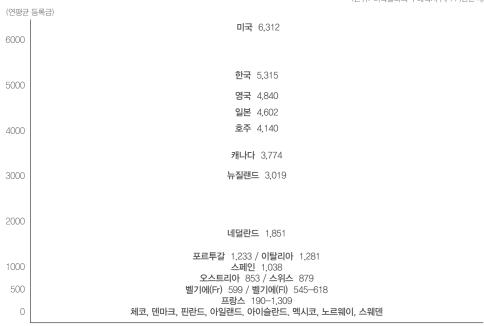
	20	00	2008				
	정부재원		정부재원	민간재원			
한 국	23.3	76.7	22,3	77,7			
OECD 평균	75.1	24.9	68.9	31.1			

주: 민간재원에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교육기관에 지출한 정부보조금이 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9

[그림 3-5]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 2008-2009학년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환산액)



주: 1. 등록금 산정 시 장학금 및 보조금, 학자금 대출은 고려하지 않음

2, 영국은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의존형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금 수치

3. 포르투갈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금 수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9

[표 3-53] 학자금 대출 수혜자 현황 및 계획: 2010-2012년

(단위: 억원, 명)

		20	10	20	11	2012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62,575	8,456	17,677	10,874	15,621
역사금네돌 (ICL)	인원	705,000	116,224	225,000	151,896	203,500
일반상환	금액	20,992	19,205	20,905	15,979	12,697
크인'Ö컨	인원	253,000	264,472	275,000	214,872	166,500
합 계	금액	83,567	27,661	38,582	26,853	28,318
입계	인원	958,000	380,696	500,000	366,768	370,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12

사. 문화 · 체육 · 관광

[표 3-54]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규모: 2006~2012년

(단위: 억원,%)

							,	L 111 7 L, 1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분야별]								
문화 · 체육 · 관광분야(A)	27,975	28,619	31,652	34,753	38,990	42,045	45,757	8.5
[부문별]								
문화예술	11,589	11,242	11,918	12,908	15,297	16,811	19,179	8.8
관광	6,381	6,649	7,766	8,948	8,901	9,257	9,829	7.5
체육	4,090	4,419	5,305	6,175	7,303	8,403	8,634	13.3
문화재	3,865	4,157	4,347	4,625	5,212	5,228	5,609	6.4
문화및관광일반	2,050	2,152	2,316	2,096	2,277	2,346	2,506	3.4
정부총지출(조원, B)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325.4	6.4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A/B)	1.25	1.20	1.21	1.15	1.33	1.36	1.41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년도

[표 3-55] 콘텐츠산업 분야별 매출액 추이: 2005~2010년

(단위: 백억원)

							(211: 77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성장률
출 판	1,939	1,988	2,160	2,105	2,061	2,124	1.8%
만 화	44	73	76	72	74	74	11.2%
음 악	179	240	236	260	274	296	10.6%
게 임	868	745	514	560	658	743	-3.1%
영 화	328	362	318	289	331	344	1.0%
애니메이션	23	29	31	40	42	51	17.1%
방 송	_	_	_	935	988	1,118	-
광 고	842	912	943	931	919	1,032	4.2%
캐릭터	208	455	512	510	536	590	23.2%
지식정보	304	347	430	478	526	620	15.3%
콘텐츠 솔루션	128	154	168	187	204	220	11.5%
매출액 합계	4,862	5,305	5,388	6,368	6,612	7,213	8.2%
GDP대비 비중	5.6%	5.8%	5.5%	6.2%	6.2%	6.2%	-
수출규모(억불)	13.0	13.7	19.4	23.4	26.0	32,3	19.9%
고용규모(만명)	57.5	55.6	56.4	54.9	57.1	58.2	0.2%

주: 1. 영화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매출액을 뺀 수치로 잠정치 적용, 방송은 독립제작사 포함

^{2.} 캐릭터는 2005년 세업체 매출규모 중 유통분야 제외, 2006년부터 유통분야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1콘텐츠산업통계」

					_		(근표: 건	3, 팩킨코니, <i>제</i>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외래객 입국	4,754	5,818	6,023	6,155	6,448	6,891	7,818	8,798
(증감률)	(-11.1)	(22.4)	(3.5)	(2.2)	(4.8)	(6.9)	(13.7)	(13.0)
내국인 출국	7,086	8,825	10,080	11,610	13,325	11,996	9,494	12,488
(증감률)	(-0.5)	(24.5)	(14.2)	(15.2)	(14.8)	(-10.0)	(-18.9)	(32.8)
관광수입	5,343	6,053	5,793	5,760	6,094	9,719	9,782	10,321
(증감률)	(-9.7)	(13.3)	(-4.3)	(-0.6)	(5.8)	(59.5)	(0.7)	(5.5)
관광지출	8,248	9,856	12,025	14,338	16,950	14,581	11,040	14,292
(증감률)	(-8.7)	(19.5)	(22)	(19.2)	(18.2)	(-14)	(-24.3)	(29.4)
관광수지	-2,905	-3,803	-6,232	-8,576	-10,857	-4,862	-1,258	-3,971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년 수입·지출·수지는 잠정치

[표 3-57] 공공체육시설 추이: 2004~2010년

(단위: 개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육상	경기장	163	172	176	185	187	198	211
체육	관	343	385	476	586	529	581	639
축구	장 · 야구장	225	283	353	442	518	622	695
테니:	스장	256	287	335	376	428	487	549
수영	장	124	152	179	223	243	262	279
	운동장 (체육시설)	6,420	7,069	8,026	8,691	9,531	10,669	11,458
기 E	<u></u>	331	368	404	443	906	1,149	1,306
합 겨	(개소)	7,862	8,716	9,949	10,946	12,342	13,968	15,137
	증가율	14.0%	10.9%	14.1%	10.0%	12.8%	13.2%	8.4%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m²)	1,32	1,92	2,16	2,38	2.54	2,88	3.1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

[표 3-58] 국가 지정 등록 문화재 현황 : 2008~2012년

(단위: 건)

연도별		국가지장	성문화재		등록문화재	계
건도달	국보	보물	기타	소계	<u> </u>	21 1
2008	309	1,573	1,296	3,178	422	3,600
2009	313	1,588	1,336	3,237	452	3,689
2010	313	1,667	1,346	3,326	466	3,792
2011	314	1,710	1,361	3,385	485	3,870
2012.3	314	1,727	1,364	3,405	489	3,894

주: 1, 국가지정문화재: 건조물· 고문서 등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2. 등록문화재: 건설·제작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3. 기타는 천연기념물, 사적, 무형문화재 등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나 보물이 아닌 문화재를 의미함

자료: 문화재청, 2012

아. 환 경

[T 2 F0]	원거HAL 제거그ㅁ	. 2006 204211
1# 3-59I	화경분야 재정규모	/006~/01/9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비고
환경	37,946	40,345	44,674	50,954	54,164	57,520	59,531	7.9	
상하수도 · 수질	25,618	26,446	28,567	32,785	35,864	38,726	39,201	7.4	하수관거, 상수도 시설 확충 등
폐기물	2,761	2,771	2,872	3,189	2,780	2,707	2,883	1.0	쓰레기 처리시설 등
대기	3,301	3,653	3,796	3,098	2,851	3,010	3,233	0.2	대기개선사업 등
자연	1,594	1,991	2,778	3,673	4,176	4,116	4,422	19.4	국립생태원 건립 등
해양	780	779	1,239	2,493	2,077	2,121	1,782	21.6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등
환경일반	3,892	4,705	5,421	5,921	6,415	7,039	8,010	12.9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
환경분야 합계(A)	37,946	40,345	44,674	50,954	54,164	57,520	59,531	7.9	
정부 총지출(조원, B)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325.4	6.4	
정부 총지출 대비 환경 분야 비중(A/B)	1.7	1.7	1.7	1.7	1.8	1.9	1.8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개요」, 각 연도

(단위: 천명, %, 천톤/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인구	48,518	48,824	49,053	49,268	49,624	50,034	50,394	50,644	51,435
처리인구	36,760	38,449	,	41,157	,	43,570	44,631	45,263	46,358
보급률	75.8	78.8	81.4	83.5	85.5	87.1	88.6	89.4	90.1
시설용량	20,233	20,954	21,617	22,568	23,273	23,942	24,568	24,925	25,118

자료: 환경부, 「2010하수도통계」, 2011.

[표 3-61] 시도별 하수도보급현황 : 2009년

	총인구(명)	하수처리인구	하수처리외인구	보급율
서울특별시	10,464,051	10,464,051	_	100
부산광역시	3,574,340	3,542,252	32,088	99.1
대구광역시	2,509,187	2,458,824	50,363	98
인천광역시	2,758,431	2,678,775	79,656	97.1
광주광역시	1,445,828	1,415,544	30,284	97.9
대전광역시	1,498,665	1,455,267	43,398	97.1
울산광역시	1,129,827	1,043,960	85,867	92.4
경기도	11,727,418	10,537,988	1,189,430	89.9
강원도	1,525,542	1,175,066	350,476	77
충청북도	1,550,126	1,207,691	342,435	77.9
충청남도	2,075,249	1,318,050	757,199	63.5
전라북도	1,874,427	1,486,292	388,135	79.3
전라남도	1,934,153	1,320,475	613,678	68.3
경상북도	2,705,226	1,946,406	758,820	71.9
경상남도	3,303,398	2,732,085	571,313	82.7
제주도	567,913	481,466	86,447	84.8
계	50,643,781	45,264,192	5,379,589	89.4

자료: 환경부, 「2010하수도통계」, 2011.

[표 3-62] 생활·사업장일반·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 2004~2010년							(단위 : 톤/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발생	및 처리(총계)	303,514	295,723	318,928	337,158	359,296	357,861	364,267
발생	생활폐기물	50,007	48,398	48,844	50,346	52,072	50,906	49,159
	- 1인당 발생량(kg/일)	1.03	0.99	0.99	1.02	1.04	1.02	0.96
	사업장 일반폐기물	105,018	112,419	101,099	114,807	130,777	123,604	136,988
	건설폐기물	148,489	134,906	168,985	172,005	2008 2009 20 359,296 357,861 364 52,072 50,906 49, 1,04 1,02 0 130,777 123,604 136, 176,447 183,351 178, 37,784 39,794 37, 18,709 18,518 19, 295,863 292,557 304,	178,120	
	매립	42,817	33,497	25,433	37,554	37,784	39,794	37,307
처리	소각	17,217	15,950	17,209	17,957	18,709	18,518	19,486
	재활용	232,334	234,651	266,554	273,561	295,863	292,557	304,028
	해역배출	11,146	11,625	9,732	8,086	6,940	6,992	6,446

자료: 환경부,「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표 3-63]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 현황(BOD) : 2000~2010년 (단위: ppm)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강(팔당) 1.4 1.3 1.4 1.3 1.3 1,1 1.2 1.2 1.3 1.3 1.2 낙동강(물금) 2.7 3.0 2.6 2.1 2.6 2.6 2.7 2.6 2.4 2.8 2.4 금강(대청댐) 1.0 1.0 1.0 1.1 1.0 1.1 1.1 1.0 1.0 1.0 영산강(주암호) 8.0 0.7 0.9 1.2 1.0 0.9 1.1 0.8 0.6 0.8 1.0

자료: 환경부, 「2011 환경통계연감」

자. 국 방

[표 3-64] 국방 재정규모: 2006~2012년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재정	147.0	156.5	180.0	203.5	201.3	209.9	223.1
국방비	22.5	24.5	26.7	29.0	29.6	31.4	33.0
재정대비 국방비	15.3	15.7	14.8	14.2	14.7	15.0	14.8

주: 국방비는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방부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65] 주요국 국방비 비교

	국방비 (억달러)	GDP 대 국방비 (%)	병력 (천명)	국민 1인당 국방비 (달러)
대한민국	224	2.7	687	460
미국	6,610	4.7	1,540	2,153
일 본	511	1.0	230	400
중국	704	1.5	2,185	54
러시아	383	3.1	1,027	272
대 만	95	2.5	290	414
영 국	591	2.7	160	956
프랑스	544	2.1	353	870
독 일	475	1.4	244	580
이스라엘	135	6.9	177	1,816

주: 2009년 기준으로 작성

자료: The Military Balance 2011(2011,3)

[표 3-66] 2000년 이후 부문별 국방비 : 2000~2012년

(단위: 억원, %)

		방위력	개선			전력운	<u> </u>	\(\text{L}	[위: 억원, %)
	합계	704		4		병력운	<u> </u>	전력유	기
	(A)	금액 (B)	비중 (B/A)	소계 (C)	비중 (C/A)	금액(D)	비중 (D/A)	금액(D)	비중 (D/A)
2000	144,774	53,437	36.9	91,337	63.1	67,353	46.5	23,984	16.6
2001	153,884	52,141	33.9	101,743	66.1	77,058	50.1	24,685	16.0
2002	163,640	54,756	33.5	108,884	66.5	82,614	50.5	26,270	16.1
2003	175,148	57,379	32.8	117,769	67.2	88,503	50.5	29,266	16.7
2004	189,412	62,930	33.2	126,482	66.8	92,979	49.1	33,503	17.7
2005	211,026	72,987	34.6	138,039	65.4	99,714	47.3	38,325	18.2
2006	225,129	58,077	25.8	167,052	74.2	104,750	46.5	62,302	27.7
2007	244,972	66,807	27.3	178,165	72,7	110,830	45.2	67,335	27.5
2008	266,490	76,813	28.8	189,677	71.2	116,817	43.8	72,860	27.3
2009	289,803	87,140	30.1	202,663	69.9	119,133	41.1	83,530	28,8
2010	295,627	91,030	30.8	204,597	69.2	121,204	41.0	83,393	28.2
2011	314,031	96,935	30.9	217,096	69.1	128,186	40.8	88,910	28.3
2012	329,576	98,938	30.0	230,638	70.0	134,923	40.9	95,715	29.1

주: 1, 일반회계 "병력운영 부문", "전력유지 부문", "방위력개선 부문"에 편성된 국방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2.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과목구조가 개편되면서, 기존 방위력개선비 중 장비유지비 일부, 주한미군기지이전, 방위비분담금 등을 국방부 전력유지비 등으로 재분류하였음.

자료: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차. 외교 · 통일

[표 3-67] 우리나라 ODA 현황: 2010년

(순지출, 백만US\$)

2009	2010	증감율(%)	비중(%)
816.0	1,173.8	43.8	100.0
581.1	900.6	55.0	76.7
367.0	573.9	56.3	양자 중: 63.7
(272.8)	(448.9)	64.5	(무상 중: 78.2)
214.1	326.7	52.6	양자 중: 36.3
234.9	273.2	16.3	23.3
(153.7)	(143.8)	-6.4	(다자 중: 52.6)
850.8	1,206.4	41.8	_
0.1	0.1	0.02%p	_
1,273.9	1,155.4	_	_
	816.0 581.1 367.0 (272.8) 214.1 234.9 (153.7) 850.8 0.1	816.0 1,173.8 581.1 900.6 367.0 573.9 (272.8) (448.9) 214.1 326.7 234.9 273.2 (153.7) (143.8) 850.8 1,206.4 0.1 0.1	816.0 1,173.8 43.8 581.1 900.6 55.0 367.0 573.9 56.3 (272.8) (448.9) 64.5 214.1 326.7 52.6 234.9 273.2 16.3 (153.7) (143.8) -6.4 850.8 1,206.4 41.8 0.1 0.1 0.02%p

자료: 수출입은행, 「2010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주요 내용」(2012, 1)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68] 구속성 여부에 따른 양자간 ODA 지원규모

(약정 기준, 백만US\$)

		20	09	201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비구속성	614.6	48.4	567.5	35.7		
양자간 ODA	구속성	655.5	51.6	1,022.1	64.3		
	총 계	1,270.1	100.0	1,589.6	100.0		

주: 양자간 ODA는 기술협력 및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수출입은행, 「2010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주요 내용」(2012, 1)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69]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단위: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1,898	466	626	423	509	570	612	666	579	819
여	1,230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합계	3,12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여성비율	39	63	67	69	75	78	78	77	76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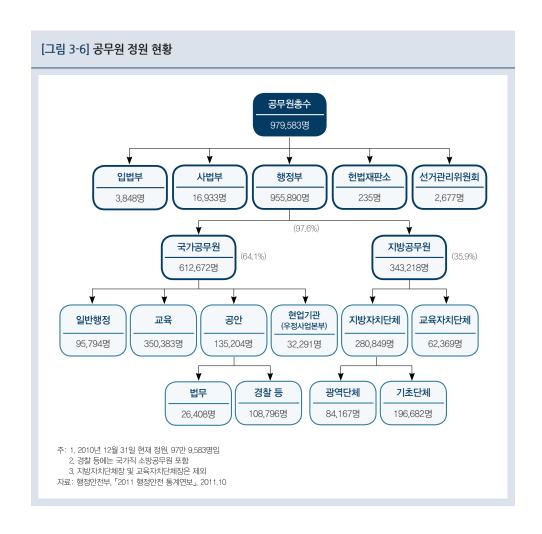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표 3-70]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 (ERI: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강원	합계
	인원	5,954	842	1,932	444	555	660	275	528	
	지역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20,840
	인원	5,624	808	679	458	424	742	773	142	

주: 1)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2) 2012년 1월 기준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카. 일반공공행정



[표 3-71] 지방세 징수액 현황: 2002~2010년

(단위: 조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방세	징수액	31.5	33,1	34.2	35.9	41.3	43.5	45.5	45.2	49.2
(조세총	· 동액대비,%)	23.3	22.4	22.5	22	23	21.2	21.4	21.5	21.7
(GDPE	ㅂ ,%)	4.6	4.6	4.4	4.5	4.9	4.8	4.4	4.2	4.2
	특별시	8.6	8.8	8.5	8.8	10.0	10.8	11.3	10.8	11.0
광역	광역시	6.3	6.8	6.5	7.2	8.1	8.3	8.3	8.4	9.4
	도	9.2	9.1	9.3	9.8	11.5	11.4	11.6	11.4	13.8
	시	4.8	5.5	6.5	6.9	8.1	8.8	10.1	10.4	10.8
기초	군	1.1	1.2	1.3	1.4	1.5	1.6	2.0	2.1	2.1
	구	1.5	1.7	2.1	1.8	2.1	2.6	2,2	2.1	2.1

주: 1. 광역단체 중 도는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세수가 전년에 비해 상당폭 증가

2. 매년 2월말(직전연도 결산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3-72] 전국 재정자립도: 2002~2011년

[-3 /2] [-1	110 16		2 20	_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평균 (순계)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51.9
특 · 광역시 (총계)	79.8	82.2	81.4	80.3	78.5	73.9	73.8	72,7	68.3	68.6
도 (총계)	34.6	39.4	41.3	36.6	36.1	34.9	39.5	33.3	31.7	33.0
시 (총계)	40.2	38	38.8	40.6	39.4	39.5	40.7	40.7	40.0	38.0
군 (총계)	17.4	16.3	16.6	16.5	16.1	16.6	17,2	17.8	18.0	17.1
자치구 (총계)	45.1	42.3	42.6	44.3	40.5	37.5	37.1	37.3	35.4	36.6

주: 1, 2011년 당초예산기준

^{2,}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자체수임(지방세+세외수임)을 일반회계 규모로 나누어서 계산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타. 공공기관

[표 3-73] 2012년 공공기관(286개)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구구구시	시장형 공기업 (14)	준시장형 공기업 (14)	기금관리형 (17)
기획재정부(3)	<u>'</u>	한국조폐공사 (1)	<u>'</u>
교육과학기술부(3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
 외교통상부(3)			
통일부(2)			
리무부(3)			
 국방부(3)			
 행정안전부(4)			공무원연금공단 (1)
문화체육관광부(33)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4)
농림수산식품부(10)		한국마사회 (1)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지식경제부(60)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717 6711 (00)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대한석탄공사 (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10)		
보건복지부(16)			국민연금공단 (1)
			70000 (1)
환경부(4)			
고용노동부(10)			근로복지공단 (1)
여성가족부(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국토해양부(3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8)	
국무총리실(24)			
1704 <u>2</u> (24)			
방송통신위원회(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1)			
원자력안전위원회(2)			
 금융위원회(10)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5)
 공정거래위원회(1)			,
3 8 기대 (1 전 의 (1) 국가보훈처(3)			
국기로문시(6) 방위사업청(2)			
8			
도와제(3(1) 산림청(1)			
고급()(1) 농촌진흥청(1)			
중혼신흥성(1) 중소기업청(8)			중소기업진흥공단 (1)
등차청(4)			04/18E00E (I/
= 여성(4) 식품의약품안정청(1)			
식품의식품인성성(T) 경찰청(1)			
8월성(1) 소방방재청(1)			
-00/110(1)			

준정부기관	기타고 고기과 (470)
위탁집행형 (65)	기타공공기관 (176)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장학재단 (4)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복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한국바학교병원, 한국바학교병원, 한국바학교병원, 한국바학교병원, 한국바학교병원, 한국바학교병원, 한국사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산대학교병원, 한국사학기술원, 한국사학기술원, 라구한기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과학기술원, 대주전부자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반역원, 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33)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원그지나신지들이 원고소기되어지기기이(A)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3)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2)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복관광개발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래제주), 대한창에인체육회, 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랜권도진흥재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5)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어촌어항협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 기자인지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 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 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 우편사업진흥원,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8)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 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사통산연 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략몰자관리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5)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10)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생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앙수산연수원, 대한지적공사 (7)	코레일테크(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울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 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한국인터넷진흥원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2)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정책금융공사 (3)
한국소비자원 (1)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88관광개발(주) (1)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
	녹색사업단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2)	시장경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5)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4)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
도로교통공단 (1)	



가계부채 128

가정폭력 ·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446

간접세 51

건강보험 386

결산 70

결산심의 과정 6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49

경제성장률 1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26

계속비 169

계정성기금 43

계층화분석(AHP) 119

고액현금거래 및 혐의거래 보고제도 233

고용보험 411

공공기관 104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109

공공기관 부채 108

공공기관 분류 105

공공기관 자산 107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388

공공자금관리기금 157

공적신용보증 232

공적자금 관리 228

공적자금 상환체계도 230

공직복무관리 사업 226

과징금 233

관리대상수지 144

관세탈루심사 254

교육재정 22

국가보증채무 154

국가연구개발예산 315

국가장학금 지원 317

국가재정운용계획 76

국가채무 148

국고보조금 35

국고채무부담행위 149, 167

국립외교원 266

국민부담률 114

국민연금 383

국민주택기금 157

국세 51

국세감면율 55

국세수입 161

국채 148

군 시설 BTL 정부지급금 279

군 의료지원체계 278

근로장려세제(EITC) 253

금융성기금 43

금융정보분석원 233

기금수입 173

기금운용계획 변경 67

기금지출 176

기업특별회계 159

기초노령연금 384

기초생활보장급여 381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268

남북청소년교류센터 268

내국세 51 노인장기요양보험 387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347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지원 349

대개도국 차관사업 232 대외경제협력기금 250 대형함정건조 429 독과점 규제 233 독립기관 예산안 편성 61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추진 사업 267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 지원 335

명시이월 169 명시이월비 168 목적예비비 159 무역보험기금 출연 363 문화·체육·관광 바우처 333 문화재보수정비 336 민간투자사업 102

발생주의 29, 81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214 법안비용추계 98 보금자리주택 사업 428 보상금수당 235 보조금 35 보훈보상 236 복권기금 지원사업 251 복권수익금 법정 배분비율 252 복식부기 81 부담금 110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112 부대의견 64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 231 부패방지조사평가 237 비용편익분석 119 비축사업 255

사고이월 169 사업성기금 4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409 사회보험성기금 43 산재보험 411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08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202 성과관리 89 성과목표관리제도 90 성과주의 예산체계 91 성인지 예산 86, 180 세입예산 161 세종시 건설 사업 430 세출예산 164 소하천 정비 302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 409

수익형 민자사업(BTO) 103

순계 21

신용보증 232

실효적 국민부담률 113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34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44

여성발전기금 442

영유아보육료 384

예비비 166

예비타당성 조사 117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 118

예비한도액 178

예산 외 재정활동 18

예산배정 66

예산안 심의과정 63

예산총계주의 18

예수금 38

예탁금 38

외국환평형기금 157, 252

원가보상률 30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365

유럽 재정위기 126

유전개발사업 출자 364

의무지출 139

이용 67, 158

이전지출 34

이체 67

일반국도 건설사업 425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 215

일반정부 28

일반철도 건설사업 426

일자리 확충 예산사업 415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03

임대형 민자사업(BTL) 103, 178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사업 414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96

재무제표 82

재외선거관리 303

재원배분 133

재정과정 59

재정사업 심층평가 92

재정사업 자율평가 91

재정수지 144

재정위기 126

재정융자 39

재정증권 157

재정지출 131

재정통계 개편 29

재해복구 국가채무 부담행위 156

전용 67

전입금 38

전출금 38

정부출연연구기관 226

정책자금 융자 366

제주해군기지 280

조세부담률 114

조세지출 54

조세지출예산 83

준예산 63

지방교부세 95, 2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7

지방세 52

지방이전재원 94

지방재정조정제도 93

지방정부순채무 149

지식경제 R&D 361

지역발전프로그램 300

직접세 51

2

차세대전투기 도입 280

차입금 149

창업사업화지원 368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447

청소년육성기금 442

총계 21

총사업비 관리 114

총사업비 변경 116

총수입 129

총액배분 자율편성 79

총지출 21, 129

총한도액 178

출연금 36

출자금 36, 37

충당부채 31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412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318



통계작성사업 257

통계청 작성통계 258

통합재정 26

통합재정수입 131

통합재정수지 131, 144

통합재정지출 21. 131

특수활동비 215

특허심사지원 369



프로그램 예산체계 90



한 · 미 FTA 보완대책 346

한류 진흥 33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445

한식 세계화 지원 350

해외구매 무기사업 281

현금주의 29

현물출자 37

환경개선특별회계 406

회전자금 255

기타

4대강 사업 427

ICL 318

PIGS 126

SOC 재정규모 424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

National Finance of Korea 2012

발 행 일	2012년 3월
발 행 인	주 영 진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대한민국국회
	TEL 02 · 788 · 3769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디자인 · 인쇄	(주)메이커뮤니케이션 TEL 02 · 761 · 8340

^{*}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